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808-01

2020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Nation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2020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일반 과제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 11. 30

연구수행기관: (사)문화사회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종임(경희대학교)

공동연구원: 황경아(경희대학교)

김두나(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보조연구원: 권순택(언론개혁시민연대)

박선영(문화연대)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제2장. 연구의 범위와 방법	9
제1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9
제2절. 연구의 방법과 절차	10
1. 국내외 문헌 연구 및 자료조사	10
2. 아동·청소년 종사자 설문조사	10
3. 아동·청소년 종사자 심층인터뷰	10
제3장. 국내외 선행연구와 인권보호 사례	15
제1절. 국내외 선행 연구 현황	15
1. 아동·청소년 종사자에 대한 인권보호 장치 부재	15
2. 아동·청소년 종사자 인권보호의 전제: 유엔 아동권리협약	19
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논의 필요	20
4. 국내 정부부처의 아동·청소년 종사자 인권보호 역할과 실태조사 현황	22
5. 국내외 대중문화산업 종사자 현황	30
제2절. 대중문화예술산업 아동·청소년 종사자 인권 보호 해외 사례	32
1. 미국	32
1) SAG-AFTRA: 미국 영화 배우·방송인 노조	33
2. 영국	37
1) OfCom	37

2) BBC	39
3) 영국 영화위원회(British Film Commission)	43
3. 뉴질랜드	44
1) 스크린세이프(Screen Safe)	44
4. 국제배우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tors, FIA)	49
제3절. 대중문화산업 아동·청소년 종사자 노동환경 현황	50
1. 생존권	50
1) 외모 스트레스와 다이어트·성형의 강요	50
2) 열악한 합숙시스템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52
3) 데뷔와 캐스팅 불확실성으로 인한 정서적 불안감	52
4)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연기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54
2. 보호권	55
1) 신체적 체벌과 욕설 및 공포분위기 조성	55
2) 상업적 젠더 이미지 수행요구와 현장에서의 성폭행 위험	56
3) 선정적이고 자극적 연기수행과정에서 겪게 되는 트라우마	57
4) 통제	58
3. 발달권	60
1) 보장받지 못하는 학습권	60
2) 동료들과의 갈등	61
4. 참여권	63
1) 아이돌 꿈을 인정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63
2) 경제적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63
3) 계약관계에서 불공정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을'	64

제4장. 국내외 대중문화산업 관련 법·제도 현황	69
제1절.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한 국내 법·제도의 현황	69
1.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의 법적 지위	70
1) '아동·청소년'의 법적 개념	70
2)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이 체결하는 계약의 성격	70
2.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한 국내 법·제도 현황과 한계	72
1) 「근로기준법」	72
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76
3) 「예술인복지법」	88
3. 소결	91
제2절.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을 위한 해외 법·제도 현황	93
1. 미국	93
1) 캘리포니아 주	93
2) 뉴욕주	97
2. 캐나다	103
3. 프랑스	107
4. 영국	110
5. 독일	113
6. 일본	116
7. 소결	118
제3절.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120
1. 노동/용역제공시간 세분화	120
2.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	121
3.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제도 개선	121

4. 관리 감독 강화 및 신고·구제절차 마련	122
5. 건강권 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	122
6. 안전을 위한 방안 마련	123
7. 소득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	123
8. 표준계약서 보완	123
제5장. 연구방법 및 결과	127
제1절. 설문조사	127
1. 설문문항구성	127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129
3. 분석결과	130
1) 기본사항	130
(1) 성별	130
(2) 연령	130
(3) 재학여부 및 교육과정	130
(4) 연기활동경력	131
(5) 배역	132
(6) 소속사 여부 및 계약체결 형태	132
2) 생존권	133
(1) 신체적 생존권	133
(2) 질적 생존권	140
3) 보호권	142
(1) 학대 및 착취로부터의 보호	142
(2) 차별로부터의 보호	146

(3)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147
(4) 사생활/인권 침해로부터의 보호	148
4) 발달권	149
(1) 인지적 발달	150
(2) 정서적 발달	155
(3) 사회적 발달	159
(4) 직업적 발달	160
5) 참여권	163
(1) 자기결정권	163
(2) 표현의 자유	165
(3) 정보 접근권 및 정보 참여	166
(4) 참여 관련 인식	167
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168
(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인지 여부 및 인지 경로	168
(2) 촬영장 내 인권침해 예방 대책	169
(3) 아동·청소년 연기자로서의 직업 유지를 위해 마련되어야 할 제도	170
4. 소결	171
제2절. 심층인터뷰	176
1. 심층인터뷰 방법	176
1) 심층인터뷰 진행과정	176
2) 심층인터뷰 대상자 세부정보	177
2. 심층인터뷰 결과	179
1) 생존권	179
(1) 획일화된 신체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자발적/비자발적 수행	179

(2) 개인이 떠나는 성공 불안감의 징후, '정서불안'	181
(3) 연습생 탈출과 차기 작품 출연 준비과정에서 느끼는 '조급함'	182
(4) 강요된 협업, 합숙시스템	183
(5) 감염병인 코로나19의 영향	184
2) 보호권	185
(1)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의 부재	185
(2) 상업적 젠더 이미지 수행요구와 성폭행 위협의 공존	186
(3)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연기수행과정에서 겪게 되는 트라우마	187
3) 발달권	188
(1) 학교보다는 연기현장과 기획사	188
(2) 개인이 떠나는 성공과 실패의 결과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과 유혹	189
(3) 불안정한 사회관계	191
4) 참여권	192
(1) 아동·청소년을 보호와 통제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현장	192
(2) 현장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차별'	193
(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인지 여부	194
(4) 인권보호 장치로서 현장의 요구들	196
3. 소결론	198
제3절. 전문가 자문 결과	201
1. 아동·청소년 종사자 대상 종합적인 정기실태조사의 필요성	201
2. 대중문화예술산업 및 대중문화예술인에 관한 체계화된 직업교육의 필요성	202
3.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필요성과 전담 제도·인력 마련	203
4.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	204
5.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권리 보호를 위한 현장 전담 감독관 파견 제도의 필요성	206

6.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관련 공통의 제작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	207
7. 아동·청소년 종사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 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	208
제6장. 연구의 활용방안 및 정책적 제언	211
제1절. 연구의 활용방안	211
1. 연기학원·에이전시 관리와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방안 필요	211
2. 방송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아동·청소년의 인권보호 필요	211
3.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보호에 대한 인식전환 필요	212
제2절. 정책적 제언	213
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대한 재논의 필요	213
2. 방송 제작현장에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안) 개정 필요성	213
3. 정부 관련 부처 간 협업, 관련 정책/법안 개정 필요	216
참고문헌	219
<부록1>(연기자용)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설문지	225
<부록2>(연습생용)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설문지	249
<부록3> 프랑스 노동법	272

표 목차

<표 3-1> 아동의 나이에 허용되는 1일 최대 작업시간	45
<표 5-1> 아동·청소년의 인권체계의 4개 영역	127
<표 5-2> 설문항목 세부내용	128
<표 5-3> 성별	130
<표 5-4> 연령대	130
<표 5-5> 재학여부	131
<표 5-6> 교과과정	131
<표 5-7> 연기활동경력	132
<표 5-8> 배역	132
<표 5-9> 소속사 여부	132
<표 5-10> 소속사와의 계약형태	133
<표 5-11> 촬영현장에서의 식사제공 여부	133
<표 5-12> 촬영현장에서 제공된 식사 만족도	134
<표 5-13> 체형에 대한 본인 및 제작진/소속사의 평가	134
<표 5-14> 규칙적인 운동 여부	135
<표 5-15>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평가	135
<표 5-16> 건강에 대한 제작진/소속사의 관심 정도	136
<표 5-17> 건강에 대해 가장 관심 갖는 사람	136
<표 5-18> 스트레스 요인	137
<표 5-19> 평소와 촬영기간 중 하루 평균 수면시간	137
<표 5-20> 촬영기간 중 평균수면시간에 대해 부족하다고 느끼는 정도	138

<표 5-21> 연기를 위해 수면시간을 줄여도 좋다고 생각하는 정도	138
<표 5-22> 연기자 생활시작 후, 촬영기간 중 신체적/정신적 질병 발생 여부	139
<표 5-23> 촬영현장 사고예방 사전교육 실시여부	139
<표 5-24> 집안의 경제적 사정으로 연기자 생활유지에 어려움을 겪는지 여부	140
<표 5-25> 연기자 생활하는데 부모의 경제적 도움 여부	140
<표 5-26> 현재의 행복감 정도	141
<표 5-27> 연기생활에 대한 만족도	141
<표 5-28> 연기생활에 대한 불만족 이유(복수응답)	142
<표 5-29> 제작진/소속사 관계자로부터의 신체적 체벌 및 지나친 꾸짖음/욕설 피해 경험	143
<표 5-30> 선배/동료 연기자로부터의 신체적 체벌 및 지나친 꾸짖음/욕설 피해 경험	143
<표 5-31> 신체적 체벌 및 지나친 꾸짖음/욕설에 대한 인식	145
<표 5-32> 제작진/소속사 관계자로부터의 성적 피해 경험	145
<표 5-33> 촬영현장 및 배역캐스팅 과정에서의 차별 피해 경험	146
<표 5-34> 제작진/소속사로부터 다이어트 및 성형수술 권유받은 경험	147
<표 5-35> 촬영현장에서의 불편한 점	147
<표 5-36> 자극적이거나 불편했던 촬영 경험 여부	148
<표 5-37> 제작진/소속사 관계자로부터 휴대폰/SNS사용 및 연애 금지 요구 받은 경험	148
<표 5-38> 온라인 공간에서의 사생활/인권침해 피해 경험	149
<표 5-39> 학교 수업내용 이해 정도	150
<표 5-40> 학업 중도 포기 생각 여부	150
<표 5-41> 학업을 포기하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1-3순위)	151
<표 5-42> 연기력 향상 위해 사교육 받은 경험 여부	151
<표 5-43> 사교육 유형(복수응답)	152
<표 5-44> 사교육의 연기력 향상에 대한 도움 정도	152

<표 5-45> 촬영기간 동안 일주일 평균 결석일	153
<표 5-46> 촬영기간 중 학교 수업 결석 동의 여부	153
<표 5-47> 학습권 보장 정도	154
<표 5-48> 학교 수업 참여 중요도	154
<표 5-49> 학교수업이 갖는 의미에 대한 생각(복수응답)	155
<표 5-50> 부모님 및 제작진, 소속사 관계자와의 평소 대화 정도	155
<표 5-51> 여가시간 충분성에 대한 인식	156
<표 5-52> 고민 문제(1-3순위)	157
<표 5-53> 고민 상담 대상(복수응답)	157
<표 5-54> 우울감/스트레스/자아 존중감 및 효능감/정서적 고립감 및 조절감	158
<표 5-55> 마음을 터놓고 대화 가능한 친구 수	159
<표 5-56> 활동 중인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여부	159
<표 5-57> 제작진/소속사 관계자 및 선배/동료 연기자와의 갈등해결방식	160
<표 5-58> 진로 관련 정보 검색 및 진로문제에 대해 부모와의 대화 정도	161
<표 5-59> 학교에서 연기 관련 진로교육 및 상담 경험 여부	161
<표 5-60> 학교의 진로교육 및 상담에 대한 도움 정도	161
<표 5-61> 진로 직업에 대한 태도	162
<표 5-62> 초/중/고등학교 졸업 후 계속해서 연기자의 진로로 나아갈 생각	162
<표 5-63> 연기자 진로 결정 때, 본인 의사에 대한 부모의 존중 정도	163
<표 5-64> 작품/소속사/소속사와의 계약조항 결정시 본인의 의사 반영 정도	164
<표 5-65> 제작진/소속사 관계자로부터의 개인 물품 소지에 대해 제지/통제 받은 경험	164
<표 5-66> 제작진/소속사 관계자로부터의 개인 물품 소지에 대해 제지/통제 받은 경험	165
<표 5-67> 아동·청소년 연기자의 발언권 존중 정도	166
<표 5-68>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 관련 정보제공 받은 경험	167

<표 5-69> 인권 신장 및 옹호를 위한 전담수행기관의 필요성	168
<표 5-70> 인권침해 문제해결에 대한 아동·청소년 의견 반영 및 참여권 보장인식	168
<표 5-7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인지 여부	169
<표 5-7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인지 경로	169
<표 5-73> 촬영장 내 인권침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170
<표 5-74> 아동·청소년 연기자로서의 직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마련되어야 할 제도	170
<표 5-75> 심층인터뷰 응답자 인적 사항	177
<표 5-76> 전문가 자문 참여 명단	201
<표 6-1>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노동환경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안)	213

그림 목차

<그림 2-1> 연구목표	9
<그림 3-1> 대중문화예술산업 최초 입문 경로	31

요 약 문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본 연구의 목적은 대중문화산업 내 아동·청소년 종사자들의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현상의 원인과 양상을 범주화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아동·청소년 종사자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미성년자의 대중문화산업 분야 종사 경험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진단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중문화산업에서 활동하는 아동·청소년들이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현상을 분석하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목표로 함.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과 「청소년보호법」 등에 의하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자 또는 관련 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 사업자와 해당 부문의 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맺은 만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함. 이와 같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노동이 보호되어야 하는 이유는 청소년 노동의 정의, 즉 ‘신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거나 법으로 규정된 연령에 미치지 못하는 미성년자에게 임금을 주고 이들을 고용하는 것’에서 유추해볼 수 있음.
-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회문화적 요인 분석과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 육성 과정과 연기활동 프로세스 분석을 통해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선사항을 제안하고자 함.

2. 연구 대상 및 방법

- 국내외 선행연구와 제작현장의 인권보호 장치로서의 해외 노동법과 현장 적용 가이드라인을 조사하였음.
- 국내 대중문화산업 내의 연기와 아이돌 연습생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정책 도출을 위해 전문가 자문도 함께 진행함.
- 설문조사는 크게 3개 영역-기본사항, 아동·청소년의 권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으로 구분하고, 이 가운데 ‘아동·청소년의 권리’ 영역은 아동·청소년의 인권체계의 4개 영역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에 초점을 맞춰 구성함.
- 심층인터뷰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틀에 해당되는 질문을 하고, 기획사와의 관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관한 인지 여부, 차별 문제 해결방식에 대해 조사를 진행함.

3. 국내의 선행연구와 해외 사례 조사

- 국내의 경우 대중문화산업 분야에 아동·청소년 종사자의 유입이 늘어나고 있지만, 인권보호 장치가 부재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를 비판하는 논의가 주를 이룸. 이 외에 미디어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자로서의 아동·청소년 종사자들이 경험하는 제작현장의 열악함, 경쟁 중심의 사고와 외모 중심의 평가가 10대 중심의 지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논의함.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대중문화산업발전법」이 갖는 한계와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해외 가이드라인에 대한 국내 도입 방안의 고려 필요성을 논함.
- 방송과 언론보도에 나타난 대중문화산업 종사자의 노동환경을 살펴본 결과 국내 대중문화산업의 지난 20여 년간의 성장은 이뤘지만, 아동·청소년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대중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제작현장은 ‘경쟁’과 ‘상업성’에 집중되어 있어, 인권보호 장치 마련에 대한 관심은 미비했었음. 아동·청소년의 대중문화산업으로의 유입은 계속 진행 중이지만, 스스로 경제적 주체로 살아남을 수 있는 청년들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임. 하지만 미디어에서는 오디션 프로그램 제작에 집중하거나, 드라마/영화 등의 제작현장에서 필요한 아역 연기자 보호 장치나 제작 스태프들의 교육은 최근에서야 이루어지고 있음.
- 대중문화산업 현장에서 활동하는 아동·청소년 종사자들은 연습생부터 포함하자면 10대부터 20대까지 주를 이룸. 결국, 문화산업 종사자로서의 경험은 동시에 사회제도적 적응의 기간을 학습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옴. 따라서 늘어나는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한 제작현장의 참여를 위해서는 학습권, 수면권의 보장과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인권보호 장치 마련과 제도적 보완이 절실한 상황임.
- 해외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학습권, 보호권, 참여권, 발달권 관련 세부조항이 구체화되어 있고 학교, 방송사, 제작사, 현장 참여 스태프 모두가 실천해야 하는 관련 조항이 제정되어 있으며, 현장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음.

4. 국내의 대중문화산업 관련 법·제도 조사 결과

- 대중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내의 경우 「근로기준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예술인복지법」 등으로 규율하고 있음. 그러나 대중문화산업 종사자가 맺는 대중문화예술용역제공계약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무계약은 근로계약이라기보다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으로만 보는 경우가 다수여서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으로

규율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음. 그러한 이유로 대중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은 고용관계에 있는 노동자들이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노동조건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활동하고 있음.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을 위해 청소년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시간을 제한하고 계약에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며, 금지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나 아동학대 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기획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보장의 기초를 마련하였음. 그러나 이 법은 권리 보장을 위한 각 규정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계약 당사자들이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아동·청소년의 연령에 따른 성장·발달 단계나 요구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실질적인 권리보장이 이루어지려면 보다 구체화된 기준이 필요함. 또한 기획업자나 제작업자가 위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을 위한 규정들을 위반하더라도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적발도 어려워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하여 보급하고 있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몇몇 조항 외에는 여전히 기획업자가 해야 하는 조치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상당 부분이 기획업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상황임.
- 또한 「예술인복지법」은 불공정행위 금지와 그에 대한 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예술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예술인이 보다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음. 그러나 이 법은 예술활동을 증명한 예술인의 경우만 적용되므로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없는 연습생이나 신인 예술인, 경력이 중단된 예술인은 이 법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고,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예술인에 대한 권리보장 내용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보완이 필요함.
-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노동/용역시간의 세분화,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제도 개선, 관리 감독 및 구제 절차 마련, 소득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 표준계약서 보완 등이 필요함.

5. 설문조사 결과

- 설문조사는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대한 인식조사에 초점을 맞춰 실시함.
- 소속사에 속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소속사와의 계약체결 형태를 살펴본 결과, 표준계약서를

체결한 비중은 낮았으며, 별도의 서면 계약 없이 구두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소수 포함되어 있음. 대중문화예술산업 내의 불공정 계약 체결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중인 표준계약서 제도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건강한 편이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상대적으로 제작진/소속사에서는 응답자의 건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연기자 생활을 시작한 이후, 앓았던 적 없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및 정신적으로 힘들거나 아파서 상담/심리 치료를 받은 경우는 매우 낮았음. 다만 촬영기간 중 신체적으로 아프거나 다쳤을 때, 제작진/소속사의 적극적인 대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연기자가 개별적으로 병원을 방문하거나 소수이지만 촬영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해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응답자도 일부 포함되어 있음.
- 신체적/정서적 학대와 관련해, 제작진/소속사 관계자 및 선배/동료 연기자로부터의 신체적 체벌은 많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 년에 1~2회 정도부터 한 달에 1~2회 정도 피해 경험 이 있다는 응답자들이 있었음. 또한 소속사 관계자 또는 선배/동료 연기자로부터 일주일에 1~2회 정도, 주 3회 이상 지나친 꾸짖음과 욕설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자도 일부 있어, 소수이지만 정서적 학대에 대한 피해가 신체적 학대에 대한 피해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확인됨. 이러한 신체적/정서적 학대에 대해 응답자 다수는 그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적피해 경험과 관련해 제작진/소속사 관계자로부터의 성적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는 소수였지만, 이들은 캐스팅에 대한 불이익이나 문제제기에 대한 부담감을 이유로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촬영현장과 배역 캐스팅 과정에서 성별, 나이, 외모/신체적 조건(키, 몸무게)으로 인해 차별을 경험했는지 여부를 살펴본 결과, 나이나 외모/신체적 조건 때문에 배역 캐스팅 과정에서 차별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생존권 영역에서 외모/신체적 조건이 응답자의 주된 스트레스 요인으로 확인되었는데, 이와 관련해 제작진/소속사로부터 다이어트나 성형수술을 권유받은 경험을 파악한 결과, 성형수술 보다는 다이어트를 권유받은 경험이 있다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촬영환경과 관련해서는 악천후와 장시간/야간촬영, 별도의 촬영대기 장소 부재 또는 부족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자극적이거나 불편했던 촬영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 모두 제작진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촬영이 진행된 것을 확인함.
- 사생활 및 인권침해 피해 경험과 관련해, 제작진/소속사 관계자로부터 휴대폰/SNS 사용금지, 연애금지를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소수였으며, 이 가운데 SNS 사용금지를 요구받은 경험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 온라인 공간에서의 사생활/인권 침해 피해 경험은 많지 않았으며, 소수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주요 대응 방법으로는 ‘댓글이나 대화를 통해 직접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남.

- 촬영기간 동안 일주일 평균 결석일을 살펴본 결과, 만나절부터 1일에서 3일까지의 결석 비중이 76%를 차지하고 있어, 촬영과 학업을 병행하는데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결석을 해야 할 때는 제작진/소속사에서 사전 고지하거나 협의를 하는 경우 보다는 수시 동의를 구하거나, 특별한 동의를 구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학습권에 대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임.
- 응답자 대다수는 학교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기 위함을 비롯해 연기활동 또는 졸업 후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으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음.
- 제작진/소속사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생각을 가급적 내세우지 않고, 상대에게 맞추는 비중이 높게 나타남. 이는 캐스팅이나 촬영현장에서 연기와 제작진/소속사와의 위계적인 권력관계가 작용하는 만큼 연기가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 관련 정보를 제공 받은 경험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인권보장을 위한 관련 정책 정보와 자료 제공,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상담 및 구제받을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 등은 매우 낮아, 인권 침해해결을 위한 참여권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함. 인권 보호 및 침해 해결을 위한 전담기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 대다수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대다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인지경로를 파악한 결과, 주변 지인이나 매스미디어가 주된 경로였으며, 계약 과정이나 대중문화산업 현장에서 제공되는 정보나 자료, 설명 등을 통해 인지한 응답자는 극히 소수에 불과함.
- 촬영장 내 인권침해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대책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전담 감독관 파견 등을 주로 선택해 규제와 감시 성격의 대책 마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아동·청소년 연기자로서의 직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마련되어야 할 제도로는 학교 출석 대체 가능한 촬영현장에서의 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소속사 등록 및 관련 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연기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리 상담 센터 설치 등의 필요성도 제기함.

6. 심층인터뷰 결과

-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중심으로 심층인터뷰 진행 결과 아동·청소년들이 경험하는 현장의 상황은 부당한 구조와 문화산업 내 유입을 위한 ‘경쟁’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비판해야 하는 차별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부당한 구조에 놓여 있었음.

- 심층인터뷰를 통해 확인된 것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상 나와 있는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들의 권리(수면권, 휴식권, 학습권, 건강권)들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임. 법 자체가 ‘세부적이지 못하고’, ‘강제력’이 없다는 상황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임.
- 특히, 현장에 적용가능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한 문제임. 대중문화예술산업에서 실패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함. 하지만 근본적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비정상적인 성장과 그를 바라보는 대중들의 시각의 변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복합적인 문제임.

7. 전문가 자문 결과

- 아동·청소년 종사자들을 성인 종사자들과 동일한 대상으로 고려하거나 ‘스타탄생’으로서 인식하기보다 인권보호를 위해 사전 준비 작업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하며, 그 근거로서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
-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과의 접촉 및 섭외가 어렵기 때문에,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 기획업 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함.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특화된 신체적/심리적/정서적 발달 및 안정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개발이 선행되어야 함.
- 보장 받아야 할 권리가 무엇인지, 그 권리를 침해받는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 등에 대한 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음. 아동·청소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제작 현장에 참여하는 스태프, 방송사 관계자들 모두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현재의 제작환경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움.
- 아동·청소년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대중문화산업 분야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드라마, 예능, 영화뿐만 아니라 웹드라마, 유튜브 콘텐츠, e-sport 분야 등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아동·청소년이 늘어나는 만큼,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협의체 구성 필요.

8. 연구의 활용방안과 정책적 함의

- 대중문화산업이 성장하면서 아동·청소년이 출연할 수 있는 분야도 점차 늘어났지만, 상업적 수익을 이끌어내는 데에만 집중한 결과 인권 보호를 위한 고민은 이뤄지지 못한 상황임. 지상파, 종합편성 채널, 케이블 채널, 그리고 유튜브 등의 플랫폼의 대중화에 따라 미성년자의 출연기회는 점차 늘어나는 상황임.
- 지상파 방송사가 방송의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미디어임에도 불구하고, MBC, SBS는 방송에 참여하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제작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며, KBS, EBS 등에 가이드라

인이 있지만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미흡한 상황임. 방송사뿐만 아니라 외주 제작사, 연예기획사 등 아동·청소년 종사자와 함께 일을 하는 관계 주체 모두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대상임을 명시해야 함.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아동·청소년 종사자 혹은 보호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아동·청소년 종사자 관련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전담 감독관 파견 등 촬영장 내 인권침해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과 아동·청소년 연기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리 상담 센터 설치 등의 제도마련도 필요함.
- 아이돌 연습생의 경우, 기획사와의 관계, 합숙생활, 학습권 보장의 어려움, 학원과 기획사를 통한 대중문화산업 현장의 유입이라는 특수한 유입경로를 고려한 인권 보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e-Sports,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아동·청소년 종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인권보호 장치 등은 아직 미진한 상황임. 기존의 방송 제작 환경뿐만 아니라 새로운 플랫폼에도 적용 가능한 논의로 대안마련의 ‘장’이 확장되어야 함.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과 현장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의 실태조사가 매년 이뤄져야 함.
- 학습권 보장과 현장의 인권보호 장치로서의 샤프롱 제도의 현실화 방안과 구체적인 선발과정, 선발 기준 등의 논의가 필요함.
- 아동·청소년 종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부모 등의 보호자, 현장 안전을 담당할 수 있는 현장인력, 제작 스텝, 소속사 관계자들이 아동·청소년 종사자의 촬영시간, 학습권, 건강권 보호, 개인정보 보호, 출연정도 동의 등 필요한 사항 사전 고지 의무, 방송사와 제작사 스텝 대상 사전 교육 등의 필요성을 구체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1장.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본 연구의 목적은 대중문화산업 내 아동·청소년 종사자들의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현상의 원인과 양상을 범주화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아동·청소년 종사자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미성년자의 대중문화산업 분야 종사 경험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진단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중문화산업에서 활동하는 아동·청소년들이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현상을 분석하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목표로 함.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과 「청소년보호법」 등에 의하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자 또는 관련 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 사업자와 해당 부문의 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맺은 만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함. 이와 같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노동이 보호되어야 하는 이유는 청소년 노동의 정의, 즉 ‘신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거나 법으로 규정된 연령에 미치지 못하는 미성년자에게 임금을 주고 이들을 고용하는 것’에서 유추해볼 수 있음.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노동은 청소년기가 매체를 비롯한 사회 자극을 예민하게 수용하며 성장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관리해야 함.
- 국내에서는 2011년 영화진흥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화 <도가니>에 출연한 아역 배우들이 성폭력이나 폭언 등에 노출되는 장면을 촬영한 이후 정신적 후유증이 있는지 상담이 필요하지만, 국내의 경우 이러한 보호 장치가 전무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었음. 자극적 역할에 노출된 아동·청소년 연기자들의 심리안정 방안과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이후 영화진흥위원회는 후속 조치를 위한 연구와 정책 마련을 위해 예산을 마련했지만, 현장 적용 가능한 안정적 제도마련까지는 이루지 못함.
- 미디어 생태계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면서 아이돌 가수나 연기자들 희망하는 아동·청소년들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임. 이에 따라 관련 기획사나 연기학원 등의 관련 회사도 증가하는 추세.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에 제시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수는 2020년 현재 3,131개임. 2019년 <2019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결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에 소속된 대중문화예술인은 총 9,141명으로 '16년 8,059명 대비 1,082명(13.4%) 증가했음. 분야별로 살펴보면, 가수(보컬, 댄스 등) 4,003명(43.8%), 연기자 3,422명(37.4%), 모델 693명(7.6%), 코미디언 188명(2.1%), 기타(성우, 크리에이터 등) 835명(9.1%)으로 나타남. 연습생은 319개(14.7%) 업체에 총 1,671명으로 '16년 1,440명 대비 231명(1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가수 지망생이 1,204명(72.1%)으

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임. 보고서 발표자료에 따르면, 전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소속된 대중문화예술인 종사자 9,141명 중 19세 미만 종사자는 337명으로 나타남.

- ‘아이돌 고시’(SBS.2011.7.3.), ‘아이돌 연습생 백만시대’(아시아경제, 2018.9.10.)와 같은 내용이 언론을 통해 언급된 지는 이미 오래된 상황임. 정확한 통계자료는 부재한 상황에서 상징적 표현인 ‘백만명’의 숫자가 계속 언론에서 언급되는 이유는 굉장히 많은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미디어를 통해 노출되고 있기 때문임.
-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드라마 제작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아동·청소년 연기자들에게 촬영현장은 장시간 촬영과 같은 성인 연기자와 큰 차이가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 2000년대 케이팝 열풍을 계기로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10대의 아동·청소년들이 경쟁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현재까지 꾸준히 제작되고 있는 상황. 이를 계기로 대중문화예술인을 희망하는 10대 역시 늘어나면서, 연기자/아이돌 가수 데뷔를 희망하는 아동·청소년들과 계약하는 연예기획사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 하지만 구체적인 계약내용, 연기 환경, 수익 배분 등에 대한 기준이 각기 다르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음. 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열정과 노력을 우선시하는 분위기로 인해, 기획사·방송사와의 투명한 계약과 교육방식 등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방송 토크쇼에서는 아역 연기자 출신의 성인 연기자들이 자신의 어린 시절 연기활동의 부당한 사례나, 정신적 고통을 털어놓기도 하지만, 대부분 성공을 위해 당연히 거쳐야만 하는 과정으로 결론짓곤 함.
- 2019년 12월 10일, EBS <보니하니>의 유튜브 콘텐츠에서 출연자들 중 성인 출연자가 청소년 출연자를 폭행하거나 부적절한 언행을 한 장면이 노출되면서, 청소년 방송인에 대한 언어폭력, 신체폭력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청자의 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까지 올라오게 됨. 이를 계기로 늘어나는 촬영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연기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인권보호 장치 마련, 방송 프로그램 심의 기준의 강화, 구체적인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짐.
- 언론보도를 통해 10대 연기자/아이돌 연습생의 인권침해 사례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보도가 이뤄져도, 대부분 사건 폭로 중심이기 때문에 개별적 사건으로만 논의되는 한계를 지님. 특히,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시스템이라는 거시적인 문제, 아동·청소년 연기자/아이돌 연습생을 대중문화예술인으로 바라보지 않는 사회문화적 인식 등을 심층적으로 다룬 연구는 아직 미비한 상황임.

- 10대 지원자가 주요 출연자인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 <아이돌 학교>의 투표 조작과 장시간 촬영 등의 문제가 언론을 통해 고발되었는데, 이는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나타났던 문제가 그대로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전이된 사례임. 방송 제작 현장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중 문화예술인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라는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상황이 빈번하게 나타남. 아동·청소년 연기자들은 촬영 현장에서의 부당한 상황을 거부하거나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운 위치에 놓여있기 때문에, 방송 출연의 기회를 놓치기 어려운 출연자들의 심리적 상황만 악용되고 있음.
- TV조선의 <미스터트롯>에 출연한 지원자 정동원은 당시 나이가 13세로 15세미만의 청소년 출연자였지만, 2020년 3월 13일 0시가 넘는 시간에 생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논란이 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2조에 따르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15세 미만의 청소년 출연자는 방송에 출연할 수 없음. 이튿날이 학교 휴일인 경우엔 부모의 동의를 받아 출연할 수 있지만, 출연시간은 자정까지로 제한됨. 많은 시청자들의 항의가 있었고, 제작진은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보호할 수 있는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의 부재와 현장 제작관행을 짐작할 수 있는 사례임
- 영화 <우리집>(2019)의 윤가은 감독은 어린이 배우들을 위한 촬영현장 수칙을 제시해 큰 호평을 받음. 하지만 아동·청소년 연기자의 보호 장치가 제작사나 감독의 의지에 따라 일시적으로 현장에 적용되는 방식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기대하기 어렵게 함. 모든 촬영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연기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적용가능 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임.
- 연기자/가수/연습생들의 장시간 촬영 강행, 출연료 미지급, 부당한 계약관계 등 방송 제작 촬영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육성하고 관리하는 기획사와의 계약관계, 촬영현장의 제작진의 인식전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아동·청소년 연기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이 마련되어야 함.

2장.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1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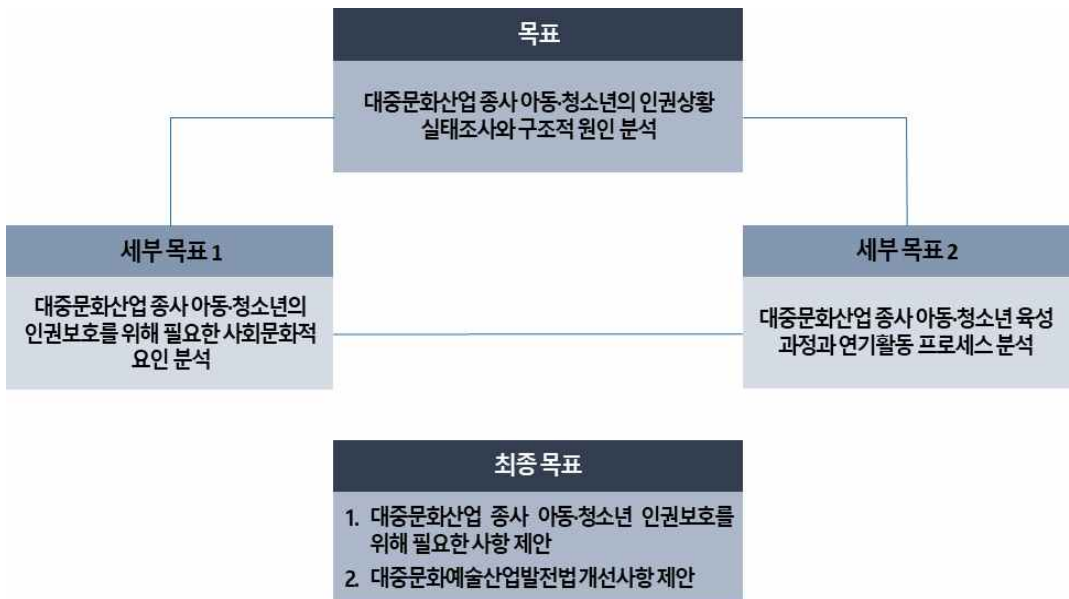
제2절. 연구의 방법과 절차

제2장.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1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 대중문화산업 내 아동·청소년 종사자들의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현상의 원인과 양상을 범주화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대중문화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의 수는 늘어나고 있고, 다수의 그룹들이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지만, 대중문화산업 분야 종사 경험이 안전하지 않다는 진단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대중문화산업 분야 아동·청소년들이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가 침해 받고 있는 현상을 분석하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목표로 함.
-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회문화적 요인 분석과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 육성 과정과 연기활동 프로세스 분석을 통해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선사항을 제안하고자 함.

<그림 2-1> 연구목표



제2절. 연구의 방법과 절차

1. 국내외 문헌 연구 및 자료조사

- 기존의 아동·청소년 종사자가 경험하는 미디어 제작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기획사와의 불평등한 계약관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정 배경 등 기타 현황이나 문제점을 다룬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현재 대중문화산업 아동·청소년 종사자들이 경험하는 제작환경과 기본적 권리를 보장 받고 있는지 관련된 문제점을 분석.

2. 아동·청소년 종사자 설문조사

- 아동·청소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해마다 정부의 보고서나 관련 기관에서 주도한 결과가 발표되지만, 대중문화산업 관련 제작현장이나 기획사 생활에서 나타나는 사회 주요 이슈 등을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조사한 사례는 거의 부재함. 따라서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 인권상황 실태조사결과는 대중문화산업 관련 정책 특히 아동·청소년 종사자 인권보호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정부기관, 산업 종사자들에게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 설문조사를 통한 세부적인 연구결과 도출은 대중문화산업계 및 정부 정책에 대한 태도와 관련 사회문화적 이슈에 대한 인식 등을 진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3. 아동·청소년 종사자 심층인터뷰

- 심층 인터뷰 방법은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의 태도나 느낌, 행동, 감정을 알기 좋은 방법 (Haralambos & Holborn 1995, p. 841; 나미수 2012, 49쪽 재인용). “사람들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도구로 기능할 수 있음(김종영, 2008, 74쪽). 대중문화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미디어나 기존 문헌에서의 참고가 아닌 실제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분석할 수 있는 좋은 방법론임. 제작 현장이나 기획사 운영방식 등 제작 문화 내부에 문제가 존재한다면 그것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아가야 할 지점을 찾는 것 역시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개인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상세한 정보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를 위한 맥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이지영 외, 2016)인 심층인터뷰를 통해 아동·청소년 종사자들이 경험하는 제작환경 전반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을 것임.

3장. 국내외 선행연구와 인권보호 사례

제1절. 국내외 선행연구 현황

제2절. 대중문화예술산업 아동·청소년 종사자
인권 보호 해외 사례

제3절. 대중문화산업 아동·청소년 종사자 노동환경 현황

제3장. 국내외 선행연구와 인권보호 사례

제1절. 국내외 선행 연구 현황

1. 아동·청소년 종사자에 대한 인권보호 장치 부재

“기업에서 만들어낸 문화는 개인주의와 경쟁을 우위에 두고, 청소년들에게 광범위한 기술과 권리를 지닌 진정한 민주시민이 되는 잠재력을 포기하라고 요청...(중략)...상업문화가 공공문화를 대체하고 시장경제의 언어들이 민주주의의 언어들을 대신하면서, 소비중심주의가 어린이들에게 제공되는 유일한 시민정신이 되었다... 이러한 교육의 변화를 조장하는 상업적 영역은 바로 미디어다.”

(Henry A. Giroux, *The Mouse That Roared*, 1999)

- 아동·청소년들의 미디어 출연은 대중문화산업의 형성과 함께 시작되었고,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와 스마트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 이용이 늘어나면서 일상생활을 촬영하는 콘텐츠가 점차 늘어나게 됨. TV 드라마나 영화뿐만 아니라 리얼리티 프로그램에도 아동·청소년의 출연이 화제가 되면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게 됨. 특히, 아동·청소년의 일상생활을 24시간 촬영해 보여주는 관찰 예능프로그램은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꾸준히 제작되고 있음.
- 하지만 아동·청소년의 일상생활이 대중에게 노출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오랜 시간 촬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이 겪게 될 정서적인 문제, 학습권 보호 미비 등 복합적인 문제가 지적되면서 캐스팅부터 아동·청소년이 참여하는 촬영현장 그리고 촬영 후의 관리 등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옴.
- 영국심리학회(BPS, British Psychological Society)는 2009년도 제작된 Ch4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인 <Boys and Girls Alone>에 출연한 아동이 경험했던 촬영 환경에 대한 비판을 제기. 이 프로그램은 성인/보호자 없이 20명의 아이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리얼리티 형식으로 방송하였고, 큰 대중적 인기를 끈 프로그램임.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아동들이 방송 이후 정신적 긴장, 트라우마, 낮아진 자존감, 수치심과 존엄성 부재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위험 가능성을 경험했다고 비판. 당시 아동 출연자를 위한 라이선스 과정이나 샤프롱 제도가 마련되어 있었지만 출연한 아동들이 이러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함(Oates, J., 2019.5.17.).

- 영국에서는 공연 참여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 공연 라이선스 발급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모든 공연 현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문제를 지적함. 아동 공연 라이선스 발급은 아동이 거주하는 실거주 지역에서 발급해야 해야 하지만, 공연이 대부분 런던이나 맨체스터에서 진행되면서, 공연 참여 아동의 거주지역과 공연 지역의 거리가 존재할 경우에는 ‘공연 일 21일 전까지 발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기도 하며, 소규모 제작 공연의 경우에도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는 조건을 잘 지키지 않는 사례를 비판함.
- 국내의 경우, 2000년대 들어 10대들의 연예산업진출이 늘어나면서 방송제작현장에서 10대들이 경험하는 부당한 사례가 증가함. 이러한 문제적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 고발되기도 하지만, 근본적 해결책을 언급하기 보다는 개별 사건 문제만을 조명한다는 한계가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례가 언론을 통해 주목받는 이유는 아동·청소년 종사자들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임. 특히 팬덤 형성, 방송에 출연하는 아동·청소년들의 촬영환경에 대한 팬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정책/제도의 미비점과 한계를 지적하는 데에도 힘이 실리게 됨.
- 2011년 영화 <도가니>에 출연한 아역 배우들이 연기한 성폭력 피해 장면이 촬영 후에도 아역 배우들에게 미칠 영향을 걱정한 사례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이끌어냄. 이를 계기로 방송출연 아동·청소년 종사자들의 인권보호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다양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가진 해외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에 대한 관심도 커짐. 당시 영화에 출연한 아역배우들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는 등의 연구도 이뤄졌지만, 지속적 연구와 관련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함.
- 김현식·양정호(2007)는 아동연예인의 스타화 현상은 10대들의 연예산업 진출 현상을 증폭시켰고, 이로 인해 아역 연기자, 어린이 출연자들이 방송 프로그램이 노출되는 빈도가 늘어났지만, 부당한 조건은 개선되지 못한 채 이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 제작이 늘어나는 상황을 지적함. 연기자도 아동이라 할지라도 현장에서는 아동연예인을 방송노동자로 규정하지 않아 교육적, 인권적, 노동법적 차원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지적함.
- 박석철(2009), 이영주(2009)는 해외 방송사의 가이드라인과 국내 사례의 구체적인 비교를 통해 아동·청소년들이 현장에서 경험하는 문제, 인권침해 상황의 심각성을 밝혀냄. 대안으로서 국내 방송 현장에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논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1년 영국의 공영방송사인 <BBC제작가이드라인>을 소개. <BBC제작 가이드라인> 내용 중 특히 제9절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제작가이

드라인에는 오프콤(Ofcom)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는 15세미만으로, 청소년은 15세에서 17세로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과 청소년 출연자 관련 정보 유출, 온라인에서의 잘못된 정보 확산 등에 주의해야 하는 것에서부터 민족적, 종교적 신념이나 성적체성을 불문하고 출연자인 어린이와 청소년은 보호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또한 제작과정에서 촬영 전에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부모의 동의나 어린이와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고, 제작진의 자세한 설명 과정 필요성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 반건호 외(2013)는 영화에 출연한 아역배우의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함. 영화 <이웃사람>의 아역 배우를 중심으로 전문가, 아역배우, 아역배우의 보호자, 영화 관계자 등을 인터뷰를 진행함. 해외에서는 아역배우의 세세한 상황까지 매뉴얼화해서 현장 적용을 가능하게 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이러한 준비가 미비함을 인터뷰를 통해 밝혀냄. 영화 제작 현장에서, 성인 스타프나 연기가 아역 배우에게 미치는 영향이 직·간접적으로 많으며, 촬영현장에서 연기에 몰입하다보면, 아역 배우의 정서적 상태나 학교생활 등의 중요성이 간과되는 경우가 많다는 현장의 문제를 분석함.
- 이종임(2018)은 10대의 아이돌 연습생/아이돌이 늘어나는 상황에 비해, 기획사와의 부당한 계약문제, 방송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아이돌 연습생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논의함. 아동 청소년 종사자들의 학습권, 수면권 등의 인권보호 이슈를 전혀 고민하지 않는 기획사의 육성방식,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참고 견뎌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국내 아이돌 육성 산업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함.
-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 분석을 통해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는 아이돌 연습생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연습생들이 겪는 심리적, 사회적 특징을 분석한 연구들도 늘어남(방희경·오현주, 2018; 홍지아·정윤정, 2018; 원용진·김지만, 2012). 특히, 오디션 쇼에 출연한 아이들의 노동윤리와 노동과정의 특징을 분석함.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재현되는 아이돌 연습생 지원자들은 노동 과정에서 '경쟁'을 윤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며 과열된 경쟁 속에서 발생하는 개인화·파편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여겨졌던 연대와 호혜의 윤리가 서비스 산업의 확대와 더불어 도구화되었다는 것을 지적함.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이 제작 현장에서 부당한 상황을 문제로 인식하기보다, 수행해야 하는 미션으로 인식하는 등 차별적이고 문제적인 상황을 내면화하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는 프로그램에 아동·청소년 연기자/연습생들이 여전히 많은 수가 지원하는 이유를 보여줌.

- ‘아동·청소년 문화예술인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팝업’의 2019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103명의 아동·청소년 연기자 중 36%가 12시간 이상 18시간 미만, 21%가 18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2.91%는 24시간 이상 촬영을 했다고 답함. 아동·청소년 연기자들 역시 성인인 드라마 스태프들이 비판하는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냄.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연기노동을 수행하는 아동·청소년 연기자가 누려야 할 권리와 인권보호 장치가 부재하거나 존재해도 적용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줌.

2. 아동·청소년 종사자 인권보호의 전제: 유엔 아동권리협약

-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국제연합(UN)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조약으로 1990년 9월 2일부터 발효됨. 총 54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아동권리협약은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지침을 담고 있음. 한국정부는 1991년 11월 20일에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
-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청소년이 기본적 생활을 누리고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으며 권리의 주체로서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 등 인간이 누려야 할 모든 기본적 권리를 향유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협약 제4조를 통해 당사국은 아동 청소년의 권리 실현을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김영지 김희진 이민희 김진호, 2019, 5쪽).
-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아동을 권리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보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님.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한 협약임.
- 유엔의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의 생명권, 의사표시권, 고문 및 형벌 금지, 불법 해외 이송 및 성적 학대 금지 등 각종 ‘아동기본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협약 가입국은 이를 위해 최대한의 입법 사법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만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아동으로 정의하며,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독립적 인격체’로 인정.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은 성인에 비해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기에 그에 따른 지지와 보호를 제공받을 마땅한 권리가 있지만, 그러한 보호적 조치가 아동의 기본적 인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는 것임. 국내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아동청소년인권팀’ 그리고 2016년 5월부터 아동인권관련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사건과 정책을 전담하여 심의·의결할 소위원회로 ‘아동권리위원회’를 신설하였음¹⁾.

1)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www.humanrights.go.kr

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법률 개정안 논의 필요

○ 2014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었지만, 방송 프로그램 제작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누락. 아동·청소년 연기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된 배경이나 해외 관련 법률이나 제작 가이드라인에 대한 상세한 분석 연구는 부족한 상태임.

- 김정섭(2015)은 2014년 시행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핵심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 조항의 적절성 여부를 비판적 관점에서 법률개정방향을 제안. 연령별로 노동시간을 차등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데다 청소년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연기장면의 사례, 수면권·건강권·학습권 보장의 절차와 방법, 위반 시 벌칙(처벌) 조항 등을 충분하게 규정하지 않아 구체성과 적용 가능성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함을 논함.

- 김동윤(2015)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나타나고 있는 아동권리 침해의 다양한 특성과 유형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오락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을 제안. 아동권리 침해는 자막, 대사, 상황, 진행, 음향, 영상과 같은 방송기술 기법이나 장치와 같은 제작진의 개입에 의한 사례가 많다는 것을 분석. 시청자에게 즐거움을 전달하는 장치로 이러한 내용이 활용되었다고 해도, 아동권리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이 취약한 우리의 현실에서 오락 프로그램에 만연한 아동권리 침해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임을 논의.

○ 아동·청소년 연기자 대부분이 스스로 선택한 직업으로서의 연기 노동을 수행하지만, 제작현장에서는 성인에 준하는 노동을 수행해야 하거나 연예기획사와의 계약관계, 임금미지급 등 다수의 문제가 존재함.

- 최영진(2018)은 최근 연소자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이 증가하고 있지만, 연소자의 법적 조치 및 권리보호가 미흡함을 논의. 비정상적으로 긴 계약기간과 낮은 임금 수준 등으로 근로권 및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어 연소자 연예인에 대한 인권보장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내 연소자의 노동인권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이 필요함을 주장. 특히, 연령대를 구체화해 노동환경을 보호해야 하며, 청소년 근로보호법을 제정해야 함을 논의.

-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우리나라 대중문화예술산업이 급격한 양적 성장은 이루었으나 대중문화예술인의 전속계약 문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문제, 불공정 거래 문제 등이 상존하고 있어 공정한 영업질서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육성을 위한 국

가 지원의 법적 근거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정한 영업 질서의 확립을 위한 규정을 도입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선진화된 시스템을 정착하고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4년 1월 도입.²⁾

-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자, 대중문화예술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대중문화를 확립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제1조), 대중문화예술산업 내 영업질서와 관련된 사항,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관련 행정조치 등을 규정.

- 특히 제2장 제2절에 ‘청소년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데, “국가,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고 청소년 보호 원칙을 선언하면서(제19조)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의무와 국가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구체적으로 이 법은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의 용역제공계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제7조, 제24조, 제21조),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며(제22조, 제23조),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학습권 등 기본권 보장 의무를 부여하고(제22조 제3항, 제23조 제3항, 제21조),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명시하고 있음. 또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보수청구권 등 재산권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제25조).

- 이 법은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체결하는 대중문화예술용역제공계약이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무계약이 대부분 근로계약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활동이 「근로기준법」 등 기존 노동관계법으로 규율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거의 유일한 법적 근거로 작동하는 상태. 다만 이 법은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모호하고, 그 위반 행위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제재 규정이 없어 실질적으로 관련 규정이 작동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함.

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정이유, 법제처
<http://law.go.kr/lstInfoP.do?lsiSeq=150755&lsId=&efYd=20140729&chrClsCd=010202&urlMode=lsEInfoR&viewCls=lsRvsDocInfoR#>

4. 국내 정부부처의 아동·청소년 종사자 인권보호 역할과 실태조사 현황

- 아동·청소년 종사자들은 관련 학원, 학원형 기획사, 연예기획사 등과 구두계약/문서계약 등 계약서를 통해 방송제작현장이나 아이돌 가수활동을 위한 준비를 시작함. 대부분 구체적인 계약 이행에 대한 약속을 받지 못하거나 설명조차 듣지 못하고 드라마 제작현장에 투입되거나 아이돌 가수 준비를 함. 따라서 학교생활을 병행하기 어렵고, 가족보다 기획사 관계자들과의 소통에만 의지하는 상황이며, 방송제작현장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기 어려운 위치에 놓여있음. 아동·청소년 종사자들이 제작 현장이나 기획사와의 관계에서 불공정 계약이나 장시간 노동의 부당함을 고발하기가 쉽지 않음. 결국 대중문화산업에 유입되는 아동·청소년들의 불공정한 계약을 막고 장시간 노동, 차별 등의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부 부처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임.
- 대중문화산업 아동·청소년 종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역할이 중요. 따라서 아동·청소년들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경험하는 장시간 노동이나 기획사와의 계약관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정부 부처 간의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대중문화산업 아동·청소년 종사자들의 인권을 보호를 위해 각 정부부처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1) 공정거래위원회

<p>역할 및 책무</p>	<p>○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하기 위해 신설된 기구.</p>
<p>수행업무</p>	<p>-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연예계 시스템 내에서 ‘을’의 위치에서 부당한 계약을 맺어왔던 사태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옴. ‘10개 대형 연예기획사 대상 실태조사’를 비롯해 ‘20개 중소형 연예기획사 실태조사’, ‘278개 소규모 연예기획사 불공정계약 자진시정 조치’ 등을 실시. 2011년에는 연예인 표준전속계약서에 ‘아동·청소년의 보호’ 조항을 신설해 “아동·청소년 연예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도록 조치함.</p>

	<p>- 이 밖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아동·청소년 또는 데뷔하기 이전의 가수 지망생 등으로 방송사와의 거래 관계에서 지위가 열악하다는 점을 착안해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의 권리 보호’ 방안도 마련한 바 있음. 2017년에는 8개 연예 기획사가 사용하는 연습생 계약서를 심사하기도 함.</p>
--	-------------------------------------------------------------------------------------------------------------------------------------------------------------------------------

2) 문화체육관광부 및 관련기관

역할 및 책무	<p>○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콘텐츠, 미디어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부처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예술인복지법」 등 법률을 소관함. 관련기관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을 두고 있음.</p> <p>○ 영화진흥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영화에 관한 지원 역할을 위임받은 부처로 아동·청소년 연기자들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음.</p>
수행업무	<p>-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년 아이돌 멤버들의 ‘노예계약’ 문제가 불거진 이후 연예기획사들과 협의를 거쳐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해왔던 게 사실임. 2010년 10월 ‘청소년 연예인 권익보호 대책’을 발표했고, “연예매니지먼트산업 실태 조사 및 환경 개선 방안 연구” 등도 착수함.</p> <p>- 문화체육관광부는 무엇보다 ‘표준계약서’ 중심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에서의 규제를 담당하고 있음. 2013년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를 제정하면서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가수(또는 배우)’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가수(또는 배우)’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학습권, 수면권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가수(또는 배우)’가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으로 표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음.</p> <p>- 2019년에는 별도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를 제정하기도 함. 해당 부속합의서에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상 용역시간을 보다 분명히 담았음. 15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주당 35시간 이내 및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까지 금지”하도록 명시함. 15세 이상의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주당 40시간 이내,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까지 금지(합의한 경우에는</p>

1일 1시간, 일주일 6시간 한도 연장 가능)”하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 관련 정책을 내는 데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연구>가 토대가 되고 있음.

- 영화진흥위원회는 2020년 12월 10일 <아동·청소년 영화인 권리 존중 원칙(안)>을 발표함.

<아동·청소년 영화인 권리 존중 원칙(안)의 주요내용>

모든 영화관계자는 다음 사항을 약속합니다

1. 아동·청소년 영화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원합니다.(유엔 아동권리협약 4대 원칙)

가. 아동·청소년 영화인을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나. 항상 아동·청소년 영화인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행동합니다.

다. 아동·청소년 영화인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라. 모든 형태의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아동·청소년 영화인을 보호합니다.

마. 아동·청소년 영화인의 권리를 지지합니다.

2. 아동·청소년 영화인의 균형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가. 아동·청소년 영화인의 균형적인 성장을 촉진합니다.

나. 아동·청소년 영화인의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3.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가. 폭력과 학대로부터 아동·청소년 영화인을 보호합니다.

나. 아동·청소년 영화인이 안전하게 활동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다. 모든 형태의 착취와 괴롭힘으로부터 아동·청소년 영화인을 보호합니다.

4. 아동·청소년 영화인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가. 아동·청소년 영화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합니다.

나. 아동·청소년 영화인의 적절한 활동시간과 충분한 휴식권·수면권을 보장합니다.

5. 아동·청소년 영화인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함께 결정할 권리’를 존중합니다.

가. 항상 아동·청소년 영화인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행동합니다.

나. 아동·청소년 영화인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p>다. 아동·청소년 영화인에게 유해한 행위를 강요하지 않습니다.</p> <p>라. 아동·청소년 영화인과 법정대리인의 권한 등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고 충분히 제공합니다.</p> <p>6. 아동·청소년 영화인의 권리 존중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p> <p>가. 권리 존중을 위한 기본 정책을 수립하고 상호 협력합니다.</p> <p>나.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평가하여 위험 수준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합니다.</p> <p>다. 모니터링을 통해 활동을 개선합니다.</p> <p>라. 안전하고 신속한 신고와 상담, 보호 등에 필요한 체계를 만듭니다.</p> <p>7. 아동·청소년 영화인의 권리 존중에 대한 인식 고양을 위해 노력합니다.</p> <p>가. 아동·청소년 영화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현장 전문인력을 적절하게 선발하고 지원합니다.</p> <p>나. 아동·청소년 영화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인식의 고양을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p>
--	------------------------------------------------------------------------------------------------------------------------------------------------------------------------------------------------------------------------------------------------------------------------------------------------------------------------------------------------------------------------------------------------------------------------------------------------------------------------------------------

3) 여성가족부

역할 및 책무	<p>○ 여성가족부는 ‘여성·아동·청소년에 대한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를 주요 업무로 두고 있는 정부부처임.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은 아니더라도 그 안에서 노동하고 있는 ‘여성·아동·청소년 보호’의 책무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음.</p>
수행업무	<p>- 여성가족부는 이를 근거로 2010년 ‘청소년 연예인 성보호·근로권·학습권 실태분석’ 결과를 발표. 미성년 연예인에 대한 ‘강요에 의한 노출’ 등의 문제를 지적. 특히, 18세 이하 청소년 연예인 및 지방생들의 ‘불면증’을 비롯한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폭로. 해당 실태조사를 진행한 곳이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였음.</p>

4)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할 및 책무	<p>○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상파를 비롯한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PP 등 방송사들의 주무부처로 대중문화예술산업과 관련성이 큼.</p>
----------------	------------------------------------------------------------------------------------------

	<p>○ 민간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보호’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임.</p>
<p>수행업무</p>	<p>-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업무계획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 제정을 공식적으로 밝혔음. 주요 내용으로 “아동출연자의 근로기준”, “신체접촉 및 욕설 등 부적절한 언어사용 금지” 등으로 제시하고 있기도 함. 2020년 12월 18일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21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또,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현장 체크리스트>를 함께 발표함.</p> <p><가이드라인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원칙) 방송제작 전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보호는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작을 위한 사전조치)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에게 기획의도, 촬영형식, 주요내용 등을 사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도록 함 ○ (제작과정과 후속조치) 아동·청소년의 제작·촬영시간, 학습권, 건강권, 휴식권 등 인권 보호, 성관련 보호, 신체접촉 및 언어표현 관련 내용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아동·청소년의 제작·촬영시간)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제작·촬영시간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관련법령에 따름 - (②학습권, 건강권, 휴식권 등 인권 보호)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휴식권 등 기본적인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함 - (③성관련 보호 등) 성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발언·행위를 하지 않고, 과도한 노출행위 등을 강요하지 아니함 - (④신체접촉 및 언어표현) 부적절한 신체접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며 그에 맞는 바른 언어를 사용함 ○ (안전과 보호)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안전은 프로그램 제작보다 우선하고, 출연자에 대한 일체의 정보 노출로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제작진의 책임과 의무) 제작진은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 침해 사실을 안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p><방송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현장 체크리스트 주요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송사의 아동·청소년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읽어보았나요? 2. 아동·청소년의 출연을 위해 사전설명과 동의 절차 등을 갖추었나요?

	<p>3. 법으로 정해진 아동·청소년의 제작·촬영 시간을 알고 있나요?</p> <p>4. 아동·청소년의 학습권·건강권·휴식권 등 인권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나요?</p> <p>5.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성보호에 관한 내용을 알고 있나요?</p> <p>6.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신체접촉 및 언어표현에 관한 내용을 알고 있나요?</p> <p>7. 제작진 중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문제를 상의할 담당자가 정해져 있나요?</p> <p>-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통해 방송에 노출되는 아동·청소년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왔음. 해당 규정에는 ‘어린이·청소년 보호’ 규정(제6절)을 별도로 두고 있음. 제45조(출연)는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그 품성과 정서를 해치는 배역에 출연시켜서는 아니 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방송은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복장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출연시키거나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성범죄 및 학대하는 연출 그리고 미성년 아이들의 과도한 신체노출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해당 규정을 제정한 것임.</p>
--	--------------------------------------------------------------------------------------------------------------------------------------------------------------------------------------------------------------------------------------------------------------------------------------------------------------------------------------------------------------------------------------------------------------------------------------------------------------------------------------------------------------------------------------------------------------------------------------------------------------------------------------------------

5) 국회

역할 및 책무	<p>○ 국회는 법률 제정·개정권을 가지고 있는 권력기관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제정했을 뿐 아니라, 개정권한을 가지고 있음.</p> <p>○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 현안 및 외국 입법·정책 동향에 관한 정책의제 관련 보고서 발간 및 세미나와 간담회 개최 지원하고 있음.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관련 보고서도 낸 바 있음.</p>
수행업무	<p>- 2010년대 초반 국내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문제점이 대두되자 국회에서도 발 빠르게 ‘법 제정’을 통한 개선방안을 찾았음. 특히,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자에 대한 등록제 도입”, “공정한 계약 정착을 위한 환경 조성”,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한 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 2014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정. 당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 관련 장이 포함됨.</p> <p>- 법 제정 이후,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를 위한 보다 세부적인 내</p>

	<p>용이 담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고 법안이 제출되기도 했으나, 임기가 끝나며 폐기됐음.</p> <p>- 국회입법조사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정 및 개정 관련 정책 보고서를 꾸준히 발간해오고 있음.</p>
--	---------------------------------------------------------------------------------------------------------------------------------------

6) 국가인권위원회

역할 및 책무	<p>○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증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한 인권전담 국가기관.</p> <p>○ 대중문화산업 내 잘 드러나지 않는 아동·청소년 종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회적 담론형성과 관련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p>
수행업무	<p>- 대중문화산업 종사자인 여성 연예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드러나면서 2010년 <여성연예인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수행한 바 있음. 연예인의 피해 유형을 ‘불공정계약’, ‘스폰서의 관행’, ‘사기피해’로 구분하고 한국과 미국, 일본 시스템과의 비교함. 이를 통해 ‘에이전트 규제법(연예인육성 및 관리법 제정 포함)’과 ‘연예인 노조 제도의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기.</p> <p>- 여성연예인/여성연기 지망생 등의 사생활침해나 자기결정권 침해, 연예매니지먼트 산업 구조의 문제 등을 공론화 한 바 있음.</p>

7) 국무조정실

역할 및 책무	<p>○ 국무조정실은 「정부조직법」 제20조(국무조정실)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해” 존재함. 각 부처 간 갈등을 조정하고 서로 떠넘기기 하는 사안 혹은 다양한 부처의 사안으로 분포돼 있는 사안을 총괄할 수 있는 부처라고 볼 수 있음. 대중문화예술산업 내 아동·청소년 종사자들의 사안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고용노동부, 교육</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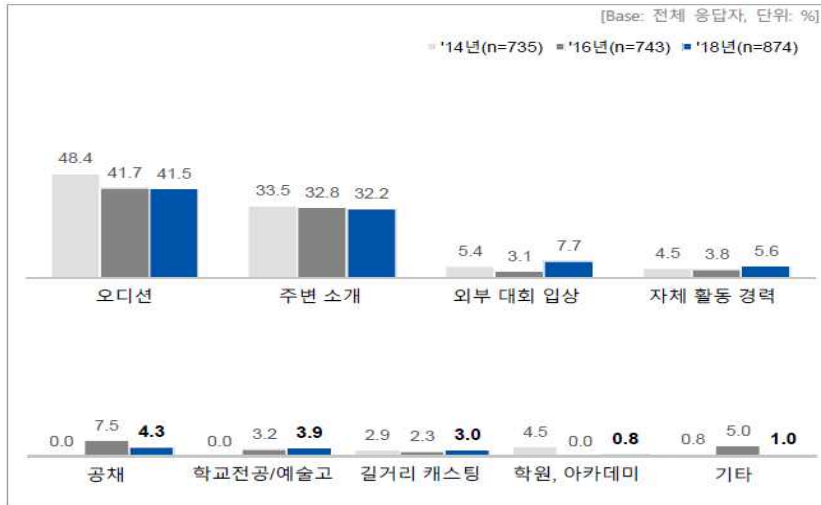
	<p>부 등 여러 부처에서 나서야할 사안이라는 점에서 국무조정실의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음.</p>
<p>수행업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조정실은 미성년 연예인 등(연습생 및 지방생 포함)에 대한 권익보호 강화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과 함께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 개선방안>을 발표함. <p><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 개선방안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지방 단계) 연예기획사 정보공개를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불법행위 근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문화예술정보시스템(ent.kocca.kr)에 연예인 지방생이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 - 매년 등록 기획사를 일제 정비 및 연예학원(학원형 기획사 등)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2년 주기) 대상에 포함 -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준수 및 성교육 의무 이행에 대한 점검·과태료 부과 등 내실화,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 미등록 기획사 단속방안 강구 ② (진입·계약 단계) 투명하고 공정한 오디션 관행 정립 및 표준계약서 활용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회·단체 등을 통해 회원사의 오디션 정보 공개하고, 민간 차원의 ‘오디션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방송출연표준계약서 마련 및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 3년 주기로 재검토·보완 ③ (대뷔·활동 단계) 장시간 노동·야간촬영 등 휴식권·학습권 침해행위 및 성희롱·성폭행 등 불법행위로부터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미성년 연예인의 휴식권·학습권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 및 현장 적용 - 주요 방송사를 대상으로 한 ‘방송출연 표준제작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 - 연령별 용역제공시간 등 법상 제재규정이 없는 미성년 연예인 보호조항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 및 성범죄 등 피해 신고시 미성년 연예인의 신고 우선 처리 방침 ④ (기타 상담·지원) 미성년 연예인 및 연습생의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위한 심리 상담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심리·진로상담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

5. 국내외 대중문화산업 종사자 현황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콘텐츠산업 해외 법제도 동향연구: 근로시간·조세·통계부문을 중심으로>(2018) 보고서는 프리랜서 통계의 쟁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프리랜서의 현황 자체를 파악할 수 있는 연속성을 갖는 통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적인 실태 조사는 주로 프리랜서 현황을 해당 업체에 분야별 인원을 묻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직접 스스로의 인식을 묻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한계를 지적함.
- 대중문화산업 아동·청소년 종사자 역시 학원형 기획사를 통해 연기경험이나 가수 준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학교 학생 수와 같이 종사자의 공식적인 데이터 구축이 어려운 상황임. 구두 계약을 체결하고 제작 현장에 연기자로 투입되거나 계약서를 체결을 통해서도 아동·청소년 종사자 수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 국내 대중문화산업의 성장세와 해외 글로벌 팬덤의 규모를 고려한다면, 국내 아동·청소년 종사자들의 노동환경, 인권보호 장치 등이 현장에 적용되지 못하는 이유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임. 대중문화산업 전체 산업규모와 전체 종사자 현황 수 등의 비교를 통해 시장 규모를 파악하는 것 역시 필요한 사안임.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9년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대중문화예술산업 기획업 분야의 72.6%(2,173개 업체 중 1,576개 업체)는 소속연예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전체 인력 규모는 9,141명이며, 업체당 평균 소속연예인 수는 5.8명임. 분야별로 살펴보면, 가수 분야(보컬, 댄스 등)가 4,003명, 연기자 분야가 3,422명, 모델 분야가 693명으로 나타남. 대중문화예술인과 계약 시 ‘표준계약서 사용(일부 수정 포함)’이 94.9%로, 10곳 중 9곳 이상의 기획업 업체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기준 대중문화예술산업 기획업 분야 중 소속 연습생이 있는 업체는 14.7%(319개)였으며, 연습생 수는 전체 1,671명으로 나타남. 분야별로는 가수(보컬, 댄스 등) 분야가 1,204명, 연기자 분야가 432명, 모델 분야가 29명, 기타 분야가 6명으로 나타남. 연습생이 있는 기획업체의 81.9%는 소속연습생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또한 소속 연예인 중 만 19세 이하는 337명으로 나타남.
- 대중문화예술분야 최초 입문 경로에 대한 조사 결과 ‘오디션’이 41.5%로 가장 많았고, ‘주변 소개’(32.2%), ‘외부대회 입상’(7.7%)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조사 대

상자 전 연령대에서 '오디션'이 대중문화예술분야 최초 입문 경로 중 가장 높게 나타남. 오디션을 통한 유입경로가 가장 대중적이고 높은 비율을 나타냄.

<그림 3-1> 대중문화예술산업 최초 입문 경로



※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2019).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164쪽 재인용.

- 매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기획사 소속 연예인 중 19세 미만의 연예인의 구체적인 노동 환경에 대한 조사, 아동권리 보호 장치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기획사 소속 연예인이나 연습생 외에 단역이나 보조출연으로 현장에 참여하는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종사자 제작 현장 경험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은 아직 미진한 상황임.

제2절. 대중문화예술산업 아동·청소년 종사자 인권 보호 해외 사례

- 대중문화예술산업 분야 아동·청소년 종사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은 영화와 드라마 제작이 활발한 해외 국가에서는 다양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있음. 국내의 경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구체적인 도입이 2014년도라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현장 적용이 가능한 가이드라인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자 함. 해외에서는 1930년대부터 아동·청소년 종사자의 노동시간, 학습권 보호, 보호자의 역할, 현장 학습교사, 임금 보호 장치 등 구체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해오고 있음.
- 미국,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국제배우연맹의 아동·청소년 종사자 인권보호를 위해 마련한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살펴보고, 국내에 적용 가능한 내용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장치는 무엇인지를 논의하고자 함.

1. 미국

- 미국 영화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는 각 영역의 스태프는 관련 협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각 조합을 통해 제작 전문 종사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고 있음.
- 미국 방송 산업의 대표적인 노조로는 감독 길드(Directors Guild of America, DGA), 작가길드(Writers Guild of America, WGA), 스태프연맹(International Alliance of Theatrical Stage Employees, IATSE), 배우 연기자 노조(SAG-AFTRA)가 있음.
- 감독길드(Directors Guild of America, DGA)는 1936년, 작가길드(Writers Guild of America, WGA)는 1933년, 영화 배우·방송인 길드(SAG-AFTRA)의 전신인 영화배우길드(Screen Actors Guild)는 1933년, 스태프연맹(International Alliance of Theatrical Stage Employees, IATSE)은 1893년 형성되었음.³⁾
- 각 길드는 방송, 영화를 비롯하여 광고, 다큐멘터리, 뉴스, 스포츠, SNS 등 다양한 영상분야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주는 권익단체로서의 기능을 함. 이들은 자신들의 창의적 활동에 대한 경제적인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하고 있으며, 공공정

3) www.dga.org, www.wga.org, www.sagaftra.org, www.iatse.net

책 및 법적 문제에 관여. 각 길드는 길드의 회원이 됨으로 써 의료보험, 연금, 자신의 업무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업계에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이익과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음(전과진흥원, 2016).

- 미성년자 고용 시 제작자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그들을 고용하기 위해 해당 주에 따라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며, 아동 공연자가 프로덕션에 소속되어 있거나, 캘리포니아 주가 아닌 다른 주에서 촬영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주별로 적용되는 아동근로법이나, SAG에서 성문화한 기본규정에서 제시한 ‘미성년자 규정’을 참고함.⁴⁾

1) SAG-AFTRA: 미국 영화 배우·방송인 노조

(Screen Actors Guild - American Federation of Television and Radio Artists)

- 2012년에 배우조합과 방송배우 노조가 통합하면서 SAG-AFTRA가 출범. 배우, 아나운서, 방송 저널리스트, 댄서, DJ, 뉴스 기자, 뉴스 편집자, 프로그램의 호스트, 레코딩 아티스트, 가수, 스탠트배우, 성우, 기타 미디어 종사자 등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음.
- 연기자의 노동 조건과 안전 문제 등 다양한 범주에서 연기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미국 내 미디어 산업에서 일하는 거의 모든 배우와 여기자들은 노조에 가입해 있음.
- 배우조합원은 SAG와 최소한의 기본 협정을 맺지 않은 제작자의 배우로 일을 하거나 계약을 맺을 수 없음이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아역 배우가 SAG와 기본협정을 맺지 않은 회사와 일할 경우, SAG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음.
- 미성년자는 희롱과 성폭행 등 학대당하기 쉬우므로 특정한 관심과 보호가 요구됨.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방 및 주의 법뿐만 아니라 노사단체협약에 미성년자 고용 관련 규약이 있음. 고용주들은 이 규칙을 따라야 하며, 촬영장의 현장교사, 부모, 조합이 함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아동공연자를 위한 가이드라인⁵⁾에는 어린 공연자를 보호하는 방법, 아동공연자 전용 웹사이트, 아동 공연자의 부모가 알아야 할 내용, 쿨건(Coogan) 법, 쿨건(Coogan)펀드, 제작 현장이 속한

4) Honthamer, E. L., (2010). *The Complete Film Production Handbook*. (4th ed.). Focal Press.

5) <https://www.sagaftra.org/membership-benefits/young-performers> 참고

주(州, state) 법률, ‘현장교사’ 관련 웹사이트, 아동 배우를 위한 펀드 관련 웹사이트 등이 소개되어 있음.

- 1975년 설립된 SAG 아동공연자위원회(national young performer committee)에서 아동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근로조건, 관련 법 보호, 펀드와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

(1) 주(州) 별 근로규약

- 주로 계약이 이뤄지는 주 위주로 근로 관련 규약이 소개되어 있음.
 - 캘리포니아와 뉴욕에서 근로 허가를 받는 법
 - 캘리포니아 쿨건 계좌 개설과 목적 소개
 - 에이전트와 매니저 조항
 - 프로필 사진과 자기소개서 제출 방법
- 캘리포니아/뉴욕 이외의 주에서 근로하는 방법
 - 미국 전역에 22개의 SAG 지부가 존재하며, 도움을 지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음.
 - 2007년부터 조합에서 인터넷 캐스팅 서비스를 운영하며, 타지역에서의 캐스팅 진행, 인터뷰, 섭외 과정, 고용 과정을 안내.
 - 아동의 출연이 결정된 후 부모는 출연 전에 아동의 학교 과제, 교과서, 교보재, 근로허가서와 신탁계좌, 미국 내 고용적격성을 입증하는 I-9문서나 신분증, 세금납부확인서 등을 확인해야 함.

(2) SAG 고용계약조건

① 근로시간

- 주의 법이 엄격하지 않은 미국의 모든 곳에서는 SAG의 계약조건을 기반으로 해야 함.
- 아동이 15세가 될 때까지는 부모나 보호자가 반드시 동행해야 함. 16-17세의 경우 부모나 보호자 동행 없이 일할 수 있으나 부모나 보호자는 아동과 함께 촬영장에 머무를 수 있음.
- 고등학교를 졸업한 미성년자는 「아동근로법」에서 면제되며, 성인과 동일한 환경에서 작업 함.
- 등교하지 않을 때 최대 2시간 더 촬영이 가능하며, 촬영 날 매번 1시간 휴식과 1시간 반의 식사시간을 가질 수 있음. 현장교사와의 사전약속을 하면 2시간까지는 다른 날의 촬영시간을 상쇄하여 등교시간을 사용할 수 있음. 이는 적어도 아동이 하루에 한 시간 이상은 학교에 등교해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출생 6개월 ~ 2세는 2시간(최대 4시간) 촬영장에 있을 수 있으며 적어도 1시간 휴식과 놀이 시간이 있어야 함.
- 2~5세는 3시간(최대 4시간 30분) 촬영장에 있을 수 있으며 30분간의 식사시간이 필요함. 영아 일 경우 캘리포니아에서는 출생 후 15일부터 6개월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출생한 후 15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촬영은 불가능함. 오전 9:30~11:30, 오후 1:30~3:30 사이에만 촬영할 수 있고, 최대 촬영 시간은 20분을 지켜야 함.

② 현장교사(Studio teacher)

- 미성년자가 3일 이상 연속으로 근로를 해야 한다면, 제작자는 촬영 여부와 관계없이 현장교사를 배치해야 함.
- 현장교사는 촬영장에서 아동을 감독할 일차적 책임을 갖게 됨. 다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제작자는 제작진 중 한 명이 아동의 고용과 관련된 일을 전담하도록 지정해야 함.
- 부모 등 보호자로부터 독립한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성인과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음.

③ 아동 교육

- 의무 교육수준은 주마다 다르며,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개별적 홈스쿨링은 합법적 과정으로 인정하지 않음.
- 캘리포니아는 촬영 중간에 아동이 학교에 나가지 않아도 되지만, 뉴욕 주는 촬영 중간에 학교에 등교하도록 하고 있음. 그 외의 경우에는 SAG 계약조항을 기반으로 함.

④ 스텐트와 안전

- 아동의 경우, 자전거/스케이트보드를 타거나, 나무/울타리를 오르거나, 높은 벽을 걷는 행위, 속력을 내는 차 안에 앉아 있는 행위도 스텐트의 범위에 포함.
- 아동이 어떤 촬영을 하게 될 지에 대한 판단은 일차적으로 아동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부모의 판단과 책임이 제일 중요함. 그 외에 아동 보호기관에 촬영 관련 문의를 할 수 있으며, 신체적/정신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면 촬영을 거절할 수 있음.
- 사전에 계획된 스텐트 뿐 아니라 일상적 행동에 대해서도 부모는 거절의사를 밝힐 수 있음. 또한 사전에 계획된 장면이 아니라면 이 역시 거절할 수 있음.
- 스토리 상 동물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육사가 항상 동행해야 함. 또한 제작자의 보호 아래 가족의 반려동물도 촬영장이 올 수 있으나, 이 역시 아동과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함.
- 불, 연기효과, 물, 기계 등과 연관된 촬영 역시 훈련된 전문가와 의료진 없이 진행해서는 안 됨.

⑤ 단역 연기자

- 성인 단역 연기자는 주로 캐스팅 디렉터와 직접 계약이 되는 반면, 아동 단역연기자는 전문 매니저와 도급 계약을 맺음.
- 단역 연기자도 주연과 동일한 권리 권한을 가지나, SAG 가입요구 조건은 주역과 단역이 서로 다름.

(3) 출연 보수와 기타 소득

- 소득세, 소득과 지출 기록 작성, 재정관리 안내
- SAG 연금과 건강 플랜 등 안내
- 그 외 참고할 만한 온라인 서비스들을 안내

2. 영국

- 영국에서는 모든 방송사가 기본적으로 아동법과 오프콤(Ofcom) 방송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되고 있음.
- 각 방송사는 아동(child)/청소년(young people)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세우지 않았으나, 생일이 지나지 않은 18세(under 18)를 어린이(children)로 규정. 오프콤에서는 18세 미만(Under 18)을 청소년(young people), 15세 미만을 어린이(children)로 정의함.
- 리얼리티 및 오디션 프로그램에서의 아동·청소년 출연 증가와 함께 부작용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해당 오디션 프로그램의 과도한 경쟁문제를 지적함.
-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유명해지면서 겪는 사생활 노출과 사이버불링(cyber bullying) 등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고려해 제작진이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음.
- 2016년 1월 이후 BBC, ITV, Ch4 등이 모두 방송촬영 참여인력에게도 기본수준의 범죄사실기록확인서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제작진은 보다 심화된 형태의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영국의 Ofcom, BBC, ITV, Ch4와 영국 영화 위원회는 방송과 영화 촬영에 참여하는 아동·청소년 연기자들의 참여 조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촬영을 진행하고 있음.

1) OfCom

(1) 오프콤의 18세 미만 프로그램 출연자의 참여 관련 규정⁶⁾

① 신체적·정서적인 복지와 존엄

■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18세 미만 출연자의 신체적·정서적인 복지와 존엄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며, 이는 참여자나 부모·보호자·부모에 준하는 대리인의 동의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임.

• 방송제작자는 아동의 개인적 속성에 따라 적절하게 고려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함. 즉, 나이, 성별, 문화, 인종, 종교적, 개인적 성장환경 등에 따라 각기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하며, 모든 조치가 아동에게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함.

②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불안 차단

■ 18세 미만의 출연자는 프로그램의 참여 또는 방송으로 인해 불필요한 스트레스나 불안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함.

6) https://www.ofcom.org.uk/__data/assets/pdf_file/0017/24704/section1.pdf (12-17)

- 특정 프로그램 장르나 포맷의 특성 상 출연 아동이 정신적 긴장과 불안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이 출연을 결정하기 전에 방송 제작자들은 이를 충분히 전달하고 숙고할 수 있게 해야 함.

③ 불쾌감 유발 요소 제한

-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기준에서 방송제작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프로그램 내용에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를 반드시 설명할 수 있어야 함. 이러한 요소는 공격적이고 불쾌한 언어, 폭력, 성, 성폭력, 수치감, 정신적 긴장, 인간 존엄의 침해, 차별적 대우와 언어 등이며, 이러한 불쾌한 요소가 최소화된 정보가 담긴 내용이 방송되어야만 함.

(2) 오프콤의 사전제작·제작·사후제작 가이드라인

오프콤은 방송제작자들이 방송규정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내용을 제작자들과 공유하여 제작과정 전반(사전제작, 제작, 사후제작)에 준수할 수 있도록 함.

① 사전제작(Pre-production)

- 18세 미만 출연자들과 일하는 제작 스태프들에게 공유될 수 있는 문서화된 내부 가이드라인 마련과 이러한 내용을 준수하는 외주제작팀이 참여해야 함.
- 18세 미만 출연자의 사회적, 가족, 신체적, 교육 환경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함.
- 아동·청소년 출연자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황을 사전에 미리 논의해야 하며, 프로그램 참여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반드시 사전제작 시 문서형태로 기록하고 확인해야 함.
- 18세 미만 출연자들의 신체적·정신적 복지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함.
- 제작팀은 사전제작 뿐 아니라 제작, 사후제작 시 모든 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주요한 상황을 문서로 기록해야 함.
- 16세 미만의 출연자와 작업할 경우, 부모나 그에 준하는 대리인이 방송출연에 동의하더라도, 반드시 본인 참여의사를 확인해야 함. 그리고 16세 미만의 출연자에게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성장과 정이나 정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제작진은 전문가와 관련 내용을 상의해야 함.
- 18세 미만의 출연자의 경우, 출연 아동의 부모나 보호자에게 출연 프로그램 촬영 후 나타날 수 있는 장·단점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함.

② 제작(Production)

- 18세 미만 출연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최우선시 해야 함.

- 18세 미만 출연자의 보호자와는 정기적으로 연락을 할 수 있어야 함.
- 프로그램의 성격과 포맷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작해야 함.

③ 사후제작(Post-production)

- 출연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야 함.
- 출연자 또는 보호자들이 참여한 결과물을 확인 할 수 있도록 방송 전 사후 모니터를 실시해야 함.
- 방송 이후 소셜 미디어나 미디어산업의 이해관계 속에서 사이버불링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등 다양한 부정적 영향력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해야 함.

2) BBC

○ BBC에서 아동과 작업하는 제작진은 1) BBC의 아동보호정책(Child Protection Policy), 2) 행동강령(Code of Conduct) 3) BBC의 아동과의 작업을 위한 가이드(Guide to Working with Children at the BBC)⁷⁾를 준수하여야 함.

(1) 아동보호정책⁸⁾

① 제1부

- 프로그램 제작자는 오프콤 방송규정과 BBC 편집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동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아동이 위협에 처했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BBC의 보호전담 부서(Safeguarding Lead)에서 마련된 방식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현장의 문제는 반드시 기록해야 함.
- 제작자가 아동이 처한 위협을 감지했을 때, 또는 아동이나 제 3자로부터 그러한 위협을 직접 혹은 전해 들었을 때, 혹은 위협에 처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을 때 이를 반드시 회사와 공유해야 함.
- 아동 주변의 매니저, 동료, 친구, 샵프롱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아동보호 책임자나 부서, 회사 내외부의 복지기관에 알려야 함.

7) <https://www.bbc.com/aboutthebbc/reports/policies/childprotection>

8) Child Protection and Safeguarding Policy, 2019년 1월 기준.

http://downloads.bbc.co.uk/aboutthebbc/insidethebbc/howwework/policiesandguidelines/childprotection/pdf/bbc_child_protection_policy_2019.pdf

- 온라인 그루밍이나 아동학대 등 온라인 보호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도 즉시 BBC의 아동보호 부서에 알려야 함.

- 아동의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 역할과 책임은 모두 ① BBC와 함께 일하는 스태프, 프리랜서, 텔런트, BBC의 업무를 보조해주는 아티스트 및 계약자 모두에게 있음. 이들은 모두 ② BBC 전 영역을 통틀어 발생된 문제점을 전달받아 “아동상담네트워크 (WCA’s, Working with Children Adviser Network)”에 문제 상황을 보고해야 함.

- BBC와 계약한 외주제작사가 아동을 캐스팅하고 현장에서 함께 일을 해야 할 경우, 소통창구는 일차적으로 집행위원회(commissioning executive)를 거쳐야 함.

- 집행 위원회는 외주제작사가 BBC의 정책을 따르도록 관리 함. 외주제작사는 BBC의 아동보호 정책과 행동강령을 따르며, 이를 전달할 책임자를 두어야 함. 아동과 함께 현장에서 일을 해야 하는 제작진은 반드시 WCA’s의 교육을 수료하며 범죄사실기록을 확인받아야 하며, 안전한 절차를 거쳐 고용되어야 함. 위기평가에 대한 서면 관리와 면허, 샤프롱에 대한 이해, BBC의 아동관리 가이드를 인지하고 있어야 함.

② 제2부

-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 아동의 상처를 발견한 경우, 아동 간 또는 아동과 성인 간의 관계에서 문제를 목격하거나 알게 된 경우, 핸드폰에서 괴롭힘이나 부적절한 내용을 발견했을 경우, 아동 성 착취 이미지에 접속 또는 공유했거나 아동이 부적절한 성적 행동이나 인지를 보이거나 혹은 방임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리고 아동이 직접 학대사실을 알리는 경우.
- 아동이 해당사항에 대해 ‘비밀’유지를 요구한다고 해도, 제작진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비밀보장이 불가능함을 아동에게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함. 그리고 해당 아동은 이러한 문제가 외부에 알려지게 될 경우에 발생할 상황에 대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해야 함.
- 아동이 처한 문제적 상황을 알게 되었을 경우, 상황을 아동에게 자세하게 묻기 보다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내용인지를 아동에게 전달해야 함. 이후에는 이 문제에 대한 담당자를 선정하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일어나게 될 지 미리 아동에게 고지하여야 함.
- 또한 경찰이나 BBC의 아동보호 상담네트워크(Working with Children), 아동보호 서비스, 학교 등지에 반드시 연락하고 해당 상황을 공유해야 함. 상담네트워크에서는 연속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하며, ‘myRisks Tools(내부 인트라넷 도구)’에 해당 사실을 반드시 기록해야 함. 외주제작사는 아동보호 부서에 연락하는 전담 책임자에게 알리거나, 내부에서 보호를 위한

필요조치를 시행하고 사건 발생 48시간 이내에 집행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권장함.(아동과 관련된 제작사항은 이후의 명백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기록할 것을 권장함)⁹⁾

- BBC에서 권고하는 대로 아동을 대우하지 않는 성인은 모두 아동보호 전담부서에 보고할 수 있음¹⁰⁾.

③ 제3부

- 아동의 제작현장 방문(Bringing children into work): 제작스태프(정식직원, 프리랜서, 계약직) 또는 성인출연자의 자녀, BBC 행사에 참여한 일일 아동방문객은 보호자의 관리 감독 없이 혼자 두어서는 안 됨.
- 범죄기록 확인(Criminal Background Checks): 범죄사실(DBS, Disclosure and Barring Service) 확인이 필요한 업종은 ① 공연에 참여하는 아동을 개인적으로 돕는 행위, ② 관리 감독 없이 아동을 위해 운전을 하는 행위, ③ 아동 보호목적으로 온라인 콘텐츠·서비스를 모니터링 하는 행위, ④ 의사나 상담사 등 전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⑤ 매니지먼트.
- 단역 및 조력 아티스트도 마찬가지로 DBS(Disclosure and Barring Service) 체크 또는 18개월의 효력을 가진 기본 범죄사실기록확인서(Basic¹¹⁾ Disclosure certificate)를 제출하여야 하며, 성범죄 관련 사실이 밝혀질 경우 BBC 주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음.
- 행동강령 교육(Training): BBC의 직원은 제작 사전에 모두 온라인 “Working with Children” 모듈 또는 심화 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DVS/PVG(범죄관련사실기록확인)을 확인해야 함. 외주 제작사의 경우 BBC의 아동보호 정책을 따르거나 그에 준하는 표준을 따라야 하며, 온라인 모듈과정을 이수하고 행동강령을 읽도록 권장.
- 제작 과정에서 아동학대 여부나, 아동보호를 위해 마련한 다양한 안전장치 방식을 기록하도록 하며, 관련 문서형식을 제공하고 있음.
- 제작에 앞서 아동, 부모, 법적 후견인, 부모역할에 준하는 기관 등의 문서로 형식화된 동의가 필요하며, 프로그램의 논쟁 여지가 없다면 16-17세의 청소년은 스스로 자신의 출연여부에 결정할 수 있음.
- 아동 공연 면허(Child Performance Licenses)는 아동 거주지역의 면허기관에서 공연 21일 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아동의 공연에 동행할 샤프롱은 전문 면허를 가진 이로 고용하여야 함. 5세 이하의 아동도 있기 때문에 부모가 촬영현장에 동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는 아동의 샤프롱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음.

9) <https://www.bbc.co.uk/editorialguidelines/forms>

10) 기소가 될 경우, BBC 내의 ‘환경, 건강과 안전 부서(Head of Environment, Health and Safety)’, ‘안전보호 전담부서(Safeguarding Lead)’, ‘감사부(Head of Investigations)’, ‘인사부서(HR Director, Employee Relations)’ 등과 함께 해당 내용을 공유하고 논의하며, 사건과 관련된 토의가 이루어져야 함

11) 기록노출정도에 따라 기본(basic)-표준(standard)-강화된(enhanced) 수준으로 구별되며, 아동과 직접적으로 일하는 BBC의 제작진은 enhanced certificate이 있어야 함

- 제작자는 출연자 아동에게 BBC 콘텐츠에 출연하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확산된다는 것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해야 함. 또한 BBC 직원, 프리랜서와 조력 아티스트의 경우, BBC는 컴퓨터, 모바일, 비디오/디지털 카메라, 그 외 전자기기로 온라인 그루밍, 아동학대 이미지의 보유, 배포에 관여하는 모든 행동을 금하며 위반 시 징계 처분함.

(2) 행동강령

○ 아동/청소년 출연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제작진이 주의해야 할 점

-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언제나 최우선으로 삼는다.
- 아동 개인에게만 책임을 지우지 말고, 그들에게 조치가 필요할 경우 부모나 샤프롱에게 알린다.
- 아동을 화장실에 데리고 가는 등 비상 상황의 경우에만 실질적인 보호책임을 맡는다.
- 개인 연락사항을 아동에게 알려주어서는 안 되며, 함께 일하는 아동을 SNS에서 '친구'로 추가하거나 '팔로우'하지 않는다.
- 그들이 언제나 (프로그램의) 공헌/참여자라기보다는 먼저 '아동'임을 상기한다.
- 아동과 함께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언제나 정중히 행동하며 말한다.
- 언제나 아동의 말에 귀 기울이고 존중하며, 가르치려 들지 않는다.
- 편애하지 말고, 아동과 청소년을 모두 공정하고 편견과 차별 없이 대우한다.
- 아동과는 항상 공식적 업무(프로그램, 이벤트, 행사, 프로젝트) 현장에서만 일한다.
- 누군가 아동에게 부적절하게 대우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면, 반드시 BBC의 아동보호 관리 지부에 알릴 의무가 있다.

(3) 작업을 위한 가이드

- 제작진이 쉽게 확인해볼 수 있도록 작업 시 이용할 간단한 작업 체크리스트를 제공.
- 체크리스트는 행동강령, 아동의 온라인 안전, 스태프 점검, 부모의 동의, 면허, 위험평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3) 영국 영화위원회(British Film Commission)¹²⁾

○ 영국 영화위원회의 지침

- “학교를 졸업하는 나이”(아동의 촬영지에 따라 16, 또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은 아동의 지역 교육기관(authority)에서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함. 이 면허는 근로가 허가되는 시간,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모든 특별 절차나 요구사항을 담고 있음.
- 촬영이 어디에서 진행되는지 지역교육기관에 알려야 함. 이는 아동공연면허(Child Performance Licence) 및 1968년 제정된 아동공연 규제(The Children (Performance) Regulations 1968)에 근거함.

¹²⁾<http://britishfilmcommission.org.uk/guidance/regulations/>
<https://filmlondon.org.uk/resource/working-with-children>

3. 뉴질랜드

1) 스크린세이프(ScreenSafe)¹³⁾

해당 가이드라인은 뉴질랜드 영화제작과 발전 위원회(SPADA, the Screen Production and Development Association of New Zealand), 뉴질랜드 배우조합(Actors' Equity New Zealand), 뉴질랜드 산업안전보건청(WorkSafe New Zealand), 캐나다 온타리오 노동청의 영화 텔레비전 안전을 위한 가이드라인(Ontario Ministry of Labour, Safety Guidelines for the Film and Television Industry) 등에서 발행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됨. 뉴질랜드의 영화산업 조합(The Screen Industry Guild) 등은 스크린세이프에서 제시한 해당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음.

○ 가이드라인 원칙

- 아동(child)은 생일이 지나지 않은 16세 미만을 '아동'으로 대우함.
- 아동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곳에서 촬영해서는 안 됨.
- 살을 찌우거나 건강에 해를 입힐 수 있는 공연을 주문해서는 안 됨.
- 16세 미만은 반드시 오후 10시~오전 6시까지 일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필요하다면 부모나 보호자와 상의할 수 있음.

(1) 제작 참여/계약

- 아동과의 제작 작업 시 특정한 법적 요구기준, 즉 샤프롱/부모가 아동의 안전과 웰빙을 확실히 책임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경찰의 확인 등을 필요로 함.
- 아동섭외를 위한 미팅에서 제작자는 아동의 에이전트나 법적 대리인에게 ①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내용과 예방법, ② 아동이 연기해야 하는 특정한 기술, ③ 아동이 노출될 수 있는 특수 효과, ④ 휴게실이나 식사 등 제작하는 동안 아동에게 제공되고 보호할 대기 등 편의시설에 대한 설명, ⑤ 제작이 길어질 경우 아동이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 제공 약속 등의 계획을 알려야 함.
- 제작자는 제작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변화에 대해 상의하고, 변경을 해야 한다고 해도 아동의 부모/보호자의 서면동의 없이는 진행할 수 없음. 또한 부모/보호자는 응급상황에 대비해 제작자와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알려야 함.

13) <https://screensafe.co.nz/>, <https://screensafe.co.nz/guidelines/section-5/>

(2) 촬영 스케줄 노동시간

- 제작자와 아동의 보호인은 아동의 출퇴근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함.
- 아동은 5일 연속으로 일할 수 없으며, 1주 내 5일 이상을 일할 수 없음.
- 연령에 적합한 휴식과 식사시간, 오락과 휴식을 위한 음식과 대기실 등이 제작사에서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작업에 참여하기 전 아동의 대표자에게 승인받아야 함.

<표 3-1> 아동의 나이에 허용되는 1일 최대 작업시간

아동의 나이	1일 최대 작업시간
8세(생일이 지난)를 포함한 아동	출근부터 퇴근까지 6시간(출퇴근 시간 포함)
9~11세 아동	8시간 (출퇴근 시간 포함)
12~16세 아동	10시간 +출퇴근 시간

(3) 복지

- 아동의 안전과 복지가 가장 중요하므로, 촬영일정과 장면구성 시 반드시 아동이 해를 입거나 긴장할 수 있는 상황에 노출시켜서는 안 됨.
- 제작자는 나체나 욕설, 심리적/정서적 긴장을 야기할 장면에 대해 사전에 설명해야 함. 부모는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아동이 참여할 장면을 변경해야 할 때는 양측 상호 동의를 통해 변경하여야 함.
- 아동의 촬영장 이동이 필요하다면, 이때 샤프롱이나 승인된 대리인과 동행해야 함.

(4) 샤프롱과 아동 연기자 숙소 관리인(house parent)

- 프로듀서가 샤프롱 또는 숙소 관리인과 계약을 하게 된다면, 이들은 모두 교육 또는 아동보호자 격증이나 적절한 관련 경험, 또는 간호자격, 사고기록이 없는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어야 하며, 경찰의 사건기록 확인을 거쳐야 함.
- 뉴질랜드 제작산업과 관련된 정보를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관련정보는 △스크린세이프 가이드라인, △ 노동법 '2015의 '건강과 안전' 조항, △ 여타 법적 개정/수정안 등.
- 제작자는 제작에 참여하는 아동을 위해 샤프롱을 고용해야 함. 샤프롱은 여타 아동 배우를 함께 케어할 수 있으나, 촬영장에 있는 아동을 홀로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함.
- 계약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 회의 제작에 5명 이상의 아동과 함께 일하게 된다면, 제작

자는 2명의 샤프롱을 고용해야 하며, 한 명의 샤프롱이 담당하는 아동은 최대 4명을 넘지 않도록 함. (권장사항은, 1명의 아동 당 1명의 샤프롱을 배정해야 함).

- 샤프롱은 △휴식과 식사시간을 감독하며 필요하다면 아동이 쉴 수 있도록 관리함, △아동의 작업 관련 전반적인 웰빙에 책임을 지는 역할을 함, △사전제작 및 제작 시 아동이 촬영장에 있다면 항상 함께 있어야 하며, 보호 없이 홀로 남겨두지 않도록 함, △아동이 촬영장을 오고갈 때 운전 또는 통근을 함께 하며 부모/보호자가 촬영장으로 데려다준다고 할 때엔 아동보다 항상 먼저 촬영장에 도착해 아동을 인도받아야 함.

- 숙소 관리인은 △아동들의 음식을 포함한 지원과 전반적인 웰빙을 제공해야 함, △촬영 외적인 시간과 주말의 레크리에이션을 감독해야 함, △필요시에는 아동/부모와 제작자의 소통 역할을 할 수 있음, △아동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주/야간 모두 아동과 함께 있어야 함, △최대 3명 미만의 아동을 관리하도록 하며, 샤프롱이 각 한 명의 아동에게 배치되는 것을 권장. 부모는 아동이 촬영으로 인해 외부로 갈 경우 샤프롱/하숙관리인에게 보호권한을 넘겨주어야 함.

- 제작자는 응급상황을 대비해 하숙관리인의 직통 연결망을 알고 있어야 하며, 부모/보호자/샤프롱이 존재하는 한 아동의 복지와 안전, 편리를 위해 촬영 내용을 상호 조정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를 지정해두는 것을 권장.

(5) 촬영 관련 정보전달

- 제작자는 아동과 그 부모/보호자/샤프롱에게 다음과 같은 제작관련 정보를 주어야 함.
△응급상황 시 건강과 안전 지킴 방법, △제한구역, △안전한 대기 장소, △장기간 촬영시 학교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공간 확보, △화장실, 분장실, 그 외 아동의 촬영 고나려면 머무를 수 있는 다양한 공간, △불편한 작업환경에 대해 알리고 보고하는 방법 등.

(6)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 아동은 자신에게 발생한 문제를 전달할 수 있는 지식이나 자신감, 언어적 능력이 부족하므로 제작과정 시 현장의 모든 성인이 아동의 웰빙과 건강,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음.

- 제작자는 아동 공연자와 현장의 모든 성인들은 긴밀히 교류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아동의 감독자에게 해당 사항을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함. 성인은 영아/아동 공연자의 정신적 긴장과 불편의 표현에 민감해야 하고, 그들의 건강/안전문제와 직결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함.

- 영아/아동의 감독자는 아동 또는 그들의 보호와 관련된 성인과 토론하여, 상황을 해결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즉시 행동해야 함. 우려상황 발생 시 제작자나 제작사의 대리인은 2015년 노동법의 ‘건강과 안전’ (the 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2015)에 기반해 상호 협조하여 건

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7) 정신적 트라우마를 일으킬 수 있는 요건

- 민감한 장면을 연기해야 할 때, 격리된 세트에서 촬영해야 함. 특히 민감하고 정신적 트라우마를 건드릴 수 있는 장면을 아동과 연기할 때는, 제작진 측에서 적절한 자격을 가진 심리학자나 치료사를 고용해 아동을 도울 수 있게 준비해야 함.

(8) 포용적인 문화

- LGBT인 아동/청소년이 자칫 그들에게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역할을 맡게 될 경우, 그들이 촬영하는 시간은 물론 전후에도 그들의 안전과 웰빙을 담보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야 함. 필요하다면 함께 참여하는 다른 배우나 제작진들에게 젠더 정체성이나 섹슈얼리티에 대해 관련 설명이나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인지하도록 권함. 예를 들어,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거나, 상처받기 쉬운 공간에서 안전하고 지지받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교육할 것을 권함.

(9) 대기시설과 화장실

- 남아와 여아는 분리된 대기실을 사용해야 함. 가능하다면, 성인의 대기실과도 떨어져 있어야 함.
- 대안적인 시설로서 어디에든 가능한 한 성별 구분 없는(gender neutral) 화장실 설치도 권장됨.
- 아동의 보호자를 제외하고, 격리된 방에 아동이 단 한 명의 성인과 함께 절대 머무를 수 없음.

(10) 특별한 촬영행동/스턴트

- 안전한 공연을 위해, 아동에게 필요한 훈련 없이 특정 연기를 해서는 안 됨. 특정 연기 관련 행동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위험평가(risk assessment)'가 진행되어야 하며, 아동의 연령과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아동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스톤트 장면으로 여겨지는 모든 행동은 적절한 자격을 가진 스톤트 대역이나 공연자가 아동 대신 공연해야 함. 어떤 스톤트 행위든 촬영일에 앞서 스톤트 지도의 철저한 가이드에 따라 구성되고 리허설을 진행해야 함.

(11) 안전한 통근

- 제작자는 반드시 △운전자가 적절한 면허를 가지고 있는지, △아동을 통근시킬 때 필요한 아동시트나 보호 장비를 적합하게 구비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12) 특수효과

- 아동이 연기나 안개와 같은 ‘공기’와 관련된 효과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거나 피해야 함. 이러한 장면이 필요할 때 아동의 보호자와 반드시 먼저 논의해야 하며, 아동이 천식이나 기타 호흡기 장애가 있을 때는 절대 연기나 안개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

(13) 동물과의 촬영

- 제작과정에 동물과의 촬영을 진행해야 한다면, 아동을 동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추가 준비로 ‘위험 평가’과정이 이뤄져야 함.
- 아동 및 부모/보호자/샤프롱은 동물과의 촬영 장면이 있다는 상황을 미리 숙지하고 안전하게 촬영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함.

(14) 야외에서의 공연

- 야외에서 아동이 공연을 하게 될 경우, 더운 날씨나 습한 날씨로부터 보호되어야 함. 날씨 상황에 맞춰 설수 있는 시원한 공간, 마실 물, 의상 등을 고려해야 함.
- 아동은 또한 추위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함. 촬영 동안 머물 수 있는 따뜻한 공간, 의상과 재킷, 담요, 외투를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도록 함.

(15) 수중촬영

- 아동이 수중촬영을 하게 될 경우, 안전 예방조치 교육을 받아야 하며,, 부모/보호자/샤프롱은 수중촬영의 위험성과 과정에 대해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함. 깊은 물에서 촬영해야 하는 모든 아동은 수영 숙련자이거나, 적절한 수중 안전장치를 입고 있어야 함. 촬영하는 동안 전문 라이프가드나 장비가 준비되어야 함. 물에 띄우는 장비나 물의 온도, 물에 들어가 있는 시간을 결정할 때 의상의 무게가 고려해야 함. 촬영을 마친 후 바로 씻을 수 있는 샤워실 역시 준비되어야 함.

(16) 위험요소

- 무대 위 결투, 권총이나 무기류 움직이거나 자동화된 전기 기구나 무대장치, 소음노출이 높은 상황, 높은 지대, 모기 등으로 옮겨지는 감염노출 등에서 아동이 일하게 될 경우 ‘위험평가’가 반드시 필요함.

(17) 잠재적 위험 요소

- 아동의 웰빙, 촬영 현장 감독 소홀, 경찰로부터 확인되지 않은 샤프롱에 의한 아동 학대 가능성, 아동이 홀로 남겨져 다른 배우나 제작진으로부터 받게 될지도 모를 학대 가능성 등이 있다면, 가이드라인 부록을 참고하여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함.

4. 국제배우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tors, FIA)

○ FIA's Child Performer Toolkit (2016)¹⁴⁾

- 전 세계에서 FIA와 연합한 배우 노조의 구성원은 물론, 비구성원도 참고할 수 있도록 아동 공연자와 그 부모를 위한 안내서를 제시.
- 아동 공연자를 보호하는 국제법 조항이나, 국가별로 계약이나 규제 조건이 다름을 안내하고, 국가별 조항과 아동의 부모가 해야 하는 역할을 안내함.

14) FIA's Child Performer Toolkit

<https://fia-actors.com/resources/publications/fia-publications/fia-publications-details/article/fia-child-performer-toolkit/>

제3절 대중문화산업 아동·청소년 종사자 노동환경 현황

- 국내 대중문화예술산업 내 아동·청소년 종사자들의 학습권이나 수면권, 휴식권, 노동권 등의 ‘인권’의 향상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은 문제가 발생할 때 개별 사건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하거나 즉각적인 해결책만을 주목해왔음. 이후 보다 구체적인 정책적 제도는 거의 최근에서야 공론화됨.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가 담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또한 2014년도에 제정이 이뤄짐.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는 2013년에 만들어졌음에도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또는 연습생) 표준계약서>는 2019년도에 제정됨.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업무계획에서야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 제정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방송 프로그램이나 언론보도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이 겪은 인권침해 사례가 ‘고백’이나 ‘보도고발’의 형식으로 반복적으로 알려져 왔음. 대부분 기존의 ‘관행’에 따라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호 받지 못하고, 인권침해와 차별과 학대 등에 노출돼 왔음.
- 대중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들이 인권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학습권이나 수면권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연기활동이나 가수활동을 해온 상황을 살펴보고,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대안과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함. 각 사건들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제시되어 있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침해 상황을 분류하였음. 관련 구체적인 사건은 다음과 같음¹⁵⁾

1. 생존권

1) 외모 스트레스와 다이어트·성형의 강요

- 2010년,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에서 수행한 ‘청소년 연예인 성보호·근로권·학습권 실태분석’ 결과에서도 여성 청소년 연예인의 절반 이상인 56.1%가 다이어트를 권유받았고 14.6%가 성형수술을 권유 받은 것으로 조사됨. 실제 대중문화예술산업 내 아동·청소년 종사자들 특히 아이돌연습생들의 과도한 ‘다이어트’는 예능프로그램의 소재로 자주 등장해왔음.
- 2020년 12월 SBS 플러스 예능프로그램 <언니한텐 말해도 돼>에 출연한 유은정 정신의학과 전

15)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언론보도를 통해 고발된 사건과 방송에 출연해 고백한 이야기를 종합해서 정리하였음

문의(JYP엔터테인먼트의 전 상담 주치의)는 “아이돌을 상담했을 때 보면 다이어트가 그들에게도 스트레스”라며 “날씬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많아서 무리한 다이어트를 한다. 무리한 다이어트 때문에 아이유, 장나라도 폭식증에 걸렸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서 더 안 빠질 수 있다. 심리적 압박이 요요를 부른다”고 발언.

- ‘다이어트’는 소속사들로부터 감시의 대상¹⁶⁾이기도 했음. KBS <[연예수첩]다이어트가 뭐길래! 몰래 먹는 아이돌들?> 기사에 따르면, 마마무 문별은 “숙소에 CCTV 있었는데. 현관문 아니고 주방에. 냉장고 바로 밑에 (있었다)”고 밝힘. AOA 설현은 “뭘 먹었는지 써야 되거든요, 식단을. 근데 거짓말로 쓰면 막 검사를 해요. 가방검사 같은 것도 하고”라고 회상함. 걸스데이 혜리 또한 “숙소 생활을 했었는데 매니저가 같이 살았어요. 근데 이게 나가면 띠리리 울리잖아요. 그래서 (돼지껍데기, 닭발을 먹으러 가기위해)그 건전지를 빼요. (그런데)걸렸어요. 그래서 대표님 오 시고”라고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음.
- 타이니지 도희는 2014년 7월 엠넷 <음담패설>에 나와 “8명이 합숙 생활을 하는데 숙소 현관에 CCTV가 있어서 출입 시간을 체크한다. 야식 시켜 먹을까봐 감시하고 있다”고 말함.
- 성형수술 및 시술도 유사한 형태를 보였음. 2017년 12월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모모랜드 주이는 “코 성형을 했을 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다”라면서 “아이돌 데뷔 준비 과정에서 대표님이 코 필러 시술을 권유했다”고 발언했음. 2011년 1월 티아라 소연 또한 “주사는 수술도 아니에요. 시술. 코는 주사 맞았는데 뭐 하나 넣어볼게”라고 이야기함. 이 같은 성형고백이 방송을 통해서 아이돌의 ‘털털함’으로 소비되고 있는 상황임.
- 연기자들의 경우, 고정화된 ‘아역’ 이미지를 깨기 위해 성형을 감행하기도 했음. 1998년 SBS시트콤 <순풍산부인과>에서 미달 역으로 출연한 김성은은 아역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성형을 감행했다고 고백한 바 있음. 김성은은 2010년 9월 SBS <당신이 궁금한 이야기>에 출연해 “한 때 나를 ‘미달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흥기로 찌르고 싶은 충동을 느낄 만큼 그 이름이 싫었다”, “미달이는 지워버리고 싶은 그림자다. 미달이가 아닌 나는 어디에도 없다”며 성형 수술한 이유를 밝혔음.

16) “[연예수첩] 다이어트가 뭐길래! 몰래 먹는 아이돌들?” KBS, 2017년 8월 7일

2) 열악한 합숙시스템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 아이돌들은 가수로서 성공한 후 ‘과거’를 회상하며 열악한 합숙시스템을 거론해왔음. 1세대 아이돌 중 대표적인 그룹은 GOD임. 그들은 소속사의 지원이 끊기면서 참치캔과 라면을 주식으로 생활했다고 밝힌 바 있음. 겨울에는 수도가 얼어서 씻기 위해 한 시간 거리에 위치한 병원에 가서 물래 씻고 내리는 비로 식수를 했다고도 토로해 화제가 된 바 있음.
-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이돌연습생들의 연습을 위한 열악한 숙소생활은 늘 화제가 되고 있음. 2019년 TRCNG 멤버들은 소속사 TS 측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숙소 사진 등을 공개하며 큰 공분을 불러일으켰음. 이에 따르면, 복층형 구조의 빌라에서 10명이 생활했던 것으로 나타남. 1층에서 8명, 2층 복층에서 2명이 생활했는데 천장이 낮아 허리를 펼 수 없는 구조였음. 바닥에는 물이 새 망가진 상태였고 보일러가 끊겨 멤버들이 독감에 걸렸다는 게 그들의 전언임. 문제는 숙소 수리 요청에도 소속사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임. 화장실 변기가 고장이나 1개를 10명에서 사용해야했으며 수리요청에도 소속사가 조치를 취하지 않아 멤버의 가족들이 사비를 털어 변기를 고쳤다고 함. 전등 또한 고장 나 어두운 곳에서 지내야했다는 증언도 나왔음.
- 대형 소속사들 또한 다르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남. YG 소속 빅뱅의 지드래곤과 태양은 2015년 5월 KBS <해피투게더>에 출연해 연습생 시절에 대해 “정말 작은 방에서 매트리스 2개에서 다섯 명이 같이 잤다”, “매니저가 식량을 조달해줘야 밥을 먹는데 바쁘니 몇 주 동안 해주지 않은 적도 있었다”고 고충을 호소한 바 있음. YG엔터테인먼트는 빅뱅·투에니원·위너·아이콘·악동뮤지션·싸이·에픽하이 등의 큰 성공을 거뒀지만 아이돌연습생 시절 처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최근 블랙핑크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데뷔 전 연습생 시절을 회상하며 “바퀴벌레랑 지네랑 같이 살았다. 컵에 가둬놓거나 A4용지로 잡았다”고 열악한 환경에서 지냈음을 고백함.

3) 데뷔와 캐스팅 불확실성으로 인한 정서적 불안감

- 아이돌연습생들의 경우, 챗바퀴 돌 듯 ‘연습’에만 매진하는 시절에 지치고 데뷔를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컸음. 반면, 아동·청소년 연기자들은 ‘아역’ 이미지를 벗어야 한다는 불안감과 차기작품에 대한 초조함이 작동하고 있었음.

- 아이돌연습생들의 ‘불안감’은 연습생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례해 상승하는 측면이 큼. JYP에서 7년 연습생 생활을 했던 조권은 2011년 2월 SBS <강심장>에 출연해 “연습생 생활이 길어질수록 슬럼프에 빠졌고, 죽고 싶기도 했다”, “6년이 지나도 데뷔를 못 했다. 기억이 없었다. 연습생 사이 그늘에 있는 것 같았다”, “2PM을 꾸린다는 소식을 듣고 노력했는데 또 제외됐다. 성공이 보장된 것도 아닌데 이 기회를 놓치면 7년째라는 생각에 불안감이 컸다”고 토로함.
- YG에서 연습생으로 지낸 배우 유인나 역시 2013년 5월, KBS2 <해피투게더>에 출연해 “17살 때부터 연습생 생활을 시작했다”, “연습생 시절에는 소속사 내부 오디션을 본다. 연습생들은 초비상 사태다. 그 오디션을 본 후 결과가 나오면 떨어지는 친구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함께 연습생으로 지냈던 친구들을 떠나보내며 너무 힘들었고 좌절도 했다”고 고백함.
- 9살에 JYP에 입사해 무려 10년 연습생 생활을 한 트와이스 지효 역시 2018년 7월 JTBC <특투유>에 출연해 “10년 넘게 연습생 생활을 하면서 가수라는 직업이 나에게 맞는 직업인지 고민을 많이 했었다”고 발언함. 2017년 10월 JTBC <몽쳐야 뜬다>에서는 “데뷔하기 직전에 그만두려 했었다. 트와이스 전에 함께 데뷔를 준비하던 팀이 무산이 돼 연예인의 꿈을 포기하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회고함.
- MBC <한 지붕 세 가족>에 ‘순돌’역으로 출연해 큰 사랑을 받았던 이견주 씨는 2019년 11월 SBS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해 “연기가 너무 하고 싶은데 아역 이미지가 걸림돌이 됐다”고 발언했음. 이와 같이 SBS <순풍산부인과> 미달역으로 출연한 김성은과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기에 큰 사랑을 받았던 배역을 맡았던 배우일수록 이같은 불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서신애의 경우, 2018년 3월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노출의상’ 착용과 관련 “어른스러워 보이려고 입은 옷이 아니다. 다들 예쁘다고 했다. 사실 더 과감할 수 있었는데 가렸다”, “화장, 옷들을 성숙하게 해 볼까 했는데, 안 맞는 옷을 걸치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고 발언함. 박지빈은 2019년 3월,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 군대에 간 이유에 대해 “(성인으로 넘어가면서) 뭔가 마음이나 정신이 일과 관련된 게 아닌 곳이 필요했던 것 같다. 그래서 군대를 간 것 같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음.
- 백성현 또한 2014년 SBS <매직아이>에 출연해 “마의 16세를 들었어요. 어릴 때와 다른 이미지로 비난하는 건 비수를 쬐는 것이예요. 많이 가슴이 아팠어요”라고 토로. ‘외모 역변’에 대한 고충을 털어 놓기도 함.

4)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연기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 아동·청소년 연기자들이 일하는 노동현장은 성인들이 다수로 구성돼 있음. 드라마의 경우, 그동안 생방송에 가까운 제작환경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적 여유 없이 연기를 해야 했고, 위계적인 인간관계를 그대로 체험해야 했음. 그 안에서 아동·청소년 연기자들의 인권은 기본적으로 보호되기 어려운 구조임. 따라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아역 출신 연기자들은 어린시절의 연기 환경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는지를 고백하는 장면이 많았음. 당시 제작환경에서는 아역 연기자를 위한 대기장소, 숙소 등의 마련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았고, 성인과 함께 머무르는 상황들이 빈번하게 이뤄졌고, 이러한 상황에 오래 노출되면서, 정서적 우울감이나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남.
- 양동근은 9살에 아역 배우로 데뷔함. 2015년 SBS <잘 먹고 잘 사는 법>에 출연해 ‘어린 나이에 연기를 하며 힘들었던 건 없냐’는 질문에 “내가 전혀 슬프지 않고 울고 싶지도 않은데 울어야 하는 상황이 있었다. 안 울고 있으면 감독님이 ‘울어!’ 소리쳤고 담배 연기를 눈에 갖다 대기도 했다”, “말이 없고 낮을 가린 이유도 나를 보호해 주는 사람이 없다. 내가 스스로를 보호해야 했다. 방어해야한다는 생각 때문에 밖으로 쉽게 나서지 못했다”고 폭로함. 2018년 2월, MBC <라디오스타>에서는 “대인기피증이 올 정도로 주변의 많은 관심을 받았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가방에 쌍절곤과 장난감 총까지 들고 다녔다”고 고백함.
- 허정민은 2018년 2월, MBC <라디오스타> 출연해 “너무 어린 나이에 시작해서 어른들의 세계를 일찍 알았다. 지방 촬영이 잦았는데, 스태프들이 스스럼없이 술, 담배를 했다. 어른들 따라 국밥만 먹었다”고 어린 시절 연기를 했던 상황을 회고함.
- 서신에는 우유CF가 화제가 되면서 연기를 시작함. 그는 KBS <1대100>에 출연했는데 해당 CF를 찍을 때를 회상하며 “울어서 힘든 것보다는, 마시기 힘든 우유를 계속 마셔야 해서 힘들었다. 우유 4~5L를 계속 마시며 토하고 우는 것을 반복했다”고 고백함.
- MBC <왔다 장보리>에 출연한 김지영은 2015년 5월 OBS <독특한 연예뉴스>에서 “아직은 체력이 많이 부족해서 잠이 부족할 때는 졸음도 오고 뭐 조금 힘든 신을 찍을 때면 액션신이나 그런 거 찍을 때면 조금 힘이 많이 빠진다. 그래도 요새 많이 찍다보니까 조금 체력이 쌓인 것 같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촬영 나가야 된다는 거 아니면 또 밤까지 촬영을 늦게 해야 된다는 거”라고 고충 털어 놓음. 같은 방송에서 홍화리 역시 “힘든 거는 스케줄이 너무 빡빡하게 나오니까 대본 외우기가 힘들다”고 고백함.

2. 보호권

1) 신체적 체벌과 욕설 및 공포분위기 조성

- 2018년 10월, 미성년으로 구성된 미디어라인 디스트라이트 멤버 이석철 씨가 문영일 PD로부터 신체적 폭행 및 폭언 등 학대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짐. 하지만 김창완 총괄PD는 “부모의 마음”, “훈계 차원”이라고 폭행을 미화하면서 논란이 커짐. 이에 디스트라이트 멤버 이석철 씨는 공개기자회견을 열어 폭행이 상습적이었을 뿐 아니라, 감금, 협박까지 있었음을 토로했음. 이석철 씨의 폭로에 따르면 “기타 줄로 4시간 목 졸림”, “야구방망이로 구타”, “중학생 시절 담배 강요”, “감금 상태로 폭행(이승현·이은성)”이 있었으며 그로 인해 그룹에서 퇴출된 이승현 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도 덧붙임. 반면, 미디어라인으로부터는 숙소 및 레슨 등 어떠한 지원도 없었다고 발언. 디스트라이트 멤버 김준옥은 재판에 등장해 “평소에도 언행이 거칠었고 체벌도 잦았다”라고 증언.
- 그 후, 디스트라이트 멤버 정사강·이은성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석철 형제 고소 몰랐다, 이해 안 되고 화나”, “체벌은 있었지만 폭행은 없었다”라고 회사를 두둔. 하지만 그들 또한 ‘체벌’은 있었다고 인정한 것과 다름없음. 이들은 위증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의견’으로 송치됨. 다만, 이들의 위증이 본인들의 선택이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가 필요한 부분임.¹⁷⁾
- 2019년 11월 TS엔터테인먼트 소속 TRCNG 우엽·태선이 전속계약 해지 및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발생. 이들에 따르면, 조우협은 2019년 6월 안무연습 중 윤OO으로부터 철제의 자 등으로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회사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 양태선 역시 연습생시절부터 리더라는 이유로 매를 맞아왔다고 폭로함. 그 수위는 “머리통’을 때리며 욕설을 했다”고 밝히고 있음. 이 밖에도 TS 안무책임자 박OO은 멤버들에게 오후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안무연습을 시키고, 아침 10시에 출근해 보컬 및 개인연습을 시킨 것으로 전해짐.
-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폭력에 노출되는 상황의 심각성은 지난 2019년 12월 EBS <보

17) 해당 사건에서 법원(1심)은 아동학대 혐의로 문영일 PD에 징역 2년을 김창완 회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함. 대법원은 지난 3월 문영일 PD에 1년 4월의 실형(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포함)을, 김창완 회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미디어라인 법인에도 벌금 2,000만원을 확정했음. 이 외에도 2020년 5월 서울중앙지법은 이석철·이승현 형제와 그 부모가 미디어라인, 김창환 회장, 문영일 PD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군 형제에게 각 2,500여만 원, 부모에게 각각 1,000만원씩 총 7,000만원을 피고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함.

니하니> 촬영과정에서 논란이 됨. 당당맨으로 출연하는 개그맨 최영수·박동근이 버스터즈 채연하니(미성년자)를 폭행 및 폭언했다는 비난. 이 밖에도 MBC 설특집 예능 <2020 아이돌스타 선수권대회(아육대)> 녹화 도중 남성 스태프가 여성 아이돌 출연자였던 이달의 소녀 멤버 추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벌어짐.

2) 상업적 젠더 이미지 수행요구와 현장에서의 성폭행 위험

- 아이돌 그룹 멤버들은 상업적 젠더 이미지를 위해 노력을 강요받고 있기도 함. 최근 MBN <미스백>에 출연한 스텔라 소속 가영이 큰 화제가 됨. 스텔라는 19급 그룹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처음에는 ‘청순’ 이미지로 데뷔한 케이스임. 문제는 스텔라에 대한 업계 내 반응이 없자 갑자기 과도한 노출이 포함된 ‘섹시’ 컨셉으로 그룹 이미지가 바뀌었다는 것임. 가영은 뮤직비디오 촬영 노출이 심한 의상으로 갑자기 변경된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고백함.
- ‘을’의 위치인 연습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사건도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임. 실제 2010년 10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미성년자인 여가수 지망생에게 성 상납을 시킨 혐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H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음. 김 씨는 지난 2월 한 의류원단 업자(41)에게서 ‘스폰서 비용’으로 4천600만원을 받고 기획사에 전속된 가수 지망생 A(17)·B(20)양에게 이 업자와 10여 차례 성관계를 갖도록 시켰다는 사유였음.
- 성폭력 피해는 비단 ‘여성’연습생들에게만 나타나는 건 아님. 2019년 1월 신생 기획사에 소속돼 있던 남성 연습생 6명이 대표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¹⁸⁾했음. 피해자는 10명 정도로 드러났고 이 중 미성년자도 2명이나 포함돼 있었음. 피해자들은 “데뷔를 못하게 될까봐, 속으로 씩씩두고 있었다. 17살부터 공황장애 치료를 받고 있다”, “정신과도 다니고 있고 약물도 복용중이다. 때때로 불안하고 손이 떨리고 수치심이 엄습한다”, “현재 정신과를 다니고 있다. 불면증이 심해서 수면제도 먹고 있다. 그저 이 회사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 뿐”이라고 토로하기도 함.
- 2016년 2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 ‘시크릿 리스트와 스폰서’편에서 한 연기자 지망생은 “기획사 미팅을 갔거든요. 저보고 일어나 보래요. 그리고 이제 겹옷을 벗고 막 당부를 해요. 제가 미성년자니까 말을 조심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요. 높은 사람한테 몸을

18) “[단독Y터뷰] '소속사 대표 성추행' 연습생 "남성 접대부라도 된 기분이었다"”, YTN. 2019년 1월.

대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면 맞다고 해요. 그래서 거절을 했다. 그러니까 ‘너는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내세울 것도 없는 애가 이런 각오도 안 돼 있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딱 든 생각이. 연예인은 사람이 아니고 상품이구나 그 생각을 했다”고 폭로함.

- 아동·청소년 연기자들 또한 상황이 다르진 않았음. 배우 강은비는 2018년 3월 자신의 아프리카 TV 방송에서 미성년 시절 당했던 일화를 폭로함. 강은비는 “고등학생 때 교복을 입고 오디션을 본 적이 있다. 미성년자였는데 감독님이 첫 번째로 물어본 게 ‘너 자봤냐’였다. 이게 방송용으로 순화한 거다. 자보지 않았다고 했더니 ‘그럼 나랑 자도 되겠어?’라고 묻더라. 남자들이랑 많이 자 봐야 사랑 연기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때 내 나이가 17~18세였다. 연기를 준비했는데 연기를 보여주지 못하고 그런 얘기만 약 30분 동안 했다. 굉장히 충격을 받아 울면서 나왔다” 폭로함.

3) 선정적이고 자극적 연기수행과정에서 겪게 되는 트라우마

- 아동·청소년 연기자들의 경우에는 ‘연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선정, 자극, 폭력에 노출되고 있는 현실임. 문제는 상황에 따라 연기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점임. 2018년 2월 tvN <달팽이호텔>에 출연한 김민정은 등산을 하는 이유와 관련해 “직업적으로 내려놓고 비워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이라며 “자아가 형성되기 전부터 일을 했다. 어떤 캐릭터를 연기한다고 해도 ‘나’여야 하지 않나. 그런데 나는 캐릭터가 나보다 컸다. 공과 사의 구분이 어려웠다”고 고백하기도 함.
- 2011년 영화 <도가니>는 광주인화학교에서 벌어진 아동 성폭력 사건을 모티브로 한 고발영화로 화제를 일으켰었음. 그런데, 성폭력 사건 재연을 통한 아동·청소년 연기자들이 받을 트라우마에 대한 문제가 촉발된 계기가 되기도 했음.
- 2015년 SBS <육룡이 나르샤>에서 땅새 눈앞에서 살아하는 연인 연회가 집탈 당하는 모습을 보고 복수를 결심하는 장면임. 당시 남성을 각성시키기 위한 도구로 여성을 그렸다는 비판과 함께 미성년이었던 박시은 씨가 실제 촬영을 했다는 점에서 또 다시 논란이 됨. 그 후, 아동 청소년 연기자들에 대한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음.
- 아동학대를 주제로 한 콘텐츠 역시 유사한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음. 2018년 tvN <마더>에서

혜나 역을 맡았던 배우 허율은 극상 아동학대 장면을 고스란히 찍어야 했음. 제작진은 이를 위해 심리상담을 병행하며 촬영할 수 있도록 조치함. 배우 이보영 또한 “이 장면과 너는 분리돼 있고, 이것은 연기”라고 이야기해줬다고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함. 이 같은 사례들이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면서 나타난 결과일 수 있음.

4) 통제

- 대중문화예술산업 내 아동·청소년 종사자들은 어리다는 이유로 ‘통제’의 대상이 돼 왔던 게 사실임. 그 영역도 다양함. 구체적으로 보면, ‘연애금지’, ‘핸드폰 사용금지’, ‘운전 금지’, ‘SNS사용 금지’ 등으로 나눌 수 있음.
- YG엔터테인먼트 소속 2NE1의 멤버 산다라박은 2009년 12월 KBS <연예가중계>를 통해 “데뷔 후 5년 동안 애인을 안 만나기로 양현석 사장님과 약속했다. 하지만 씨엘(CL)이 5년은 너무 길다고 불평해 나와 박봄만 3년으로 줄여줬다”고 밝힌 바 있음. 2010년 5월에는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소녀시대 효연이 SBS <강심장>에 출연해 “현재 남자 아이돌 멤버를 짝사랑 중이다. 아이들에게는 연애가 금지돼있기 때문에 짝사랑에 빠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발언함. JYP도 마찬가지였음. 원더걸스는 2010년 KBS <승승장구>에서 ‘연애하고 싶지 않냐’는 질문에 “연애하고 싶다. 하지만 박진영PD가 데뷔 초 3년만 참으라더니 미국 진출 때는 2년만 더 참으라고 했다”고 폭로했음. 사실상 대형 기획사들 대부분이 소속 아이돌을 상대로 ‘연애금지’를 강제하고 있다는 의미임.
- 핸드폰 사용도 규제 대상이 돼 왔음. 2012년 8월 경향신문과 인터뷰¹⁹⁾한 한 걸그룹 멤버는 “휴대폰은 1등할 때까지 없애기로 했다. 회사에서 권유했는데 우리도 그게 좋을 것 같다”고 답함. 그런 사례는 가요에서는 유명한 일화임. 모모랜드의 경우, 데뷔 전부터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유명했음. 그러다 곡 ‘뽀뽀’으로 첫 1위를 한 이후 개인 핸드폰 사용이 가능²⁰⁾해졌다고 밝힘. 브레이브걸스 또한 “핸드폰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면서 “(보통)정해진 목표 달성 시 핸드폰을 돌려받는 사례가 많지만, 아직 또렷한 약속이 없다. 용감한 형제 대표님은 1위 가수가 되면 더욱 핸드폰 사용을 멀리하라고 하셨다. 언젠가는 주시리라 믿고 있다”²¹⁾고 말하기도 함.

19) “휴대폰 뺏고 연애 금지...아이돌, 강제 합숙 속 경쟁 또 경쟁”, 2012년 8월, <경향신문>

20) “모모랜드 "'뽀뽀' 첫 1위 후 휴대폰 받았다...악플도 증가해"[화보]”, 2018년 7월, <엑스포츠뉴스>

21) “브레이브걸스 "휴대폰 사용 금지령, 1위 해도 돌려받지 못해"”, 2016년 5월, <이데일리>

- 보이그룹도 통제에 있어서는 차이만 있을 뿐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음. B1A4는 데뷔 3년 만에 휴대폰이 생긴 것으로 알려짐. 2014년 8월 MBC <세바퀴>에 출연해 ‘아직도 휴대폰 사용이 금지되고 있느냐’는 물음에 “최근에야 휴대폰이 생겼다”, “몇 주 전에 휴대폰이 생겼다. 인터넷이 아무 데서나 되는 몰랐다”고 사회의 변화와 동떨어져 있음을 드러내기도 했음. 빅톤 또한 2018년 5월 인터뷰에서 “원래 전화가 안 되는 공기계로 와이파이가 터질 때에만 사용이 가능한 기기가 있었다. 음악을 듣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그런데 어느 날 다 같이 합심해 ‘몰래 만들자’는 분위기가 됐고 회사에 걸렸다. 멤버들이 회사에 반납했을 때는 누구 하나 군말 없이 다 제출하고 잘 지켜왔다 1년 조금 넘게 휴대전화 없이 버텼던 것 같다”고 발언함.

- 아이돌들은 ‘운전’, ‘개인여행’도 금지돼 있는 사례들도 있음. 이는 아이들의 잦은 ‘음주운전’ 적발과 사고로 인한 추가된 통제의 한 영역으로 보임. 2017년 11월 tvN <꽃보다청춘>에 출연한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위너는 데뷔 4년차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속사에서 운전을 금지한다. 차 구입도 금지다. 개인 여행도 금지다. 허락받으면 할 수 있지만 허락 받기 어렵다”고 발언함.

3. 발달권

1) 보장받지 못하는 학습권

- 대중문화예술산업 내 아동·청소년 종사자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었음. 영화 <아저씨>에 출연했던 배우 김새론은 2014년 9월 KBS <해피투게더>에서 ‘촬영 때문에 바쁠 텐데 학교생활을 어떻게 하나?’라는 질문에 “자주 빠지고 있다”며 “학교를 자주 못 가니까 갈 때마다 입학하는 느낌이다. 엄청 떨린다”고 답변함. 여진구 또한 2012년 7월 MBC <기분좋은날-연예플러스>에서 “촬영을 한번 나갔다 오면 학교 수업 진도가 많이 나가 있었다. (학습진도를) 못 따라 가거나 하면 불안하다”고 어려움을 토로 한 바 있음.
- 안도규는 2015년 5월 OBS <독특한 연예뉴스>에서 “촬영 때문에 초등학교 때 가는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같은 거를 많이 못 갔다”고 아쉬움을 드러냈었음. 동 프로그램에 출연한 노태엽 또한 “그 때 촬영하면서 배운 것도 많았으니까 후회는 많이 없다”면서도 “어쨌든 학창시절 때 느끼지 못했던 친구들이랑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추억은 많이 없어진 게 사실”이라고 설명함.
- 2010년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에 출연한 김민희(뚝순이)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촬영 때문에 오랜만에 학교에 가면 책상과 걸상을 친구들이 일부러 숨겨놓기도 했다.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 싫어 텔런트를 시키는 엄마를 원망하기도 했다”고 발언. 동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인혜 또한 “나는 합창단에서 미움을 받았다. 언니들이 MBC옥상에 집합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선크림도 바르지 마라’, ‘어른 스타킹 신지마라’라며 괴롭혔다”고 폭로함. 괴롭힘으로 인해 꿈을 포기하는 사례도 나타났음. 2018년 2월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노희지는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조금만 튀는 행동을 하면 뒷말이 많았다. 그때 상처를 많이 받아서 연기를 그만뒀다” 발언하기도 함.
- 이 밖에도 김새론은 2019년 11월 JTBC <아는형님>에 출연해 “영화 ‘아저씨’가 워낙 유명했지 않나. 전학을 갔는데 그 친구들은 나를 연예인으로 인식했나 보더라. 심하게 괴롭혔었다. 집 가는 길 미끄럼틀에 욕이 적혀 있고, 신발은 매일 없어졌다. 생일파티 한다고 오라고 했는데 가면 아무도 없던 때도 있었다”고 토로함.
- 아동·청소년 시절 가수활동을 하거나 연습생 생활을 했던 대중문화예술인들 또한 다르지 않음. 트와이스 지효와 채영은 2017년 10월 JTBC <몽처야 뜬다>에서 “연습생 오래 하니가 가족 여행 갈 시간이 없었다. 학창 시절 추억이 없는 게 아쉽다. 애들 노래방 가서 놀고 떡볶이 사 먹

고 이런 게 되게 부럽다. 그때 안 부러웠는데 지금은 부럽다”, “수학여행 못가고 수련회도 못 갔다”고 발언.

- 회사 연습생으로 선발돼 합숙생활이 시작되면 생활터전이 지역에서 서울로 갑작스럽게 변경되는 과정을 겪어야 함. 기존에 다니던 학교가 아닌 ‘예고’로 편입하며 연습에 몰두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됨. TS엔터테인먼트 소속 TRCNG의 멤버 조우엽은 왕복 2~3시간 거리의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 2학년에 재학중이던 학교를 자퇴하고 다른 학교에 재입학했으며, 그 과정에서 또래들보다 2년 늦게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음. 특정 대형 엔터테인먼트사의 경우 공공연하게 ‘자퇴’를 권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음.

2) 동료들과의 갈등

- 2020년 7월, AOA 그룹 내 왕따 사건이 폭로되며 논란이 커짐. 그를 시작으로 다양한 그룹들 내에서 왕따, 폭력 사건들이 줄이어 터지기 시작함.
- FNC 소속 AOA 왕따 사건은 전 멤버인 권민아가 그룹의 리더였던 지민이 자신을 10여 년간 괴롭혔다고 SNS에 올리면서 논란이 시작됨. 권민아에 따르면, “아빠 돌아가시고 대기실에서 한번 우니까 어떤 언니가 ‘니 때문에 분위기 흐려진다’고 울지 말라고 대기실 옷장으로 끌고 갔다”, “신경안정제랑 수면제 먹고 그냥 나를 재워버렸어 스케줄 제대로 해야 하는데 내가 점점 망가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 “솔직히 AOA 탈퇴 정말 하기 싫었는데 날 싫어하는 사람 하나 때문에 10년을 괴롭힘 당하고 참다가 솔직히 끝에는 나도 눈 돌아가서 욕 한번이라도 하고 싶을 정도였으니... 결국 AOA도 포기했어”라고 토로함. 해당 사건은 지민이 AOA를 탈퇴하는 것으로 마무리 됨.
- 지난 12월 11일 유튜브 <아이돌올림픽>에 출연한 박현호는 과거 그룹 후너스엔터테인먼트 소속 탐독에서 탈퇴한 이유를 밝힘. 멤버들과 사이가 원만하지 못했다는 게 이유였음. 그는 “소위 말해서 왕따 아닌 왕따를 당했다. 멤버들과 사이가 자연스럽게 멀어졌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항상 참고 있었다. 탐독 탈퇴를 결정짓는 자리에 저를 포함한 멤버들이 다 있었는데 ‘현호가 빠졌으면 하는 사람 손들어’라는 투표를 할 때 제가 보는 앞에서 멤버들이 손을 들었다. 최악이었다”고 발언해 충격을 줬음.
- NH EMG 소속 그룹 유키스 멤버였던 김시운 역시 멤버들과의 불화를 언급하며 “몇 년 간 고통

스럽게 침묵해 온 진실에 대한 처음이자 마지막 언급”이라면서 “(유키스) 멤버들은 내가 남은 계약기간에 어떤 활동도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밝힘.

- MBK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티아라는 2012년 7월 멤버 화영이 탈퇴하는 과정에서 ‘왕따’ 논란에 휩싸여 국내 활동이 불가능했음. 이는 현재 아이돌 육성의 한 장소로 꼽히는 ‘숙소(합숙소)’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계기가 됨. 문제는 이 같은 그룹 및 합숙의 형태가 배우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임. 배우 서강준은 판타지오에 몸담으며 그룹 서프라이즈(서강준, 유일, 공명, 강태오, 이태환)로 활동한 바 있음.

4. 참여권

1) 아이들 꿈을 인정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 아동·청소년들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의견이 무시되고 있음.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도 예외가 아님. 연기나 아이돌에 대한 꿈이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함. 물론, 최근에는 이런 양상이 많이 바뀌긴 했음.
- 전 세계적으로 한류 인기를 이끌고 있는 빅히트엔터테인먼트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제이홉은 아버지의 반대가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JYP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트와이스 나연은 네이버 TV캐스트 프로그램 ‘TWICE TV’에서 “과거 부모님이 연예인되는 것을 많이 반대하셔서 몰래 JYP 오디션에 봐 합격을 했다”며 “공부를 좀 하기 시작하던 차에 연습생이 됐다. 이 사실을 아시고 부모님이 처음엔 공부를 하라고 설득하셨다. 하지만 연예계 데뷔를 선택한 걸 후회하진 않는다”고 발언함.
- RBW 소속 그룹 마마무 화사 역시 2019년 7월 MBC <나혼자산다>에 출연해 아버지가 가수의 길을 반대한 사연이 전해짐. 소스뮤직 소속 그룹 여자친구 예린은 2016년 3월 SBS <동상이몽>에서 “처음에 가수 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께서 어디서 그런 소리 듣고 왔냐고 방에 들어가서 공부나 하라고 했다”며 “상처를 되게 심하게 받았다. 그래서 몇 년 동안은 혼날까 봐 가수라는 꿈을 말 못했었다. 억지로 ‘간호사 될게요’라고 거짓말을 했었다”고 고백함.

2) 경제적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 아동·청소년 연기자들의 경우, 대체적으로 수입을 보호자들이 관리하는 경우가 허다함. 배우의 입장에서 보면, 노동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임.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경제권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서 갈등을 겪는 사례들도 빈번한 상황. 이는 한국사회에는 아직 신탁제도와 같은 장치들이 마련돼 있지 못해 발생하는 측면이 큼.
- 영화 <과속스캔들>에서 황기동 역을 맡았던 배우 왕석현의 사례는 대표적으로 한국사회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임. 왕석현 군의 아버지 왕 아무개 씨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소송을 제기. 아버지 측은 “어머니 구 모씨가 공동 양육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협의하지 않은 채 다즐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함. 반대로 어머니 측은 “계약 당시 아

버지도 충분히 계약 내용을 알고 있었고, 이에 동의했었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계약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고 맞서기도 함. 당시, 큰 돈을 벌게 된 왕석현을 두고 부모 간 분쟁이 벌어진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컸음. 이를 두고 영화 <나홀로집에>로 큰 인기와 부를 쌓았던 맥컬리컬킨의 사례와 비교되며 ‘한국판 맥컬리컬킨’으로 불리기도 했음. 결국, 전속계약 해지에 합의하며 사건은 일단락. 하지만 왕석현은 긴 공백기를 갖게 됨.

- 한류스타 장근석은 2011년 MBC <황금어장-무릎팍 도사>에 출연해 중학교 1학년 때 속옷 광고를 찍은 일화를 털어놨음. 장근석에 의하면,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 사업 실패로 서울로 상경해 아버지는 택시 운전, 어머니는 식당 일, 장근석은 모델 활동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고 함. 장근석 “중학교 1학년 사춘기 때 속옷 광고가 너무 수치스러워 촬영 안 한다고 울었다. 어머니에게 끌려가 카메라 셔터 소리를 듣는 순간 내가 그곳에 있어야 할 것 같아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촬영했다. 당시 속옷모델료 220만원을 받아 1년 치 밀린 월세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고백함.
- 배우 이재은은 “되게 어렸을 때부터 (집안의 가장) 그랬던 것 같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다섯 살 네 살 그 때부터 데뷔를 해서 쪽 지내왔으니까 그 때는 내가 가장이었지만 가장인 줄을 몰랐다. 고등학교 들어갈 때쯤 대학을 갈 때쯤 돼서 ‘우리 집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만큼의 빛이 있고 내가 얼마만큼 그 부분을 배우고 있구나’라는 거를 자세하게 알았던 것 같다” 발언함. 그는 영화 <노랑머리>를 통해 노출연기에 도전한 것이 경제적 이유도 있었다며, 결혼이 도피처였다고 밝히기도 함.
- SM엔터테인먼트 f(x)의 멤버였던 고 설리(최진리) 또한 아동·청소년 연기자 시절부터 가수 데뷔 이후에도 보호자가 수입을 관리했던 것으로 알려짐. 그 후, 설리가 수입을 관리한다고 밝히며 가족들 간의 불화가 생겼다는 게 지인들의 전언이기도 했음.

3) 계약관계에서 불공정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을’

-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은 회사와의 계약 관계에서도 ‘을’의 위치에서 불공정 계약을 맺어왔음. 이 같은 사실은 법적 분쟁을 통해 드러나기도 함.
- 첫 번째 사례는 ‘장기간 계약’으로 당시 노예계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었음. 처음 논란이 촉발된 것은 2009년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슈퍼주니어의 중국인 멤버 한경이 전속계약 무효소송

을 하는 과정에 드러남. 당시 환경은 13년 계약을 한 상황이었음. 그 시기에 동방신기 역시 멤버들 그리고 소녀시대 윤아 역시 미성년인 시절 13년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음. 당시 박찬중 변호사는 이런 계약 형태가 「형법」상 부당이득죄 및 준사기죄라고 주장하며 화제가 되기도 함. 그 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기획사들에 불공정계약내용을 자진 시정해 이행 결과를 제출하도록 함. 이에 따라 JYP는 전속계약서에 ‘7년 이내의 전속계약 기간’, ‘연예 활동에 대한 연예인의 통제권 보장’, ‘수입 증가에 따라 연예인에 대한 분배 비율이 상향’ 내용을 담아 호평을 받기도 했었음. 그 후, 아이돌의 계약은 통상 ‘7년’ 정도로 자리를 잡음.

- 두 번째 사례는 ‘긴 연습생 기간’의 문제임.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빅뱅의 지드래곤은 SM에서 거친 기간을 포함해 총 11년의 연습생 시절을 보냈음. 같은 그룹의 태양 또한 6~7년의 연습생 시절을 거쳤음. 2AM으로 데뷔한 조권은 JYP에서 총 7.5년의 연습생 시절을 보냄. 이 같은 긴 연습생 기간은 최근까지도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알려진 사실에 따르면, 장기간 연습생 시절을 보낸 아이돌은 10년(트와이스 지효), 9년(프리스틴 시연), 8년(NCT127 자니), 7년(레드벨벳 슬기, 엑소 수호, 트와이스 정연, 윤지성), 6년(블랙핑크 제니, 청하, 에이프릴 채경) 등으로 분포돼 있었음.
- 세 번째 사례는 ‘정산배분’과정에서 불공정계약이 이뤄지고 있음이 드러남. 2014년 11월 TS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B.A.P는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확인 및 불공정 수익배분으로 생긴 3억 원의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함. 2013년 정산명세서 요청에 TS 측은 “적자 누적으로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밝힘. 그리고 2014년 7월 멤버 당 1790만원 씩 정산해줌. 문제는 그 시기 B.A.P의 입장에 따르면 해당 그룹이 벌어들인 수익이 99억 원(3년간)으로 추산된다는 것이었음.
- TS는 끊임없이 정산과 관련해 논란이 벌어진 소속사임. 시크릿 멤버 전효성, 송지은도 마찬가지였음. 전효성은 2017년 9월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함. 그리고 송지은은 그에 앞선 8월 대한상사중재원에 전속계약부존재 중재신청서 제출한 것으로 알려짐. 전효성 측에 따르면, 2015년 600여만 원을 받을 후 단 한 차례의 정산도 없었다고 함. 시크릿 활동 3년 동안 계약금 이외의 활동에 따른 수익을 받지 못했다는 것임. 법원은 1심에서 “TS는 전효성에게 1억30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판결함. 그 후, 2019년 7월에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양측이 이의 제기하지 않음으로서 전속계약 분쟁 종결됨.
- 이 같은 불공정계약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 「대중문화예술인(가수·배우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정, △ 표준계약서 내 <아동·청소년 보

호> 조항 신설,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설명 리플렛 제작, △연습생 표준계약서 및 청소년 부속 합의서 제정 등의 개선이 이뤄지기도 함.

- 국내 대중문화산업은 지난 20여 년간의 상업적 성장은 이뤘지만, 아동·청소년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은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대중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제작현장은 ‘경쟁’과 ‘상업성’에 집중되어 있어, 인권보호 장치 마련에 대한 관심은 미비했었음. 아동·청소년의 대중문화산업으로의 유입은 계속 진행 중이지만, 스스로 경제적 주체로 살아남을 수 있는 청년들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임. 하지만 미디어에서는 오디션 프로그램 제작에 집중하거나, 드라마/영화 등의 제작현장에서 아역 연기자 보호 장치나 제작 스태프들의 교육은 최근에서야 이루어지고 있음.
- 대중문화산업 현장에서 활동하는 아동·청소년 종사자들은 연습생부터 포함하자면 10대부터 20대까지 주를 이룸. 결국, 문화산업 종사자로서의 경험은 동시에 사회제도적 적응의 기간을 학습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옴. 따라서 늘어나는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한 제작현장의 참여를 위해서는 학습권, 수면권의 보장과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인권 보호 장치 마련과 제도적 보완이 절실한 상황임.

4장. 국내외 대중문화산업 관련 법·제도 현황

제1절.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한
국내 법·제도의 현황

제2절.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한
해외 법·제도의 현황

제3절.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제4장. 국내외 대중문화산업 관련 법·제도 현황

제1절.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한 국내 법·제도의 현황

- 대중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은 일을 하고 임금 및 급료 등을 지급 받는 노동자인 동시에 성장 단계를 고려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안녕과 발달을 위해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갖는 존재임.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일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32조는 아동은 위협하거나 교육을 방해하거나 건강이나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모든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정부는 이를 위해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특히 최저 고용 연령, 고용시간 및 고용 조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국제노동기구의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제138호)>은 예술 공연에 참가하는 아동 청소년의 경우, 개별적 허가를 교부함으로써 고용이나 근로 금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에도 노동시간 및 조건을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국내의 법에도 일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권리 보장과 보호를 규정하고 있음. 「헌법」은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아동·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고(동법 제32조 제5항), 「근로기준법」은 아동·청소년 노동자의 근로계약 서면 교부, 근로시간의 제한, 야간·휴일근로의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의 용역제공시간 제한, 금지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위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대중문화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하에서는 대중문화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에 관한 국내 법·제도의 현황과 한계를 살펴보고, 해외 각국의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여 대중문화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함.

1.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의 법적 지위

1) '아동·청소년'의 법적 개념

- 우리 법은 각 개별법의 목적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달리 정의하고 있음. 「민법」은 미성년자를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4조),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동법 제3조 제1호), 「근로기준법」은 연소자를 18세 미만인 사람으로(동법 제66조),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사람으로(동법 제2조 제1항), 「청소년보호법」은 19세 미만인 사람(동법 제2조 제1호)으로,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동법 제3조 제1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사람(동법 제2조 제10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 장에서는 개별법이 정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따르기로 함.

2)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이 체결하는 계약의 성격

- 대중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이 활동과정에서 체결하는 계약은 주로 방송사나 드라마 영화제작사 등과 같은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²²⁾와 맺는 출연 계약이나, 연예기획사 등과 같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²³⁾와 맺는 전속매니지먼트 계약임. 과거에는 가수나 연극자가 직접 방송사나 영화제작사와 출연 계약을 체결하여 출연료를 지급 받는 형태가 다수였다면, 최근에는 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가수나 연극자의 출연협상, 광고료 책정, 공연일정 조정 등 연예 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등, 연예 업무 처리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속 가수나 연극자는 그 계약상의 매니저를 통해서만 연예 활동을 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이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이런 형태의 계약은 스타급 가수나 연극자의 경우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력을 가지고 체결하는 유상 위임 계약으로 볼 수 있지만, 기획업자의 장기적인 투자나 마케팅 전략 등에 의해 그 장래가 좌우되는 위치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기 어렵고 실제로도 기획업자의 절대적인 지휘 감독하에 교육, 훈련을 받고 활동하고 있으므로 이런 경우 위 계약은 고용계약의 성격도 상당하다고 볼 수 있음(이재목, 2011).

22)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 제5호)

23)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하는 자로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 제6호, 제7호)

○ 법원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와 소속 가수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성격에 대하여 고용계약(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도급계약, 위임계약의 법적 성격을 검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음. 가수들이 소속 대중문화예술기획사와 체결한 전속매니지먼트 계약의 효력에 대한 소송에서 법원은 “해당 계약(전속매니지먼트 계약)에 의하면 소속 가수는 활동에 관한 계약이나 약속을 개인적으로 할 수 없고 음반을 제작하거나 방송에 출연하거나 공연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준비과정까지 포함하여 모든 연예활동에 관하여 회사로부터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사에 일정 관리에 관한 전권을 위임한 관계로 근무시간의 제한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공연, 방송출연 등 제반 일정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고(다만 본연의 임무 이외의 요구가 있을 때만 이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다), 회사 이외의 업체를 위해 연예활동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회사로부터 지시받은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기본급이나 고정급은 없고 연예활동으로 창출한 수익 중 일정 비율을 분배받는 방식으로 지급받게 되어 있다. 위와 같이 소속 가수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회사에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노무 자체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고 사업활동으로 인한 위험을 분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획업자와 소속 가수가 체결한 계약은 민법상 고용계약(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도급계약, 위임계약의 법적 성격을 검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음(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15. 선고. 2010카합1245 결정).

○ 출연계약이나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은 기본적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계약의 내용이 정해지는데 과거 여러 아동·청소년 가수와 연기자들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와 체결한 불공정 계약 때문에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당하기도 했음.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산업 분야별로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여 보급하였고, 2014년 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특별히 아동·청소년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음(「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7조 제2항 제8호, 제21조 제1항). 그러나 이러한 법·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관련 법 내용이 추상적이고, 관련 규정 위반 시 이를 제재할 방법도 마땅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하여 보급하고 있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부속합의서>²⁴⁾의 내용도 몇몇 조항 외에는 기획업자가 해야 하는 조치가 구체적이지 않고 상당 부분이 기획업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음. 이러한 현실에서 대중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은 여전히 충분히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활동하고 있음.

24)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0010호 (2019. 03. 04. 제정)

2.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한 국내 법·제도 현황과 한계

- 「근로기준법」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예술인복지법」 등은 대중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이하에서는 위 각 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한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함.

1) 「근로기준법」

-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대중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이 체결한 대중문화예술용역제공계약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무계약이 상당 부분 근로계약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위 계약이 근로계약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계약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아동·청소년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됨. 「근로기준법」은 제5장에 연소자 또는 미성년자에 대한 근로조건과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

(1) 고용 허가 및 계약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5조(취직인허증의 발급 등) ①법 제64조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로 한다. 다만,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취직인허증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은 학교장(의무교육 대상자와 재학 중인 자로 한정한다)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連名)으로 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15세 미만인 사람을 고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13세 이상 15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에 신청하여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동법 제54조). 다만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음. 취직인허가증 신청은 학교장(의무교육 대상자와 재학 중인 자로 한정한다)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해야 함(동법 시행령 제 35조).

제67조(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이 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즉,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음. 다만,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음. 그리고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함(동법 제67조 제1항).

(2) 노동시간 및 휴게시간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② 사용자는 임신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를 있는 경우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노동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음(동법 제69조). 또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없음. 단 본인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있음(동법 제70조 제2항). 고용 최저연령 제한의 예외로서 고용된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노동시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휴게시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아동·청소년의 노동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노동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동법 제54조 제1항).

(3) 임금청구권

제68조(임금의 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음(동법 제68조).

(4)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의 「근로기준법」 적용 가능성

○ 대중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이 방송 또는 영화, 연극, 광고 등의 제작자나 기획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계약에 따라 연기나 공연 등의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 및 급료 등을 지급 받은 경우, 위 계약의 실질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음.²⁵⁾ 위 계약이 근로계약으로 인정된다면 아동·청소년

25)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⑥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⑦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인지, ⑧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⑨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⑩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⑪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고 실시하고 있다.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 이와 같은 판단기준과 개별 사안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되거나 부정되기도 한다. 예컨대 방송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인사규정에 따라 필요한 직책과 호봉 등을 부여받은 주식회사 문화방송 관현악단원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대법원 1997. 12. 26. 97다17575), 유흥업소 출연 가수의 경우, 업무수행이나 업무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공연시간이 일반 근로자의 통상적인 근로시간과 비교하여 극히 짧고, 공연시간 이외에 달리 시간적 구속을 받고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다는 점을 들어 해당 유흥업소 출연 가수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대법원 1994.4.29. 선고, 93누16680 판결). 또한 법원은 지속적으로 해당 광고사나 영화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광고사나 영화사가 기획한 작품마다 개별적인 출연계약을 맺고 일 해운 모델들의 경우, 광고주, 방송국, 영화사와의 관계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9.1.15. 선고, 2008노910판결).

연기자나 가수 등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을 비롯하여 각종 노동관계법을 적용받게 되어 노동자로서 갖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음. 예컨대 최저임금제나 고용보험,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등에 대한 규정에 따라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는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예술공연 참가자’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임을 명시하고 있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4조도 “대중문화예술인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다투어졌던 사례에서 극단이나 관현악단 소속 연기자나 연주자, 연예공급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연을 한 무용수 등이 법원의 판결로 ‘근로자’임이 인정된 사실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대중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님.
- 특히 최근 한국 대중문화산업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K-POP 분야의 경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단순히 매니지먼트나 에이전시의 역할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역할을 넘어 아이돌 가수 지망생들을 발굴하고 훈련, 교육하여, 방송제작사에 직접 출연시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고, 출연의 교섭, 출연료 등 출연조건의 결정, 출연계약의 체결, 출연료의 수금, 홍보

한편, 2018년 대법원은 방송연기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임을 인정하였다. (1) 한국방송공사가 보수를 비롯하여 방송연기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방송연기자가 제공하는 노무인 방송연기는 한국방송공사의 방송사업 수행을 위한 필수적 요소 중 하나이다. 또한 방송연기자는 방송사업자의 방송사업을 통해서만 방송연기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 (3) 방송연기자 업무의 기본적인 내용은 한국방송공사가 지칭하는 역할과 대본 등으로 결정된다. 방송연기자의 연기는 한국방송공사가 결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연출감독이나 현장 진행자의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받으며 진행된다. 연출감독은 대본 연습단계부터 연기자의 연기에 관여하고, 최종적으로 연기의 적합성이나 완성도 등을 판단하여 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연기의 수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한국방송공사가 방송연기자들의 업무수행과정에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방송연기자가 한국방송공사로부터 받는 출연료는 실연료 등 저작권접권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는 방송연기라는 노무제공의 대가에 해당한다. (5) 그동안 한국방송공사는 방송연기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이고 원고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함을 전제로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왔다. 원고도 한국방송공사와 원활하게 단체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해왔다. (6) 방송연기자 중에는 한국방송공사에게 전속된 것으로 보기 어렵거나 그 소득이 한국방송공사로부터 받는 출연료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등 사정을 통해 알 수 있는 방송연기자와 한국방송공사 사이의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보면, 방송연기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을 통해 방송사업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노무제공조건 등을 교섭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크므로, 전속성과 소득 의존성이 강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방송연기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임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입법 취지와 판단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위 판결을 근거로 곧바로 방송연기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아니지만, 위 판결은 방송연기자가 방송사업자와 맺는 계약의 내용과 성격을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해당 계약의 실질이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를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등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며, 소속 아이돌 가수 등은 해당 회사에 일정 기간 전속되어 기획업자의 지휘 감독을 받고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음. 이런 경우 기획업자와 맺는 계약은 고용계약의 성격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음(이재목, 2011).

- 그러나 그동안 대중문화산업 종사자가 맺는 대중문화예술용역제공계약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무계약은 근로계약이라기보다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으로만 보는 경우가 다수여서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으로 규율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음. 그러한 이유로 대중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은 고용관계에 있는 노동자들이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노동조건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활동하고 있음.

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한국 드라마와 영화, K-POP 등 한국 대중문화콘텐츠에 대한 인기가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대중문화산업의 규모도 급격히 성장하였으나, 대중문화산업종사자의 불공정계약 문제, 대중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의 인권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불거지자, 2014년 대중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과 공정한 영업질서의 확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도입되었음.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사업자, 대중문화예술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특히 이 법은 제2장 제2절에 ‘청소년대중문화예술인²⁶⁾의 보호’ 규정을 두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국가와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동법 제19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계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용역제공시간 제한, 금지행위 등을 규정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이 법이 적용되는 대중문화예술인의 범위에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맺은 자”를 명시하여 주로 아동·청소년이 대부분인 ‘연습생’도 이 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하였음.

26) “청소년대중문화예술인”이란 만 19세 미만의 사람으로(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맺은 자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3호, 제10호).

(1) 계약 사항

제7조(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①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1. 계약 기간·갱신·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계약 당사자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
3. 대중문화예술용역의 범위 및 매체에 관한 사항
4. 대중문화예술인의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사항
5. 상표권, 초상권, 콘텐츠 귀속에 관한 사항
6. 수익의 분배에 관한 사항
7.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8.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에 관한 사항
9. 부속 합의에 관한 사항

③ 제8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①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4조(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시정조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제공계약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무계약이 해당 청소년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학습권 등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 대중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은 장시간 강도 높은 촬영이 이어지는 국내 드라마, 영화, 방송 제작 현장에서 학습권, 휴식권, 수면권 등 기본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동법 제7조 제1항 8호)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계약에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음(동법 제21조). 이 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제공계약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무계약이 해당 청소년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학습권 등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동법 제24조). 이러한 규정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권 보장의 필요성을 선언하고 그러한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모호함.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중 주요 내용>

<p>제3조 (청소년의 자유선택권 보장) 대중문화예술인은 기획업자에 대하여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의 자유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p> <p>제4조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 ①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이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p> <p>②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이 의무교육 외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받을 것을 원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제5조 (청소년의 인격권 보장) ①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에게 폭행, 강요, 협박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기획업자 또는 기획업자 소속 임직원(임원은 등기임원을 말하며 직원은 고용형태를 불문한다)이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하여 사회 상규에 위배되는 폭력 또는 성폭력을 행사하거나 학대를 한 경우, 대중문화예술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p>제6조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보장) ①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이 「학교보건법」 제7조의 건강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의 제공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건강검사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이 이에 상응하는 건강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p> <p>② 기획업자는 필요 시 대중문화예술인이 심리 건강에 관한 상담 또는 검사 등을 받도록 조치하는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제7조 (청소년의 수면권 및 휴식권 보장)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이 적절한 휴식과 수면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와 협의하는 등 제반조치를 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p>

○ 또한 이 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동법 제8조), 2019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에 덧붙여 기본권 보장 등 관련 사항을 반영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²⁷⁾를 제정하여 고시하였음. 위 부속

합의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청소년 연습생) 사이에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자유선택권, 학습권, 인격권, 신체적·정신적 건강, 수면권 및 휴식권 보장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규정하고 있는 용역제공시간, 금지행위, 정산금액지급 방법 등을 명시하여 포함하였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이 의무교육 외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교육을 받을 것을 원할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였고(제4조), 인격권 보장을 위하여 폭행, 강요, 협박 등의 금지를 명시하였으며, 기획업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하여 사회 상규에 위배되는 폭력 또는 성폭력을 행사하거나 학대를 한 경우, 대중문화예술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5조)는 점을 명시하였음. 그리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상담 또는 검사 등을 받도록 하고(제6조), 휴식과 수면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포함하였음(제7조).

- 이 부속합의서는 위와 같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관련 규정을 명시하여 계약 체결 당사자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기획업자가 해야 하는 사항과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그러나 몇몇 조항 외에는 여전히 기획업자가 해야 하는 조치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상당 부분이 기획업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기획업자에게 구체적인 조치의무를 부여하기보다 대부분 “협조해야 한다” 또는 “노력해야 한다”는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보장에 대한 기획업자의 책임 정도가 모호함.

(2) 용역제공시간

제22조(15세 미만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①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 시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시간은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으로부터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을 수 없다. 다만,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일의 다음날이 학교의 휴일인 경우에는 대중문화예술인과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일 자정까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다.

③ 국외활동을 위한 이동, 장거리 이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 휴식권, 수면권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3조(15세 이상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①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 시 15세 이상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시간은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15세 이상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및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다.

③ 국외활동을 위한 이동, 장거리 이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 휴식권, 수면권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²⁸⁾시간을 별도로 규정하여 제한하고 있음. 이 법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15세 미만과 15세 이상으로 나누어 용역 제공 시간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15세 미만의 경우, 용역을 제공하는 시간은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는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였음(동법 제22조 제1항). 15세 이상의 경우, 용역 제공 시간은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음(동법 제23조 제1항).

- 또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15세 미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은 용역 제공일의 다음날이

28) "대중문화예술용역"이란 대중문화예술산업에서 연기·무용·연주·가창·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을 말한다(대중문화예술발전법 제2조).

학교의 휴일인 경우, 대중문화예술인과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일 자정까지 용역제공을 할 수 있음(동법 제22조 제2항). 15세 이상의 청소년은 대중문화예술인 및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야간에도 대중문화예술용역 활동을 할 수 있음(동법 제23조 제2항).

- 위 규정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 시간을 제한하여 결과적으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 수면권, 건강권 등의 보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함. 그러나 대중문화예술용역제공이 위 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지더라도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고 적발도 어려워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또한 위 규정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15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근로시간(1일 7시간, 1주 35시간, 1일 1시간, 1주 5시간 연장 가능)보다 장시간 용역 제공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리고 위 규정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연령을 단순히 15세 미만과 이상으로만 나누어 용역 제공 시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영·유아부터 미취학 아동, 및 취학 중인 아동·청소년에게 모두 동일하게 용역 제공 시간을 적용하고 있어 연령에 따른 성장·발달 단계의 특성과 요구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문제도 있음. 또한 이 법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야간에 용역 제공을 할 경우 당사자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시간 강도 높은 촬영이 이어지는 국내 드라마, 영화, 방송 제작 현장에서 당사자들이 야간 촬영 등을 거부하기 어렵고, 이후 다른 기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친권자가 이에 대해 문제제기 하기도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 동의 조항 역시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그리고 15세 이상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에는 다음 날이 학교의 휴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사자 동의에 의하여 제한 없이 야간용역제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15세 이상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이나 수면, 건강 등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간과한 것임.

(3) 금지행위

제20조(청소년 관련 금지행위) ①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하는 경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 가목 및 나목,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및 청소년유해업소 등을 광고하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에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②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과도한 노출행위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규정하여 대중문화예술용역 내용을 제한하고 있음.²⁹⁾ 이 법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과도한 노출행위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동법 제21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³⁰⁾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동법 제20조 제1항). 또한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4호 가목 및 나목³¹⁾,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및

29) 이와 관련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어린이·청소년의 방송 출연과 관련한 보호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5조(출연) ①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그 품성과 정서를 해치는 배역에 출연시키어서는 아니된다.

②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성인대상 프로그램의 방청인으로 동원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그들의 신분으로서 부적합한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흡연·음주하는 장면을 묘사하여서는 아니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⑤방송은 범죄피해를 당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피해상황에 대한 인터뷰를 할 때는 보호자, 법정대리인 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거나 임회하여 이루어지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⑥ 방송은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복장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출연시키거나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3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2, 2013.6.4, 2014.3.24, 2016.1.6, 2016.12.20., 2017.12.12>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청소년유해업소 등을 광고하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게 하여서는 안 되고(동법 제20조 제2항)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에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동법 제20조 제3항).³²⁾ 이 법은 위 각 금지

가. 청소년유해약물

-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 4)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 5)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나. 청소년유해물건

- 1)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2) 청소년에게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3) 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32) 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 7)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9)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10)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 11) 「경륜·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 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행위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을 정하고 있음.

- 위 각 규정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그러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착취나 괴롭힘 등 용역제공현장에서 청소년 대중예술인에게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하는 권익침해 문제를 제한적으로만 다루고 있어, 기본적인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4) 보수청구권

제25조(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보수의 청구) 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은 독자적으로 대중문화예술용역보수를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보수청구권이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에게 있다는 계약이 있더라도 해당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계약 상의 보수지급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독자적으로 대중문화 예술용역에 따른 보수를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나 기획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독자적인 보수청구권이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보수를 청구하는 경우, 보수청구권이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에게 있다는 별도의 계약이 있더라도 제작업자나 기획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보수를 지급해야만 계약상의 보수지급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동법 제25조 제1항, 제2항).
- 그러나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916조), 경우에 따라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자신의 수익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음. 따라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수익의 일정 부분을 친권자조차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 7)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5)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및 운영

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것.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 1명 이상이 이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이수

제2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형법」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3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음을 알고도 그 직을 유지하도록 한 법인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위 등록을 하려는 자에게 경력, 교육이수 등의 자격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동법 제26조). 또한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특정 범죄를 저질렀거나 등록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등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동법 제27조). 이러한 규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자격을 제한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권익침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 다만 이 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결격사유 중 ‘특정한 범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선고를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³³⁾을 제외하고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위 등

33)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록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범죄경력을 확인할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기획업자에게도 그 회사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를 명시하지 않음. 또한 범죄 경력 조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음.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 규정이 작동하도록 하려면 기획업자 및 종사자에 대하여 범죄경력 확인할 의무를 명시하고, 범죄경력조회 등에 관한 사항을 개별 법률이나 이 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같은 조 제6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중 같은 조 제3호의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장(이하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소"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 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 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⑦ 제1항제22호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이 제5항에 따라 취업 중인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경우, 그 취업 중인 자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다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 ⑧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11. 제56조제1항제16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제29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교육)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하여 이 법의 내용과 준수사항,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성매매·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성교육 및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1조(과태료) ③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성교육 및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그리고 이 법은 최근 연예기획사 임직원이 소속 연예인 또는 연습생을 성폭력 하거나 성매매 알선 등을 하는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하여 성교육 및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해당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음(동법 제29조 제4항, 제41조 제3항). 이러한 조치는 대중문화예술인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위 규정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서만 관련 교육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중문화예술인들에 대하여만 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제29조 제1항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교육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3) 「예술인복지법」

- 「예술인복지법」은 예술인³⁴⁾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불공정행위의 금지, 예술인에 대한 복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1)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① 예술인은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공헌을 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② 모든 예술인은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정신적 안정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예술인은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예술 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④ 모든 예술인은 유형·무형의 이익 제공이나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예술인복지법」은 모든 예술인은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하고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정신적 안정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지며,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예술 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유형·무형의 이익 제공이나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선언하고 있음(동법 제3조). 그리고 국가와 지방단체에 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차별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성희롱 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

34) 예술인복지법 제2조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런데 위 증명을 위해서는 예술활동의 증명은 저작물이 있거나 예술활동으로 얻은 소득 또는 이에 준하는 예술활동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연습생은 예술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동법 제4조).

(2) 불공정 행위 금지

제6조의2(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은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2. 예술인에게 적절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
 4.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불공정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행위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삭제 <2019. 12. 3.>
- ⑤ 불공정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기준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재정지원의 중단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2.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
5.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 「예술인복지법」은 예술인의 문화예술기획업자등과의 관계에서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불공정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이 법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예술인에게 적절한 수익 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위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불공정행위의 중지, 계약조

항의 삭제 또는 변경,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동법 제6조의 2). 만약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위 시정조치 명령을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기금 지원이나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동법 제6조의3).

(3)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제7조(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①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제1항에 따라 예술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술인이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예술인복지법」은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예술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예술인이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예술인복지재단이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동법 제7조).
- 이상과 같이 「예술인복지법」은 불공정 행위를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조치를 규정하여 예술인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술인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다만 이 법은 예술활동을 증명한 예술인의 경우만 적용되므로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없는 연습생이나 신인 예술인, 경력이 중단된 예술인은 이 법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고,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예술인에 대한 권리보장 내용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보완이 필요함.

3. 소결

- 대중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법은 「근로기준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예술인복지법」 등으로 규율하고 있음. 그러나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동안 대중문화산업 종사자가 맺는 대중문화예술용역제공계약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무계약은 근로계약이라기보다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으로만 보는 경우가 다수여서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으로 규율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음. 그러한 이유로 대중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은 고용관계에 있는 노동자들이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노동조건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활동하고 있음.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을 위해 청소년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시간을 제한하고 계약에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며, 금지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나 아동학대 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기획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보장의 기초를 마련하였음. 그러나 이 법은 권리 보장을 위한 각 규정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계약 당사자들이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아동·청소년의 연령에 따른 성장·발달 단계나 요구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실질적인 권리보장이 이루어지려면 보다 구체화된 기준이 필요함. 또한 기획업자나 제작업자가 위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을 위한 규정들을 위반하더라도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적발도 어려워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하여 보급하고 있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몇몇 조항 외에는 여전히 기획업자가 해야 하는 조치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상당 부분이 기획업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상황임.
- 또한 「예술인복지법」은 불공정행위 금지와 그에 대한 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예술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예술인이 보다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음. 그러나 이 법은 예술활동을 증명한 예술인의 경우만 적용되므로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없는 연습생이나 신인 예술인, 경력이 중단된 예술인은 이 법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고,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예술인에 대한 권리보장 내용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보완이 필요함.

이처럼 법·제도의 한계로 인하여 대중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은 여전히 기본적인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채 활동하고 있음. 대중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이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기본권을 보장받으며 활동할 수 있으려면 이를 위한 법과 제도가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제2절.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을 위한 해외 법·제도 현황

대중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을 위해 해외 각국의 법·제도는 노동법이나 개별 법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해외 각국의 법·제도는 아동·청소년이 대중문화산업에서 일할 수 있는 연령, 노동시간, 휴식시간, 교육을 위한 조치, 계약 조건, 금지행위 등을 자세히 다루고 있음. 이러한 해외 각국의 관련 법·제도는 국내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유용한 관점을 제공함.

1. 미국

1) 캘리포니아 주

(1) 고용 허가

- 미국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California Labor Code)」과 캘리포니아 규정집(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Title 8 Chapter 6. Division of Labor Standards Enforcement, Subchapter 2. Employment of Minors in the Entertainment Industry)은 대중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의 고용허가 및 고용가능 최저 연령을 규정하고 있음. 위 법과 규정에 따르면 태어난 지 한 달 미만의 아동은 영상 제작에 고용할 수 없으나, 태어난 지 15일이 넘었고 건강하다는 소아과 의사의 서면 증명서가 있어야 대중문화산업에 고용될 수 있음[LC 1308.8 (a)]. 생후 15일부터 18세까지의 아동·청소년이 대중문화산업에 종사하려면 근로기준시행국의 허가가 있어야 함[LC 1308.5, 8 CCR 11751 (b), 11752, 11753 and 11754].

(2) 노동시간 및 휴식시간

-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과 규정은 대중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의 노동시간과 휴식시간, 작업 현장에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을 연령별로 구분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 대중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은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할 수 없으며 일주일에 48시간 이상 일할 수 없음[LC 1308.7, 1392]. 아동·청소년은 오전 5시에서 오후 10시 사이에만 용역 제공을 할 수 있는데 8-18세 아동·청소년은 다음날이 수업일(학교에서 240분 이상 출석을 요하는 경우)아닌 경우, 밤 12시 30분까지 일을 할 수 있음[LC 1308.7]. 다음날이 학교 수업 일

인 경우에는 48시간 전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노동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자정까지 일할 수 있음[LC 1308.5 (a) (4)]. 직간접적으로 이 조항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초래 감수한 자나 그 대리인, 직원, 또는 부모나 보호자는 경범죄로 처벌되며, 500달러 이상, 1,000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카운티 구치소에 60일 이하 수감에 처할 수 있으며, 병과할 수 있음(LC 1308.7(c)).

- 생후 15일 이상 6개월 미만 아동은 최장 2시간 작업현장에 머무를 수 있으며, 오전 9시 30분에서 오전 11시 30분 또는 14시 30분에서 16시 30분 시간대에만 최장 20분간 일할 수 있음 [8 CCR 11764, 11760].
- 생후 6개월 이상 2세 미만 아동은 최장 4시간 작업현장에 머무를 수 있으며, 최장 2시간 일할 수 있음. 위 2시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휴식과 놀이를 위한 시간이어야 함[8 CCR 11760].
- 2세 이상 6세 미만 아동은 최장 6시간 작업현장에 머무를 수 있으며, 최장 3시간 일할 수 있음. 위 3시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휴식과 놀이를 위한 시간이어야 함[8 CCR 11760].
- 6세 이상 9세 미만 아동은 학기 중에는 최장 8시간까지 작업현장에 머무를 수 있으며, 이중 최장 4시간 일할 수 있고, 3시간은 학업 시간, 1시간은 휴식과 놀이 시간이어야 함. 학기 중이 아닌 경우 1시간의 휴식시간을 더하여 노동시간을 6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음[8 CCR 11760].
- 9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학기 중에는 최장 9시간까지 작업현장에 머무를 수 있으며, 이중 최장 5시간 일할 수 있고, 3시간은 학업 시간, 1시간은 휴식과 놀이 시간이어야 함. 학기 중이 아닌 경우 1시간의 휴식시간을 더하여 노동시간을 7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음[8 CCR 11760].
- 1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학기 중에는 최장 10시간까지 작업현장에 머무를 수 있으며, 이중 최장 6시간 일할 수 있고, 3시간은 학업 시간, 1시간은 휴식과 놀이 시간이어야 함. 학기 중이 아닌 경우 1시간의 휴식시간을 더하여 노동시간을 8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음[8 CCR 11760].
- 스튜디오에서 작업현장까지의 모든 이동 시간은 노동시간으로 계산됨. 현장에서 숙박하는 경우에는 숙박 시설에서 작업현장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중 최대 45분은 일반적으로 노동시간으로 간주함. 학교, 집, 스튜디오 간 이동은 노동시간이 아님[8 CCR 11759]. 그리고 아동·청소년이 집에서 스튜디오 직원의 도움을 받아 분장 등을 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시간은 노동시간

으로 간주 됨[8 CCR 11763]. 오전 8시 30분 전에는 아동·청소년의 집에서도 분장이 시작되어서는 안 됨. 아동·청소년은 전날 일을 마친 시간으로부터 12시간이 지난 후에 분장을 시작할 수 있음[8 CCR 11763]. 아동·청소년은 전날 일을 마치고 12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일할 수 있음 [8 CCR 11760 (i)].

- 정규 학교에 다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근로기준시행국의 정책은 아동·청소년이 학교 정규 수업시간에 일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해석되어서는 안 됨. 단 하나의 예외로 학교의 서면 허가가 있는 경우, 정규 학교에 다니는 14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은 정규 수업시간에 연속 2일간 최장 8시간까지 일할 수 있음[8 CCR 11760 (h)].

(3) 교육

- 캘리포니아주 「교육법(California Education Code)」과 규정은 결석 기간 동안 현장교육 의무화, 연령별 1일 학습시간 등을 규정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 학교는 대중문화산업 취업 허가증을 소지 한 학생의 결석을 인정할 수 있음[EC 48225.5]. 대중문화산업 취업 허가증을 소지 아동·청소년은 학년당 5번 결석할 수 있도록 제한되는데, 각 결석은 최대 연속하여 5일간 할 수 있음.
- 대중문화산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학교 출석이 면제된 아동 청소년은 캘리포니아주 규정에 따라 자격을 부여받은 스튜디오 교사(studio teacher)³⁵⁾의 교육을 받아야 함. 대중문화산업에 종사하는 6개월에서 16세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16세에서 18세까지는 필요한 경우) 학기 중에는 10인 이하마다 스튜디오 교사 1인이 있어야 하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또는 방학 중에는 20인 이하마다 스튜디오 교사 1인이 있어야 함[8 CCR 11755.1]. 다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의상, 화장, 미용, 홍보, 오디오 녹음을 하는 경우 해당 활동이 세트에서 진행되지 않고, 학기 중이 아니며, 부모나 보호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에는 최장 1시간까지는 스튜디오 교사가 있을 필요 없음[8 CCR 11762]. 스튜디오 교사의 보수는 고용주가 지급해야 함(8 CCR 11755.4).
- 스튜디오 교사는 가르치는 일 외에도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건강, 안전 및 도덕을 돌볼 책임이 있음. 스튜디오 교사는 아동·청소년의 근무 조건, 물리적인 환경, 정신적·육체적 피로의 징후

35) 스튜디오 교사 자격, 권한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캘리포니아주 규정 8 CCR Section 11755 이하에 규정되어 있다.

등을 알아차려야 함. 스튜디오 교사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건강, 안전 또는 도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환경이나 조건이 현장에 있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참여를 거부할 수 있고, 아동·청소년을 해당 현장에서 내보낼 수 있음(8 CCR 11755.3).

(4) 현장 보호자

- 캘리포니아주 규정은 대중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이 공연장이나 촬영 현장 등 작업 현장에 머물러 있는 동안 현장에서 아동·청소년의 건강과 안전, 복지 등을 돌보고 관리할 수 있는 책임자가 상주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 생후 15일에서 6주 사이의 아동이 작업 현장에 있는 경우, 아동 3인 이하마다 스튜디오 교사 1인과 간호사 1인이 상주해야 함. 생후 6주에서 6개월 사이의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 10인 이하마다 스튜디오 교사 1인과 간호사 1인이 상주해야 함[8 CCR 11755.2, 11760]. 그리고 부모 또는 보호자가 항상 작업 현장에 있어야 함[8 CCR 11757].
- 16세에서 18세의 아동·청소년에게 학교 교육이 필요한 경우, 스튜디오 교사는 수업을 위해서만 현장에 있으면 됨[8 CCR 11760]. 부모나 보호자가 작업현장에 머무를 필요는 없음.

(5) 소득 보호

- 캘리포니아 주 「가족법(California Family Code)」은 대중문화산업 종사하는 아동·청소년의 소득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쿨건법(Coogan's law)³⁶⁾으로 알려진 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산업 종사하는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는 자는 해당 아동·청소년의 총수입의 15%를 신탁계좌에 예치해야 함. 아동·청소년을 고용한 후 180일 이내에 친권자 등이 설정한 신탁계좌에 송금하거나 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에게 지불되는 총 수입액의 15%를 미국 배우 기금(Actors' Fund of America)의 특별 계좌에 예치해야 함. 미국 배우 기금 관리자는 친권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18세에 도달한 해당 아동·청소년에게 통지해야 함(FAM

36)찰리 채플린의 영화 'The Kid'(1921)에 출연했던 아역배우 Jackie Coogan은 21세가 될 때까지 모친과 계부가 자신이 그동안 벌어들였던 수입을 탕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는 당시 캘리포니아주법이 미성년자의 수입을 부모에게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Jackie Coogan은 자신의 모친과 계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소송을 통해 Jackie Coogan이 자신의 수익 일부를 되찾아 올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아역 배우 등의 수입관리에 대해 특별한 신탁제도를 두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Coogan's Law'가 제정되었다(Sandy Hobbs, Jim McKechnie, Michael Lavalette, 「Child Labor: A World History Companion」, ABC-CLIO, 1999, p.43; 남기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입법 개선방안 연구' 홍익법학 제16권 제4호, 2015, 80쪽에서 재인용).

6750-53).

(6) 에이전시(Talent Agencies)

-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은 제2편 제6장 제4절(Talent Agencies)에서 대중문화산업 관련 에이전시의 운영을 규율하고 있음. 에이전시는 소속하여 활동하는 자에게 고용과 관련하여 허위정보를 제공할 수 없고(LC 1700-32), 소속하여 활동하는 자의 건강, 안전,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에 파견할 수 없으며(LC 1700-33), 미성년자를 주점이나 살롱에 파견할 수 없음(LC 1700-34).

2) 뉴욕주

- 미국 뉴욕주 「노동법(New York Consolidated Laws, labor law)」 과 규정(New York Codes, Rules and Regulations, Title 12 Department of Labor, Chapter II Division of Labor Standards, Subchapter E. Employment of Minors, Part 186 Child Performers)은 대중문화 산업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의 고용허가, 노동시간, 휴식시간, 교육, 건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1) 고용 허가

- 대중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은 고용 허가를 받아야 함[LAB 151.1(b)]. 고용허가 신청 시 아동·청소년이 등록한 학교에서 해당 아동이 학업성과를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LAB 151.1(c), 12 CRR-NY 186-3.2]. 생후 15일 미만의 아동은 고용할 수 없음(12 CRR-NY 186-6.1).

(2) 노동시간 및 휴식시간

- 뉴욕주 규정은 대중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의 노동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아래 규정은 라이브 공연을 제외한 경우에 적용됨. 라이브 공연을 하는 아동 청소년의 경우는 별도의 노동시간을 규정함)(12 CRR-NY 186-6.2).

대중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은 오전 5시에서 오후 10시 사이에만 일을 할 수 있는데, 다음날이 수업 일이 아닌 경우 밤 12시 30분까지 일할 수 있음[12 CRR-NY 186-6.2(a)].

- 생후 15일 이상 6개월 미만 아동은 최장 2시간 작업현장에 머무를 수 있고, 하루 작업은 20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12 CRR-NY 186-6.2(f)].
- 생후 6개월 이상 2세 미만 아동은 최장 4시간 작업현장에 머무를 수 있고, 이 중 최장 2시간 일할 수 있음[12 CRR-NY 186-6.2(f)].
- 2세 이상 6세 미만 아동은 최장 6시간 작업현장에 머무를 수 있고, 이 중 최장 3시간 일할 수 있음[12 CRR-NY 186-6.2(f)].
- 6세 이상 9세 미만 아동은 최장 8시간 작업현장에 머무를 수 있고, 학기 중일 때는 이 중 최대 4시간 일할 수 있고, 3시간 이상의 학습, 최장 1시간의 휴식과 놀이 시간이 포함되어야 함. 학기 중이 아닐 때는 8시간 중 최장 6시간 일할 수 있고, 최장 2시간의 휴식 및 여가 시간이 포함되어야 함[12 CRR-NY 186-6.2(h)].
- 9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최장 9시간 동안 작업현장에 머무를 수 있고, 학기 중일 때는 이 중 1일 최장 5시간 일할 수 있고, 3시간 이상의 학습시간, 1시간의 휴식 및 여가 시간이 포함되어야 함. 학기 중이 아닐 때에는 9시간 중 7시간 일할 수 있고, 최장 2시간의 휴식 및 여가 시간이 포함되어야 함[12 CRR-NY 186-6.2(i)].
- 1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최장 10시간 동안 작업현장에 머무를 수 있고, 학기 중일 때는 이 중 최장 6시간 일할 수 있고, 3시간 이상의 학습시간, 1시간의 휴식 및 여가 시간이 포함되어야 함. 학기 중이 아닐 때는 10시간 중 9시간 일할 수 있고, 최장 1시간의 휴식 및 여가 시간이 포함되어야 함[12 CRR-NY 186-6.2(j)].
- 아동·청소년이 학교에 출석하고 난 후 일하는 날에는 이 규정에서 허용되는 최대 일일 노동시간이 3시간 단축됨[12 CRR-NY 186-6.2(e)].
- 14세 이상 18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이 최장 2일 연속으로 학교 수업시간에 일할 수 있도록 학교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아동·청소년은 하루에 8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12 CRR-NY 186-6.2(k)].

- 해당 규정에 명시된 고용 시간제한은 한 고용주가 아니라 아동·청소년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같은 날 두 명 이상의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경우 노동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제한된 노동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부모 또는 보호자는 아동·청소년이 같은 날 두 명 이상의 고용주를 위해 일할 때 자신의 일일 한도 노동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음[12 CRR-NY 186-6.2(l)].
- 고용주는 각 아동·청소년의 노동 시작 및 종료 시간, 제작현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기록해야 함[12 CRR-NY 186-6.2(m)].
- 식사 시간은 각 아동·청소년이 해당 장소에 도착한 지 6시간 이내에 주어져야 하고, 이전 식사로부터 6시간이 지나면 안 됨. 고용주는 아동·청소년이 현장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식사를 위한 적당한 장소를 제공해야 함[12 CRR-NY 186-6.3(c),(d)].
- 고용주는 아동·청소년에게 4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함[12 CRR-NY 186-6.4. (a)]. 또한 아동·청소년이 놀이, 휴식 또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깨끗하며 연령에 적합한 장소를 제공해야 함. 해당 장소에는 유아차, 유아용 침대, 기저귀 및 음식을 포함하여 부모 또는 보호자가 가져온 장비 및 용품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함[12 CRR-NY 186-6.4(c)].

(3) 교육

- 대중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은 뉴욕주 교육법(New York Consolidated Laws, Education) 제65조 제1부에 규정된 의무교육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함. 아동·청소년과 부모 또는 보호자는 학교 교사와 협조하여 위 교육 요건을 충족해야 함. 만약 일정 때문에 위 교육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고용주는 뉴욕주에서 인증을 받았거나 자격을 갖춘 교사를 배치해야 함(LAB 152.1,2).
- 뉴욕주 규정은 대중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이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고용주는 지도, 개인 교습,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함. 이러한 공간은 깨끗하고 조명이 밝아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충분한 작업대, 의자, 장비 및 용품이 있어야 함. 지도, 학습을

위해 따로 마련된 공간은 이러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함. 해당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책임자를 제외하고는 위 공간에 들어갈 수 없음. 또한 홈스쿨링 아동을 지도하는 부모, 보호자 또는 기타 사람에게 적절한 공간이 제공되어야 함[12 CRR-NY 186-5.1 (e)].

- 고용주는 대중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이 교육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근무일 동안 교육을 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함. 교육시간은 하루 평균 3시간 이상이어야 함. 고용주는 아동·청소년이 2일 이상 결석한 경우, 또는 3일 이상 연속 일을 하게 되어 수업을 놓친 경우, 자격증이 있는 교사가 해당 아동·청소년을 지도하도록 해야 함. 해당 교사가 뉴욕 주 및 전국에서 성범죄자로 등록되어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함. 위 교사는 하루 최소 1시간, 평균 3시간 교육을 해야 하며, 20분 미만의 수업은 교육시간으로 계산되지 않음. 고용주는 10인의 아동·청소년 당 교사 1인을 배치해야 함. 고용주는 교사에게 학생의 출석 날짜와 시간, 수업 계획, 성적 등을 포함한 서면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해야 하고, 교사는 위 보고서를 해당 아동·청소년의 부모에게 보내야 함[12 CRR-NY 186-5.1 (e)].

(4) 소득 보호

- 뉴욕주 「재산, 권한, 신탁법(The Estates, Powers and Trust Law)」 과 규정은 대중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의 소득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고용 개시 15일 이내 친권자 및 후견인은 신탁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고용주는 대중문화산업 종사하는 아동·청소년의 소득 중 15%를 아동·청소년의 신탁계좌에 예치해야 함. 고용 개시 후 15일 이내 신탁계좌의 존재를 알리지 않거나 계좌가 개설되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해당 금액을 아동연기자 보유기금에 예치해야 함. 해당 아동·청소년은 18세가 되면 신탁계정을 해지할 수 있음(EPT 7-7.1). 대중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의 신탁 기금 잔고가 \$ 250,000 이상이면, 관리인, 부모 또는 보호자는 신탁회사를 신탁계좌의 관리인으로 지정해야 함(12 CRR-NY 186-3.5).

(5) 현장 보호자

- 16세 미만의 대중문화산업 종사하는 아동·청소년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아동·청소년을 책임지는 사람을 지정해야 함. 부모 또는 보호자가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책임자가 없는 경우, 고용주가 책임자를 지정해야 함. 또한 해당 라이브 극장이나 공연에서 물리적으로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지정한 책임자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동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고용주는 16세 이하의 아동·청소년과 함께 있으면서 안전과 복지를 살펴보는 책임자를

고용해야 함. 그 책임자는 적어도 18세 이상이어야 함(12 CRR-NY 186-3.6, 12 CRR-NY 186-4.6).

- 생후 15일 이상 6주 미만 아동을 고용하는 경우, 아동 3인 이하마다 소아과 진료 경험이 있는 간호사 1인과 책임자 1인이 있어야 함. 6주 이상 6개월 미만 아동을 고용하는 경우 아동 10인 이하마다 간호사 1인과 책임자 1인이 있어야 함(12 CRR-NY 186-4.7).

(6) 건강

- 뉴욕주 「노동법」은 대중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의 섭식장애 예방을 위한 위원회 설치에 대한 법을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는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연기자와 모델 고용 지침에 포함될 섭식장애 예방에 관한 권고사항을 개발하고, 아동·청소년 연기자와 모델, 그들의 부모에게 제공할 자료를 개발함. 당국은 관련 규정을 채택하거나 수정할 때 위 권장사항을 고려해야 함(LAB 154).

(7) 안전

- 고용주는 대중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 및 그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아동·청소년의 건강 또는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와 지침을 제공해야 함. 또한 아동·청소년은 자신의 건강이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교육과 리허설 시간을 제공받아야 함[12 CRR-NY 186-6.5(a)].
- 대중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과 지정된 책임자는 일터에서 연령에 적합하고 적절한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받아야 함. 오리엔테이션 교육에는 공연 장소 및 제작 현장에 대한 건강 및 안전 예방 조치, 무대 뒤 또는 현장의 이동 경로, 아동·청소년을 위한 안전한 대기장소, 제한 구역, 휴게실, 화장실, 화장 공간 등의 위치, 비상시 절차, 위험 상황과 취해야 할 조치를 알릴 사람이 누구인지가 포함되어야 함[12 CRR-NY 186-6.5(b)].
- 생후 6개월 미만의 아동은 한 번에 30초 이상 100피트 촉광 이상의 빛에 노출되어서는 안 되고, 항상 80데시벨 이상의 소리에 노출되어서는 안 되며, 30분 이상 70데시벨 이상의 소리에 노출되어서는 안 됨[12 CRR-NY 186-6.5(d)].

(8) 금지 행위

- 고용주는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 도덕, 교육 또는 복지에 위협하거나 해를 끼칠 수 있는 활동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 됨(12 CRR-NY 186-6.1). 곡예, 말이나 다른 동물에 탑승, 줄타기, 탑승물의 승차, 위법, 부도덕한 행위는 금지됨(ACA 35.07.1).

2. 캐나다

1) 온타리오 주

-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아동 공연자 보호법(Protecting Child Performers Act, 2015)」은 라이브 공연예술산업(연극, 무용, 음악, 오페라 또는 서커스)과 영상 또는 시청각 산업(영화관, 인터넷,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서 재생되거나 VCR or DVD 플레이어에서 재생되는 영상 또는 시청각 산업, 광고 제작 포함)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의 고용허가, 노동시간 등 권리 보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1) 계약

- 고용주는 아동·청소년을 고용하거나 계약하기 전에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아동·청소년이 수행할 역할에 대한 설명, 리허설 및 공연/촬영 장소 및 시간, 아동이 리허설이나 공연/촬영 중에 노출될 수 있는 건강이나 안전 위험과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야 할 예방 조치, 아동·청소년이 수행할 특수 기술, 노출될 수 있는 특수효과에 대해 공개하는 회의를 개최해야 함. 당사자인 아동·청소년도 위 회의에 참석할 수 있음(제4조 제1항, 제2항).
- 고용주는 반드시 서면으로 고용계약이나 용역제공계약을 해야 하고(제5조), 제작이 시작되기 전에 아동에게 대본의 일부를 제공해야 함(제4조).

(2) 교육

- 고용주는 규정된 요건에 따라 의무 취학 연령의 아동이 과외수업(tutoring)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 중에 시간을 배정해야 함(제7조).

(3) 노동시간 및 휴식시간

- 영상 또는 시청각 산업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은 적어도 생후 15일 이상이어야 하고(제10조)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할 수 없음(제11조 제1항). 다만, 아동·청소년이 노조 또는 전문협회의 회원이고, 노조 또는 협회가 아동을 대신하여 협상한 경우, 단체협약에 초과근무 비율에 대한 규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초과근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2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하루에 2시간, 16세, 17세 아동·청소년은 4시간 초과근무가 허용될

수 있음(제1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위 총 시간에 식사 시간은 제외되고, 휴식시간과 과외수업시간은 포함됨(제11조 제6항).

- 또한 고용주는 아동·청소년에게 48시간 전에 미리 알린 경우에만 오후 7시 이후에 작업을 요구할 수 있음(제11조 제4항). 그리고 고용주는 아동·청소년에게 적어도 하루에 연속하여 12시간의 휴식을 보장해야 하고, 일주일에 연속하여 48시간의 휴일을 보장해야 함(제11조 제5항).
- 3세 미만 아동은 연속하여 20분 이상의 휴식이 주어진 후에 연속하여 15분까지 촬영할 수 있고, 3세 이상 6세 미만 아동은 15분 이상의 휴식이 주어진 후에 연속하여 30분까지 촬영할 수 있으며, 6세 이상 12세 미만 아동은 연속하여 10분 이상의 휴식이 주어진 후에 연속하여 45분까지 촬영할 수 있고, 12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연속하여 10분 이상의 휴식이 주어진 후에 연속하여 60분까지 촬영할 수 있고, 16세, 17세 아동·청소년은 연속하여 5분 이상의 휴식이 주어진 후에 연속하여 60분까지 촬영할 수 있음(제12조).
- 고용주는 아동·청소년이 식사를 하지 않고 연속으로 5시간 이상 일하게 해서는 안 되고, 아동·청소년의 식사 시간은 30분 동안 지속되어야 함(제13조).
- 라이브 공연예술산업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은 생후 2년 6개월 이하인 경우 고용되거나 용역 제공 계약을 해서는 안 됨(제17조). 리허설 단계(리허설 또는 연습기간)에서 생후 2년 6개월 이상 6세 미만 아동은 1일 최장 4시간, 1주 최장 16시간 활동할 수 있고, 6세이상 아동·청소년은 1일 최장 8시간 1주 최장 42시간 참여할 수 있음. 또한 공연 단계에서는 1주에 최대 2일 동안 최장 8시간 참여할 수 있고, 그 주의 다른 날에는 최장 4시간이며, 주당 최장 32시간 참여할 수 있음. 고용주는 리허설 단계와 공연단계에서 아동·청소년에게 1일에 연속하여 12시간의 휴식시간과 1주에 연속하여 36시간의 휴일을 부여해야 함(제18조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8항). 위 총 시간에 휴식시간과 과외수업시간이 포함됨(제18조 제9항).
- 고용주는 아동·청소년이 연속 2시간 공연에 참여한 경우 10분 휴식을 부여해야 하고, 리허설 단계에서 최소 90분의 식사 시간을 제공해야 하며, 식사 시간 없이 연속 4시간 일하지 않도록 해야 함(제19조 제1항, 제2항).

(4) 현장 보호자

- 영상 또는 시청각 산업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을 위해 승인된 보호자인 ‘샤프롱(chaperone)’은

적어도 18세 이상이고 아동·청소년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서면으로 지정한 사람이어야 하며, 해당 아동·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용역제공 계약을 한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해당 아동·청소년의 교사가 아니어야 함(제13조 제3항).

- 고용주는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경우 부모, 보호자, 또는 샤프롱이 현장에 있어야 하고, 항상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리고 3세 미만의 아동이 2인 이상 동시에 같은 작업 현장에 있는 경우, 고용주는 각 아동마다 동반하는 부모, 보호자 또는 자격있는 샤프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함(제14조 제1항, 제2항).
- 라이브 공연예술산업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도 샤프롱을 지정할 수 있음. 아동·청소년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자녀가 일하고 있는 프로덕션이나 프로젝트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샤프롱이 될 수 있음. 샤프롱은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해당 아동·청소년과 같은 프로덕션이나 프로젝트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하며, 해당 아동·청소년의 과외교사가 아니어야 함(제20조 제1항, 제2항).

(5) 현장 코디네이터

- 영상 또는 시청각 산업의 고용주는 각 작업현장에서 아동·청소년의 복지, 안전, 편안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는 책임을 지는 코디네이터를 지정해야 함. 아동·청소년이 6인 이상 작업 현장에 있는 경우, 위 코디네이터는 아동·청소년의 과외 교사 역할을 할 수 없음(제15조 제1항, 제2항).
- 라이브 공연예술산업의 고용주도 아동·청소년이 리허설이나 공연을 하지 않는 동안 모니터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child attendants)을 지정해야 함. 이 사람은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아동·청소년과 같은 프로덕션이나 프로젝트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하며, 해당 아동·청소년의 과외교사가 아니어야 함. 그리고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함(제21조 제1항, 제2항).
- 고용주는 현장에 있는 최연소 아동이 6세 미만인 경우, 아동 6인마다 최소 1인의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고, 현장에 있는 최연소 아동이 6세 이상 10세 미만인 경우, 아동 10인마다 최소 1인의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현장에 있는 최연소 아동이 10세 이상인 경우, 아동 15인마다 최소 1인의 책임자를 지정해야 함(제21조 제3항).

(6) 건강, 안전

- 고용주는 산업안전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과 부모, 보호자에게 건강 및 안전 예방조치, 비상절차, 제한구역, 안전한 대기장소, 화장실, 화장 공간, 작업과 관련된 기타 영역의 위치, 안전하지 않은 작업 조건을 식별하고 보고하는 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함. 위 교육은 아동·청소년 발달단계에 적합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제23조 제1항, 제2항).
- 그리고 고용주는 아동·청소년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건강한 간식과 식사를 제공해야 하며, 위 식사가 아동·청소년의 요구(특별식, 알레르기 등)를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함(제25조 제1항, 제2항).

(7) 소득 보호

- 아동·청소년에게 \$ 2,000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고용주는 해당 수입의 25%를 규정에 명시된 사람에게 송금해야 하며 위 수입은 아동·청소년이 18세가 될 때까지 규정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신탁에 보관됨(제8조 제1항).

3. 프랑스

프랑스 「노동법(Code du travail)」은 대중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허가요건, 노동시간, 소득보호, 금지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

1) 고용 허가

(1) 개별 허가

-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행정기관의 개별 허가 없이는 대중문화산업에 종사할 수 없음(L7124-1). 13세 이상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함(L7124-2).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선발, 계약, 고용 또는 제작하기를 원하는 자는 허가 신청을 제출해야 함(R7124-1). 위 허가신청에는 아동·청소년의 주민등록 입증 문서, 아동·청소년이 맡은 역할, 용역의 어려움과 도덕성을 평가할 수 있는 문서, 아동·청소년 고용 조건, 보수 및 수업 출석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R7124-2). 그리고 당국은 아동·청소년이 맡은 역할, 용역 내용 등의 어려움과 도덕성을 고려해볼 때, 아동·청소년이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아동·청소년의 연령, 교육의 의무 및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이 제안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심사, 평가함. 이 때 아동·청소년의 건강검진은 소아과의 또는 일반의가 실시함. 또한 당국은 아동·청소년의 고용조건, 즉 근무 일정, 특히 같은 주 내에 저녁 공연이나 여러 차례의 공연 또는 대회에 참여하는지 등 공연 또는 대회의 빈도, 보수, 휴가 및 휴게시간, 위생 안전, 건강과 도덕성의 보호 등을 평가함. 또한 아동·청소년의 학교 출석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가족 또는 보호자가 휴게시간과 이동 중에 효과적인 감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함(R7124-5).

(2) 아동·청소년 고용에 대한 인가를 받은 에이전시

- 아동·청소년 고용에 대한 인가를 받은 에이전시에 아동·청소년이 고용된 경우에는 개별 허가가 필요하지 않음. 이 경우 위 에이전시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함(L7124-4,5). 위 에이전시가 인가 신청 시 에이전시는 에이전시의 임원 관리자의 출생증명서, 에이전시의 비용으로 아동·청소년의 건강진단을 한다는 약정 증명서, 에이전시의 임원, 동업자 및 관리자의 도덕성, 능력 및 경력, 에이전시의 재정, 운영 상황, 에이전시가 아동과의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여건을 평가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함(R7124-8). 인가 또는 인가 갱신은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안전에 대한 보장이 충족될 때만 가능함(R7124-11).

- 아동·청소년 고용에 대한 인가를 받은 에이전시는 에이전시의 운영, 아동·청소년의 건강 검진, 이용자의 선발절차, 아동·청소년의 이동시간 및 대기시간을 포함한 이용자 제공 조건, 최대 고용시간, 보수조건을 명시한 설명서를 아동·청소년과 법정대리인에게 전달해야 함(R7124-15).

2) 노동시간 및 휴식시간

- 미취학 아동은 일요일을 제외한 일주일에 이틀만 일할 수 있고, 학기 중인 취학 아동·청소년은 일요일을 제외한 주간 휴게일에만 일할 수 있음(L7124-7,8).
- 생후 6개월까지의 아동은 1주에 최장 1시간, 하루에 1시간, 연속하여 30분 이하로 일할 수 있음. 생후 6개월 이상 3세 미만 아동은 1주 최장 2시간, 하루에 1시간, 연속하여 30분 이하로 일할 수 있고, 3세 이상 6세 미만 아동은 1주 최장 3시간, 하루에 2시간, 연속하여 1시간 이하로 일할 수 있음(R7124-27).
- 6세 이상 12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학기 중에는 1주에 최장 4시간 30분, 하루에 3시간, 연속하여 1시간 30분 이하로 일할 수 있고, 방학 중에는 1주에 최장 12시간, 하루에 6시간, 연속하여 2시간 이하로 일할 수 있음.
- 12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학기 중에는 1주에 최장 6시간, 하루에 4시간, 연속하여 2시간 이하로 일할 수 있고, 방학 중에는 12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1주에 최장 15시간, 하루에 7시간, 연속하여 3시간 이하로 일할 수 있고, 14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1주에 최장 18시간, 하루에 7시간, 연속하여 3시간 이하로 일할 수 있음(R7124-29, 30).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야간 근무는 24시까지만 허가됨(R7124-30-1).

3) 소득 보호

- 아동·청소년이 수령한 보수 중 일부는 법정대리인의 재량에 이양될 수 있음(보수 중 법정대리인에 이양된 액수를 제외한) 초과금은 위탁금을 구성하는데, 예금공탁공고³⁷⁾에 납부되고 아동·청소년이 성년이 될 때까지 예금공탁공고에서 관리 됨. 출금은 긴급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허가될 수 있으나, 이는 아동·청소년의 이익을 위해서만 허가될 수 있음(L7124-9, R7124-34).

37) Caisse des Dépôts et Consignations, '예금 및 위탁 기금'이라고도 함

4) 금지행위

-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위험한 신체 활동 또는 탈구 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생명, 건강 또는 도덕에 유해한 업무를 위임하는 것은 금지되고, 부모를 제외한 곡예사, 동물 조련사, 서커스 또는 이동유원지 감독의 직업에 종사하는 자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해당 공연에 고용하는 것은 금지됨. 또한 위와 같은 활동과 직업에 종사하는 부모가 해당 공연에 12세 미만의 자녀를 고용하는 것도 금지됨. 그리고 총 방학 기간의 절반 이상의 일 수 동안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는 것은 금지됨(L7124-16).

4. 영국

영국 「1963 아동·청소년법(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3)」, 「1933 아동·청소년법(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33)」과 아동(공연 및 활동)규정[the children(performances and activities) (england) regulations 2014, part2]은 대중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의 고용허가, 노동시간, 휴식시간, 교육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1) 고용 허가

- 위 아동·청소년법과 아동(공연 및 활동)규정은 방송이나 공연의 제작 책임자 등이 관할 당국의 허가를 받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공연 및 활동 기간과 시간, 결석일수, 학교 및 개인 교사에 대한 정보, 샤프롱에 대한 정보 등을 제출해야 함.
- 관할 당국은 공연 및 활동을 이유로 아동·청소년의 교육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 허가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조치가 있다는 점, 아동·청소년이 교육을 받을 장소가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 승인 또는 확인되지 않으면 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됨[아동(공연 및 활동)규정 제13조].

2) 노동시간 및 휴식시간

- 위 규정은 아동·청소년의 연령별로 작업 현장 상주 시각 및 노동시간, 식사, 휴식시간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 공연에 참여하는 아동·청소년은 공연 당일 또는 다음 날에 다른 일에 고용되어서는 안 되며(제20조), 다음 공연(리허설)까지 최소 12시간의 휴식을 가져야 함(제24조). 또한 아동·청소년은 연속하여 6일 이상 공연 및 리허설에 참여할 수 없음(제26조).
- 5세 미만 아동이 공연 또는 리허설 장소에 있을 수 있는 시간대는 7시에서 22시까지이고, 5세 이상 아동은 7시에서 23시임(제21조). 다만 허가 당국이 허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7시 이전 또는 22시, 23시 이후에 공연(리허설)에 참여할 수 있음(제28조).

- 5세 미만 아동은 1일 최대 5시간까지 공연(리허설) 장소에 있을 수 있고, 최대 2시간까지 공연 및 리허설에 참여할 수 있으며, 휴식 없는 연속 공연은 최장 30분 동안 할 수 있음(제22조). 5세 미만 아동이 연속하여 4시간 이상 공연(리허설) 장소에 있는 경우 적어도 45분의 식사시간이 있어야 하고, 휴식시간은 식사, 휴식, 교육 및 여가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적어도 15분 동안 연속하여 주어져야 함(제23조).
- 5세 이상 9세 미만 아동은 1일 최장 8시간까지 공연(리허설) 장소에 있을 수 있고, 최장 3시간까지 공연 및 리허설에 참여할 수 있으며, 휴식 없는 연속 공연은 최장 2시간 30분 동안 할 수 있음(제22조).
- 9세 이상 아동·청소년은 1일 최대 9시간 30분까지 공연(리허설) 장소에 있을 수 있고, 최장 5시간까지 공연 및 리허설에 참여할 수 있으며, 휴식 없는 연속 공연은 최장 2시간 30분 동안 할 수 있음(제22조). 5세이상 아동이 연속하여 4시간에서 8시간 동안 공연(리허설) 장소에 있는 경우 적어도 45분의 식사시간과, 15분의 휴식시간이 주어져야 함. 5세 이상 아동이 연속하여 8시간 동안 공연(리허설)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15분의 휴식시간이 있어야 함(제23조).

3) 교육

- 관할 당국은 아동·청소년을 위한 개인 교사(private teacher)를 승인할 수 있음. 다만 해당 교육 과정이 만족스러워야 하고 개인 교사가 적합한 사람이어야 하며, 개인교사가 한 번에 6인 이상을 가르쳐서는 안 됨(제13조).

4) 현장 보호자

- 아동·청소년이 공연 또는 리허설에 참여하는 동안 보호자인 샤프롱(Chaperones)은 아동·청소년을 돌보고 관리해야 함. 샤프롱은 관할 당국으로부터 자격을 승인받아야 하며, 아동·청소년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적절하게 보살피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함(제15조 제4항).
- 샤프롱은 아동·청소년이 공연 또는 리허설에 참여하는 동안 아동·청소년을 돌보고, 보호, 지원, 웰빙을 촉진함. 일반적으로 부모나 교사가 해당 아동·청소년을 보살피는 경우에는 샤프롱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음(제15조 제1항, 제2항). 샤프롱이 담당하는 아동의 수는 한 번에 12명을 넘어서는 안 되고, 샤프롱이 해당 아동의 개인 교사인 경우에는 3명을 넘어서는 안 됨(제15조

제3항).

- 샤프롱은 자신이 돌보는 아동·청소년에게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부모와 당국에 즉시 통지해야 함(제15조 제5항).
- 샤프롱은 아동·청소년이 작업현장에 머물 수 있는 시간에서 1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하여 공연 또는 리허설에 참여하도록 허용할 수 있음. 이 경우 방송이나 공연의 제작 책임자 등은 관할 당국에 이를 알리고 이유를 제출해야 함(제29조 제1, 2항).

5) 안전

- 관할 당국은 만약 아동·청소년이 공연 및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평소와 다른 장소에서 거주해야 할 경우, 그 장소가 아동·청소년에게 적합한지 여부(교통수단 제공 여부, 적절한 식사 제공 여부 등)를 확인하고 승인해야 함(제16조).
- 관할 당국은 아동·청소년이 공연 및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가 적합한지 여부(식사 제공에 필요한 조치, 옷을 갈아입을 때 필요한 조치, 휴식이나 여가를 위한 적절한 조치, 충분한 화장실 등)를 확인하고 승인해야 함(제17조).
- 방송이나 공연의 제작책임자 등은 공연이나 리허설이 끝난 후 아동·청소년이 집이나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함(제18조).

6) 금지 행위

- 아동·청소년법은 16세 미만의 사람이 생명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공연이나 훈련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함(1933 아동·청소년법, 23조).

5. 독일

아동·청소년의 노동조건 전반을 규율하는 독일 「연소근로자보호법(Gesetz zum Schutz der arbeitenden Jugend)」³⁸⁾은 대중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³⁹⁾의 고용허가, 노동시간, 휴식시간, 건강검진 등을 규정하고 있음.

1) 고용 허가

- 15세 미만 아동을 고용하는 것은 금지되나, 아동이 연극공연, 음악연주, 및 기타 공연, 광고행사 및 방송촬영(라디오 및 텔레비전), 영화 및 사진촬영에 참여하는 경우 감독행정관청은 예외적으로 승인할 수 있음(제5조 제1항, 제5항). 감독행정관청은 ①양육권자가 서면으로 근로제공에 동의한 경우, ②감독행정관청에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근로제공에 대한 건강상의 이상이 없다는 의료증명서가 제출된 경우, ③ 생명 및 건강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대비와 조치, 육체적 또는 정신적 성장에 대한 침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취해진 경우, ④ 근로 제공에 있어 아동의 지도 및 감독이 확보된 경우, ⑤ 근로제공 이후 최소 14시간 연속한 자유시간이 준수되는 경우, ⑥ 진학에 저해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관할 청소년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근로제공을 승인할 수 있음(제6조 제2항). 감독행정관청은 아동이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날, 시간의 길이, 시간대, 휴게시간의 길이 및 시점,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에 머물 수 있는 일 최장 시간을 정하고, 이에 대한 감독행정관청의 결정은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됨. 사용자는 승인 결정의 수령 이후에 아동을 근로시킬 수 있음(제6조 제3항, 제4항).

2) 노동시간 및 휴게시간

- 6세 이상 15세 미만의 아동이 연극 공연에 참여하는 경우 10시부터 23시 사이에 최대 4시간까지 활동할 수 있음. 음악연주, 및 기타 공연, 광고행사 및 방송촬영(라디오 및 텔레비전), 영화 및 사진촬영에 참여하는 경우, 3세 이상 6세 미만 아동은 8시부터 17시 사이에 하루 최대 2시간까지, 6세 이상 15세 미만 아동은 8시부터 22시 사이에 하루 최대 3시간까지 활동할 수 있음(제6조 제1항).
- 15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이 음악연주, 및 기타 공연, 광고행사 및 방송촬영(라디오 및 텔레

38) 이하 「연소근로자보호법」의 내용은 한국노동연구원이 2013년 번역하여 발간한 「독일노동법진」을 참고 하였다.
39) 이 법에서 “아동”은 15세 미만자, “청소년”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인자를 말한다(제2조 제1항, 제2항).

비전), 영화 및 사진촬영에 참여하는 경우 23시까지 활동할 수 있음. 1일 근로시간의 종료 후 최소 14시간 연속한 자유시간이 경과하기 전 근로를 제공해서는 안 됨(제14조 제7항). 15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은 하루 8시간 1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해서는 안 됨(제8조 제1항). 이때 4시간 30분 초과 6시간미만 근로시간의 경우 30분, 6시간 초과한 근로시간의 경우 60분의 휴게 시간이 보장되어야 함. 이때 최소 15분간 근로가 중단된 경우에만 휴게로 봄(제11조 제1항). 위 작업에 참여하는 15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은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근로 제공이 가능함(제16조 제2항, 제17조 제2항).

3) 금지 행위

- 15세 미만 아동은 카바레공연장, 무도장 및 이와 유사한 사업, 유원지, 시장 또는 연시(年市) 및 이와 유사한 행사, 공연 또는 전시에서의 행사에 근로를 제공해서는 안 됨(제6조 제1항). 또한 청소년은 청소년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을 초과하는 업무, 청소년의 도덕적 가치판단기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에 노출되는 업무 등에 근로를 제공해서는 안 됨(제22조 제1항).

4) 안전

- 사용자는 기계와 작업도구를 포함한 작업장의 설치 및 유지, 또한 근로제공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함에 있어서 사용자는 청소년의 건강 또는 육체적·정신적 성장에 대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방지대책 및 조치를 취해야 함. 이에 있어서는 청소년의 안전의식의 부족, 경험부족 또는 발육상태가 고려되어야 하며, 산업재해 및 근로자의 건강상의 위험을 막기 위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술상 또는 의료상의 조치 및 기타 노동학술상 확립된 이론이 준수되어야 함(제28조).
- 또한 사용자는 근로제공의 개시 전 또는 근로 조건의 중대한 변경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근로제공시 처할 수 있는 재해 또는 건강상의 위험 및 이러한 위험을 막기 위한 시설 및 조치에 대해 알려주어야 함(제29조 제1항). 또한 안전교육은 최소 6개월에 1회, 적절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제29조 제2항).

5) 건강

- 청소년이 근로를 제공하려면 건강검진 증명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하고(제32조 제1항), 일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나면 다시 건강검진을 받아 결과를 제출해야 함. 만약 최초 근로제공이 개시된 후 14개월 이후에도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청소년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음(제33조 제1항, 제3항). 위 건강검진은 청소년의 건강·발육상태 및 신체적 특성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또한 근로제공 개시 후 이루어지는 건강검진은 근로제공이 청소년의 건강 및 발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도 이루어짐. 위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의사는 청소년의 병력을 고려하여 특정 업무의 수행 또는 특정 시간대의 근로제공 때문에 청소년의 건강 또는 발육이 위협하게 되는지, 건강에 도움이 되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지, 특별 건강 검진이 필요한지를 판단해야 하고(제37조 제1항, 제2항), 이에 대해 양육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또한 의사는 건강검진이 실시되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사용자를 위해 정해진 양식의 진단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또한 청소년의 건강 또는 발육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기재해야 함(제39조 제1항, 제2항). 의사의 진단서에 청소년의 건강 또는 발육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업무가 기재된 때에는 청소년은 그러한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됨(제40조 제1항).

6. 일본

일본 「노동기준법(労働基準法)」과 「연소자노동기준규칙(年少者労働基準規則)」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고용허가, 노동시간 및 휴식시간, 임금청구권, 금지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

1) 고용 허가

- 「노동기준법」은 원칙적으로 15세가 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는 것을 금지함(제56조 제1항). 다만, 아동·청소년의 건강 및 복지에 유해하지 않고 그 노동이 가벼운 것에 대해서는 행정 관청의 허가를 받아 만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수업시간 외에 고용할 수 있으며, 영화 제작 또는 연극 사업의 경우에는 만 13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을 수업시간 외에 고용할 수 있음(제56조 제2항).
- 「연소자노동기준규칙」은 아동·청소년을 고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는 고용하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의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 증명서, 그 사람의 수학에 지장이 없는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인증서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용 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노동 기준 감독 서장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1조). 그리고 사용자는 고용하는 아동·청소년이 학습에 지장이 없음을 증명하는 학교장의 증명서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함(제57조 제2항).

2) 노동시간 및 휴식시간

-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수업시간을 합하여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고, 1일 수업시간을 통산하여 7시간을 초과하여 일해서는 안 됨(제60조 제2항). 단 15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수업시간을 합하여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일 노동시간을 4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경우에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10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음(제60조 제3항).
-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야간근로가 금지됨(제61조 제1항). 다만 후생노동대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 또는 기간을 한정하여 오후 11시 및 오전 6시에 일할 수 있음(제61조 제2항). 그리고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휴일근로가 금지됨(제60조 제1항에서 휴일근로 규정인 제36조를 적용 제외함).

노동시간이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45분,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시간의 휴게시간이 노동시간 도중에 주어져야 함(제34조).

3) 교육

- 사용자는 아동·청소년이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하도록 노력해야 함(「근로청소년복지법」 제12조).

4) 임금청구권

-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임금을 대신하여 수령해서는 안 됨(제59조).

5) 금지행위

-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공중의 오락을 목적으로 곡마 또는 곡예를 하는 업무, 집집마다 또는 도로, 기타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가요를 비롯한 기타 연기를 하는 업무는 금지됨 「연소자노동 기준규칙」(제19조 제1항 제2항).

7. 소결

- 이상과 같이 해외 각국의 법·제도는 대중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해 노동, 학습, 건강, 안전, 복지 등의 분야에서 다각도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해외 각국의 법·제도에서 특히 주목할만한 부분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비교적 엄격한 고용 허가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각자 다르지만 해외 각국의 법·제도는 진입 단계에서부터 아동·청소년의 연령, 건강상태, 고용조건, 학습상태 등을 심사하여 아동·청소년의 발달과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 둘째, 아동·청소년의 연령, 발달 단계, 학기 중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노동/용역제공시간을 상세하게 나누어 규정하고 있음. 해외 각국의 법·제도는 촬영 현장에 머무를 수 있는 최장 시간, 연속하여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고, 휴식시간, 식사 시간, 업무 종료 후 다음날 업무 시작 전까지의 보장되어야 하는 휴식시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대중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이 학습권, 건강권, 휴식권, 수면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 있음.
- 셋째, 아동·청소년이 학습을 유지·보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해외 각국의 법·제도는 대중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이 촬영이나 공연 등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방해받지 않도록 고용 허가 단계에서 교육상태나 향후 학습계획을 심사하기도 하고, 수업시간에 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결석이 가능한 날짜를 제한하기도 함. 또한 촬영 또는 공연 때문에 아동·청소년이 학교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현장에 교사를 배치하여 학업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
- 넷째,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살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해외 각국의 법·제도는 대중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이 촬영이나 공연 등이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건강을 살피고 악화를 방지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아동·청소년이 건강검진 진단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일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동·청소년 연기자와 모델의 섭식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지침에 이와 관련한 권고사항을 마련하기도 함.
- 다섯째, 아동·청소년이 촬영현장이나 공연장에서 다치거나 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산업안전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음. 해외 각국의 법·제도는 아동·청소년과 부모, 보호자에게 산업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거나, 안전한 대기장소를 마련하도록 하여 안전하게 일하고 휴식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 여섯째, 아동·청소년의 인권, 안전, 복지를 위한 현장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있음. 해외 각국의 법·제도는 공연장이나 촬영 현장에서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건강, 복지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현장 코디네이터나 보호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처럼 해외 각국의 법·제도는 아동·청소년의 특성과 현황을 고려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권리 보장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국내 법을 보완, 개선하는데 유용한 관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제3절.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대중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들이 활동과정 전반에서 겪는 권리 침해 문제가 심각하지만 이를 규율하는 법·제도가 미비하고 정책적 노력도 충분하지 않아 상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음. 대중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이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지 않는 환경에서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안녕과 발달을 위해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으며 활동할 수 있으려면 대중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이 처한 현실과 특성을 반영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⁴⁰⁾

1. 노동/용역제공시간 세분화

- 장시간 고강도 작업이 당연시되는 대중문화산업 현장을 고려해보았을 때,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의 노동/용역제공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건강권, 학습권, 수면권, 휴식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임.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과 「근로기준법」은 노동/용역제공시간을 발달단계나 연령, 취학 여부, 학기 중/휴일 여부 등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시간이나 체력, 집중력 등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나누어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위 규정은 연령, 발달 단계, 취학 여부, 학기 중인지 여부 등 고려하여 노동/용역제공시간을 세분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아동·청소년의 건강권, 학습권, 수면권, 휴식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야간노동/용역 제공은 제한되어야 함. 한편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40) 정부는 2020. 9. 28. 관계 부처 합동으로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발표하였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 및 민간 협회·단체 협의를 통해 마련한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연예기획사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데뷔 등을 빌미로 한 금품 요구 등 불법행위를 근절한다. 이를 위해 대중문화예술정보시스템(ent.kocca.kr)에 연예인 지망생이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예시: 소속 연예인 등)하고, 매년 등록 기획사를 일제 정비하고 그간 실태 파악이 어려웠던 연예학원(학원형 기획사 등)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2년 주기) 대상에 포함하여 조사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②투명하고 공정한 오디션 관행을 정립하고 표준계약서 활용도를 높여 불공정 계약 체결을 방지한다. 이를 위해 관련 협회·단체 누리집 등을 통해 회원사의 오디션 정보를 공개하고, 민간 차원의 ‘오디션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오디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방송출연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방송출연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그 외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도 현실을 반영해 3년 주기로 재검토 및 보완함으로써 실제 활용도를 높인다. ③장시간 노동·야간촬영 등 휴식권·학습권 침해행위 및 성희롱·성폭행 등 불법행위로부터 미성년 연예인 보호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대중문화산업법」에서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미성년 연예인의 휴식권·학습권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출연 미성년 연예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 방송사를 대상으로 한 ‘방송출연 표준제작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연령별 용역제공시간 등 법상 제재규정이 없는 미성년 연예인 보호조항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고, 성범죄 등 피해 신고시 미성년 연예인의 신고를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④ 미성년 연예인 및 연습생이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조기 사회활동에 따른 스트레스, 데뷔 포기 고민 등에 대한 심리 상담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심리·진로상담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100명→350명)하고, 전문성과 효과성을 높인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9. 28자 보도자료 “미성년 연예인 등(연습생 및 지망생 포함)에 대한 권익보호 강화한다”).

용역제공시간 제한을 위반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하지 않아 해당 조항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위반 시 제재방법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

- 교육은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과정이지만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따라서 아동·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방해받지 않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우선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노동/용역제공시간을 제한하여 아동·청소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과 체력, 집중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학교에서 총 결석일수를 제한하는 등으로 출석을 유도하거나 아동·청소년이 공연이나 촬영 일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보충수업이나 온라인 수업 등을 통하여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3.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제도 개선

- 대중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이 영화, 방송 등 제작현장, 연습 과정에서 제작업자 또는 기획업자 등으로부터 폭언, 폭행,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등 인권을 침해당하는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 대한 인권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을 등록하려는 자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교육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데(동법 제26조 제1항,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9조), 해당 교육 프로그램에 아동·청소년에 관한 인권 교육,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동법 제27조). 그러나 위 법 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외하고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위 등록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범죄경력을 확인할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기획업자에게도 그 회사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범죄경력을 확인할 의무를 명시하지 않음. 또한 범죄경력 조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음. 실질적

으로 위 관련 규정이 작동하도록 하려면 기획업자 및 종사자에 대하여 범죄경력 확인할 의무와 범죄경력조회 등에 관한 사항을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4. 관리 감독 강화 및 신고·구제절차 마련

- 대중문화산업 현장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을 위해 마련된 관련 법 위반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담당 정부 부처의 관리 감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산업현장에서 관련 법이 준수 되려면 기본적으로 담당 부처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함.
- 그리고 관련 법 위반 사실을 어떤 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지 모호하므로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신고 및 구제절차가 보완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중문화산업 관련 분쟁이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구제절차(예술인 신문고, 콘텐츠공정상생센터 등)는 주로 계약, 저작권 등을 다루고 있어서 다양한 내용과 층위로 발생하고 있는 권리 침해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음.⁴¹⁾ 따라서 대중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들이 활동과정 전반에서 겪는 전반적인 권리 침해 문제 및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5. 건강권 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

- 대중문화산업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이 정신적·신체적 건강이 악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지원과 보호조치가 필요함.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을 고용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제작업자나 기획업자에게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학교에 다니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보통 「학교보건법」 제7조의 건강검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므로 이에 협조하도록 하고, 위 검진에 참석하지 못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건강검사를 받도록 조치할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대중의 평가를 받는 활동으로 인하여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 충격적이거나 정서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내용의 촬영, 신체적 한계를 넘거나 위험한 작업 등으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이 정신적·신체적 건강이 악화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다면, 아동·청소년을 고용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제작업자나 기획업자에게 관련 작업을 중지하거나 진료를 받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41) 한국영화성평등센터등은, 콘텐츠성평등센터가 문화예술계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하고 있음.

6. 안전을 위한 방안 마련

- 대중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이를 위해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은 공연이나 촬영현장에서 다치지 않고 위험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에게 산업안전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 교육에는 작업현장에 관련된 안전·보건 주의사항, 안전한 대기 장소, 제한 구역, 휴게실, 화장실, 탈의실 등 기타 관련 공간 안내, 비상시 절차 안내 등을 포함해야 함.
- 또한 아동·청소년을 고용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은 작업현장에서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건강, 복지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현장 책임자를 지정하여 현장에서 아동·청소년이 방치되거나 위험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7. 소득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

-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의 소득이 보호되도록 수익의 일정 부분을 친권자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등 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이미 해외 각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신탁제도는 아동·청소년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방법이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음. 신탁제도는 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 신탁계좌를 개설하면 아동·청소년을 고용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제작업자나 기획업자가 총 보수 중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을 위 신탁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임.

8. 표준계약서 보완

-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하여 보급하고 있는 표준계약서는 대중문화산업 업계의 관행을 개선하고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현행 표준계약서 중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의무와 역할을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을 구체화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음. 또한 변화하는 대중문화산업의 성격,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 등 현황을 반영하여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음.

5장. 연구방법 및 결과

제1절. 설문조사

제2절. 심층인터뷰

제3절. 전문가 자문결과

제5장. 연구방법 및 결과

제1절. 설문조사

1. 설문문항구성

- 본 연구의 설문항목은 크게 3개 영역-기본사항, 아동·청소년의 권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으로 구분하고, 이 가운데 ‘아동·청소년의 권리’ 영역은 아동·청소년의 인권체계의 4개 영역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에 초점을 맞춰 구성함(<표 5-1>참조).

<표 5-1> 아동·청소년의 인권체계의 4개 영역

구분	정의
생존권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6조, 모든 이들이 고유한 생명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가능한 최대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의. 생존권은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
보호권	유엔 아동권리협약 중 아동의 성장을 위협하는 요인들과 이로 인해 아동이 입게 되는 위기의 결과를 보호권으로 정의. 모든 형태의 착취와 학대, 방임, 차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폭력, 고문, 부당한 형사 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발달권	아동권리선언 제1항,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에 필수적인 수단을 제공받을 권리
참여권	공동의 행위에 함께 하기 위한 개체의 능동적 의사표시와 의사결정을 의미. 참여권은 아동 청소년의 4대 권리 가운데 가장 정신적이고 의지적인 권리

- 구체적인 설문문항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0)의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와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관련 인권·생활·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한 선행연구(문화체육관광부, 2010; 여성가족부, 2010;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팝업, 2019) 등에서 개발, 활용한 측정도구를 참고해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함. 설문항목의 세부내용은

아래 <표 5-2>와 같음.

- 설문지는 연기자와 연습생의 속성 차이를 고려해, 크게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 [연기자 용]과 [연습생용]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구성함(<부록 1,2> 참조).

<표 5-2> 설문항목 세부내용

구분	세부항목	문항구성	
기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령, 성별, 학력, 연기경력, 소속사 여부 등 	[I. 기본사항] 1-6문항	
아동· 청소년 의 권리	생존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체적 생존권: 영양 및 신체충실도, 규칙적인 운동 및 건강, 스트레스 정도, 수면시간, 질병, 안전, 경제적 수준 질적 생존권: 행복감 정도, 연기생활 만족도 	[II. 생존권] 1-16문항
	보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대 및 착취로부터의 보호: 신체적/정서적 체벌 경험 및 인식, 성적피해경험 차별로부터의 보호: 성, 연령, 신체/외모적 조건 등으로 인한 차별피해경험, 다이어트/성형수술 권유받은 경험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촬영현장 환경 및 자극적/선정적 장면 촬영 경험 사생활/인권 침해로부터의 보호: 제작진/소속사 관계자로부터의 휴대폰/SNS 등에 대한 사용금지 요구, 온라인 공간에서의 욕설/모욕/괴롭힘/사생활 침해/협박 등에 대한 피해 경험 	[III. 보호권] 17-25문항
	발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지적 발달: 학교 수업내용에 대한 이해도, 학업중도 포기 이유, 연기력 향상을 위한 사교육 경험 유무 및 효과성, 촬영기간 동안의 결석일, 학교수업에 대한 만족도 및 중요성 정서적 발달: 정서발달 환경-부모님, 제작진/소속사관계자와의 대화빈도, 여가시간 충분성에 대한 인식, 고민상담 대상, 고민거리의 유형별 우선순위 등/ 정서적 안정- 우울감, 스트레스, 행복감,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정서적 고립감, 정서적 조절감 등 사회적 발달: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친구의 수,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활동 여부 직업적 발달: 진로준비기회-진로준비행동, 진로교육경험여부 및 만족도/ 진로능력-진로직업태도,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한 태도 	[IV. 발달권] 26-44문항

	참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결정권: 진로결정권과 개인 물품 소지에 대한 결정권 • 표현의 자유: 사적취향의 표현, 발언권 존중 정도 • 정보 접근권 및 정보 참여: 계약조건 및 안전/인권 관련 정보 제공 • 참여 관련 인식: 인권옹호기구의 필요성, 인권침해 문제 해결에 대한 참여권 보장 수준 	[V. 참여권] 45-51문항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여부, 인지경로 • 인권침해예방을 위한 제도적 대책, 장치마련에 대한 태도 및 인식 	[VI. 대중문화 예술산업발전법] 52-54문항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 연구대상은 대중문화예술산업 분야에서 연기자 또는 연습생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했던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함.
- 자료수집은 온라인 설문조사 사이트(MOAFORM)를 통해 2020년 9월 10일부터 11월 10일까지 2개월 동안 진행됨. 수집된 자료는 아동·청소년 연기자용 82부와 연습생용 14부로 총 96명이 참여했으며, 설문조사결과는 연기자용 82부 만을 대상으로 분석결과를 제시함. 연습생용 14부 가운데 불성실하게 응답한 3부를 제외한 11부를 통해 수집한 자료는 양적분석을 수행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판단 하에 다음 장의 심층인터뷰 응답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보조 자료로 활용함.
- 연기자용 82부 가운데 불성실하게 응답한 4부를 제외하고, 총 78부를 통계분석에 활용함.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처리했으며, 각 문항별 빈도분석을 실시함.
- 아동·청소년 연기자들이 미취학아동을 포함한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보호자 동반 설문조사를 병행 실시하였고, 총 78명 가운데 보호자와 함께 설문조사에 응답한 연기자는 54명(69.2%), 혼자 설문에 응답한 연기자는 24명(30.8%)으로 나타남.

3. 분석결과

1) 기본사항

(1) 성별

- 응답자의 성별을 살펴본 결과, 총 78명 가운데 여성은 41명(52.6%), 남성은 37명(47.4%)으로 나타남.

<표 5-3> 성별

구분	빈도(명)	백분율(%)
남성	37	47.4
여성	41	52.6
전체	78	100

(2) 연령

- 응답자의 연령대를 살펴본 결과, 11~15세가 31명(39.7%)으로 가장 많았으며, 10세 이하 22명(28.2%), 16~19세 25명(32.1%) 순으로 나타남.

<표 5-4> 연령대

구분	빈도(명)	백분율(%)
10세 이하	22	28.2
11-15세	31	39.7
16~19세	25	32.1
전체	78	100

(3) 재학여부 및 교육과정

- 응답자의 재학여부를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자 가운데 72명(92.3%)이 초/중/고에 재학 중이었으며, 재학 중이 아닌 응답자는 4명(5.1%), 미취학 아동은 2명(2.6%)으로 나타남. 미취학 아동을 제외하면, 응답자 대다수가 학교 교육과정에 속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5-5> 재학여부

구분	빈도(명)	백분율(%)
재학 중	72	92.3
재학 중 아님	4	5.1
미취학아동	2	2.6
전체	78	100

- 재학 중인 72명 가운데 응답자의 교과과정 분포를 살펴본 결과, 초등학생이 38명(48.7%)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생 23명(30.8%), 고등학생 10명(17.3%) 순으로 나타남. 학교에 재학 중이 '아니다'라고 응답한 4명(5.1%)은 검정고시 합격 2명(2.6%), 검정고시 준비 1명(1.3%), 홈스쿨링 1명(1.3%)으로 나타남.

<표 5-6> 교과과정

구분	빈도(명)		백분율(%)		
초등학교	초1	2	38	2.6	48.7
	초2	9		11.5	
	초3	8		10.3	
	초4	5		6.4	
	초5	10		12.8	
	초6	4		5.1	
중학교	중1	3	23	3.8	30.8
	중2	8		10.3	
	중3	12		16.7	
고등학교	고1	8	10	10.3	12.8
	고2	2		2.6	
	고3	0		0.0	
검정고시 합격		2	2.6		
검정고시 준비		1	1.3		
홈스쿨링		1	1.3		
미취학아동		2	2.6		
전체		78	100		

(4) 연기활동경력

- 응답자의 연기활동경력을 살펴본 결과, 3년 이상 5년 미만인 22명(28.2%)으로 가장 많았으며, 5년 이상 21명(26.9%), 1년 이상 3년 미만 20명(25.6%), 6개월 이상 1년 미만 9명(11.5%), 6개월 미만 6명(7.7%) 순으로 나타남. 3년 이상의 짧은 지 않은 연기 경력을 지닌 응답자가 43명

(55.1%)으로 전체 응답자의 과반을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5-7> 연기활동경력

구분	빈도(명)	백분율(%)
6개월 미만	6	7.7
6개월 이상 1년 미만	9	11.5
1년 이상 3년 미만	20	25.6
3년 이상 5년 미만	22	28.2
5년 이상	21	26.9
전체	78	100

(5) 배역

- 응답자의 배역을 살펴본 결과, 조연이 29명(37.2%)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연 23명(29.5%), 단역 15명(19.2%), 보조출연 11명(14.1%) 순으로 나타남. 작품 내에서 주인공(주연) 또는 조연급 이상을 맡았던 응답자의 비율이 66.7%로 비교적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음.

<표 5-8> 배역

구분	빈도(명)	백분율(%)
보조출연	11	14.1
단역	15	19.2
조연	29	37.2
주연	23	29.5
전체	78	100

(6) 소속사 여부 및 계약체결 형태

- 응답자의 소속사 여부를 살펴본 결과, '있다' 13명(16.7%), '없다' 65명(83.3%)으로, 응답자 대다수가 소속사에 속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5-9> 소속사 여부

구분	빈도(명)	백분율(%)
있다	13	16.7
없다	65	83.3
전체	78	100

- 소속사가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소속사와의 계약체결 형태를 조사한 결과, ‘소속사 자체 계약서로 체결했다’가 7명(53.8%)으로 가장 많았으며, ‘표준계약서로 체결했다’ 4명(30.8%), ‘서면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 계약을 체결했다’ 2명(2.6%) 순으로 나타남.

<표 5-10> 소속사와의 계약형태

구분	빈도(명)	백분율(%)
표준계약서로 체결했다	4	30.8
소속사 자체 계약서로 체결했다	7	53.8
서면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 계약을 체결했다	2	15.4
전체	13	100

2) 생존권

- 아동·청소년 연기자의 생존권은 크게 신체적 생존권과 질적 생존권으로 구분하고, 신체적 생존권 영역은 영양 및 신체충실도, 규칙적인 운동 및 건강, 스트레스 정도, 수면시간, 질병, 안전, 경제적 수준 등과 관련한 세부항목을 중심으로, 질적 생존권 영역은 행복감 정도와 연기생활 만족도를 측정하는 세부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봄.

(1) 신체적 생존권

- ① 촬영현장에서의 식사제공 여부 및 만족도
- 영양 공급과 관련해, 촬영기간 동안 현장에서 식사제공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본 결과, ‘제공되었다’가 53명(67.9%), ‘제공되지 않았다’가 25명(32.1%)으로 나타남.

<표 5-11> 촬영현장에서의 식사제공 여부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제공되었다	53	67.9
제공되지 않았다	25	32.1
전체	78	100

- 촬영현장에서 제공된 식사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이다’가 32명(60.4%)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 만족한다’ 12명(22.6%), ‘대체로 만족한다’ 9명(17.0%) 순으로 나타남.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와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음.

<표 5-12> 촬영현장에서 제공된 식사 만족도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0	0.0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0	0.0
보통이다	32	60.4
대체로 만족한다	9	17.0
매우 만족한다	12	22.6
전체	53	100

② 체형에 대한 평가

- 신체충실도와 관련해 본인과 제작진/소속사로 구분하여 응답자의 체형에 대한 평가를 살펴봄. 먼저 자신의 체형에 대해 본인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보통이다’ 27명(34.6%), ‘약간 마른편이다’ 26명(33.3%)으로 큰 차이가 없었으며, ‘약간 살이 찐 편이다’ 16명(20.5%), ‘매우 마른 편이다’ 7명(9.0%), ‘매우 살이 찐 편이다’가 2명(2.6%)으로 자신의 체형에 대해 살이 찐다고 평가하기 보다는 보통 또는 약간 마른 편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이 비교적 많았음. 다음으로 제작진/소속사에서 자신의 체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보통이다’가 31명(39.7%)으로 가장 많았으며, ‘약간 마른편이다’ 28명(35.9%), ‘약간 살이 찐 편이다’ 16명(20.5%), ‘매우 마른 편이다’ 2명(2.6%), ‘매우 살이 찐 편이다’ 1명(1.3%) 순으로 나타남.

<표 5-13> 체형에 대한 본인 및 제작진/소속사의 평가

구분	본인의 평가		제작진/소속사의 평가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매우 마른 편이다	7	9.0	2	2.6
약간 마른 편이다	26	33.3	28	35.9
보통이다	27	34.6	31	39.7
약간 살이 찐 편이다	16	20.5	16	20.5
매우 살이 찐 편이다	2	2.6	1	1.3
전체	78	100	78	100

③ 규칙적인 운동 여부

○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일주일에 1~2회’가 32명(41.0%)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주일에 3~4회’ 26명(33.3%), ‘일주일에 5회 이상’ 9명(11.5%), ‘전혀 하고 있지 않다’ 8명(10.3%), ‘한 달에 1~2회’ 3명(3.8%) 순으로 나타남. 응답자의 85.9%가 일주일에 최소 1회 이상은 건강을 위해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5-14> 규칙적인 운동 여부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하고 있지 않다	8	10.3
일주일에 1~2회 정도	32	41.0
일주일에 3~4회 정도	26	33.3
일주일에 5회 이상	9	11.5
한 달에 1~2회 정도	3	3.8
전체	78	100

④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평가

○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먼저 신체적 건강은 ‘건강한 편이다’가 39명(50.0%)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이다’ 21명(26.9%), ‘매우 건강하다’ 14명(17.9%),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4명(5.1%) 순으로 나타남. 정신적 건강 역시 ‘건강한 편이다’가 33명(42.3%)으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 건강하다’ 20명(25.6%), ‘보통이다’ 18명(23.1%),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7명(9.0%) 순으로 나타남. 신체적/정신적으로 ‘전혀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없었음. 전반적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수(7명, 9.0%)가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수(4명, 5.1%)보다 조금 높게 나타남.

<표 5-15>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평가

구분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전혀 건강하지 않다	0	0.0	0	0.0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4	5.1	7	9.0
보통이다	21	26.9	18	23.1
건강한 편이다	39	50.0	33	42.3
매우 건강하다	14	17.9	20	25.6
전체	78	100	78	100

⑤ 건강에 대한 관심 정도

- 응답자의 건강에 대한 제작진/소속사의 관심 정도를 살펴본 결과, ‘보통이다’가 38명(48.7%)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 14명(17.9%),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 12명(15.4%), ‘대체로 관심을 갖는다’ 9명(11.5%), ‘매우 관심을 갖는다’ 5명(6.4%) 순으로 나타남. ‘보통이다’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제작진/소속사에서는 응답자의 건강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5-16> 건강에 대한 제작진/소속사의 관심 정도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	14	17.9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	12	15.4
보통이다	38	48.7
대체로 관심을 갖는다	9	11.5
매우 관심을 갖는다	5	6.4
전체	78	100

- 응답자의 건강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을 살펴본 결과, ‘부모님’이 59명(75.6%)로 가장 많았으며, ‘나 자신’ 15명(19.2%), ‘친구’와 ‘제작진/소속사 관계자’ 각각 2명(2.6%) 순으로 나타남.

<표 5-17> 건강에 대해 가장 관심 갖는 사람

구분	빈도(명)	백분율(%)
나 자신	15	19.2
부모님	59	75.6
친구	2	2.6
제작진/소속사 관계자	2	2.6
전체	78	100

⑥ 스트레스 요인

- 응답자의 스트레스 요인을 살펴본 결과, 주된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연기를 잘해야 한다는 생각’과 ‘외모/신체적 조건’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 ‘학업문제’와 ‘동료연기자’ 역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가족관계’, ‘친구관계’, ‘제작진/소속사’,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지 않았음.

<표 5-18> 스트레스 요인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1	나는 가족관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32 (41.0)	18 (23.1)	20 (25.6)	6 (7.7)	2 (2.6)	78 (100)
2	나는 친구관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25 (32.1)	18 (23.1)	26 (33.3)	9 (11.5)	0 (0.0)	78 (100)
3	나는 학업문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17 (21.8)	17 (21.8)	28 (35.9)	12 (15.4)	4 (5.1)	78 (100)
4	나는 외모/신체적 조건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18 (23.1)	16 (20.5)	17 (21.8)	22 (28.2)	5 (6.4)	78 (100)
5	나는 제작진/소속사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28 (35.9)	22 (28.2)	22 (28.2)	5 (6.4)	1 (1.3)	78 (100)
6	나는 연기를 잘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10 (12.8)	9 (11.5)	21 (26.9)	29 (37.2)	9 (11.5)	78 (100)
7	나는 동료연기자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32 (41.0)	19 (24.4)	15 (19.2)	12 (15.4)	0 (0.0)	78 (100)
8	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37 (47.4)	14 (17.9)	21 (26.9)	4 (5.1)	2 (2.6)	78 (100)

⑦ 평소/촬영기간 중 평균 수면시간 및 인식

○ 평소와 촬영기간 중 하루 평균 수면시간을 살펴본 결과, 평소에는 ‘7~9시간’이 44명(56.4%)으로 가장 많았으며, ‘10시간 이상’ 19명(24.4%), ‘4~6시간’ 15명(19.2%) 순으로 나타남. 촬영기간 중에는 ‘4~6시간’이 45명(57.7%)으로 가장 많았으며, ‘7~9시간’ 29명(37.2%), ‘3시간 이하’ 2명(2.6%), ‘10시간 이상’ 2명(2.6%)으로 나타남. 평소에는 3시간 이하 수면을 한다는 응답자가 없었으나, 촬영기간 중에는 3시간 이하라고 응답한 수가 2명 있었으며, 대체로 촬영기간 중 수면시간이 평소에 비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5-19> 평소와 촬영기간 중 하루 평균 수면시간

구분	평소		촬영기간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3시간 이하	0	0.0	2	2.6
4-6시간	15	19.2	45	57.7
7-9시간	44	56.4	29	37.2
10시간 이상	19	24.4	2	2.6
전체	78	100	78	100

○ 촬영기간 중 평균수면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정도를 살펴본 결과, ‘보통이다’가 38명(48.7%)

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금 그렇다’ 15명(19.2%), ‘전혀 그렇지 않다’ 11명(14.1%), ‘별로 그렇지 않다’ 10명(12.8%), ‘매우 그렇다’ 4명(5.1%)으로 나타남.

<표 5-20> 촬영기간 중 평균수면시간에 대해 부족하다고 느끼는 정도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1	14.1
별로 그렇지 않다	10	12.8
보통이다	38	48.7
조금 그렇다	15	19.2
매우 그렇다	4	5.1
전체	78	100

- 다음으로 연기를 위해 수면시간을 줄여도 좋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살펴본 결과, ‘보통이다’가 32명(41.0%)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금 그렇다’ 23명(29.5%), ‘매우 그렇다’ 11명(14.1%), ‘별로 그렇지 않다’ 7명(9.0%), ‘전혀 그렇지 않다’ 5명(6.4%)으로 나타남. 수면시간을 줄여도 좋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중은 ‘조금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쳐서 43.6%로 나타남. 응답자들은 연기를 위해 수면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해 비교적 동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5-21> 연기를 위해 수면시간을 줄여도 좋다고 생각하는 정도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5	6.4
별로 그렇지 않다	7	9.0
보통이다	32	41.0
조금 그렇다	23	29.5
매우 그렇다	11	14.1
전체	78	100

- ⑧ 연기자 생활시작 후, 촬영기간 중 신체적/정신적 질병 발생 여부
- 연기자 시작 후 앓았던 적 없는 질병 발생 여부를 살펴본 결과, 3명(3.8%)을 제외하고는 없는 것(75명, 96.2%)으로 나타났으며, 발생 질병 유형은 정신적 스트레스, 피부 트러블 등이 있었음. 촬영기간 동안 신체적으로 아프거나 다쳤던 경험을 살펴본 결과, ‘있다’ 11명(14.1%), ‘없다’ 67명(85.9%)으로 나타남. 촬영기간 동안 정신적으로 힘들거나 아파서 상담/심리치료를 받은 응답자는 1명(1.3%)이었으며, ‘없다’는 77명(98.7%)으로 나타남.

<표 5-22> 연기자 생활시작 후, 촬영기간 중 신체적/정신적 질병 발생 여부

구분	연기자 시작 후 앓았던 적 없는 질병 발생 여부		촬영기간 동안 신체적으로 아프거나 다쳤던 경험 여부		촬영기간 동안 정신적으로 힘들거나 아파서 상담/심리치료 받은 경험 여부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있다	3	3.8	11	14.1	1	1.3
없다	75	96.2	67	85.9	77	98.7
전체	78	100	78	100	78	100

○ 촬영기간 동안 신체적으로 아프거나 다쳤던 경험이 있는 11명을 대상으로 제작진/소속사의 대처를 살펴본 결과, ‘기타’ 6명, ‘개별적으로 병원에 다녀올 시간 줌’ 3명, ‘촬영을 중단하고 함께 병원 동행’ 1명,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촬영 강행’ 1명으로 나타남. 기타 6명의 답변으로는 약복용, 잠시 휴식, 다친 정도가 심하지 않아 현장에서 응급처치, 응급처치 후 계속해서 아프면 병원에 가볼 것을 권함 등이 있었음. 기타 6명에 대해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받지 않은 이유를 살펴본 결과, ‘심하게 아프지 않아서’, ‘촬영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해서’ 등의 응답이 있었음.

○ 병원을 방문했던 5명에 대해 어떻게 치료비용을 해결했는지 살펴본 결과, ‘본인부담’ 2명, ‘제작진/소속 부담’ 2명, ‘기억이 나지 않음’ 1명으로 나타남. 촬영기간 동안 정신적으로 힘들거나 아팠던 경험이 있는 1명의 경우, 별도의 심리/상담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한 상황은 아니어서, 치료를 받지 않는다고 응답함.

⑨ 촬영현장 사고예방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여부

○ 촬영/공연 현장 등에서 화재발생시 대피요령/ 사전예방 교육 경험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있다’ 8명(10.3%), ‘없다’ 70명(89.7%)으로 현장에서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음. 사전교육을 받은 적 있는 8명에게 교육 내용을 조사한 결과, 공연 전 안전교육, 탈출 경로(대피소, 비상탈출구 위치 등) 안내교육, 안전수칙교육, 영상교육, 설명자료 배포 등이 있음.

<표 5-23> 촬영현장 사고예방 사전교육 실시여부

구분	빈도(명)	백분율(%)
있다	8	10.3
없다	70	89.7
전체	78	100

⑩ 가정의 경제적 수준

- 집안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연기자 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가 29명(37.2%)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이다' 25명(32.1%), '별로 그렇지 않다' 16명(20.5%), '조금 그렇다' 5명(6.4%), '매우 그렇다' 3명(3.8%) 순으로 나타남.

<표 5-24> 집안의 경제적 사정으로 연기자 생활유지에 어려움을 겪는지 여부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29	37.2
별로 그렇지 않다	16	20.5
보통이다	25	32.1
조금 그렇다	5	6.4
매우 그렇다	3	3.8
전체	78	100

- 연기자 생활을 하는데 부모의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 가운데 76명인 97.4%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명(2.6%) 만이 도움을 받고 있지 않다고 응답함. 부모의 경제적 도움 없이, 연기자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을 조사한 결과, 아르바이트비와 출연료로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5-25> 연기자 생활하는데 부모의 경제적 도움 여부

구분	빈도(명)	백분율(%)
도움을 받고 있다	76	97.4
도움을 받고 있지 않다	2	2.6
전체	78	100

(2) 질적 생존권

① 행복감 정도

- 응답자가 느끼는 현재의 행복감 정도를 살펴본 결과, '보통이다' 31명(39.7%)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체로 행복하다' 26명(33.3%), '매우 행복하다' 21명(26.9%) 순으로 나타남. '전혀 행복하지 않다'와 '별로 행복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없었음.

<표 5-26> 현재의 행복감 정도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행복하지 않다	0	0.0
별로 행복하지 않다	0	0.0
보통이다	31	39.7
대체로 행복하다	26	33.3
매우 행복하다	21	26.9
전체	78	100

② 연기생활 만족도

- 연기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만족스럽다’가 59명(75.6%), ‘불만족스럽다’가 19명(24.4%)로 다수의 응답자가 연기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을 보였음.

<표 5-27> 연기생활에 대한 만족도

구분	빈도(명)	백분율(%)
만족스럽다	59	75.6
불만족스럽다	19	24.4
전체	78	100

- ‘불만족스럽다’라고 응답한 19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연기활동의 횟수가 너무 적기 때문’이 13명(56.5%)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기활동이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되기 때문’ 4명(17.4%), ‘연기활동의 횟수가 너무 많기 때문’과 ‘기타’ 각각 2명(8.7%), ‘연기활동 이외의 활동을 강요하기 때문’과 ‘소속사로부터 개인적인 생활에 제약을 받기 때문’ 각각 1명(4.3%)으로 나타남. 이 때 연기활동 이외의 활동으로는 ‘다이어트를 강요하기 때문’으로 응답했으며, ‘기타’ 답변으로는 ‘스스로 연기를 못한다는 생각 때문’, ‘촬영 중 대기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 등이 있었음.

<표 5-28> 연기생활에 대한 불만족 이유(복수응답)

구분	빈도(명)	백분율(%)
연기활동의 횟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13	56.5
연기활동의 횟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2	8.7
연기활동이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4	17.4
연기활동 이외의 활동을 강요하기 때문에	1	4.3
소속사로부터 개인적인 생활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1	4.3
대중의 지나친 관심으로 인해 생기는 일들 때문에	0	0.0
기타	2	8.7
전체	23	100

3) 보호권

아동·청소년 연기자의 보호권은 크게 학대 및 착취로부터의 보호, 차별로부터의 보호,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사생활/인권 침해로부터의 보호로 구분하여 살펴봄. 구체적으로는 학대 및 착취로부터의 보호 영역은 신체적/정서적 체벌 경험 및 인식, 성적피해경험을, 차별로부터의 보호 영역은 성, 연령, 신체/외모적 조건 등으로 인한 차별피해경험, 다이어트/성형수술 권유받은 경험을,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영역은 촬영현장 환경 및 자극적/선정적 장면 촬영 경험을, 사생활/인권 침해로부터의 보호 영역은 제작진/소속사 관계자로부터의 휴대폰/SNS 등에 대한 사용금지 요구, 온라인 공간에서의 욕설/모욕/괴롭힘/사생활 침해/협박 등에 대한 피해 경험 등을 측정하는 세부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봄.

(1) 학대 및 착취로부터의 보호

① 신체적 체벌 및 지나친 꾸깃음(욕설) 등에 대한 피해 경험

○ 응답자의 학대 및 착취로부터의 보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제작진/소속사 관계자 및 선배/동료 연기자로부터의 신체적 체벌 및 지나친 꾸깃음/욕설 피해 경험에 대해 살펴봄. 먼저 제작진으로부터의 신체적 체벌 및 지나친 꾸깃음/욕설 피해 경험은 ‘한 번도 없음’이 73명(93.6%), 68명(87.2%)로 가장 많았으며, 소속사 관계자로부터의 신체적 체벌 및 지나친 꾸깃음/욕설 피해 경험 역시 ‘한 번도 없음’이 73명(73.6%), 71명(91.0%)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제작진/소속사 관계자로부터의 신체적 체벌 및 지나친 꾸깃음/욕설 피해 경험이 ‘일 년에 1~2회 정도’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1.3%~9.0%로 나타났으며, ‘한 달에 1~2회 정도’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2.6%~5.1%로 높은 비중은 아니지만 일부 응답자들이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소속사 관계자로부터의 지나친 꾸짖음/욕설 피해 경험이 '일주일에 1~2회 정도'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2.6%(2명)로 나타나, 소수이지만 정서적 학대에 자주 노출되고 있음.

<표 5-29> 제작진/소속사 관계자로부터의 신체적 체벌 및 지나친 꾸짖음/욕설 피해 경험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일주일에 1-2회 정도	주 3회 이상	전체
제작진	신체적 체벌	73 (93.6)	1 (1.3)	4 (5.1)	0 (0.0)	0 (0.0)	78 (100)
	지나친 꾸짖음/욕설	68 (87.2)	7 (9.0)	3 (3.8)	0 (0.0)	0 (0.0)	78 (100)
소속사 관계자	신체적 체벌	73 (93.6)	2 (2.6)	3 (3.8)	0 (0.0)	0 (0.0)	78 (100)
	지나친 꾸짖음/욕설	71 (91.0)	3 (3.8)	2 (2.6)	2 (2.6)	0 (0.0)	78 (100)

- 선배/동료 연기자로부터의 신체적 체벌 및 지나친 꾸짖음/욕설 피해 경험은 '한 번도 없음'이 73명(73.6%), 72명(92.3%), 73명(93.6%), 72명(92.3%)으로 가장 많았음. 선배/동료 연기자로부터의 신체적 체벌 및 지나친 꾸짖음/욕설 피해 경험이 '일 년에 1~2회 정도'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1.3%~5.1%로 나타났으며, '한 달에 1~2회 정도'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1.3%~3.8%로 높은 비중은 아니지만 응답자 가운데 선배/동료 연기자로부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특히 선배/동료 연기자로부터의 지나친 꾸짖음/욕설 피해 경험이 '일주일에 1~2회 정도'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2.6%(2명), '주3회 이상'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1.3%(1명)로 나타났으며, 소수이지만 선배/동료 연기자로부터의 정서적 학대에 노출되는 빈도가 잦은 것으로 확인됨.

<표 5-30> 선배/동료 연기자로부터의 신체적 체벌 및 지나친 꾸짖음/욕설 피해 경험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일주일에 1-2회 정도	주 3회 이상	전체
선배 연기자	신체적 체벌	73 (93.6)	2 (2.6)	3 (3.8)	0 (0.0)	0 (0.0)	78 (100)
	지나친 꾸짖음/욕설	72 (92.3)	1 (1.3)	2 (2.6)	2 (2.6)	1 (1.3)	78 (100)
동료 연기자	신체적 체벌	73 (93.6)	4 (5.1)	1 (1.3)	0 (0.0)	0 (0.0)	78 (100)
	지나친 꾸짖음/욕설	72 (92.3)	1 (1.3)	3 (3.8)	2 (2.6)	0 (0.0)	78 (100)

- 신체적/정서적 학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공통적으로 응답자 다수는 ‘제작진/소속사 관계자, 선배/동료 연기자로부터의 신체적 체벌 및 지나친 꾸밈음이나 욕설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구체적으로는 ‘제작진은 연기자에게 신체적 체벌 및 지나친 꾸밈음/욕설을 가해서는 안 된다’에 대해 ‘매우 그렇다’ 59명(75.6%)/58명(74.4%), ‘조금 그렇다’ 9명(11.5%)/8명(10.3%), ‘보통이다’ 6명(7.7%)/10명(12.8%), ‘별로 그렇지 않다’ 3명(3.8%)/1명(1.3%), ‘전혀 그렇지 않다’ 1명(1.3%)/1명(1.3%) 순으로 나타남. ‘소속사 관계자는 연기자에게 신체적 체벌 및 지나친 꾸밈음/욕설을 가해서는 안 된다’에 대해 ‘매우 그렇다’ 61명(78.2%)/59명(75.6%), ‘조금 그렇다’ 8명(10.3%)/10명(12.8%), ‘보통이다’ 7명(9.0%)/8명(10.3%), ‘별로 그렇지 않다’ 1명(1.3%)/0명(0.0%), ‘전혀 그렇지 않다’ 1명(1.3%)/1명(1.3%) 순으로 나타남.
- ‘선배 연기자는 후배 연기자에게 신체적 체벌 및 지나친 꾸밈음/욕설을 가해서는 안 된다’에 대해 ‘매우 그렇다’ 61명(78.2%)/59명(75.6%), ‘조금 그렇다’ 7명(9.0%)/9명(11.5%), ‘보통이다’ 6명(7.7%)/9명(11.5%), ‘별로 그렇지 않다’ 2명(2.6%)/0명(0.0%), ‘전혀 그렇지 않다’ 2명(2.6%)/1명(1.3%) 순으로 나타남.
- ‘동료 연기자는 후배 연기자에게 신체적 체벌 및 지나친 꾸밈음/욕설을 가해서는 안 된다’에 대해 ‘매우 그렇다’ 62명(79.5%)/60명(76.9%), ‘조금 그렇다’ 8명(10.3%)/ 8명(10.3%), ‘보통이다’ 6명(7.7%)/8명(10.3%), ‘별로 그렇지 않다’ 1명(1.3%)/1명(1.3%), ‘전혀 그렇지 않다’ 1명(1.3%)/1명(1.3%) 순으로 나타남.
- 종합해보면, 상대적으로 신체적 학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보다 정서적 학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미비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에 대해서는 응답자 다수가 그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표 5-31> 신체적 체벌 및 지나친 꾸짖음/욕설에 대한 인식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1 제작진은 연기자에게 신체적 체벌을 가해서는 안 된다	1 (1.3)	3 (3.8)	6 (7.7)	9 (11.5)	59 (75.6)	78 (100)
2 소속사 관계자는 연기자에게 신체적 체벌을 가해서는 안 된다	1 (1.3)	1 (1.3)	7 (9.0)	8 (10.3)	61 (78.2)	78 (100)
3 선배 연기자는 후배 연기자에게 신체적 체벌을 가해서는 안 된다	2 (2.6)	2 (2.6)	6 (7.7)	7 (9.0)	61 (78.2)	78 (100)
4 동료 연기자는 동료 연기자에게 신체적 체벌을 가해서는 안 된다	1 (1.3)	1 (1.3)	6 (7.7)	8 (10.3)	62 (79.5)	78 (100)
5 제작진은 연기자에게 지나친 꾸짖음이나 욕설을 해서는 안 된다	1 (1.3)	1 (1.3)	10 (12.8)	8 (10.3)	58 (74.4)	78 (100)
6 소속사 관계자는 연기자에게 지나친 꾸짖음이나 욕설을 해서는 안 된다	1 (1.3)	0 (0.0)	8 (10.3)	10 (12.8)	59 (75.6)	78 (100)
7 선배 연기자는 후배 연기자에게 지나친 꾸짖음이나 욕설을 해서는 안 된다	1 (1.3)	0 (0.0)	9 (11.5)	9 (11.5)	59 (75.6)	78 (100)
8 동료 연기자는 동료 연기자에게 지나친 꾸짖음이나 욕설을 해서는 안 된다	1 (1.3)	1 (1.3)	8 (10.3)	8 (10.3)	60 (76.9)	78 (100)

② 성적 피해 경험

○ 제작진/소속사 관계자로부터의 성적 피해 경험을 살펴본 결과, 소수이기는 하나 ‘연애 경험이나 성 경험 등 사생활을 묻는 행위 2명(2.6%),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성적 농담을 하는 행위’,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각 1명(1.3%)으로 나타남.

<표 5-32> 제작진/소속사 관계자로부터의 성적 피해 경험

구분	있다	없다	전체
1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성적 농담을 하는 행위	1 (1.3)	77 (98.7)	78 (100)
2 연애 경험이나 성 경험 등 사생활을 묻는 행위	2 (2.6)	76 (97.4)	78 (100)
3 사적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0 (0.0)	78 (100)	78 (100)
4 성적인 이미지나 영상을 보여주는 행위	1 (1.3)	77 (98.7)	78 (100)
5 포옹, 손잡기, 신체 밀착, 안마, 입맞춤 등의 신체접촉을 하거나 신체접촉을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0 (0.0)	78 (100)	78 (100)
6 회식이나 뒷풀이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	0 (0.0)	78 (100)	78 (100)
7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1 (1.3)	77 (98.7)	78 (100)

- 성적피해경험이 있는 3명은 당시의 대처방법으로 ‘문제를 일으키기 싫어서 참고 넘어갔다’, ‘캐스팅에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참고 넘어갔다’라고 응답함.

(2) 차별로부터의 보호

① 차별 피해 경험

- 촬영현장 및 배역 캐스팅 과정에서의 차별 피해 경험을 살펴본 결과, 먼저 촬영현장에서 성별로 인한 차별경험이 ‘있다’ 6명(7.7%), ‘없다’ 72명(92.3%)으로, 나이로 인한 차별경험이 ‘있다’ 12명(15.4%), ‘없다’ 66명(84.6%)으로,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으로 인한 차별경험이 ‘있다’ 15명(19.2%), ‘없다’ 63명(80.0%)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배역 캐스팅 과정에서 나이로 인한 차별경험이 ‘있다’ 26명(33.3%), ‘없다’ 52명(66.7%)으로,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으로 인한 차별경험이 ‘있다’ 16명(20.5%), ‘없다’ 62명(79.5%)으로 나타남. 전반적으로 촬영현장 보다는 배역캐스팅 과정에서 나이와 외모/신체조건(키, 몸무게)으로 인한 차별 행위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음. 이 때 나이(26명, 33.8%)보다는 외모/신체조건(33명, 42.9%)으로 인한 차별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됨.

<표 5-33> 촬영현장 및 배역캐스팅 과정에서의 차별 피해 경험

구분		있다	없다	전체
1	나는 촬영현장에서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	6 (7.7)	72 (92.3)	78 (100)
2	나는 촬영현장에서 나이 때문에 부당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	12 (15.4)	66 (84.6)	78 (100)
3	나는 촬영현장에서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부당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	15 (19.2)	63 (80.8)	78 (100)
4	나는 배역 캐스팅 과정에서 나이 때문에 부당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	26 (33.3)	52 (66.7)	78 (100)
5	나는 배역 캐스팅 과정에서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때문에 부당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	33 (42.3)	45 (57.7)	78 (100)

② 다이어트 및 성형수술 권유받은 경험

- 앞서 촬영현장 또는 배역 캐스팅 과정에서 외모/신체적 조건으로 인한 차별경험이 성별이나 나이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와 관련해 연기활동 중 제작진/소속사 관계자로부터 다이어트와 성형수술을 권유받은 경험을 살펴보았음. 먼저 다이어트를 권유받은 경험에는 ‘있다’ 16명(20.5%), ‘없다’ 62명(79.5%)으로 나타났으며, 성형수술을 권유받은 경험에는 ‘있다’ 6명(7.7%), ‘없다’ 72명(92.3%)으로 나타남.

<표 5-34> 제작진/소속사로부터 다이어트 및 성형수술 권유받은 경험

구분	다이어트		성형수술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있다	16	20.5	6	7.7
없다	62	79.5	72	92.3
전체	78	100	78	100

(3)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① 촬영환경의 문제

-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촬영현장에서의 불편한 점을 살펴본 결과, 장시간 또는 야간촬영과 나쁜 날씨가 각각 23명(29.5%)으로 가장 많았고, 촬영대기장소 부재/부족 18(23.1%), 불편한 점 없음 7명(9.0%), 냉난방 시설 부재/부족 3명(3.8%), 실내공기, 기타 각 2명(2.6%) 순으로 나타남. 기타 답변으로는 불확실한 일정(촬영 직전 섭외연락이 오거나, 취소되는 경우 등) 등이 있었음.

<표 5-35> 촬영현장에서의 불편한 점

구분	빈도(명)	백분율(%)
나쁜 날씨 (한여름의 무더위/폭우, 한겨울의 강추위/폭설 등)	23	29.5
장시간 또는 야간 촬영	23	29.5
실내 공기	2	2.6
냉난방 시설 부재 또는 부족	3	3.8
촬영대기 장소 부재 또는 부족	18	23.1
불편한 점 없음	7	9.0
기타	2	2.6
전체	78	100

② 자극적이거나 불편했던 장면 촬영경험 여부

- 촬영 중 자극적이거나 불편했던 장면 또는 대사를 연기한 경험을 살펴본 결과, ‘없다’ 68명(87.2%), ‘있다’ 10명(12.8%)으로 나타남.

<표 5-36> 자극적이거나 불편했던 촬영 경험 여부

구분	빈도(명)	백분율(%)
있다	10	12.8
없다	68	87.2
전체	78	100

- 자극적이거나 불편한 장면 또는 대사를 연기해야 하는 것과 관련해 제작진과의 사전 협의나 사전 동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촬영현장에서 강요된 것인지를 살펴본 결과, 10명 모두 제작진과 사전 협의된 것으로 응답함.

(4) 사생활/인권 침해로부터의 보호

- ① 제작진/소속사 관계자로부터의 사생활/인권침해 피해경험
- 사생활/인권 침해로부터의 보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제작진/소속사 관계자로부터 휴대폰 또는 SNS사용 금지, 연애금지를 요구 받은 경험에 대해 살펴본 결과, 먼저 휴대폰 사용금지 경험에 ‘있다’ 3명(3.8%), ‘없다’ 75명(96.2%), SNS 사용금지 경험에 ‘있다’ 8명(10.3%), ‘없다’ 70명(89.7%), 연애금지 경험에 ‘있다’ 4명(5.1%), ‘없다’ 74명(94.9%)으로 나타남. 제작진/소속사 관계자가 동의 없이 휴대폰 내용을 본 사례는 없었음. SNS 사용금지를 요구받은 경험이 휴대폰 사용금지나 연애금지에 비해 다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5-37> 제작진/소속사 관계자로부터 휴대폰/SNS사용 및 연애 금지 요구 받은 경험

구분		있다	없다	전체
1	나는 제작진 또는 소속사 관계자로부터 휴대폰 사용 금지를 요구받은 적이 있다	3 (3.8)	75 (96.2)	78 (100)
2	나는 제작진 또는 소속사 관계자로부터 SNS 사용 금지를 요구받은 적이 있다	8 (10.3)	70 (89.7)	78 (100)
3	나는 제작진 또는 소속사 관계자로부터 연애금지를 요구받은 적이 있다	4 (5.1)	74 (94.9)	78 (100)
4	제작진 또는 소속사 관계자가 나의 동의 없이 휴대폰 내용(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목록 등)을 본 적이 있다	0 (0.0)	78 (100)	78 (100)

- ② 온라인 공간에서의 사생활/인권침해 피해 경험
- 온라인 공간에서의 사생활/인권 침해 피해 경험을 살펴본 결과, 먼저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댓글/DM으로 받은’ 경험에 대해 ‘있다’ 6명(7.7%), ‘없다’ 72명(92.3%), ‘밝히고 싶지 않은 개인

사생활이 알려진 경험에 대해 ‘있다’ 4명(5.1%), ‘없다’ 74명(94.9%), ‘나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비방글이 퍼진 경험에 대해 ‘있다’ 3명(3.8%), ‘없다’ 75명(96.2%), ‘협박을 당한’ 경험에 대해 ‘있다’ 1명(1.3%), ‘없다’ 77명(98.7%)으로 나타남. 온라인 공간에서 사생활이나 인권을 침해 받은 경험이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음. 4개 문항에 ‘있다’라고 응답한 이들에게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댓글이나 대화를 통해 직접 대응한다’거나 ‘부모님과 상의한다’고 밝혔으며, 기타 답변으로는 해당 메시지를 보낸 사람을 ‘차단’한다는 응답이 있었음.

<표 5-38> 온라인 공간에서의 사생활/인권침해 피해 경험

구분		있다	없다	전체
1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댓글/DM으로 받음	6 (7.7)	72 (92.3)	78 (100)
2	밝히고 싶지 않은 개인 사생활이 알려짐	4 (5.1)	74 (94.9)	78 (100)
3	나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비방글이 퍼짐	3 (3.8)	75 (96.2)	78 (100)
4	협박을 당함	1 (1.3)	77 (98.7)	78 (100)

4) 발달권

- 아동·청소년 연기자의 발달권은 크게 인지적 발달, 정서적 발달, 사회적 발달, 직업적 발달로 구분하여 살펴봄. 구체적으로는 인지적 발달 영역은 인지적 발달 기회와 관련된 항목들로 구성했으며, 이는 학교 수업내용에 대한 이해도, 학업중도포기 이유, 연기력 향상을 위한 사교육 경험 유무 및 효과성, 촬영기간 동안의 결석일, 학교수업에 대한 만족도 및 중요성 등을 측정하는 세부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봄. 정서적 발달 영역은 정서발달 환경과 정서적 안정으로 구분하여 살펴봐왔는데, 정서발달 환경 관련 세부항목으로는 부모님, 제작진/소속사관계자와의 대화정도, 여가시간 충분성에 대한 인식, 고민상담 대상, 고민거리의 유형별 우선순위 등으로 구성함. 정서적 안정은 우울감, 스트레스, 행복감,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정서적 고립감, 정서적 조절감 등 심리/정서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척도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함. 사회적 발달 영역은 사회성 발달 기회와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친구의 수,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활동 여부를 측정하는 세부항목으로 구성함. 직업적 발달 영역은 진로준비기회와 직업능력을 파악하고자, 진로준비행동, 진로교육경험여부 및 만족도, 진로직업태도,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한 태도 등과 관련한 세부항목으로 구성함.

(1) 인지적 발달

① 수업내용 이해 정도

- 학교 수업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를 살펴본 결과, ‘보통이다’가 30명(38.5%)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체로 이해한다’ 27명(34.6%), ‘모두 이해한다’ 19명(24.4%) 순으로 나타남.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와 ‘별로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없었으며, 응답자 대부분은 학교수업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5-39> 학교 수업내용 이해 정도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0	0
별로 이해하지 못한다	2	2.6
보통이다	30	38.5
대체로 이해한다	27	34.6
모두 이해한다	19	24.4
전체	78	100

② 학업 중도 포기에 대한 인식 및 이유

-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 여부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 가운데 65명 (83.3%)이 학업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했으며, ‘있다’는 13명(16.7%)으로 나타남.

<표 5-40> 학업 중도 포기 생각 여부

구분	빈도(명)	백분율(%)
있다	13	16.7
없다	65	83.3
전체	78	100

-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라고 응답한 13명을 대상으로 학업 중도 포기 이유에 대해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조사한 결과, 1순위 최빈값을 기준으로 순서대로 제시하면, ‘학업과 연기생활을 병행하기 힘들어서’가 1순위 6명(2순위 5명)이었으며, ‘공부하는 것이 싫어서’가 1순위 4명(2순위 1명, 3순위 2명), ‘친구관계가 좋지 않아서’가 1순위 2명(3순위 1명), ‘전문적인 연기 공부를 하기 위해서’가 1순위 1명(2순위 3명, 3순위 5명)으로 나타남. ‘기타’로는 ‘교육과정의 연기생활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학교에 너무 오래 있다고 생각해서’

등의 답변이 있었음.

<표 5-41> 학업을 포기하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1-3순위)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전문적인 연기 공부를 하기 위해서	1	3	5
학업과 연기생활을 병행하기 힘들어서	6	5	
공부하는 것이 싫어서	4	1	2
친구관계가 좋지 않아서	2		1
건강이 좋지 않아서			1
기타		1	1

③ 연기력 향상 위해 사교육 받은 경험

- 연기력 향상을 위해 사교육을 받은 경험 여부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 가운데 68명(87.2%)이 경험이 ‘있다’라고 답했으며, ‘없다’는 10명(12.8%)으로 나타남.

<표 5-42> 연기력 향상 위해 사교육 받은 경험 여부

구분	빈도(명)	백분율(%)
있다	68	87.2
없다	10	12.8
전체	78	100

- 연기력 향상을 위해 사교육 경험이 있는 68명을 대상으로 어떤 유형의 사교육을 받았는지 조사한 결과, ‘연기 교육’이 67명(50.0%)으로 가장 많았으며, ‘댄스 교육’ 33명(24.6%), ‘노래 교육’ 18명(13.4%), ‘외국어 교육’ 8명(6.0%), ‘공연예술 관련 상급 학교 진학 교육’ 3명(2.2%), ‘커뮤니케이션 역량 교육’과 ‘인성/예절 교육’각 2명(1.5%), 기타 1명(0.8%) 순으로 나타남. 기타 답변으로는 발레, 승마 등이 있었음. 또한 응답자 가운데 연기 교육과 함께 댄스교육 또는 노래 교육 등 최소 2개 이상의 사교육을 받고 있는 응답자들이 과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표 5-43> 사교육 유형(복수응답)

구분	빈도(명)	백분율(%)
연기 교육	67	50.0
노래 교육	18	13.4
댄스 교육	33	24.6
외국어 교육	8	6.0
커뮤니케이션 역량 교육	2	1.5
인성/예절 교육	2	1.5
공연예술 관련 상급 학교 진학 교육	3	2.2
기타	1	0.8
전체	134	100

- 사교육이 연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대체로 도움된다’가 31명(45.6%)으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 도움된다’ 20명(29.4%), ‘보통이다’ 15명(22.1%), ‘별로 도움되지 않는다’ 2명(2.9%) 순으로 나타남. 응답자 다수는 사교육이 연기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표 5-44> 사교육의 연기력 향상에 대한 도움 정도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0	0.0
별로 도움되지 않는다	2	2.9
보통이다	15	22.1
대체로 도움된다	31	45.6
매우 도움된다	20	29.4
전체	68	100

④ 촬영기간 중 일주일 평균 결석일

- 촬영기간 동안 일주일 평균 결석일을 살펴본 결과, ‘1일’이 28명(35.9%)로 가장 많았으며, ‘없음’ 16명(20.5%), ‘2일’ 15명(19.2%), ‘3일’ 12명(15.4%), ‘반나절’ 4명(5.1%), ‘4일’ 2명(2.6%), ‘5일’ 1명(1.3%) 순으로 나타남.

<표 5-45> 촬영기간 동안 일주일 평균 결석일

구분	빈도(명)	백분율(%)
없음	16	20.5
반나절	4	5.1
1일	28	35.9
2일	15	19.2
3일	12	15.4
4일	2	2.6
5일	1	1.3
전체	78	100

⑤ 촬영기간 중 학교 수업 결석에 대한 동의 여부

- 촬영기간(또는 작품홍보기간) 동안 학교 수업을 빠지게 될 경우 제작진 또는 소속사 관계자가 본인에게 사전에 고지하거나 협의를 거쳤는지를 살펴본 결과, ‘그때 그때 수시로 동의를 구한다’가 34명(43.6%)로 가장 많았으며, ‘특별히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 26명(33.3%), ‘작품 제작 초반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고 한 번만 동의를 구한다’ 16명(20.5%), 기타 2명(2.6%) 순으로 나타남. 기타의 경우, ‘학교를 빠질 만큼 촬영이 많지 않다’거나,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음.

<표 5-46> 촬영기간 중 학교 수업 결석 동의 여부

구분	빈도(명)	백분율(%)
작품 제작 초반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고 한 번만 동의를 구한다	16	20.5
그때그때 수시로 동의를 구한다	34	43.6
특별히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	26	33.3
기타	2	2.6
전체	78	100

⑥ 학습권 보장

- 연기자의 학습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살펴본 결과, ‘보통이다’가 50명(64.1%)으로 가장 많았으며, ‘별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11명(14.1%),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 8명(10.3%),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7명(9.0%),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2명(2.6%) 순으로 나타남.

<표 5-47> 학습권 보장 정도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2	2.6
별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11	14.1
보통이다	50	64.1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	8	10.3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7	9.0
전체	78	100

⑦ 학교 수업 참여 중요도

- 학교 수업 참여 중요도에 대한 생각을 살펴본 결과, ‘대체로 중요하다’와 ‘매우 중요하다’가 각각 26명(33.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이다’ 22명(28.2%), ‘별로 중요하지 않다’ 3명(3.8%), ‘전혀 중요하지 않다’ 1명(1.3%) 순으로 나타남. 대다수 응답자는 학교 수업 참여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표 5-48> 학교 수업 참여 중요도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중요하지 않다	1	1.3
별로 중요하지 않다	3	3.8
보통이다	22	28.2
대체로 중요하다	26	33.3
매우 중요하다	26	33.3
전체	78	100

⑧ 학교수업이 갖는 의미에 대한 생각

- 학교 수업의 필요성과 그 의미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을 기르기 위해 필요하다’가 55명(41.7%)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기활동을 그만 둔 이후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9명(22.0%), ‘연기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4명(18.2%),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필요한 것 같다’ 14명(10.6%), ‘학교수업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다’ 7명(5.3%), ‘학교수업에는 흥미가 없지만 다른 공부를 하고 싶다’ 3명(2.2%) 순으로 나타남. 응답자 대다수는 학교수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기 위해 학교 수업이 필요할 뿐 아니라 연기활동 내지 이후의 사회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음. 학교수업 이외에 하고 싶은 공부로는 제2외국어, 연기, 댄스, 미술, 제과제빵 등, 노래 등을 제시하고 있음.

<표 5-49> 학교수업이 갖는 의미에 대한 생각(복수응답)

구분	빈도(명)	백분율(%)
연기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4	18.2
연기활동을 그만 둔 이후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9	22.0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을 기르기 위해 필요하다	55	41.7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필요한 것 같다	14	10.6
학교수업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다	7	5.3
학교수업에는 흥미가 없지만 다른 공부를 하고 싶다	3	2.2
기타	0	0.0
전체	132	100.0

(2) 정서적 발달

① 부모님 및 제작진, 소속사 관계자와의 평소 대화 정도

- 정서적 발달 환경과 관련해 부모님 및 제작진, 소속사 관계자와의 대화정도를 살펴봄. 먼저 부모님과 대화정도는 ‘매우 자주한다’가 34명(43.6%), ‘대체로 자주한다’가 27명(34.6%)으로 응답자의 78.2%가 부모님과 자주 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음. 이외 ‘보통이다’ 15명(19.2%), ‘별로 하지 않는다’ 2명(2.6%)으로 나타났으며, ‘전혀 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없었음. 제작진과의 대화정도에 대해서는 ‘대체로 자주한다’가 8명(10.3%)에 불과했으며, ‘보통이다’가 36명(46.2%), ‘별로 하지 않는다’ 19명(24.4%), ‘전혀 하지 않는다’ 15명(19.2%)으로 응답자의 43.6%가 제작진과 자주 대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소속사 관계자와의 대화정도를 살펴본 결과, ‘대체로 자주한다’가 7명(9.0%)으로 많지 않았으며, ‘보통이다’가 33명(42.3%), ‘별로 하지 않는다’ 20명(25.6%), ‘전혀 하지 않는다’ 18명(23.1%)으로 응답자의 48.7%가 소속사 관계자와 자주 대화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5-50> 부모님 및 제작진, 소속사 관계자와의 평소 대화 정도

구분	전혀 하지 않는다	별로 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대체로 자주한다	매우 자주한다	전체
부모님	0 (0.0)	2 (2.6)	15 (19.2)	27 (34.6)	34 (43.6)	78 (100)
제작진	15 (19.2)	19 (24.4)	36 (46.2)	8 (10.3)	0 (0.0)	78 (100)
소속사 관계자	18 (23.1)	20 (25.6)	33 (42.3)	7 (9.0)	0 (0.0)	78 (100)

② 여가시간의 충분성에 대한 인식

- 정서적 발달과 관련해, 평소 여가시간이 충분한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보통이다’가 37명(47.4%)가장 많았으며, ‘대체로 충분하다’ 24명(30.8%), ‘매우 충분하다’ 11명(14.1%), ‘별로 충분하지 않다’ 4명(5.1%), ‘전혀 충분하지 않다’ 2명(2.6%) 순으로 나타남. 평소 여가시간이 충분하다는 인식이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보다는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5-51> 여가시간 충분성에 대한 인식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충분하지 않다	2	2.6
별로 충분하지 않다	4	5.1
보통이다	37	47.4
대체로 충분하다	24	30.8
매우 충분하다	11	14.1
전체	78	100

③ 고민 문제 유형 및 고민상담 대상

- 고민문제와 관련해 유형별 우선순위를 살펴본 결과, 1순위의 최빈값을 기준으로 순서대로 제시하면, ‘연기력에 대한 불만족’이 1순위 22명(2순위 15명, 3순위 7명)으로 가장 많이 선택되었으며, ‘학업 성적’은 1순위 13명(2순위 8명, 3순위 13명), ‘친구 관계 문제’는 1순위 10명(2순위 10명, 3순위 8명), ‘외모나 신체에 대한 불만족’은 1순위 9명(2순위 18명, 3순위 7명), ‘자유시간 불충분’은 1순위 9명(2순위 7명, 3순위 10명)으로 나타남. 이처럼 응답자의 주된 고민거리는 연기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연기력’과 ‘외모/신체적 조건’등으로 나타났으며, 학업 및 학교생활과 관련한 ‘성적’이나 ‘친구 관계’ 등도 주된 고민거리로 확인됨. 이외의 고민거리로는 ‘가족 관계 문제’가 1순위 5명(2순위 2명, 3순위 4명), ‘가정의 경제적 형편’은 1순위 3명(2순위 4명, 3순위 6명), ‘소속사와의 관계 문제’가 1순위 2명(3순위 2명), ‘제작진과의 관계 문제’는 1순위 1명(2순위 1명, 3순위 1명)으로 나타남. 기타 답변으로는 캐스팅, 키, 수면시간 부족, 오디션 기회 부족, 진로 등을 고민문제로 밝히고 있음.

<표 5-52> 고민 문제(1-3순위)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학업 성적	13	8	13
가족 관계 문제	5	2	4
제작진과의 관계 문제	1	1	1
소속사와의 관계 문제	2	0	2
친구 관계 문제	10	10	8
가정의 경제적 형편	3	4	6
자유시간(여가시간) 불충분	9	7	10
연기력에 대한 불만족	22	15	7
외모나 신체에 대한 불만족	9	18	7
기타	4	2	1

- 고민상담 대상으로 응답자의 60%가 부모님이라고 응답했으며, 친구 18명(18.8%), ‘형제/자매’10명(10.0%), ‘선생님’ 5명(5.0%), ‘온라인 친구’ 3명(3.0%), ‘선배 또는 동료 연기자’ 2명(2.0%), ‘의사 또는 상담사’ 1명(1.0%), 기타 1명(1.0%) 순으로 나타남. 대다수 응답자는 고민 문제를 주로 가족(부모 및 형제/자매)이나 친구와 상의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제작진 또는 소속사 관계자와는 이야기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전문가(의사 또는 상담사)와의 상담빈도 역시 극히 적었고, 기타 답변으로는 ‘혼자 해결’한다고 있었음.

<표 5-53> 고민 상담 대상(복수응답)

구분	빈도(명)	백분율(%)
부모님	60	60.0
선생님	5	5.0
친구	18	18.0
형제, 자매	10	10.0
제작진 또는 소속사 관계자	0	0.0
선배 또는 동료 연기자	2	2.0
의사 또는 상담사	1	1.0
온라인 친구	3	3.0
상담대상 없음	0	0.0
기타	1	1.0
전체	100	100.0

④ 정서적 안정

○ 정서적 안정과 관련해 우울감, 스트레스, 자아 존중감, 자아 효능감, 정서적 고립감, 정서적 조절감으로 구분하여 측정한 후, 6개 항목에 대한 응답자의 평균값을 살펴봄. 그 결과, 우울감 2.48, 스트레스 2.91, 자아 존중감 3.91, 자아 효능감 4.01, 정서적 고립감 2.23, 정서적 조절감 3.79로 나타남. 대체로 부정적 정서에 해당하는 우울감, 스트레스, 정서적 고립감에 대한 평균값은 3.0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 정서에 해당하는 자아 존중감, 자아 효능감, 정서적 조절감에 대한 평균값은 3.8 이상으로 나타남. 특히 자아 존중감과 자아 효능감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확인됨.

<표 5-54> 우울감/스트레스/자아 존중감 및 효능감/정서적 고립감 및 조절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우울감	나는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17 (21.8)	19 (24.4)	25 (32.1)	14 (17.9)	3 (3.8)	78 (100)	2.48
	나는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	20 (25.6)	26 (33.3)	15 (19.2)	14 (17.9)	3 (3.8)	78 (100)	
	나는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21 (26.9)	21 (26.9)	17 (21.8)	16 (20.5)	3 (3.8)	78 (100)	
스트레스	나는 학업성적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인다	22 (28.2)	16 (20.5)	17 (21.8)	20 (25.6)	3 (3.8)	78 (100)	2.91
	나는 연기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인다	7 (9.0)	7 (9.0)	24 (30.8)	30 (38.5)	10 (12.8)	78 (100)	
	나는 연기자로 활동하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이 든다	15 (19.2)	18 (23.1)	20 (25.6)	17 (21.8)	8 (10.3)	78 (100)	
자아 존중감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0 (0.0)	0 (0.0)	26 (33.3)	36 (46.2)	16 (20.5)	78 (100)	3.91
	나는 나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6 (7.7)	2 (2.6)	17 (21.8)	31 (39.7)	22 (28.2)	78 (100)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0 (0.0)	2 (2.6)	17 (21.8)	33 (42.3)	26 (33.3)	78 (100)	
자아 효능감	나는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0 (0.0)	3 (3.8)	20 (25.6)	34 (43.6)	21 (26.9)	78 (100)	4.01
	나는 어떤 일이든 노력하면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1.3)	2 (2.6)	14 (17.9)	33 (42.3)	28 (35.9)	78 (100)	
정서적 고립감	나는 나에게 친한 친구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23 (29.5)	22 (28.2)	17 (21.8)	11 (14.1)	5 (6.4)	78 (100)	2.23
	나는 내가 필요한 존재라고 느껴지지 않는다	34 (43.6)	16 (20.5)	15 (19.2)	8 (10.3)	5 (6.4)	78 (100)	
	나는 내가 이해받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27 (34.6)	23 (29.5)	19 (24.4)	8 (10.3)	1 (1.3)	78 (100)	
정서적 조절감	나는 기분 나쁜 일이 있더라도 빨리 잊으려고 노력한다	1 (1.3)	2 (2.6)	18 (23.1)	37 (47.4)	20 (25.6)	78 (100)	3.79
	나는 화가 나가거나 기분이 상해도 이를 조절할 수 있다	0 (0.0)	7 (9.0)	25 (32.1)	34 (43.6)	12 (15.4)	78 (100)	

(3) 사회적 발달

①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친구 수

- 사회적 발달 기회와 관련해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친구 수를 일반인 친구와 동료 연기자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먼저 일반인 친구 가운데 ‘1~2명’이 35명(44.9%)으로 가장 많았으며, ‘없음’ 17명(21.8%), ‘3~4명’ 16명(20.5%), ‘5~9명’ 9명(11.5%), ‘10명 이상’ 1명(1.3%) 순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동료 연기자 역시 ‘1~2명’이 35명(44.9%)로 가장 많았으며, ‘없음’ 32명(41.0%), ‘3~4명’ 7명(9.0%), ‘5~9명’과 ‘10명 이상’ 각 2명(2.6%) 순으로 나타남.

<표 5-55> 마음을 터놓고 대화 가능한 친구 수

내용	없음	1~2명	3~4명	5~9명	10명이상	전체
일반인 친구	17 (21.8)	35 (44.9)	16 (20.5)	9 (11.5)	1 (1.3)	78 (100)
동료 연기자	32 (41.0)	35 (44.9)	7 (9.0)	2 (2.6)	2 (2.6)	78 (100)

② 활동 중인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여부

- 사회적 발달 기회를 파악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활동하고 있는 커뮤니티 여부를 살펴본 결과, ‘없다’ 56명(71.8%), ‘있다’ 22명(28.2%)으로, 커뮤니티 활동을 하지 않는 응답자가 많았음. 활동 중인 22명을 대상으로 커뮤니티 유형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SNS(인스타그램 18명, 페이스북/틱톡/밴드 각 1명) 활동을 한다고 응답했으며, 오프라인 커뮤니티로 학교 연극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1명 있었음.

<표 5-56> 활동 중인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여부

구분	빈도(명)	백분율(%)
있다	22	28.2
없다	56	71.8
전체	78	100

③ 제작진/소속사 관계자 및 동료/선후배 연기자와의 갈등해결방식

- 사회적 발달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제작진/소속사 관계자 및 동료/선후배 연기자와 의견이 다르거나 마찰이 있을 때 해결 방식을 살펴본 결과, 먼저 제작진/소속사 관계자와의 갈등해결방식으로는 ‘양측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한다’가 34명(43.6%)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신의 생각을 가급적 제작진/소속사 관계자에게 맞춘다’ 26명(33.3%), ‘마찰 생기는 것이

불편하거나 두려워 제작진/소속사 관계자에게 이야기 하지 않는다' 16명(20.5%), '나의 주장을 밀고 나간다' 2명(2.6%) 순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동료/선후배 연기자와의 갈등해결방식으로는 '양측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한다'가 48명(61.5%)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신의 생각을 가급적 제작진/소속사 관계자에게 맞춘다' 15명(19.2%), '마찰 생기는 것이 불편하거나 두려워 제작진/소속사 관계자에게 이야기 하지 않는다' 12명(15.4%), '나의 주장을 밀고 나간다' 3명(3.8%) 순으로 나타남. 응답자들은 공통적으로 갈등적인 상황에서 양측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특히 동료/선후배 연기자와의 관계 속에서 그 비중이 더 높았음. 반면 제작진/소속사 관계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생각을 가급적 내세우지 않고, 제작진/소속사 관계자에게 맞추는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남.

<표 5-57> 제작진/소속사 관계자 및 선배/동료 연기자와의 갈등해결방식

구분	제작진/소속사 관계자		동료/선후배 연기자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나는 양측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34	43.6	48	61.5
나는 내 생각을 가급적 제작진이나 소속사 관계자에게 맞춘다	26	33.3	15	19.2
나는 마찰이 생기는 것이 불편하거나 두려워 제작진이나 소속사 관계자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16	20.5	12	15.4
나는 나의 주장을 밀고 나간다	2	2.6	3	3.8
전체	78	100	78	100

(4) 직업적 발달

① 진로준비행동

- 진로준비기회를 파악하기 위해, 진로준비행동을 크게 진로 관련 정보 검색과 진로문제에 대해 부모님과 상의 정도를 살펴봄. 먼저 진로 관련 정보를 검색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매우 그렇다' 34명(43.6%), '그렇다' 27명(43.6%), '보통이다' 15명(19.2%), '별로 그렇지 않다' 2명(2.6%) 순으로 나타남. 응답자 대다수는 진로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본 적이 있음을 확인함. 다음으로 진로문제에 대해 부모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보통이다' 36명(46.2%), '별로 그렇지 않다' 19명(24.4%), '전혀 그렇지 않다' 15명(19.2%), '그렇다' 8명

(10.3%) 순으로 나타남. 응답자들은 진로문제와 관련해 부모님과 적극적으로 대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5-58> 진로 관련 정보 검색 및 진로문제에 대해 부모와의 대화 정도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나는 나의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알아본 적이 있다	0 (0.0)	2 (2.6)	15 (19.2)	27 (43.6)	34 (43.6)	78 (100)
나는 나의 진로문제에 대하여 부모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15 (19.2)	19 (24.4)	36 (46.2)	8 (10.3)	0 (0.0)	78 (100)

② 진로교육 경험 여부 및 만족도

- 진로준비행동과 관련해, 학교에서 연기 관련 진로교육 및 상담 경험 여부를 살펴본 결과, ‘있다’ 20명(25.6%), ‘없다’ 58명(74.4%)으로 나타남.

<표 5-59> 학교에서 연기 관련 진로교육 및 상담 경험 여부

구분	빈도(명)	백분율(%)
있다	20	25.6
없다	58	74.4
전체	78	100

- 학교에서 연기 관련 진로교육 및 상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20명을 대상으로 도움이 되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보통이다’ 9명(45.0%), ‘조금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가 각각 4명(20.0%), ‘별로 그렇지 않다’ 2명(10.0%), ‘전혀 그렇지 않다’ 1명(5.0%) 순으로 나타남.

<표 5-60> 학교의 진로교육 및 상담에 대한 도움 정도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	5.0
별로 그렇지 않다	2	10.0
보통이다	9	45.0
조금 그렇다	4	20.0
매우 그렇다	4	20.0
전체	20	100.0

③ 진로직업태도 및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생각

- 직업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크게 진로직업태도 및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생각으로 구분하여 살펴봄. 먼저 진로직업태도와 관련해 ‘내가 선택한 연예계에서 성공할 자신이 있다’에 ‘보통이다’ 29명(37.2%), ‘그렇다’ 28명(35.9%), ‘매우 그렇다’ 14명(17.9%), ‘별로 그렇지 않다’ 5명(6.4%), ‘전혀 그렇지 않다’ 2명(2.6%) 순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누가 뭐라고 해도 연기자 일을 선택할 것이다’에 ‘그렇다’ 34명(43.6%), ‘매우 그렇다’ 25명(32.1%), ‘보통이다’ 17명(21.8%),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가 각 1명(1.3%) 순으로 나타남. 연기자로서의 성공 및 연기자의 길을 선택할 것에 대한 긍정적 확신의 비중은 각각 53.8%와 75.7%로 비교적 응답자 다수가 진로직업태도에 있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5-61> 진로 직업에 대한 태도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나는 내가 선택한 연예계에서 성공할 자신이 있다	2 (2.6)	5 (6.4)	29 (37.2)	28 (35.9)	14 (17.9)	78 (100)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연기자 일을 선택할 것이다	1 (1.3)	1 (1.3)	17 (21.8)	34 (43.6)	25 (32.1)	78 (100)

- 초/중/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계속해서 연기자의 진로로 나아갈 생각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매우 그렇다’가 40명(51.3%)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이다’ 18명(23.1%), ‘조금 그렇다’ 17명(21.8%), ‘별로 그렇지 않다’ 2명(2.6%), ‘전혀 그렇지 않다’ 1명(1.3%) 순으로 나타남.

<표 5-62> 초/중/고등학교 졸업 후 계속해서 연기자의 진로로 나아갈 생각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	1.3
별로 그렇지 않다	2	2.6
보통이다	18	23.1
조금 그렇다	17	21.8
매우 그렇다	40	51.3
전체	78	100.0

5) 참여권

- 아동·청소년 연기자의 참여권은 크게 자기결정권,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권 및 정보 참여, 참여 관련 인식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봄. 구체적으로 자기결정권 영역은 진로 결정권과 개인 물품 소지에 대한 결정권 등, 표현의 자유 영역은 사적취향의 표현, 발언권 존중 정도 등, 정보 접근권 및 정보 참여 영역은 계약조건 및 안전/인권 관련 정보 제공 등, 참여 관련 인식 영역은 인권옹호기구의 필요성, 참여권 보장 수준 등과 관련한 세부항목으로 구성함.

(1) 자기결정권

① 진로 결정권

- 진로 선택시 부모의 자녀 의견 존중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연기자 진로를 결정했을 때, 부모가 본인의 결정을 좋아하고 존중했는지를 살펴본 결과, ‘매우 그렇다’가 35명(44.9%)로 가장 많았으며, ‘조금 그렇다’ 24명(30.8%), ‘보통이다’ 18명(23.1%), ‘전혀 그렇지 않다’ 1명(1.3%) 순으로 나타남. 응답자 다수는 연기자 진로를 결정할 때 자신의 결정에 대해 부모의 지지와 존중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5-63> 연기자 진로 결정 때, 본인 의사에 대한 부모의 존중 정도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	1.3
별로 그렇지 않다	0	0.0
보통이다	18	23.1
조금 그렇다	24	30.8
매우 그렇다	35	44.9
전체	78	100.0

- 작품/소속사/소속사와의 계약조항 결정시 아동·청소년 연기자의 의사 반영 정도를 살펴본 결과, 먼저 작품 선택시 본인의 의사 반영 정도에 대해서 ‘보통이다’ 27명(34.6%), ‘별로 그렇지 않다’ 21명(21.6%), ‘조금 그렇다’ 15명(19.2%), ‘전혀 그렇지 않다’ 9명(11.5%), ‘매우 그렇다’ 6명(7.7%) 순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소속사 선택시 본인의 의사 반영 정도에 대해서 ‘보통이다’ 30명(38.5%), ‘조금 그렇다’ 17명(21.8%),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가 각각 13명(16.7%), ‘매우 그렇다’ 5명(6.4%) 순으로 나타남. 소속사와의 계약 조항을 결정할 때 본인의 의사 반영 정도에 대해서는 ‘보통이다’ 37명(47.4%), ‘전혀 그렇지 않다’ 15명(19.2%), ‘별로 그렇지 않다’ 14명(17.9%), ‘조금 그렇다’ 9명(11.5%), ‘매우 그렇다’ 3명(3.8%) 순으로 나타남.

- 3문항 모두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전혀/별로)그렇지 않다’가 ‘(조금/매우) 그렇다’ 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음. 결과적으로 ‘보통이다’의 응답을 제외하고 살펴 보면, 작품/소속사/소속사와의 계약 조항 등을 결정할 때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 연기자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지는 않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5-64> 작품/소속사/소속사와의 계약조항 결정시 본인의 의사 반영 정도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1 내가 작품을 선택할 때 나의 결정이 적극 반영되었다	9 (11.5)	21 (26.9)	27 (34.6)	15 (19.2)	6 (7.7)	78 (100)
2 내가 소속사를 선택할 때 나의 결정이 적극 반영되었다	13 (16.7)	13 (16.7)	30 (38.5)	17 (21.8)	5 (6.4)	78 (100)
3 소속사와의 계약 조항을 결정할 때 나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었다	15 (19.2)	14 (17.9)	37 (47.4)	9 (11.5)	3 (3.8)	78 (100)

② 개인 물품 소지에 대한 결정권

- 제작진이나 소속사 관계자로부터의 개인 물품 소지에 대한 제지/통제 받은 경험을 살펴본 결과, ‘개인적인 물품이나 소지품에 대한 검사를 받은 경험’에 ‘없다’ 76명(97.4%), ‘있다’ 2명(2.6%), ‘촬영기간 동안 휴대폰 제출을 요구받은 경험’에 ‘없다’ 74명(94.9%), ‘있다’ 4명(5.1%), ‘촬영기간 동안 휴대폰 사용을 제지받은 경험’에 ‘없다’ 73명(93.6%), ‘있다’ 5명(6.4%)로 대다수 응답자는 제작진이나 소속사 관계자로부터 개인 물품 소지에 대해 제지/통제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5-65> 제작진/소속사 관계자로부터의 개인 물품 소지에 대해 제지/통제 받은 경험

구분	있다	없다	전체
1 제작진이나 소속사 관계자로부터 개인적 물품이나 소지품에 대한 검사를 받은 경험	2 (2.6)	76 (97.4)	78 (100)
2 촬영기간 동안 제작진이나 소속사 관계자로부터 휴대폰 제출을 요구받은 경험	4 (5.1)	74 (94.9)	78 (100)
3 촬영기간 동안 제작진이나 소속사 관계자로부터 휴대폰 사용을 제지받은 경험	5 (6.4)	73 (93.6)	78 (100)

- 제작진/소속사 관계자로부터 개인 물품 소지에 대해 제지/통제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 11명을 대상으로 대응방법을 조사한 결과,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가 11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1명으로 나타남.

(2) 표현의 자유

① 사적 취향의 표현

- 사적 취향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제작진/소속사 관계자로부터 머리카락 스타일 등에 대해 통제받은 경험’을 살펴본 결과, ‘없다’ 67명(85.9%), ‘있다’ 11명(14.1%)으로 나타남.

<표 5-66> 제작진/소속사 관계자로부터의 개인 물품 소지에 대해 제지/통제 받은 경험

구분	있다	없다	전체
제작진이나 소속사 관계자로부터 머리카락 스타일과 관련해 통제받은 경험	11 (14.1)	67 (85.9)	78 (100)

- 경험이 있는 11명에게 대응방법을 조사한 결과,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가만히 있었다’가 각각 5명이었으며,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가 1명으로 나타남.

② 발언권 존중 정도

- 발언권 존중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연기자가 제시한 의견이나 판단에 대한 제작진/소속사 관계의 인식과 태도를 살펴본 결과, 먼저 ‘어리다는 이유로 제작진/소속사 관계자가 본인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무시하는 경향’에 ‘별로 그렇지 않다’ 30명(38.5%), ‘전혀 그렇지 않다’ 23명(29.5%)으로 응답자의 68%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으며, ‘보통이다’ 23명(29.5%), ‘매우 그렇다’ 2명(2.6%)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어리다는 이유로 촬영현장에서 본인의 의견을 무시하는 경향’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가 각각 23명(29.5%)으로 그렇지 않다는 비중이 59%였으며, ‘보통이다’ 27명(34.6%), ‘조금 그렇다’ 3명(3.8%), ‘매우 그렇다’ 2명(2.6%)으로 나타남. 아동·청소년 연기자가 ‘미성숙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향’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23명(29.5%), ‘별로 그렇지 않다’ 22명(28.2%)으로 그렇지 않다는 비중이 57.7%였으며, ‘보통이다’ 25명(32.1%), ‘조금 그렇다’ 7명(9.0%), ‘매우 그렇다’ 1명(1.3%)으로 나타남.

<표 5-67> 아동·청소년 연기자의 발언권 존중 정도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내가 어리다는 이유로 제작진이나 소속사 관계자는 내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23 (29.5)	30 (38.5)	23 (29.5)	0 (0.0)	2 (2.6)	78 (100)
내가 어리다는 이유로 촬영현장에서 내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23 (29.5)	23 (29.5)	27 (34.6)	3 (3.8)	2 (2.6)	78 (100)
제작진이나 소속사 관계자는 내가 미성숙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23 (29.5)	22 (28.2)	25 (32.1)	7 (9.0)	1 (1.3)	78 (100)

(3) 정보 접근권 및 정보 참여

① 인권보호 관련 정보제공

-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을 살펴본 결과, 첫째, 제작진/소속사 관계자로부터 계약조건 및 관련조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에 대해, ‘있다’ 16명(20.5%), ‘없다’ 62명(79.5%)으로 나타남. 둘째, 제작진/소속사 관계자로부터 계약조건 및 관련조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에 대해 ‘있다’ 10명(12.8%), ‘없다’ 62명(87.2%)으로 나타남. 셋째,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상담 및 구제받을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에 대해 ‘있다’ 4명(5.1%), ‘없다’ 74명(94.9%)으로 나타남. 넷째,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상담 및 구제받을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에 대해 ‘있다’ 3명(3.8%), ‘없다’ 75명(96.2%)으로 나타남. 다섯째,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 이해 및 인권보호 방법 등에 대한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에 대해 ‘있다’ 2명(2.6%), ‘없다’ 76명(97.4%)으로 나타남.

<표 5-68>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 관련 정보제공 받은 경험

구분		있다	없다	전체
1	제작진이나 소속사 관계자로부터 계약조건 및 관련 조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	16 (20.5)	62 (79.5)	78 (100)
2	제작진이나 소속사 관계자로부터 촬영장 안전수칙에 관한 설명을 제공받은 경험	10 (12.8)	68 (87.2)	78 (100)
3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 보장을 위한 관련 정책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은 경험	4 (5.1)	74 (94.9)	78 (100)
4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상담 및 구제받을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	3 (3.8)	75 (96.2)	78 (100)
5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 이해 및 인권보호 방법 등에 대한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	2 (2.6)	76 (97.4)	78 (100)

(4) 참여 관련 인식

① 인권신장 및 옹호를 위한 기구 마련에 대한 인식

-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의 인권신장 및 옹호를 위한 전담수행기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먼저 인권교육기관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 32명(41.0%), ‘필요하다’ 25명(32.1%), ‘보통이다’ 17명(21.8%), ‘별로 필요하지 않다’ 3명(3.8%), ‘전혀 필요하지 않다’ 1명(1.3%) 순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인권상담기관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 35명(44.9%), ‘필요하다’ 25명(32.1%), ‘보통이다’ 17명(21.8%), ‘전혀 필요하지 않다’ 1명(1.3%) 순으로 나타남. 인권정보제공 전용 사이트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 34명(43.6%), ‘필요하다’ 23명(29.5%), ‘보통이다’ 17명(21.8%), ‘별로 필요하지 않다’ 3명(3.8%), ‘전혀 필요하지 않다’ 1명(1.3%) 순으로 나타남. 인권교육기관, 인권상담기관, 인권정보제공 전용 사이트 모두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필요하다’는 응답률을 합쳐서 세 기관의 필요성에 대해 각각 73.1%, 77.0%, 73.1%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표 5-69> 인권 신장 및 옹호를 위한 전담수행기관의 필요성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전체
1 인권교육기관	1 (1.3)	3 (3.8)	17 (21.8)	25 (32.1)	32 (41.0)	78 (100)
2 인권상담기관	1 (1.3)	0 (0.0)	17 (21.8)	25 (32.1)	35 (44.9)	78 (100)
3 인권정보제공 전용 사이트	1 (1.3)	3 (3.8)	17 (21.8)	23 (29.5)	34 (43.6)	78 (100)

② 인권침해 문제해결에 대한 참여권 보장

- 대중문화예술 중사 아동·청소년 인권침해 문제해결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의견 반영 및 참여권 보장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보통이다’가 29명(37.2%)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가 각각 16명(20.5%), ‘별로 그렇지 않다’ 12명(15.4%), ‘전혀 그렇지 않다’ 5명(6.4%)으로 나타남.

<표 5-70> 인권침해 문제해결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의견 반영 및 참여권 보장에 대한 인식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5	6.4
별로 그렇지 않다	12	15.4
보통이다	29	37.2
그렇다	16	20.5
매우 그렇다	16	20.5
전체	78	100

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인지 여부 및 인지 경로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인지 여부를 살펴본 결과, ‘전혀 모른다’가 42명(53.8%)으로 가장 많았으며, ‘들어는 봤지만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33명(42.3%), ‘잘 알고 있다’는 3명(3.8%)으로

나타남.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5-7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인지 여부

구분	빈도(명)	백분율(%)
잘 알고 있다	3	3.8
들어는 봤지만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33	42.3
전혀 모른다	42	53.8
전체	78	100

- 잘 알고 있거나 들어는 봤지만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응답한 36명을 대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접했는지 살펴본 결과, 주변 지인 14명(17.9%), 인터넷 뉴스(포털) 11명(14.1%), 계약 과정 4명(5.1%), 신문기사 3명(3.8%), 방송뉴스 2명(2.6%), 기타 2명(2.6%)으로 나타남.

<표 5-7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인지 경로

구분	빈도(명)	백분율(%)
신문기사	3	3.8
방송뉴스	2	2.6
인터넷 뉴스(포털사이트)	11	14.1
주변 지인을 통해 들었다	14	17.9
계약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	4	5.1
기타	2	2.6
전체	78	100

(2) 촬영장 내 인권침해 예방 대책

- 촬영장 내 인권침해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 대책과 관련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엄격한 법적 조치’가 31명(39.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전담 감독관의 제작 현장 파견제도’가 29명(37.2%), ‘제작진 대상 인권교육 프로그램 제도 마련’ 13명(16.9%), ‘피해 사례 신고센터 설치’ 5명(6.4%) 순으로 나타남.

<표 5-73> 촬영장 내 인권침해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구분	빈도(명)	백분율(%)
피해 사례 신고센터 설치	5	6.4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엄격한 법적 조치	31	39.7
아동·청소년 연기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전담 감독관의 제작 현장 파견제도 마련	29	37.2
드라마 제작진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교육 프로그램 제도 마련	13	16.7
전체	78	100

(3) 아동·청소년 연기자로서의 직업 유지를 위해 마련되어야 할 제도

- 아동·청소년 연기자로서의 직업을 계속 유지하는데 뒷받침되어야 할 제도와 관련해, ‘학교 출석 대체 가능한 현장에서의 학습 프로그램 개발’이 28명(35.9%)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동·청소년 연기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리 상담 센터 설치’와 ‘연기자·연예 기획사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소속사 등록/관련 정보 공개’가 각각 17명(21.8%), ‘제작진/소속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 교육’ 12명(15.4%), ‘인권침해 예방 프로그램 및 가이드라인 개발’ 4명(5.1%) 순으로 나타남.

<표 5-74> 아동·청소년 연기자로서의 직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마련되어야 할 제도

구분	빈도(명)	백분율(%)
아동·청소년 연기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리 상담 센터 설치	17	21.8
학교 출석 대체 가능한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진행할 수 있는 학습프로그램 개발	28	35.9
연기자·연예 기획사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소속사 등록/관련 정보 공개	17	21.8
제작진/소속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 교육	12	15.4
인권침해 예방 프로그램 및 가이드라인 개발	4	5.1
전체	78	100

4. 소결

○ 설문에 참여한 아동·청소년 종사자들의 기본사항은 인구 사회학적인 속성-성별, 연령, 학력-과연기자 경력, 소속사 여부 및 계약체결 유형 등을 중심으로 살펴봄.

- 먼저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 41명, 남성 37명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전체 응답자 78명 가운데 72명이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가운데 초등학생 비중이 가장 높았음. 재학 중이 아닌 응답자 4명은 검정고시를 합격했거나 준비 중에 있었으며, 미취학아동도 소수 포함되어 있음.

- 응답자의 연기활동경력은 3년 이상의 짧지 않은 연기경력을 지닌 응답자가 전체의 과반을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소속사에 속해 있는 응답자는 13명으로 소속사 없이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응답자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음.

- 소속사에 속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소속사와의 계약체결 형태를 살펴본 결과, 표준계약서를 체결한 비중은 낮았으며, 별도의 서면 계약 없이 구두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소수 포함되어 있음. 대중문화예술산업 내의 불공정 계약 체결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중인 표준계약서 제도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음

○ 생존권은 크게 신체적 생존권과 질적 생존권으로 구분하고, 신체적 생존권 영역은 ‘체형에 대한 평가’, ‘신체적/정신적 건강’, ‘스트레스 요인’, ‘수면시간’, ‘사고예방 안전교육’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음.

- 분석 결과 먼저 신체적 생존권 영역으로 체형 평가와 관련해, 응답자의 체형에 대한 본인과 제작진/소속사의 평가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매우 마른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본인 평가에서 조금 더 높게 나타남.

-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건강한 편이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상대적으로 제작진/소속사에서는 응답자의 건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연기자 생활을 시작한 이후, 앓았던 적 없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및 정신적으로 힘들거나 아파서 상담/심리치료를 받은 경우는 매우 낮았음. 다만 촬영기간 중 신체적으로 아프거나 다쳤을 때, 제작진/소속사의 적극적인 대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연기자가 개별적으로 병원을 방문하거나 소수이지만 촬영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해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응답자도 일부 포함되어 있음.

- 스트레스를 받는 주된 요인으로는 ‘연기를 잘해야 한다는 생각’과 ‘외모/신체적 조건’으로 나타남. 수면권은 평소와 촬영기간 중 일평균 수면시간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평소에 비해 촬영기간 중 수면시간은 크게 감소한데 반해, 수면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정도는 높지 않았음. 오히려 연기를 위해 수면시간을 줄여도 좋다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사고예방 안전교육과 관련해 촬영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음. 다음으로 질적 생존권은 행복감 정도와 연기생활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행복하지 않다’는 응답자는 없었으며, 대체로 행복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음. 연기생활에서도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만족스럽다는 응답을 보였음. 다만, 연기생활에 불만족스러운 주된 이유로는 ‘연기 활동의 횟수가 너무 적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음.

○ 보호권은 크게 학대 및 착취로부터의 보호, 차별로부터의 보호,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사생활/인권 침해로부터의 보호로 구분하고, ‘신체적/정서적 학대’, ‘성적피해’, ‘차별피해’, ‘촬영환경’, ‘사생활/인권침해’ 등을 중심으로 살펴봄.

- 신체적/정서적 학대와 관련해, 제작진/소속사 관계자 및 선배/동료 연기자로부터의 신체적 체벌은 많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 년에 1~2회 정도부터 한 달에 1~2회 정도 피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들이 있었음. 또한 소속사 관계자 또는 선배/동료 연기자로부터 일주일에 1~2회 정도, 주 3회 이상 지나친 꾸짖음과 욕설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자도 일부 있어, 소수이지만 정서적 학대에 대한 피해가 신체적 학대에 대한 피해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확인됨. 이러한 신체적/정서적 학대에 대해 응답자 다수는 그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적피해 경험과 관련해 제작진/소속사 관계자로부터의 성적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는 소수였지만, 이들은 캐스팅에 대한 불이익이나 문제제기에 대한 부담감을 이유로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촬영현장과 배역 캐스팅 과정에서 성별, 나이, 외모/신체적 조건(키, 몸무게)으로 인해 차별을 경험했는지 여부를 살펴본 결과, 나이나 외모/신체적 조건 때문에 배역 캐스팅 과정에서 차별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다만, 배역캐스팅의 경우 해당 역할에 요구되는 특정 연령대와 외모/신체적 조건 등이 정해져 있어 그 기준에 부합하는 연기자를 캐스팅하기 때문에 차별의 의도 없이 단순히 해당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서 캐스팅이 되지 않았는지 여부까지는 설문응답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 앞서 생존권 영역에서 외모/신체적 조건이 응답자의 주된 스트레스 요인으로 확인되었는데, 이와 관련해 제작진/소속사로부터 다이어트나 성형수술을 권유받은 경험을 파악한 결과, 성형수술 보다는 다이어트를 권유받은 경험이 있다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촬영환경과 관련해서는 악천우와 장시간/야간촬영, 별도의 촬영대기 장소 부재 또는 부족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자극적이거나 불편했던 촬영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 모두 제작진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촬영이 진행된 것을 확인함.

- 사생활 및 인권침해 피해 경험과 관련해, 제작진/소속사 관계자로부터 휴대폰/SNS 사용금지, 연애금지를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소수였으며, 이 가운데 SNS 사용금지를 요구받은 경험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 온라인 공간에서의 사생활/인권 침해 피해 경험은 많지 않았으며,

소수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주요 대응 방법으로는 ‘댓글이나 대화를 통해 직접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발달권은 크게 인지적 발달, 정서적 발달, 사회적 발달, 직업적 발달로 구분하여 살펴봄. 인지적 발달은 ‘학업 중도 포기에 대한 생각’, ‘연기력 향상을 위한 사교육 경험’, ‘학교생활 및 학습권 보장’, ‘학교 수업에 대한 만족도 및 중요성’ 등을 중심으로 살펴봄.

- 학업 중도 포기를 생각해 본 적 있는 응답자는 많지 않았으며,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주된 이유는 ‘학업과 연기생활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어서’와 ‘공부하는 것이 싫어서’ 등이 있었음. 응답자 대다수는 연기력 향상을 위해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본적으로 연기 교육을 포함해 최소 2개 이상의 사교육을 받아본 응답자가 많았고, 사교육 효과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연기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촬영기간 동안 일주일 평균 결석일을 살펴본 결과, 만나절부터 1일에서 3일까지의 결석 비중이 76%를 차지하고 있어, 촬영과 학업을 병행하는데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결석을 해야 할 때는 제작진/소속사에서 사전 고지하거나 협의를 하는 경우 보다는 수시 동의를 구하거나, 특별한 동의를 구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학습권에 대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임.

- 반면 응답자의 학습권 보장에 대한 인식은 ‘보통이다’가 가장 많아, 촬영을 위해 결석하는 것을 학습권 침해로 인식할 만큼 민감한 문제로 받아드리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한편 응답자 대다수는 학교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기 위함을 비롯해 연기활동 또는 졸업 후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으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음.

- 정서적 발달은 ‘부모님, 제작진/소속사 관계자와의 대화정도’, ‘고민상담 대상 및 주요 고민문제’, ‘정서적 안정’ 등을 중심으로 살펴봄. 응답자들은 부모님과과의 대화정도는 자주하는 반면, 제작진/소속사 관계자와는 자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고민상담 대상은 주로 가족(부모 및 형제/자매)이나 친구였으며, 제작진/소속사 관계자와는 상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주요 고민문제로는 연기자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문제로 ‘연기력’과 ‘외모/신체적 조건’인 것으로 확인됨. 정서적 안정과 관련해 부정적 정서에 해당하는 우울감, 스트레스, 정서적 고립감 보다는 긍정적 정서에 해당하는 자아 존중감, 자아 효능감, 정서적 조절감에 대한 평균값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아 존중감과 자아 효능감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사회적 발달은 ‘솔직히 대화할 수 있는 친구 수’, ‘갈등해결방식’ 등을 중심으로 살펴봄.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친구는 동료 연기자 보다는 일반인 친구가 많았으며, 제작진/소속사 관계자 및 동료/선배 연기자와 갈등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기보다는 양측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제작진/소속사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생각을 가급적 내세우지 않고, 상대에게 맞추는 비중이 높게 나타남. 이는 캐스팅이나 촬영 현장에서 연기자와 제작진/소속사와의 위계적인 권력관계가 작용하는 만큼 연기자가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 직업적 발달은 진로준비기회와 직업능력으로 구분하고, 이를 파악하기 위해 ‘진로준비행동’, ‘진로 교육경험 여부 및 만족도’, ‘진로직업태도’,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한 태도’ 등을 살펴봄. 응답자들은 스스로 진로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것에 반해, 부모와는 적극적으로 대화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 앞서 부모와의 대화는 자주한다고 했으나, 대화의 주된 주제가 진로문제는 아닌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음.

- 학교에서 연기 관련 진로 교육은 적극적으로 실시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해당 진로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진로 직업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연기자로서의 성공 및 연기자의 길을 선택할 것에 대한 확신 정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졸업 후에도 연기자로서의 진로로 나아갈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참여권은 자기결정권,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권 및 정보 참여, 참여 관련 인식 영역으로 구분하고, 이를 파악하기 위해 ‘진로결정권’, ‘발언권 존중 정도’, ‘인권보호 관련 정보제공’, ‘인권신장 및 옹호를 위한 기구 마련에 대한 인식’, ‘인권침해 해결에 대한 참여권 보장 수준’등을 중심으로 살펴봄.

- 진로결정권은 작품/소속사/소속사와의 계약조항 결정시 아동·청소년 연기자의 의사 반영 정도를 통해 파악하였는데, 대체로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 연기자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지는 않은 것을 확인함. 반면 제작진/소속사 관계자가 아동·청소년 연기가 어리다거나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이들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비중은 높지 않았음.

- 다음으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 관련 정보를 제공 받은 경험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인권보장을 위한 관련 정책 정보와 자료 제공,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상담 및 구제받을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 등은 매우 낮아, 인권 침해해결을 위한 참여권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함. 인권 보호 및 침해 해결을 위한 전담기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 대다수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해결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연기자의 의견을 듣고 참여할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그렇지 않다는 정도에 비해 조금 높게 나타남.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과 관련해, ‘인지 여부’, ‘인권침해 예방 대책’을 중심으로 살펴봄.

먼저 응답자의 대다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잘 알고 있거나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인지경로를 파악한 결과, 주변 지인이나 매스미디어가 주된 경로였으며, 계약 과정이나 대중문화산업 현장에서 제공되는 정보나 자료, 설명 등을 통해 인지한 응답자는 극히 소수에 불과함.
- 촬영장 내 인권침해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대책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전담 감독관 파견 등을 주로 선택해 규제와 감시 성격의 대책 마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아동·청소년 연기자로서의 직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마련되어야 할 제도로는 학교 출석 대체 가능한 촬영현장에서의 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소속사 등록 및 관련 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연기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리 상담 센터 설치 등의 필요성도 제기함.

제2절 심층인터뷰

1. 심층인터뷰 방법

- 심층면접(EBpth intBrviBw)은 민속지학에서 사용되는 방법론 중의 하나로, 민속지학은 철학과 인류학, 사회학 등 학문적 영역에서 수십 년 동안 축적되어온 광의의 해석학적 전통에 기반으로 두고 있음.
-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연구방법론으로서의 민속지학은 철학에 있어서 현상학과 시카고학파의 작업과 상징적 상호작용론으로 대표되는 사회학, 그리고 인류학적 접근, 윌리엄스의 문화유물론, 여성학에서 발원한 실험적인 쓰기와 자기민속지학 등을 포함(윤택림, 2004). 그리고 미디어 연구에서는 민속지학의 이러한 연구전통을 받아들여 질적 방법론에 적용.
- 아동·청소년 종사자들이 경험하는 기획사와의 관계, 제작현장 내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방식, 장시간 노동, 기본 권리 보호 현황과 성차별 대응 방식 등에 대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심층인터뷰를 진행함.

1) 심층인터뷰 진행과정

- 인터뷰 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동안 진행. 조사 과정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최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구술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경청하는 방식을 취했지만,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추가적인 질문을 던지거나 재면접하는 방식을 택함.
- 인터뷰는 반구조화된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 질문의 목표와 주제는 사전에 정하지만 확정된 질문을 강제적으로 던지는 방식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최대한 진솔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을 취함. 질문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틀에 해당되는 질문을 하고, 기획사와의 관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관한 인지 여부, 차별 등에 대한 문제 해결방식에 대한 의견을 포함함.
 - 인터뷰 기간은 2020년 8월 14일~ 11월 13일까지 3개월 동안 진행함.
 - 질문은 아동·청소년의 인권체계의 4개 영역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틀에 해당되는 질문을 하고, 기획사와의 관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관련 인지 여부, 차별 등에 대한 문제 해결방식에 대한 의견을 포함함.

2) 심층인터뷰 대상자 세부정보

- 아이돌연습생 관련 3인(트레이너 포함)과 아동·청소년 연기자 3명, 전문가그룹의 경우 아이돌 연습생들을 근거리에서 오랫동안 지켜본 보컬트레이너와 엔터테인먼트 학원 대표를 인터뷰 하였고, 아이돌 연습생의 경우, 회사에 소속됐던 연습생, 데뷔 경험을 한 연습생 그리고 소속사 오디션을 준비하는 개인 연습생 등 다양한 상황에 놓인 연습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함.
- 아동·청소년 연기자의 경우, 학원 등을 통해 연기수업을 받은 경험이 있고, ‘보조출연’, ‘단역’, ‘조연’, ‘주연’ 등 현장 경험을 한 배우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진행.⁴²⁾

<표 5-75> 심층인터뷰 응답자 인적 사항

종사 분야구분	구분	성별	소속 여부	교과과정	경력	단계	면접자	
아이돌 연습생	A	남	회사 ⁴³⁾	고등 졸	6년 이상	데뷔	대상자	
	B	여	회사 ⁴⁴⁾	고등 졸	3년 이상	데뷔조	대상자	
	C	남	개인	고등 재학	3년	오디션 준비	대상자	
아동 청소년 연기자	D	여	없음	중등 재학	6개월~1년	보조출연	대상자	
	E	남	없음	초등 재학	1년 이상~3년	단편 주연	보호자	
	F	여	회사 ⁴⁵⁾	고등 졸	10년 이상	조연	대상자	
전문가 그룹	G	여	보컬 트레이너					
	H	여	엔터테인먼트 학원 대표					

- 심층인터뷰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에 포함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음.
- 생존권의 경우, ‘신체 및 정신적 건강’과 ‘스트레스’ 그리고 최근 음악산업에서 논란이 된 아이돌 ‘합숙시스템’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 진행⁴⁶⁾.
- 보호권의 경우, ‘노동환경’과 ‘성적피해’ 등을 질문하였고, 그 결과 참여자들은 대중문화 산업 내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노출돼 있는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

42) F의 경우, 10년 이상 아동·청소년 연기를 해왔다는 점에서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연기자들에 대한 처우 등 구체적인 변화를 들을 수 있었음.

43) 2개의 소속사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음.

44) 3개의 소속사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음.

45) 1개의 소속사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음.

46) 아동·청소년의 인권체계의 4개 영역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에 관한 인터뷰 내용을 진행하였으며, 응답결과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였음

- 발달권의 경우, ‘학교생활’, ‘불안한 미래’를 중심으로 질문하였고, 인터뷰 결과 한국사회 대중문화산업 시스템이 지닌 문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음.
- 참여권의 경우,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통제와 차별’의 실태를 확인하였으며, 사회적 인식 전환과 함께 기획사 시스템과 제작 환경 등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
- 이 밖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관한 인지여부와 인권향상을 위한 개선안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2. 심층인터뷰 결과

1) 생존권

(1) 획일화된 신체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자발적/비자발적 수행

-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들은 대체적으로 ‘대중에 노출되는 직업’이라는 점에서 “정상체 중보다 더 날씬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 소속사의 제안/강요도 있지만, 다이어트는 물론 성형수술 및 수술까지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순이 확인됨. 미디어에서 재현되는 자신의 모습이나 대중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는 점에서 자발적/비자발적 수행이라고 판단됨. 미디어에 자주 노출되는 연예 종사자들에 대한 대중의 획일화된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

“아이들의 평균 정해져 있는 키와 몸무게가 있다. 남자는 키에서 120을 빼면 그 몸무게가 나와야 한다. 저는 1학년 때 48kg이었으니까 마른 편이었다. (살이 쪼면)남이 더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이면 제가 위축되는 거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 같다. 매니저도 ‘왜 밤에 뭘 먹니?’라고 지적한다. 살 빼라는 얘기는 저도 들었다. 제가 51kg됐을 때. 몸무게에 따라 몸이 다르긴 하다. 몸이 가벼우면 ‘춤선’도 예쁘고”-A-

“카메라에 더 부하게 나온다. (연예인들의 실물을 보고)저렇게 빼야 저 정도 나오는구나 싶었다. 다이어트하며 헬스를 같이 하고 있다. 탄수화물은 거의 안 먹고. 평소 쌀밥을 엄청 좋아한다. 삼겹살 먹을 때 밥을 세 공기나 먹는다. 너무 많이 먹다보니 살이 찼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아예 끊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요즘에는 한 공기 정도만 먹고 있다. 하루 한 두 끼 먹고 조금 배고프면 아예 안 먹고 빨리 자야겠다고 생각한다. 밤에 너무 배고프면 원래 먹던 것에 반 정도 먹고. 캐스팅 철이라 (먹는 걸)거의 줄이고 있다. 하루 한 끼. 학교 점심시간에 급식만 먹는다.”-C-

- ‘카메라 속 완벽한 모습을 달성하기’위해서 촬영 전 잠을 안 자거나 하루 한 끼만 먹는 경우를 선택하기도 함. 문제는 저연령 아동 연기자들도 자신의 몸에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느끼며 몸무게 유지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음.

“마른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화면을 보면 통통하게 나온다. 그래서 더 말랐으면 좋겠다. 그래서 샐러드를 싸가지고 다니곤 한다. 밥 먹고 자면 붓는다는 강박관념이 생겼다. 그래

서 촬영 있으면 잠을 안 자기도 한다. 화면상 비춘 모습이 뚱뚱하게 보여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몸무게를 빼려고, 진짜 엄청 추운 겨울에 패딩 껴 입고 2~3시간 걸어 다니고 그랬다. 그렇게 하면서 살을 열심히 빼고 촬영했다. (회사에서도) ‘너 살 좀 빼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 정도 살 못 빼면서 배우 할 수 있겠냐’고...(중략)...코 수술 하고 싶다. (새 소속사에서 코 수술하자고 하면)네, 좋아요. 할게요. 기다렸다는 듯이 말할 것 같다.”-F-

“저는 성형을 위해 돈을 모아야겠다고 생각하진 않았다. 그런데, PD님과 1대1로 대화를 하면 성형을 계속 말씀하시더라. 자기 친구가 성형외과에 있는데 어떠냐고.”-B-

“감독들이 여자애들 살쨍했다고 얘기를 많이 한다. 제가 볼 때에는 적당히 예쁜데 뭘 더 빼라는 건지 싶을 때가 많다. 그래서 애들이 그 (한번)촬영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한다. 지금 한참 클 건데. 그런데, 감독들은 화면에서는 달덩이로 나온다는 거다.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경락마사지 같은 걸 하기도 한다. 몸에도 살이 쪼면 안 되니까. 뭐가 먹고 싶은데도 적당히 먹으라고 하고, 요즘은 남자 애들도 마른 애를 찾는다.”-E-

“통통한 편이다. 학원 동료들만 봐도 다 말라서 상대적으로 통통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 선생님께서 한 남자 동료한테 살 빼라고 말한 적이 있다. ‘왜 살을 빼야하느냐’라고 물어 봤었다. 그 애가 전혀 뚱뚱한 편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랬더니, 연기를 할 때 둔해 보인다고 하더라. 아무래도 보여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조금씩은 말라야 한다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다. 학원 애들만 봐도 몸무게가 다 40kg대 후반에서 50kg대 초반. 그래서 제가 상대적으로 더 통통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키 생각하면 정상인데...성형은 다다음 달에 할 예정이다. 얼굴에 대한 고민은 딱히 많이 있는 건 아니다. 그런데 쌍꺼플 정도는 하고 싶다. 다른 성형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없다. 그런데 학원 다니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도 하고 싶고 저기도 하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한다.”-D-

- 지원자 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동·청소년 종사자들은 오디션 현장이나 제작현장에서 더 민감하게 체감하는 상황임. 2016년 <프로듀스 101>의 상업적 성공과 2020년 <미스터 트롯>의 10대 지원자의 성공은 더 많은 미성년자들의 수 증가를 가져옴.
- 따라서 연기자거나 연습생들의 경우, 가수나 연기 데뷔 기회를 얻기 위해 소속사 관계자 의견이나 제작 현장 스태프들의 제안을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임. 미디어는 획일화된 젠더 이미지를 추구하고 있고,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라면 다른 요소들은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기획사 관계자들은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는 상황. 따라서 관계자들의 날씬한 몸이나 성형 제안 등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2) 개인이 떠나는 성공 불안감의 징후, ‘정서불안’

- 아동·청소년 연기자나 아이돌연습생 모두 스트레스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인터뷰대상자들은 대체적으로 “공황장애는 다 겪는다”고 답함. 다만, 본인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인식을 하는 경우는 대체로 열심히 활동하거나 준비하는 기간이라기보다 잠깐의 휴지기를 겪거나 아이돌 연습생활을 중단한 경우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하는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음.
- 심층인터뷰 참여자 중 자신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혹은 정신건강을 위한 제3자의 도움을 얻는 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남.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무서웠다. 사람 많은 곳이 불편했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 심장이 빨리 뛰고 숨도 잘 안 쉬어지고, 열도 나고 그랬다. ‘왜 그러지 난 괜찮아’라고 생각했는데도 진전이 안 되는 거였다. 그래서 몇 번 발작했다. 엄마가 놀라서 ‘너 공황장애 아니냐’고. 그 얘기 듣고도 내가 그랬다. ‘내가 무슨 공황장애야, 그런 거 없어’라고. 그런데 또 밤에 갑자기 발작처럼 손발이 떨리는 거였다. 다이어트 스트레스도 컸고 외부적으로 회사랑도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다. 정말 손발이 바들바들 떨렸다. 불안하고 열나고 해서 병원에 가자고 해서 응급실 갔는데, ‘공황장애 있으시냐’고 묻더라. 정신과 갔더니 ‘공황장애 증상이 심한 것 같다’고 해서 약을 한 달 먹었다. …(중략)…잘 참는 스타일인데… 누가 뭐라 해도 ‘아, 그럴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넘기는 편이다. 그런 것들이 쌓여서 그런 건지 저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 갑자기 심해져서 병원에 가니까 알레르기라고 했다. 입원해서 검사해보니 정체불명 알레르기라고. 처음에는 ‘여기 돌파리구나’ 싶었다. 그런데, 아직도 심하다. 조금씩 올라온다.”-F-

“저도 공황장애 같은 거 있었다. 잘 못 느꼈었다. 그런데, 제가 걸려 보니까 알겠더라. 우울증 심하게 되면 사람이 피폐해진다. 공황장애는 (연습생들)다 있다고 보면 된다.”-A-

“자해 및 자살 시도 했다(손목을 긋는 행동으로 표현)는 친구도 있었다. 그런 걸 얘기해도 놀라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리고 진지하게 파고들면 너무 힘들어하니까. ‘얘기해도 괜찮아’라고 안정감을 주는 게 중요하다.”-G-

“(정신건강)상담 받고 있다. 상담이 잘 맞는지 모르겠다. 개인적으로는 상담 샘플 안 맞는 것 같다. 처음에는 얘기를 다 들어줬다. 듣다가 이 소재가 끝나면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을 말씀 해주시는데, 저는 아직 그럴 상황이 아닌데...”-B-

“병원에 가면 ‘약 어떠세요?’라고 묻는 정도다. ‘아직까지 이런 증상들이 있으세요?’라고 묻고 ‘일단 약을 줄여봐요’가 끝이다. 상담센터 다녀볼까도 생각해봤지만, 그럴 시간이 없었다.”-F-

- 앞선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설문참여자 모두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해 느끼는 자아존중감과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심층인터뷰 결과는 대부분 정서적으로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의 동료들(연습생/연기자)도 정서적 우울감을 느끼고 있었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질적 연구를 통해서도 현장 경험이나 자신의 상태를 보다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임.
-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실태조사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종사자에 대한 양적 설문조사·질적 인터뷰 조사가 정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양적 설문조사에서도 정서적·신체적 상태에 대한 질문을 보다 구체화해서 보다 많은 사례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3) 연습생 탈출과 차기 작품 출연 준비과정에서 느끼는 ‘조급함’

- 연습생들은 기획사에서의 방출 경험 등을 통해 오랫동안 준비했던 아이돌 가수 ‘데뷔’가 좌초될 때 느끼는 불안감이 가장 큼. 연기자 역시 ‘빨리 다음 작품을 결정해야한다’는 불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남.

“학교 안에서 제가 특이한 케이스였다. 저는 학교 계약하기 전부터 입시를 봤는데, 그때부터 유명했었다. 우쭐했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 때 나이에는. 하늘 높은 줄 몰랐다. 목에 깃스 줘 주고. 그런데, (회사 나오고 학교생활)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회사에서 나오면 연습생들은 아무 것도 아닌 게 된다.”-A-

“제가 작년에 작품 하나 끝나고 나서 조급해했다. 계속 연기를 해야 한다는 스트레스 그런 것들이 쌓였던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우울증이 심해졌다.”-F-

“계약서에 데뷔 못하면 얘기를 통해서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었다. (사실상)해지가 안 될 수 있는 내용이었던 거다. 이 계약서 (유효)기간은 멤버 구성이 완료되고 데뷔시까지 라고 돼 있었다. 그러면 멤버구성이 되지 않으면 계약해지가 안 된다고 볼 수 있다.”-B-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 이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서로. 충돌이 생기니까 말을 안 하게 됐다. 멀어지고 그래서 그냥 어려운 사이. 일적으로만 비즈니스로만 대했다, ‘우리 이거 연습해야 돼’. 이렇게만 하면 끝나고 밥 먹을 대에도 비즈니스적인 사이였다...(중략)...같이 지내던 친구들이랑 안 맞아서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회사에서는 ‘그냥 참아라’, ‘데뷔하면 좋지 않느냐’고 무시했다.”-B-

“점점 캐스팅 나이가 어려워지고 있다. 예전에는 초등학생들에게는 ‘더 커서 와’ 그랬는데 이제는 달라졌다. 0000의 경우, 16살 이하만 뽑는다. 만으로 보면, 고1까지다. 큰 회사는 나이 있는 친구들을 선호하진 않는다. 적정나이를 스물 한 두 살 전후라고 하지만, 점점 캐스팅 나이가 어려워지고 있다.”-H-

- 소속사가 있는 경우, 회사와의 갈등(계약)으로 인한 어려움도 경험하면서, 성인에 대한 불신을 갖기도 함. ‘아이돌 연습생의 경우, ‘그룹’ 데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연습생들 간의 불화를 겪으면서, 가족관계’, ‘학업스트레스’보다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청소년들도 대중문화예술인 준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중문화산업 분야 지원자들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움.

(4) 강요된 협업, 합숙시스템

- 아이돌 그룹 내 멤버들 간의 ‘갈등’ 해결 대안으로 합숙시스템의 변화를 사회에서는 요구하지만, 인터뷰 대상자들은 ‘합숙’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답함. ‘합숙’이 없다면 연습생들이 집과 기획사를 오고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부담감, 체력적 소모로 인한 피로감이 커진다고 답함.

“출퇴근해도 되지만, (합숙을 안 하면)본인이 너무 힘들다. 집이 다 가까이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늦게 끝나기도 하고. 현실적으로는 아이들에게 합숙이 훨씬 더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인성을 뺄 수 있는 출구가 필요한 것 같다. 그게 없는 게 문제다. 합숙자체가 문제는 아닌 것 같다.”-G-

“합숙이 필요하긴 하다.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면 집이 인천인데 연습실이 강남. 출퇴근 하려면 잠을 아예 못 잔다. 그 다음 바로 스케줄 있으면 새벽 5시, 6시면 못 나온다. 갔다가 다시 못 온다.”-A-

“성인언니의 경우 지역에서 혼자 와서 자취를 하기도 했고, 숙소를 구하지 않는 이상...”-B-

- 합숙은 1차적으로 시간적이고 비용적인 경제적 기준으로 기획사의 선택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임. 합숙의 방법, 기획사 관계자의 관리, 동료들과의 갑작스런 공동생활 등 다양한 문제를 겪게 되지만, 미성년자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상식이 되면서 동료들 간의 갈등이 비일비재하게 됨.
- 언론보도에서는 합숙 장소에 CCTV를 설치하거나 여성들만 거주하는 장소에 남자 기획사 관계자가 수시로 오고가는 상황을 불편하게 느끼는 아동·청소년들의 인터뷰도 쉽게 찾아볼 만큼 합숙 장소의 관리는 문제적이라 할 수 있음.
- 공동거주를 통해 데뷔를 준비해야 하는 현재의 과정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정보보호와 동료들 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함.

(5) 감염병인 코로나19의 영향

- 아동·청소년연기자들의 사람들과 부딪히며 연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코로나 감염에 대한 불안감과 우려가 큰 상황임.
- 아이돌 연습생들의 경우에는 회사의 투자가 줄어들면서 연습공간이 사라지거나 연습생을 뽑는 공개 오디션이 사라지고 있었음. 특히 아이돌연습생의 경우 성인이 되기 이전 ‘데뷔’가 통상적인 상황이 된 때라서 조급함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

“학교가 코로나 때문에 2~2.5단계였을 때 수업 끝나면 바로 나가라고 했었다. 학교에서 연습을 할 수 없었다...*(중략)*...요즘 아이들은 고등학교 때 다 데뷔를 하는 편이기도 하다. 그러다보면 ‘이러면 안 되는데, 나도 소속사를 빨리 구해야 하는데’ 싶은 거다. 너무

불안하니까.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오디션도 없고 멘탈이 깨져서 계속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기회가 없다. 회사에서 오디션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개인DM으로 많이 오고 그러는 데 그거 없고 공개오디션은 아예 없고...(중략)...공개연습실들이 있다. 하루 3천원을 내면 가서 연습할 수 있다. 24시간 문을 열어 놔서 몇 시간을 해도 상관없다. 홀 들어가서 각자 이어폰끼고 연습하는 거다.”-C-

“마스크를 써도 촬영장 가면 딱딱딱 붙어 촬영한다. 그때마다 겁이 난다. 학교는 다 거리두기 하고 있지 않나. 현장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냥 체온 대충 재고 ‘들어가자’가 끝이다. 그러면 애들을 보내 놓고 나서도 안전부절 못한다. 그렇다고 이 기간에 안 찍으면 경력 단절이니까. 불안하고. 오디션 본 곳 중에 연락이 와서 ‘요즘 코로나라서 요’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연락이 안 온다. 그래서 (촬영)보내놓고 뒤에서 기도한다.”-E-

“돈이 없는 회사는 아니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투자가 끊긴 건지 어려워진 것처럼 보였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진 것 같았다. 그 전에는 회식 끝나고 연습생들에게 5만원씩 주기도 하고 그랬다. 그때는 연습생들이 엄청 많았음에도. 그런데 갑자기 어려워졌다고 했다. 그래서 연습실이 없어지기도 하고.”-B-

- 미세 먼지나 촬영을 하기 어려운 흑한기/혹서기 등에 대한 현장 촬영 기준이나 무대 공연 등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의 촬영 준비는 더욱 어려운 상황임. 오디션을 통해 대중문화산업에 유입되는 과정이 보편적 상황에서 비대면 오디션 등 다양한 오디션 방법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됨. 해외 배우/연기자 노조의 다양한 지원책 등을 마련하고 있는 제도를 고려해 국내에 적용 가능한 방법을 논의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함.

2) 보호권

(1)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의 부재

- 아동·청소년연기자나 아이돌연습생들은 회사에 들어가도 체계적인 시스템 속에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 아이돌연습생의 경우, 중소형 회사의 경우 제대로 된 연습실마저도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숙소는 여름쯤 생겼었다. 그런데 상상하기 싫다. 저희는 선배들이 사용한 그 침대 그 화장실을 그대로 7명에서 사용했다. 방은 2개였고 그 중 하나는 너무 작은 방이기도 했다. 그래서 안방에서 7명이 살았다. 화장실 1개에 7명이 쓰고...”-A-

“회사는 배우회사였고 큰 규모가 아니었다. 주택 같은 곳이었다고 보면 된다. 연습공간도 없었다.”-B-

“옆에서 담배 피우는 것이 기본이다.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안 되겠다 싶어서 담배는 옆에서 피워 달라고 했는데, 그날 하루 종일 ‘야, 담배 이쪽에서 피우지마. 큰 일 난다’며 오하러 더 비아냥거렸다.”-E-

- 언론에 자주 노출되는 아이돌 가수 소속 대형기획사를 제외하고는 합숙 장소나 연습실 등 준비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비정기적으로 운영되거나 연습 체계가 명확하지 않았음. 기획사 관계자들과 거의 24시간을 함께 생활해야 하지만, 미성년자와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과 보호 장치 마련 등에 대한 인식이 거의 부재하고, ‘성공’, ‘데뷔’, ‘수익’만을 고려하게 되면서, 불편하고 원칙 없는 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상업적 젠더 이미지 수행요구와 성폭행 위협의 공존

- ‘여자’ 아동·청소년 연기자나 아이돌연습생들 모두 ‘성폭력’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아이돌 연습생의 경우, ‘음악적 장르나 색깔’과는 별개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획일화된 젠더 역할론/이미지’를 제안/강요받게 되면서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함. 데뷔가 결정될 경우 회사와의 갈등을 겪거나 회사의 요구조건에 맞지 않으면 방출되거나 소속사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 놓임.

“OOO회사(대형) 연습생이었던 제자가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 여성스러운 컨셉을 원해서 부딪침이 있었다. 그래서 다른 회사로 옮겼다...(중략)...여자연습생만 시작하는 케이스는 뭇 때문에 힘들다하면 매니저들 때문이다. 운동을 하거나 춤 연습을 할 때에도 터치가 있다고. 저는 적게 본 케이스다. 스트레칭 할 때 도와줄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스킨십한다. 그건 너무 빈번하다. 연습생들은 예민한 사춘기 때 아닌가. 애들이 그런 것을 회사에 얘기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비슷한 놈들이기 있기 때문에. 여학생들은 실력보다 부딪히는

계 사실 더 많다.”-G-

“성추행? 연기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장난치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그 선생님들은 의도 없이 얘기한 걸 수도 있는데 저랑 친구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걸 수도 있다...(중략)…선생님이 남자분인데, 마법 걸렸다는 걸 웃기게 얘기 하거나 할 때 기분이 안 좋긴 하다. 친구한테는 ‘살 빼’라고 한 적도 있다. 저희 남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터치를 하신다. 저는 이 정도만해서 괜찮은데, 제 친구한테 허벅지를 뺐다거나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D-

- 최근에는 기획사가 연습생의 성공 가능성을 빨리 판단해 계약해지를 하는 추세여서, 기획사를 옮겨 다니는 상황이 자주 발생함. 따라서 환경이 자주 바뀌고 기획사 관계자들의 체계적인 관리 준비가 없는 경우에는 성추행 경험이나 획일화된 젠더 이미지를 준비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선정적이고 자극적 연기수행과정에서 겪게 되는 트라우마

- 아동·청소년 연기자들의 경우, 아동 성폭력이나 학대 등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연출에 노출되는 사례들이 빈번했음. 다만, 이런 배역이 들어왔을 경우 ‘을’의 입장에서 아동·청소년 연기자의 보호자 참여의 상의 과정이 부재해 거절하기 어려운 구조.

“OO은 이목구비가 세계 생겼다. 그래서 자살이나 학대 등의 장면에서 많이 연락이 온다. 프로필 사진 올려놨더니. 저희가 계속 캔슬 했는데 5~6번이 연락이 왔다. 먹살 끌고 가는 장면 그리고 목을 매다는 장면도. 대본 가서 봤더니, 어떤 남자가 아이를 먹살 끌고 가서 목에 목줄을 하는 것까지 돼 있었다. 감독은 자기가 완전히 그렇게 찍지는 않을 거라고 하지만 9살밖에 안됐는데, 과연 찍어도 되는 걸까 싶었다. 누군간 찍었겠죠. 이게 너무 속상한 거다. 배역도 필요하겠지만 반드시 아이한테 그럴 필요가 있는가...(중략)…배우는 입장에서 특히 위에서 ‘어머니 이걸 꼭 하셔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면 또 하기 싫은 데도 해야 할 때가 있다. 자살, 학대당하는 것 다 억지로 해야 한다.”-E-

“한번은 아동성폭력을 고발하는 영화를 촬영 할 뻔 했었다. 그게 자극적인 내용이었다. 엄마가 영화 나온 거 보고 ‘오히려 떨어진 게 잘됐었다’고 하더라. 그런 건 안 찍는 게 좋았던 것 같다고. 어린 나이에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걱정하신 것 같다. 하지만 저는 연기니까 찍었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어차피 연출된 거고 각본 안에서 벌어진 일이니

까. 내가 직접 당하는 게 아니니까. 물론, 그런 감정을 느끼긴 하겠지만. 내가 직접적으로 받는 상처는 아니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하진 않았다.”-F-

- 내용의 심각성을 미성년 종사자에게 제안할 때의 프로세스, 구체적인 내용 설명과 보호자와의 소통, 촬영 이후의 정서적 심각성이나 상담 등의 제안 등 제작 매뉴얼은 부재하였고, 내용의 설명과 연기 가능성만을 이야기하는 문제적 상황이 비일비재함을 알 수 있었음.

3) 발달권

(1) 학교보다는 연기현장과 기획사

- 아동·청소년 연기자와 아이돌 연습생들은 기본적으로 ‘학교생활’에 집중할 수 없는 구조임. 학습권 보장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기 때문임.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다. 중학교 또한 촬영 때문에 못 다녔다. 그 때 어린이 프로그램 하고 있었는데 그 촬영이 일주일에 2~3회 촬영이었다. 주 5일 학교를 다녀야 하는데 그 중 3일을 빠졌다....(중략)...학창시절 추억을 만들고 싶었다. 끝나고 떡볶이 먹으러가거나 쉬는 시간, 점심시간 친구들과 수다 떨고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좋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에도 제대로 해보질 못 해 예고보다는 일반고를 갔던 것 같다.”-F-

“(테비한 친구는)학교에서 비니 쓰고 아침마다 자고 있고 하니까. 그러다 조퇴하고 연습하러 가고. 가까이서 봤을 때 너무 힘들어보였다. 학교 초에는 사진도 같이 찍고 웃고 그랬는데 새벽2시까지 퍼포먼스 준비한다고 하더라....(중략)...이 친구들(회사소속 연습생)이 말하는 거 보면, 맨날 학교 밤10시까지 연습한다고 한다. 집에 가면 12시. 그게 무한반복이다.”-C-

“요즘 애들이 학교수업보다는 인터넷강의 같은 걸 많이 해서. 그를 통해 진도를 따라간다. 저도 독학을 할 때 인강을 했었다. 인강 들으면 되니까. 학습지 받는 것만 채우고. 그 날 하루 빠졌다고 해서 내 시험 대신 성적에 큰 타격이 있지는 않는 것 같다.”-D-

“말해준다. 너는 지금 아무 것도 아니니까 학교생활이나 성적, 입시라던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가야 한다고. 학위가 라이선스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기도 하다. 웬만하면 굳이 이 전공이 아니더라도 학교에 가라고 말한다.

그만두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많다. 학교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춤과 노래만 잘한다면.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학교에서는 강압적인 단체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 사회성이라는 걸 배울 수 있는 곳이 학교다. 그래서 반드시 학교를 다녀서 추억도 만들고 그래야 한다고 말을 한다.”-H-

- 촬영과 겹치는 날에는 학교 결석을 선택함.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적고 연기자 준비에 집중하게 되면서 친구들, 선생님과의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고, 점점 학교생활에 관심을 갖기 어렵게 됨. 연습생은 소속사 일정이 학교생활보다 우선되는 경향이 컸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도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도 있었음.

(2) 개인이 떠나는 성공과 실패의 결과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과 유혹

- 아동·청소년연기자나 아이돌연습생들의 ‘성공’ 가능성은 통계적으로도 매우 낮음.
- 아이돌연습생의 경우 초등학교 때부터 연습생생활을 시작하는 사례들도 있음. 문제는 제대로 된 교육환경을 제공받지 못하고 데뷔를 못했을 경우임. 데뷔를 했더라도 수익분기점을 넘지 못하고 해산되는 그룹들도 난무한 상황에서 ‘단순 서비스직’에 종사할 수밖에 없다는 응답이 높았음.
-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유혹들이 존재하고 그 속에 빠질 수 있다는 위험성이 높다는 것과 ‘아이돌’, ‘연기자’가 되지 못한다면 실패가 아니며, 다른 분야에도 지원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설명하기도 함.

“자기 포지션이 확실치 않은 경우 갈 데가 없다. 그래서 알바를 한다. 그냥 알바다. 화장품가게 같은 곳에서. 그런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그런데, 딱히 대안이 없다. 어렸을 때부터 춤추고 노래한 것밖에 없어서. 누가 돈 버는 방법을 알려준 거도 아니고, 공부를 열심히 시켜준 것도 아니고... (중략)... 요즘에는 유튜브버한다. 뭐가 필요가 없으니까. 연습생했는데 얼굴이 좀 괜찮으면 V로그로 자기 일상을 보여주는 것. 연습생출신이라고 하면 호기심 갖게 하고 그런 정도.”-G-

“그냥 취직하는 거다. 일반 회사... 단기 업무 같은... 경력이 없으니까. (개인적으로는) 백화점에서 알바할 때 일을 잘했다. 그러면 백화점 쪽으로 해야 하나 싶은 생각도 많이 했고. 실제로 아이돌 하다가 어느 정도 이름정도 알려진 친군데, 그 친구도 승무원 된 친구도 있다. 혹은 배우 쪽으로 가거나.”-A-

“연습생한다고 어디 가서 경력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B-

“유혹에 빠지기도 한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다. 알바에서 몇 만원 버는 니 여기서 한 번에 몇 십만 원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다. 예쁘게 태어나기도 했고 그런 쪽으로 가는 경우도 좀 있다. 유혹이 주변에 있는 거다.”-H-

“지인이 누구누구 백댄서를 많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돌 하지 말라’고 얘기하기도 했었다. 특히, 소형과 중형 기획사들은 대형만큼 지원이 안 되니까 경제적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지원도 따 내야 하는 거다.”-C-

- 연습생의 경우, 이른 시기부터 학교생활보다는 가수 데뷔를 위해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런 만큼 결과가 돌아오지 않았을 때의 자괴감이나 실망감이 큰 것으로 나타남. ‘연습생’이 경력일 수 없다는 인터뷰 응답자의 말처럼, 몇 달부터 길게는 몇 년을 연습생으로 시간을 보내지만, 학교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 또래 커뮤니티도 없고, 기획사 관계자와 함께 지내면서는 어른에 대한 불신만 갖게 되는 등의 상황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 미디어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언론보도에서는 성공한 아이돌 가수의 활발한 활동이나 과거의 준비기간에 대한 어려움이 성공의 큰 기반이 되었다는 정보만 노출될 뿐, 데뷔가 무산된 사람들의 이야기는 거의 사라진 상태. 따라서 가수 데뷔 실패 이후에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한 상황에 놓이고, 주변의 문제적 유혹에 이끌리기 쉬운 상황에 놓임.

“아이들이 아이들이 되길 간절히 원할 때 ‘하지마’가 아니라 이 분야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요즘은 안무가 쪽도 나쁘지 않다. 케이블랙도 마찬가지고. 안무가에 대한 저작권 등이 꽤 괜찮아졌다. 그런 자를 길러낼 수 있는 거고, 치료 개념으로 음악치료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우리는 단순히 아이들이 아니면 미사리 업소 가서 끝나는 건 아니냐라고 생각하게 된다. 춤추는 것이 행복하고 좋아한다면 그쪽 방향이 뭔지를 이야기를 한다. 이제부터 고민해야 할 건, 아이들이 안됐을 때 아이에게 보여줄 플랜 B인 거다. 다른 좋은 걸 제안, 경험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여기도 다양하다. 케이팝을 보라. 곡 만드는 사람. 스타일리스트, 곡 사오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안무 만드는 사람. 뮤비 만드는 사람. 영상콘텐츠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홍보하는 사람. 팬 마케팅 하는 사람들까지. 그런데, 이거(아이돌) 안됐을 경우 끝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런 것들이 바뀌어야 한다...(중략)...특정 소속사에 들어가고 싶어 하던 친구가 있다. 19

살이 되다보니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숨이 안 쉬어준다고 엄마가 데리고 왔다. 굳이 그 회사만 고집하면 안 된다고 말해주고 다른 회사 가거나 방송연예과 등 대학 입시를 하는 방법도 알려줬다. 결국, 대학교에 입학했고 와서는 자기는 아이돌보다는 트레이너에 더 많은 관심이 생겨서 그쪽 준비를 하겠다고 해서 훈훈한 마무리 된 적이 있었다. -H-

- 직업의 다양성, 사고의 다양성, 커뮤니티의 중요성, 성공의 기준의 다양성 등에 대한 보다 다채로운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없기 때문에 미성년 시절의 실패를 오로지 개인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불안정한 사회관계

- 아동·청소년연기자와 아이돌 연습생들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주로 ‘부모’ 혹은 소수의 친구들과 소통하거나, 혼자 고민하고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남. 기획사 동료 외에 학교 친구들과는 고민 상담을 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답함.

“(아이들이)힘든 게 말할 상대가 없어서 힘든 거다. 그런데 제일 가까운 가족한테 얘기할 수 없다 보니. 친구들은 ‘넌 언제 데뷔해?’라고 늘 물어보니까.”-G-

“(일반인 친구들과)굳이 그런 걸 물어보진 않는다. 잘 모르기도 하니까. 물어보면 ‘그래, 난 잘 모르니까’라고 하고. 그러면 처음은 괜찮았는데 고민 상담을 시도하다가도 ‘잘 모르니까’라고 하면 상처받는다. 그래서 굳이 얘기를 안 한 것 같다. 연기하는 친구 빼고는. …(중략)…(연습생 생활하는 건)담임과 소수의 친한 친구들만 알고 있었다. 그 당시 좀 민망했다. 부끄럽고. 그리고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다. 나중에 ‘안됐대’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다.”-B-

- 연기자와 연습생 준비로 인해, 다양한 커뮤니티 경험이 부재해 다양한 인간관계를 경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아이돌 연습생이나 연기자(준비생)의 상황이 학교 친구들에게 알려지면, 특별한 대상으로 보거나 혹은 대학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다른 ‘길’을 선택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많은 시간을 기획사/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보내면서 학교 친구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관계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됨.

4) 참여권

(1) 아동·청소년을 보호와 통제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현장

- 아동·청소년대중문화예술인들은 대체로 ‘존중’ 받기보다는 ‘어려서 잘 모른다’는 인식 속에서 대우를 받거나 통제 대상으로 여겨짐.
- 자기 관리를 이유로, SNS사용에 대한 통제가 이뤄짐. 데뷔 이후 과거 사진이나 SNS 글로 인해 대중의 비난을 받는 스타들이 나타나면서 기획사나 지원자들도 자기관리를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하는 추세임. 심층인터뷰 응답자들 스스로도 SNS 사용 등에 대한 통제를 ‘자기관리’를 위해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음.

“감독님한테 칭찬받았을 때. 배우로서 존중받았다고 생각한다. ‘재, 연기잘한다’는 댓글이 달리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 만족감을 느낀다. 반대로 ‘너는 애니까’, ‘아직 잘 몰라’, ‘어려서 이해 못한다’라는 건 어딜 가나 있다. 그러면 아는 척 하는 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전 아직 몰라도 돼요’하고 넘어 간다.”-F-

“저는 게시물을 올리거나 하진 않고 연락친구들과 정도로만 이용한다. SNS 했다가 욕 한 적 있어서 트라우마 때문에 잘 안올린다. 폐북을 안 하는 건 그때 (왕따 사건으로 연루됐던)친구들과 다녔을 때 욕설을 많이 썼었다. 그 친구들이 (내가 썼던 욕설들을)캡처를 해놨을 수도 있고, 그래서 ‘OOO의 과거’라고 해서 올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계정을 없앴다. 그래서 폐북은 안하고,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건 개네가 올까봐 안 하는 거다.”-D-

“(안에서 연습하고 있으면)불러서 ‘핸드폰 열어봐’ 그런다. (계약 등)사전에 설명은 없었던 것 같다. 친구들은 불만이였다. 그런데 물론 마음속으로 불만이 없을 순 없다. 하지만 연습생이면 당연한 거라는 인식이 있었다.”-A-

“(계약서에 명시돼 있진 않지만 연애금지)그건 다 그랬다. 그런데 다 솔직히 몰래 만나는 사람도 있고, 핸드폰 못쓰게 하지만 몰래 만드는 사람이 더 많다. 퍼센트로 따지면, 70%. 안 만드는 사람 30%. 없는 게 불편하다. 솔직히 몰래 하나씩 만드는 데 안 만드는 사람은 안 만들더라.”-B-

“중학교 때에는 폐북을 했다. 거의 안하다시피 방치하고 들어가서 애들 보는 정도이고 지

금은 인스타그램을 한다. 개인 영상도 올리고 있다. (SNS 등 소속사에서)안 되는데 다 몰래한다. 공기계로 하는 친구들도 있다. SNS는 최대한 자제한다. 최근 SNS계정을 삭제 할까도 생각해 봤다. 기록을 지우는 게 나올 것 같아서.”-C-

- ‘나’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는 커뮤니티가 중요하며, 지금의 미성년자들은 SNS와 핸드 폰 등을 통해 스스로를 드러내거나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상황임. 하지만 기획사에서는 관리 밖의 사회적 관계를 허락하지 않고 있으며, 혹시 모를 데뷔 무산의 두려움으로 미성년 지원자들도 이러한 부당함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임.

“회사들 보면 멘탈 케어로 한강 가서 휴지줍기를 하기도 했다. 바람도 쐬면서 심리교수가 와서 얘기도 해주고 그런 걸 해주는 것도 있다고 들었다. 아이들 점점 멘탈이나 그런 것 들을 담당해주는 아티스트 신인개발팀에서 더 관리해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하지만 몇몇 대형 기획사 중심의 이야기인 것 같다.”-H-

“요즘 따라 연예인들이 자살 등 안 좋은 사건들이 이슈 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야 중요성을 느낀 거 아닌가. 데뷔조부터는 멘탈 관리해 주는 시스템이 있는 것 같다. 대형은 확실히 있다. 중형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다...(중략)...이번에 연습생 때 인성 논란이 있었던 그룹의 사례만 봐도 대형회사에 들어가는 것이다. 입막음도 할 수 있고.”-C-

- 미성년 지원자의 선택이나 자유로운 의사 발언 등은 기획사 관계자 혹은 사회적 여론이 함께 변화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상황임. 결국 앞서 합숙 생활이나 기획사 동료와의 공동생활을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기획사의 육성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2) 현장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차별’

- ‘성별’, ‘나이’, ‘신체적 조건’등 만의 문제가 아니다. 연기자들은 ‘보조출연’과 ‘단역’, ‘조연’, ‘주연’ 등 맡은 배역에 따라 차별이 발생.
- 연습생들의 경우에는 ‘대형’소속사와 ‘중·소형’ 소속사 등 회사의 크기에 따라 지원에서 많은 차이를 보였고, 같은 소속사라 하더라도 ‘데뷔조’와 그렇지 않은 ‘일반연습생’들의 구별이 주는 위압감이 존재함.

- 연기자과 연습생으로서의 아동·청소년들은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문제적‘차별’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었으며, 동시에 이러한 상황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차별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식한다는 문제를 나타냄.

“저희는 ‘보출’로 간 거고 또래 아이는 ‘단역’ 이상이었다. 한 여름 긴팔 입는 썸이었고, 땀 뻘뻘 났다. 그 아이한테는 우산 받쳐주더라. 우리 아이가 ‘재도 앤데 왜 나는 맨바닥에 앉아야 해요?’라고 묻더라. ‘재는 이름 있는 애고 넌 배경이야’라고 말해줬다. 너무 슬펐다.”-E-

“스태프들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보조출연자들은 막 대한다. ‘이렇게 하지마’, ‘이렇게 해’ 소리를 지른다. 단역배우는 스태프들이 ‘이렇게 서주세요’라고 착하게 말씀하신다. 분명, 똑같은 사람인데 역할이 있고 없과의 차이가 큰 거다...(중략)…그 때 그런 생각을 했었다. 내 위치가 여기니까 어쩔 수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더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게 사회니까 어쩔 수 없는 거구나.”-F-

“OOO(중형급)는 보컬, 댄스에도 군무로 맞추는 게 아니라 각 개인에게 맞는 시스템이 있다고 했다. 여자는 발레, 현대무용(수업)도 있고, 팝핀, 힙합, 얼반도 있고. 종류대로 (교습할 수 있도록)해준다거나. 말하는 화법 레슨도 있고, 숙소도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식사 관련해서도 나쁘지 않고, 랩 같은 것도 하고 싶다고 하면 연습하고 테스트해서 투자 할 가치가 있다고 보면 랩 레슨도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A-

- 대중문화산업에 종사하는, 그리고 종사하기를 바라는 아동·청소년들은 기획사 관계자들이나 사회의 무한 경쟁이라는 기준으로 배치되고 훈련받는 상황에 놓여있었음. ‘성공’한 소수의 사례에 도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를 하지만, 체계 없는 기획사 연습방법, 합숙생활, 불합리한 계약 등을 경험하면서 대중문화산업 바깥으로 이탈하고 있었음.

- 아동·청소년 지원자들을 세분화된 계급으로 나눠 대우하게 되면서, 지원자들 스스로도 자신의 가치를 24시간 평가하고 외부의 평가 기준을 받아들이도록 만들고 있었음.

(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인지 여부

-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대한 인지도는 낮지만, 촬영 현장 대본에 관련법 내용을 봤다는 답변을 통해 방송업계의 노력도 동시에 이뤄지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표준계약서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활용은 조금 늘어난 것으로 파악됨. 또한 문제적 조건이 포함된 계약 조항도 많이 개선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인식도 변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음.

“법에 대해서는 소속사와 전속계약 할 때 들어 봤던 것 같다.”-A-

“이런 걸(일정 수면이나 학습을 취하도록 해야 하는 건)알고는 있었는데 법이 있는 줄은 몰랐다. 밤샘촬영 안 되는 거 말하는 것 아닌가? 인권감독관은 필요한 것 같다. 아역배우 들은 (나이 때문이라도)말 하기 힘들어 하는데 보충은 말 자체를 못한다.”-D-

“들어본 적 없고, 내용을 알고 있지도 않다. 근데, 대본 맨 앞에 무슨 법이 쓰여 있다. 아동·청소년 뭐라고 쓰여 있는 건 봤다.”-F-

“옛날에 비해서 회사가 도덕적 책임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 그 중 하나가 표준계약서도 많이 쓰고 있고 연습생 계약서도 나왔고, 그 중 1~2년 안에 (테뷔)못하면 별도의 계약서를 통해 내보내주겠다는 조항도 들어가 있기도 하다. 회사 차원에서는 도덕적 책임 1년 내 정리해주는 경우도 많아진 거다...(중략)...회사에서 괜찮은 애들을 놓치는 게 아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나머지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다보니까 알아서 내보내 주는 거다. 예전에는 다 데리고 있었지만. 유키즈 때부터 데리고 있었던 애들인데 이번에 나오는 컨셉과 안 맞아 데뷔를 못 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거다. 그런 점에서는 이제는 큰 회사건 작은 회사건 (연습생들을)묶어두지 않으려고 한다. 연습생 시키다가 발전이 없으면 빠르게 내보내기도 하고, 애들도 ‘그 회사 가면 그 회사에서 유명 걸그룹이 이번에 나왔으니 난 3~4년 데뷔를 못하겠구나’라고 아는 거다.”-H-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정이나 <표준계약서>, 혹은 <부속합의서>가 만들어지면서, 대중문화산업 현장에서 활동하는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음. 하지만 대중성과 상업성에 민감한 기획사들은 성공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방출’하거나 ‘계약해지’를 빠르게 선택하고 더욱 어린 지원자들을 캐스팅하고 있어,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현장에서 지켜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임.

(4) 인권보호 장치로서 현장의 요구들

- 아이돌 연습생의 경우, 무한정 반복되는 데뷔목적의 춤이나 노래‘연습’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에 준하는 다양한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음.
- 정신적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상담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의 필요성과 기본적인 복지 시스템을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피력하기도 함

“소원 수리함 같은 있어야할 것 같다. 콘텐츠가 필요한 것 같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멤버들과 여행가기. 또는 콘서트 가기. 공연 보러가기. 그런 것들. 단합력이 좋아지려면 추억이다. 추억이 많아지면 일 하면서도 신뢰가 생긴다.”-A-

“계약서 같은 부분. 그리고 제가 있던 곳은 아니었지만 자유가 없는 거 같다. 기계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다. 정신적인 케어를 많이 해줘야 할 것 같다. 사실 이걸 몸이 힘든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버티는 거다. 그만두는 걸 보면 몸이 힘들어서 그만 두는 건 아니더라. 갑자기 그게 가장 힘든 것 같다. 정신적인 케어. 그런 지원들이 많아야 할 것 같다. 그런 지원들이 있는데, 있는 줄도 몰랐다. 알려지지 않았으니까.”-B-

“배우 뿐 아니라 보조출연 단역들에게도 욕설이랑 반말하는 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침 촬영이라면 아침이라도 간단하게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D-

“연습생 혹은 아이돌의 생명력이 끝났을 때에도 미래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이제는 아이돌들이 프로듀서도 많이 한다. 뮤지컬 배우, 연기자 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다른 분야들도 많이 생겼다. 지코도 자기 회사 설립했듯 회사 대표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나. 이처럼 아이돌의 미래를 보여줘야 한다. 지금의 아이돌들이 해주면 좋겠다. 생각해보면, 몇 년간 노래하고 춤추고 직접 해왔던 이들 아닌가. 그들이 전문가다. 이제는 그들이 후배들에게 너희의 미래가 이런 것들도 있어라는 걸 조금씩 많이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회사에서도 중요한 직책을 주면서 엔지니어 프로듀서 개념들을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H-

- 대중문화산업의 성과나 한류스타의 탄생 등 미디어에서는 아동·청소년들의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이슈들을 계속 보도하고 있는 상황임. 하지만 결과론적인 하나의 ‘성공’만을 집중적으로 조명

하면서, 탈락과 실패에 대한 정서적, 경제적 준비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겪게 되는 정서적 고통에 대해서는 이제 제도적으로 준비를 해야 함.

- ‘너의 선택’만으로 아동·청소년 종사자/지원자들의 고통을 대신할 수 없음. 유엔아동권리협약이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된 배경을 고려한다면, 현장 적용 가능한 제도마련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임.

3. 소결론

-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중심으로 심층인터뷰 진행 결과 아동·청소년들이 경험하는 현장의 상황은 부당한 구조와 문화산업 내 유입을 위한 ‘경쟁’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비판해야 하는 차별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부당한 구조에 놓여 있었음.
 -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들은 ‘나이’에 따른 차별적인 구조에 놓이며 전문영역 종사 자로서의 존중보다는 일방적인 보호 혹은 통제 속에 존재함. 아동·청소년 연기자들의 경우, 현장에서 “넌 어려서 잘 모른다”, “시키는 거나 잘 해라”라는 말에 상처를 받고 있었음. 반면, 아이돌 연습생의 경우에는 ‘갑’과 ‘을’로 이뤄진 계약에 따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갑’에게 유리한 계약서 작성과 그로 인한 통제가 이루어짐.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들을 통제하는 대상은 다양했는데 학원, 회사라는 구조 외에도 현장의 스태프와 그들의 보호자(매니저 역할)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둘째,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들의 ‘노동환경’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임. 아동·청소년 연기자들은 촬영 현장의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분위기’는 물론 ‘미세먼지’, ‘코로나 감염’과 같은 재난 상황, ‘혹한 및 혹서기’ 등의 환경적 요인은 물론 ‘새벽 및 장시간 촬영’, ‘긴 대기시간과 대기 공간 부재’, ‘식료품 제공’ 등 촬영 및 복지 측면에서 열악함에 노출되고 있었음. 반면, 아이돌연습생들은 ‘연습공간의 부재’와 ‘보컬·댄스 등 지원시스템’ 등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기획사 내의 문제에 그대로 놓여 있었음. 문제는 이 같은 사실을 신고하거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인권보호 장치로서의 제도마련이 필요한 이유임.
 - 셋째,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들의 ‘직업이 가지는 특성’에 있어서도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음. 아동·청소년 연기자들의 경우, ‘성폭력’, ‘학대’ 등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연출에 구체적 합의와 보호조치 없이 출연하는 사례들이 많았음. 이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일방적으로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해야 함. 아이돌연습생의 경우에는 대중문화산업이 획일적으로 ‘그룹형 아이돌’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획일화된 젠더 역할론을 강요하고 있었음. 특히, 여성의 경우 ‘획일화된 젠더 역할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룹 내의 다양한 의견이나 상황을 기획사 관계자들이 해결하지 못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게 되면서 ‘그룹 내 왕따’, ‘방출 및 성폭력 노출’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 같은 왕따는 내부경쟁의 과열을 통해서 드러나기도 했음.

- 넷째,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들은 ‘나이’ 뿐 아니라 다양한 차별에 노출되고 있었음. 아동·청소년 연기자의 경우, ‘보조출연’, ‘단역(이미지 단역 포함)’, ‘조연’, ‘주연’이라는 배역에 따라 촬영 현장에서 차별이 비일비재하면서, 스스로도 이러한 차별은 당연한 것이라고 인지하고 있었음. 아이돌연습생들은 ‘개인연습’을 비롯해 ‘소형 혹은 신생’, ‘중형’, ‘대형’ 등 소속된 회사의 크기에 따른 지원조건이나 연습환경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 문제는 이 같은 차이와 차별을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이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차별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음.
- 다섯째, 대중문화산업이 비정상적으로 성장하면서 그 안에 놓여 있는 종사자들 모두 ‘자기통제’ 속에서 놓이게 됨. 그 안에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을 둘러싼 통제와 감시라는 것도 이제는 ‘자발성’을 띄고 있음. 이성교제 금지, 핸드폰 사용 금지, SNS 이용금지, 다이어트, 성형 등 다양한 방면에서 스스로를 통제해야 하는 상황에 놓임. 감시와 통제의 편의성을 위해 탄생한 ‘합속시스템’에 대해서도 당사자들 역시 필요성을 강조함. 특히, ‘경제적 부담 감소’와 ‘스케줄 소화를 위한 편리함’ 때문이라 답했는데, 아동·청소년 개인 연습생이나 개인 연기자가 선택하거나 바꿀 수 있는 여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문제는 비정상적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통한 개선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 할 수 있음.
- 여섯째,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요인은 ‘가족관계’, ‘경제적 어려움’, ‘학업’보다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꿈을 이룰 수 없다는 불안감이었음. 아이돌 연습생은 방출 등 데뷔가 좌초되는 것, 아동·청소년 연기자들은 다음 작품이 없다는 것에서 오는 불안감이 컸음.
- 일곱째, 연기자와 아이돌 가수 등 연예산업 분야의 도전, 그리고 실패의 책임을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이 그대로 감당해야 하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함. 학교생활보다 대중문화예술산업 진출이 우선시 되는 대중문화산업 현장의 인식이 지속되면서, 성인이 된 후 사회에 재 편입되는 과정이 순탄치 못함. 이 같은 문제는 공교육 시스템에서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및 교육시스템이 동시에 이뤄져야 되는 이유임.
- 여덟째,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이 ‘계약’, ‘연기 및 실력에 대한 스트레스’, ‘자기통제’ 등에서 대중문화산업 내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상담할 제도가 부재하거나 제도적 도움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임. 상담의 대상은 대체적으로 부모나 소수의 친구들(연예계 내)이 대다수였음. 다양한 커뮤니티에 소속돼 있을 때 문제들을 비교적 잘 인식, 판단하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질 수 있지만, 현실은 참여 가능한 커뮤니티가 좁다는

것이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결국 스트레스를 스스로 감당하는 문제적 상황이 반복됨.

- 아홉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는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들의 권리(수면권, 휴식권, 학습권, 건강권)들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음.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낮은 인식으로 인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임. 다만, 영화 <우리집> 촬영현장에서 ‘어린이 배우들과 함께하는 성인분들께 드리는 당부의 말’이라고 적힌 촬영수칙에 8가지 조항 등이 마련되는 등 변화들이 발견되고 있음. 실제, 드라마 촬영 대본에 아동·청소년 연기자들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이 포함돼 있다는 인터뷰 결과는 앞으로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함.
- 심층인터뷰를 통해 확인된 것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상 나와 있는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들의 권리(수면권, 휴식권, 학습권, 건강권)들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임. 법 자체가 ‘세부적이지 못하고’, ‘강제력’이 없다는 상황도 개선되어야 함.
- 특히, 현장에 적용가능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한 문제임. 대중문화예술산업에서 실패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함. 하지만 근본적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비정상적인 성장과 그를 바라보는 대중들의 시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자기통제’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산업 내 차별과 통제방식은 이제 바뀌어야 함.

제3절. 전문가 자문 결과

- 대중문화산업 아동·청소년 종사자의 인권보호와 더 나은 제작 참여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현재 제작환경의 문제점, 해외 가이드라인의 도입 방안, 국내 관련 정부기관의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음. 자문 참여 명단은 아래 <표5-76>과 같음

<표 5-76> 전문가 자문 참여 명단

범례	영역	성별
A	미디어학	남
B	청소년정책/심리학	남
C	언론학	남
D	시민단체/노동	남

1. 아동·청소년 종사자 대상 종합적인 정거실태조사의 필요성

- 대중문화산업 아동·청소년 종사자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 지원 연령대는 낮아지고 있지만, 변화하는 산업구조의 상황에 제도적 기준이나 사회적 인식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상황임. 아동·청소년 종사자들을 성인 종사자들과 동일한 대상으로 고려하거나 ‘스타탄생’으로서 인식하기보다 인권보호를 위해 사전 준비 작업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하며, 그 근거로서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⁴⁷⁾

“이 연구에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아동·청소년 연기자들의 솔직하고 가슴 아픈 현실을 잘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뷰에서 언급된 내용 관련 양적인 측면의 좀 더 구체적인 조사도 필요해 보입니다.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설문조사를 한다면 아동·청소년의 스트레스 정도나 삶의 행복도, 만족도, 발달 상황에 따른 여러 지표들을 활용해서 정서적 고충을 간접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A-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는 일회적 조사가 이뤄진다면, 조사자에 대한 반감이나 낯섦 등으로 인해 정확한 ‘영향’을 분석하

47)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는 대중문화예술산업분야 가운데 연기 분야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모집단의 결과로 일반화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지만, 심층인터뷰 결과를 감안해 볼 때, 연습생을 포함해 분야를 확대하여 스트레스 정도, 삶의 행복도, 만족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 조사가 필요해 보임

기 어렵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실태를 추적 조사와 정서적이고 심리적으로 입었던 피해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만, 제대로 된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실태 파악은 무조건 인권보호가 안 되고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지키기 어렵거나 현실적으로 수용 불가능한 제도를 만들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실효적이고 준수할 수밖에 없는, 공론화를 거치는 과정을 통해 제도를 만들어야 제정 취지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C-

-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과의 접촉 및 섭외가 어렵기 때문에,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 기획업 등록 시스템⁴⁸⁾을 통해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정기적 실태조사 필요.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특화된 신체적/심리적/정서적 발달 및 안정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2. 대중문화예술산업 및 대중문화예술인에 관한 체계화된 직업교육의 필요성

- 아이돌 가수가 한류문화를 이끌어가는 상황이 되면서, 연기자, 가수 등 관련 대중문화산업분야에 지원하는 아동·청소년들의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 진입하는지, 연습생기간, 드라마 촬영 현장의 상황, 학교생활의 어려움 등에 대한 논의보다 '성공사례'만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임. 연예기획사 중심의 캐스팅과 관리, 학원 등을 통해 대중문화산업 진출을 준비하거나 현장경험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대한 '대중문화예술정보시스템'을 구축(이종임, 2018a). 하지만 이러한 제도만으로는 아동·청소년 종사자들을 보호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정말 어렵게 연예인이 되었다고 해도 그 생명력이 길 수가 없습니다. 유명세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중의 주목을 받지 못하거나 부정적 댓글 등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되는 이유도 꿈의 직업이라는 연예인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예인이라는 직업에 대한 철저한 교육, 연예 산업의 구조, 팬덤, 유명해진다는 것, 인권 및 권리적 측면 등을 포함한 직업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A-

- 설문조사결과에서도 아동·청소년 종사자들에 대한 진로직업교육이 적극적으로 실시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대다수 아동·청소년들은 미디어를 통해 소수의 성공한 연기자, 가수 등의

48)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 종합정보시스템. <https://ent.kocca.kr/>

사례를 접하고, 대중문화예술인의 진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직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직업군에 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관련 정보를 얻기도 어려운 실정임.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대중문화예술인이라는 직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산업구조적인 특수성 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대중문화예술인을 직업으로 인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과정은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야 함을 제안함.

3.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필요성과 전담 제도·인력 마련

- 전문가들은 대중문화산업 아동·청소년 종사자들이 학교 수업 시간에 드라마 제작현장이나 기획사 연습실에서 준비를 하는 지금의 산업 시스템을 계속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제언. 연기자로서의 생활이나 연습생/가수로서의 생활은 또래 커뮤니티의 부채를 가져오고, 학교 수업시간에 학습하게 되는 지식습득의 기회를 놓치는 것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근거라고 설명.
- 해외의 경우, 현장교사나 샤프롱 제도를 통해 학습권 보장이나 안전보장을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동·청소년 종사자의 보호자가 모든 일을 담당하고 책임지거나, 본인의 동의한 것으로 모든 문제를 정리해왔었음.

“미성년 연예인 지망생 중 대다수는 결국 연예인이 아닌 다른 경력을 가지게 됩니다. 한 가지 직업만을 바라보고 준비해온 상황에서 다른 직업을 갖는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아동·청소년들이 대부분일텐데요. 데뷔 수가 너무나 소수이기 때문에, 연예인이 되는 사람들도 소수일텐데요. 따라서 연예인의 길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B-

- 설문조사 결과, 많은 설문 참여자들이 ‘학교수업에 대한 의미’에 대해 ‘인간으로서의 기본소양을 배울 수 있다’라는 응답을 많이 선택했는데, 이러한 기본적 소양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임. 학습권 보장이 중요한 이유는 아동·청소년 종사자들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줌. 전문가들 역시 연예계에서의 성공가능성이 높지 않은 만큼 기본소양 이외에도 다른 진로를 선택했을 때 갖춰야하는 최소한의 인지적 능력을 위해서라도 학교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인권 관련 교육이 필요함을 설명함.

“미성년 연예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기술 습득의 기회가 줄어들면 안 됨

니다. 수면시간이나 노동시간 보장은 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보통의 학습시간을 사용한 만큼 보충학습의 기회가 얼마나 충분히 보장되는지를 중시해야 합니다.”-B-

- 설문조사결과, ‘촬영기간 동안 수면시간을 줄여도 좋다’고 응답한 참여자가 많았는데, 경쟁과정을 받아들이고, 성공을 위해서는 다른 문제적 상황들을 참고 견딜 수 있게 만드는, 일종의 경쟁의 ‘자발적/내재화’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음. 특히, 학교 결석일수가 늘어다는 것을, 학습권이 침해받다고 생각하지 않고, 연기자나 가수가 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인지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논의할 수 있음.

“연구보고서에서도 밝힌 것처럼 실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모든 기본 인권 요소에서 아동 청소년 연기자들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중문화산업에 종사하려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리터러시 교육을 의무화하고 전담할 제도나 인력지원이 필요합니다.” -A-

- 아동·청소년의 경우,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등에 있어 침해를 받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권리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것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또한 자신의 꿈과 목표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보장/보호받아야할 권리를 침해받더라도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제대로 문제제기 하지 못하거나, 꿈과 성공을 위해 일정 부분 포기하거나 감수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
- 보장받아야할 권리가 무엇인지, 그 권리를 침해받는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 등에 대한 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음. 아동·청소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제작 현장에 참여하는 스태프, 방송사 관계자들 모두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현재의 제작환경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움.

4.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

- 국내 방송 프로그램에서 아동·청소년들이 지원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큰 주목을 받게 되면서, 아동·청소년들은 미디어에 자주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재현되는 이미지나 결과에만 주목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음.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하나의 개별 사건에만 주목할 뿐 대중문화산업 전체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는 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출

연 대상자의 새로움을 찾는 데에는 적극적이지만, 아동·청소년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제작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는 관심이 낮은 상황임.

“한국은 오히려 국가가 미디어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아동/청소년과 관련해서는 관대한 편입니다. 방송산업 종사자들과 대중의 인식에서도, 연기자나 연습생, 아이돌의 고강도 노동은 준비의 과정으로 이해되었습니다. 현장의 문제는 그렇게 심화되어 갔습니다. 아동·청소년이 희망/선택한 일이라는 인식과 미디어 콘텐츠 제작시 많은 제약을 하는 행위는 창작자의 자유를 침해하고 창작물의 퀄리티를 낮추는 일이라는 입장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D-

“미성년 출연자들은 어린 존재들에 대한 통속적인 기대, 같은 기술을 보여주더라도 어리다는 이유로 부여되는 가중치 효과로 대중적인 관심을 끌어 모으기에 좋습니다. 게다가 경력이 없기 때문에 통제하기도 쉽고 인건비도 적게 듭니다. 이런 요소들이 미성년 연예인을 출연시키는 방송국의 이익에 부합합니다.”-B-

- 아동·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자신의 의지를 지닌 주체적 대상으로서 인식해야 한다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처럼,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로서의 아동·청소년도 자발적 의지로 연기와 가수 연습생으로 지원하고 준비를 하는 주체임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하지만 제작 현장에서는 낮은 임금, 장시간 노동 등의 문제를 겪는 아동·청소년의 수가 줄지 않고 있는 상황임. 언론보도를 통해 장시간 노동으로 힘든 노동환경에 처해있거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대기장소도 제공받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 보도되고 있는 상황임. 정부 관련 기관의 제도마련뿐만 아니라 방송사, 제작사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인식의 변화도 같이 이뤄져야 함을 알 수 있음.

“미성년 노동자와 그 보호자의 재정적 분리 수준. 자녀의 소득에 의지하거나 이익창출 수단으로 보는 부모는 자녀를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B-

- 미국에서 1939년에 제정된 쿨리법은 아역배우의 출연료를 부모가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신탁관리를 하도록 정한 법임. 국내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출연료를 부모 혹은 보호자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장치가 아직 부재함. 아역 배우 출신의 연기자들은 부모의 재산 탕진으로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낸 상황을 방송 토크쇼 등을 통해 ‘고생담’으로만 소비될 뿐 이러한 상황의 반복을 막기 위한 제도는 아직 없는 상황임. 제작자나 부모에게 연기생활이나 가수 생활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일 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적극적 의사표현이 어렵다는

상황도 고려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5.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권리 보호를 위한 현장 전담 감독관 파견 제도의 필요성

- 대중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의 제작 환경과 학습권, 수면권 보장에 대한 논의가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된 사건은 2011년 제작된 영화 <도가니>임, 이 영화가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피해 상황을 고발하고 사회에 알리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영화 상영 후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음. 하지만 이와 동시에 문제적 상황에 처한 아동·청소년들을 연기한 연기자들에게 정서적으로 미치는 현실적 문제는, 현장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도 동시에 주목을 받게 됨.

“유해성이 있는 프로그램(성인 연령 등급) 콘텐츠에 아동·청소년이 출연했다고 해서 무조건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며 콘텐츠의 등급과 상관없이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어떻게 대우하고 촬영 조건을 만들어 주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내용을 볼 것이 아니라 제작 현장을 방문해 실상을 살펴보는 적극적 관찰이 있어야 현장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적절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C-

- 미성년 연기자들이 출연하는 드라마나 영화의 내용이 출연자가 감당하기에 고통스럽거나 어려운 내용을 연기해야 한다면, 현장 감독과 사전 제작 준비, 현장 스태프 교육 등 보다 철저한 준비과정이 필요함. 하지만 미성년 연기자들이 촬영 후 혹은 촬영 전에 정신과 상담을 받거나 사전 준비를 하는 과정은 모든 드라마나 영화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음. 최근 긍정적 사례로 개별적으로 감독이나 성인 연기자 혹은 부모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는 사례가 언론을 통해 알려졌지만, 현장에 참여한 모든 미성년 연기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아이돌 연습생이나 아이돌 가수의 경우에도 학교생활의 부재와 부모와 친구들과의 소통 없이, 기획사 관계자와 동료들과만 생활하면서, 24시간 경쟁을 하는 생활을 이어가나고 있음. 미디어에서 재현되는 화려한 이미지와 달리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정서적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최근 오디션 프로그램에 초등학교생과 유치원생 등 어린 연령의 출연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고려한다면, 촬영 현장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해보임.

6.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관련 공통의 제작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

- 전문가들은 해외 공영 방송사인 BBC의 가이드라인 등을 참조하여, 국내 대중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국내의 제작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제기함. 국내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 표준계약서, 관련 법안 마련 등 현작 적용가능한 대안을 제도화하는 움직임을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임. 하지만 방송사뿐만 아니라 연예 기획사 주도의 오디션 과정에 참여하는 미성년자, 연예기획사가 제작하는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미성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은 더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야 함을 제안함

“BBC 제작가이드라인에서는 <어린이 및 청소년 출연자>라는 제목으로 서론, 원칙, 의무적 상의(편집부와의 상의, 기타 상의), 실천(어린이보호, 온라인보호, 개인정보), 어린이 및 청소년의 사전 설명을 통한 출연 동의, 출연의 영향에 이르기까지 매우 상세하게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A-

“제작 가이드라인의 현장 도입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의 구성 방식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면 전반적인 이행여부를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샤프롱과 같은 아동인권보호관 제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D-

“(휴식)과도하지 않은 노동/ (촬영, 녹화) 휴식의 주기와 휴식의 양/ (학습) 학교 수업을 빠지지 않도록 다음날 학교 수업 참석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안전) 제작 환경이 위험하지 않는지, 위험한 상황에 방치하지 않도록 늘 보호/ (현장 보호자)가 옆에 밀착 보호하도록 하는 것, 일몰 후 촬영에 대한 보호 등/ (금전적 신탁)아동·청소년은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기에 프로그램 제작이나 공연 활동에 참여하는 것임. 부모와 본인의 동의가 있긴 하지만 미성년자가 미성년의 시기에 완벽하게 ‘주체적’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익의 전부를 부모에게 지불하지 말고 일정금액은 신탁으로 묶어두고 아동·청소년이 성장한 후 성년기에 출금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 필요. 주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에 본인의 자산으로 받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C-

- 따라서 방송사별로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외부 기획사 소속 아동·청소년이나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아동·청소년들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등이 필요함. 정부부처 등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방송사/기획사 등 관련 종사자,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를 구성해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7. 아동·청소년 종사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 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

- 아동·청소년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대중문화산업 분야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드라마, 예능, 영화뿐만 아니라 웹드라마, 유튜브 콘텐츠, e-sport 분야 등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함

“반면에 소셜네트워크 영역에서 새로운 위험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 유튜브 버들이 부모에게 노동을 강요당하는 경우. 가장 근접한 보호자인 부모가 아동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상황이 외부에서 개입하거나 보호할 여지가 없는 개인방송에서 벌어지면 가장 취약한 사각지대가 됩니다. 지금은 아동 유튜브의 수익 창출경로가 차단되어서 이런 일이 줄어든 것으로 알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B-

“강력한 처벌규정과 세밀한 판단기준이 포함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이 2021년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분야가 갑자기 확대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미디어의 영역이 확대된 만큼 뉴미디어 크리에이터 등을 포괄하는 기준 수립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D-

- 기존의 대중문화예술산업 이외에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의 등장, 특히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아동 크리에이터 보호를 위한 관련 법 제정 및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등에 대해 제언.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에서도 관련 가이드라인 내용을 발표했으며, KBS, EBS 등 방송사에서도 관련 가이드라인 등을 발표하고 있지만, 추상적이며 모호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비판을 넘어서는 가이드라인(안)이 마련되어야 함.

6장. 연구의 활용방안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연구의 활용방안

제2절. 정책적 제언

제6장 연구의 활용방안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연구의 활용방안

1. 연기학원·에이전시 관리와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방안 필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9년 조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들의 대중문화산업 유입 과정에 ‘오디션’을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남. 오디션을 기획하고 선발·관리는 연기학원이나 에이전시 등에서 주도하므로 대중문화예술산업 기획업에 등록 제도의 중요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안이 필요함.
- 방송사가 주최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경우, 아동·청소년 지원자들을 관리하는 스태프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성폭력 예방 교육, 현장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 교육, 오디션에 참여하는 지원자들 소속 에이전시 관련 스태프에게도 해당 교육을 필수적으로 해야 함을 명시하는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2. 방송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아동·청소년의 인권보호 필요

- 대중문화산업이 성장하면서 아동·청소년이 출연할 수 있는 분야도 점차 늘어났지만, 상업적 수익을 이끌어내는데 집중하는 대신 인권 보호를 위한 고민은 이뤄지지 못한 상황임. 종합편성채널의 출범과 케이블 채널, 그리고 유튜브 등의 플랫폼의 대중화에 따라 미성년자의 출연기회는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지상파 방송사에서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미흡한 상황임.
- 지상파 방송사가 방송의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미디어임에도 불구하고, 지상파인 MBC, SBS는 방송에 참여하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제작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며, KBS, EBS 등에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미흡한 상황임.
- BBC와 같은 공영방송사의 경우 대중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매우 구체화되어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미국의 경우도 뉴욕이나 캘리포니아에서 촬영되는 다양한 공연현장에 참여하는 아동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음. 또한 대중문화산업 종사자들의 노동조합이 마련되어 있어, 임금, 노동시간, 계약조건 등 성인 공연 참여자뿐만 아니라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제작 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별, 연령별 학습권, 수면권, 노동시간 등을 구체화해서 명시한 상태임.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아동·청소년 종사자 혹은 보호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설문조사나 심층인터뷰에서도 주변 지인이나 매스미디어가 주된 경로였으며, 계약 과정이나 대중문화산업 현장에서 제공되는 정보나 자료, 설명 등을 통해 인지한 응답자는 극히 소수에 불과했음.

-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전담 감독관 파견 등 촬영장 내 인권침해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과 아동·청소년 연기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리 상담 센터 설치 등의 제도마련도 필요함.

3.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보호에 대한 인식전환 필요

- 아이돌 연습생의 경우, 기획사와의 관계, 합숙생활, 학습권 보장의 어려움, 학원과 기획사를 통한 대중문화산업 현장의 유입 등의 특수한 유입경로 등을 고려한 인권 보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e-Sports,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아동·청소년 종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인권보호 장치 마련 등은 아직 미진한 상황임. 기존의 방송 제작 환경뿐만 아니라 새로운 플랫폼에도 적용 가능한 논의로 대안마련의 ‘장’이 확장되어야 함.

제2절. 정책적 제언

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대한 재논의 필요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과 현장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의 실태조사가 매년 이뤄져야 함.
- 학습권 보장과 현장의 인권보호 장치로서의 샤프롱 제도의 현실화 방안 고려 필요.
- 국내 대중문화산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현장 전담 감독관의 구체적인 선발과정, 선발 기준 등의 논의가 필요함.

2. 방송 제작현장에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안) 개정 필요성

- 2014년 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는 제작 현장에 필요한 아동·청소년 종사자 관련 인권보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만, 현장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처럼 구체적인 내용이 미진한 상황임. 아동·청소년 종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현장 적용 가능한 세분화된 내용이 마련되어야 함.
- 아동·청소년 종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부모 등의 보호자, 현장 안전을 담당할 수 있는 현장인력, 제작 스텝, 소속사 관계자들이 아동·청소년 종사자의 촬영시간, 학습권, 건강권 보호, 개인정보 보호, 출연정도 동의 등 필요한 사항 사전 고지 의무, 방송사와 제작사 스텝 대상 사전 교육 등의 필요성을 구체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이러한 필요성이 반영된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 아동·청소년 인권보호와 안전한 노동환경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표 6-1>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노동환경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안)

○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노동환경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안)

1) 목적

이 가이드라인(안)은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들의 인권보호와 안전한 노동환경 보장을 위해 마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2)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노동시간 규정과 보호방침

- 아동·청소년은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9세 미만으로 정한다.

가. 촬영시간

- 촬영시간은 대기시간 포함 최대 밤 10시까지 촬영을 진행하며, 다음날이 학교 휴일인 경우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하에 밤12시까지 촬영을 진행할 수 있다.
- 주연, 조연, 단역, 보조출연 모두 촬영장 내에 대기실을 마련해야 한다.
- 대기실은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보호자와 함께 머무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성인 스태프와 단돌이 머무르지 않도록 주의한다.
- 세트장 촬영 전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나. 학습권, 건강권 보호

- 아동·청소년이 공연이나 촬영 일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보충 수업이나 온라인 수업 등을 받도록 한다.
- 아동·청소년을 고용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은 작업현장에서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건강, 복지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현장 보호자를 지정하여 현장에서 아동·청소년이 방치되거나 위험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한다.
- 대중의 평가를 받는 활동으로 인하여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 정서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내용의 촬영, 신체적 한계를 넘거나 위험한 작업 등으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이 정신적·신체적 건강이 악화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다면, 아동·청소년을 고용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제작업자, 기획업자는 관련 작업을 중지하거나 진료를 받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개인정보 보호

- 방송 제작 참여 스태프가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연락할 경우, 보호자와 동일한 연락처로 혹은 보호자가 동의한 연락처로 연락해야 한다.
- 아동·청소년 출연자 관련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할 때, 정보가 너무 많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아동·청소년이 이름과 이메일 등을 기입하고 서류를 작성할 시, 정보 수집의 필요성을 서면으로 설명하고 기입하도록 한다.
-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이 스스로 가족의 개인 정보를 쉽게 적도록 하지 않는다.
- 아동·청소년이 제출한 그 어떤 정보든 제출된 목적에만 이용되어야 한다.

라. 출연 정보에 대한 설명과 사전 동의

- 출연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해야 하며, 본인과 보호자의 출연 동의를 받아야 한다. 출연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촬영 현장에서 내용이 변경될 경우, 출연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 드라마 촬영 시 아동·청소년들이 연기해서는 안되는 장면이나 내용을 명시/전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촬영 시 아동·청소년에게 과도한 욕설이나 폭력, 노출 등을 표현하게 해서는 안된다. 불가피하게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장면을 표현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고, 촬영 후에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살펴야 한다.

마. 계약 내용 고지

- 아동·청소년과 출연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출연료 액수와 지급시기, 지급방법을 협의하고 그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출연료에 대한 계약 내용은 보호자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본인에게도 설명해야 한다.

3) 방송사·제작사 프로그램 참여 스태프 교육

- (1) 방송사업자들은 어린이들이 상처받기 쉽다는 점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
- (2) 아동·청소년들은 그들의 부모의 명성이나 악명 혹은 학교에서의 사건으로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 (3) 쉽게 잘 믿고 잘 속는 어린이들의 특성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
- (4)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전 동의 없이 개인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거나 녹음 또는 기록을 해서는 안 된다.
- (5) 제작 스태프와 아동·청소년과의 커뮤니케이션은 항상 공개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 (6) 촬영 현장에서 아동·청소년들에게 닦칠 수 있는 예상하지 못한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 (7) 건강이나 안전과 관련된 상황이나 감독관리자/ 보호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청소년과 스태프 간에 신체적인 접촉이 있어서는 안 된다.

- (8) 출연에 따른 (드라마 캐릭터로 인한) 따돌림 등 프로그램 방영 후 나타날지 모를 예측 가능한 결과들을 알려주어야 한다.
- (9) 아동·청소년 혹은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다른 금전적인 유인을 해서는 안 된다.
- (10)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해서는 아동·청소년 보호자와 부모 또는 부모 대리자 등이 프로그램의 특성과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 후 동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11) 드라마 촬영 시 아동·청소년들이 연기해서는 안되는 장면이나 내용을 명시/전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과도한 욕설이나 폭력, 약물이나 범죄, 누드나 과도한 노출, 특정한 대상에 대한 과도한 편견이나 스테레오타입을 담고 있는 표현의 금지 등 아동과 청소년들이 피해야 할 요소들을 명시/전달해야 한다.

3. 정부 관련 부처 간 협업, 관련 정책/법안 개정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정부 부처가 합의를 통해 현장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과 표준계약서 이행 등의 방안 등을 도출해야 함.
- 대중문화예술산업 아동·청소년 종사자와 함께 일을 하는 스태프 모두 교육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내용 구성과 교육 시기, 방법, 관리 방법, 문제 발생 시 처벌 방안 등 구체적인 논의 필요.
- 해외 아동·청소년 종사자의 인권보호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법적 제도에 대해 무조건적인 소개나 도입보다는 국내에 적용 가능한 시각에서 도입 방안을 제정해야 함.

참고문헌

참고문헌

- 공정거래위원회(2008). 《10대 대형 연예기획사 대상 서면실태조사 실시 및 불공정약관 수정·삭제 보도자료》.
- _____ (2009). 20개 중소형 연예기획사 대상 실태조사 실시 보도자료
- _____ (2012).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모범거래기준 제정 보도자료
- _____ (2017). 8개 연예 기획사가 사용하는 연습생 계약서 심사 및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보도자료
- 교육부(2015). 『외국의 학생인권 법령집』. 휴먼컬처아리랑.
- 국가인권위원회(2019). 《2019년 국가인권 실태조사》.
- _____ (2010). 《여성연예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 영화진흥위원회(2020). 《아동·청소년 영화인 권리 존중 원칙(안)》
- 방송통신위원회(2020). 《방송출연 아동·청소년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
- _____ (2020). 《방송출연 아동·청소년 권익보호를 위한 현장 체크리스트》
- 그래엄 터너 저, 권오현 심정보, 정수남 역(218). 『셀러브리티:우리 시대 셀럽의 탄생과 소멸에 관하여』, 이매진.
- 김곡(2020). 『관중의 시대』. 그린비.
- 김동윤(2015). 텔레비전 오락 프로그램에 나타난 아동권리 침해: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오락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 제안, 《사회과학담론과 정책》, 8(2), 13-37.
- 김영지·김희진·이민희·김진호(2019). 《아동 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연구-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총괄보고서》.
- 김정섭(2015). 우리나라 청소년 연기자 보호제도에 관한 고찰: 2014년 시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1), 86-94.
- 김현식·양정호(2007). 방송 출연 아동의 권리 보장에 관한 연구-인권, 노동법적 접근을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7권1호, 71-93.
- 나미수(2012). 『미디어 연구를 위한 질적 연구 방법론』. 커뮤니케이션북스.
- 노암 촘스키 저, 강주현 역(2001). 『실패한 교육과 거짓말』. 아침이슬.
- 리처드 니스벳, 리 로스 저, 김호 역(2019). 『사람일까 상황일까』. 심심.
- 모상현, 김희진(2010). 《2009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 생존권·보호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모상현, 천정웅, 신승배, 이중섭(2010).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Ⅳ: 생존권·보호권 정량지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모상현, 김영지, 김윤나, 이중섭(2010).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 V : 발달권·참여권 정량지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2012).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 _____ (2010). 《청소년연예인 권익보호 관련 대책(안)》
- _____ (2010). 《연예매니지먼트산업 실태 조사 및 환경 개선 방안 연구》
- _____ (2012). 《연예매니지먼트산업 수익구조 연구(가수·배우)》
- _____ (2012). 《연예매니지먼트산업 선진화 방안》
- _____ (2013). 「대중문화예술인(가수·배우)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 _____ (2019).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
- 박석철(2009). 어린이·청소년 연기자 보호를 위한 해외 법제 사례, 아동 청소년의 방송출연과 미디어 윤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세미나 자료집》.
- 반건호 외(2013). 배역이 아역 연기자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영화 촬영 현장 및 관계자 면담 중심으로, *J Korean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24(2), 57-64.
- 박성모(2015)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아이돌 그룹의 소외. 《사회과학연구》, 제31집 1호, 275-301.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김수아 (2011). 《BBC 제작가이드라인》.
- 방희경·오현주(2018). 아이돌의 정동노동(affective labor)과 노동윤리-리얼리티 오디션쇼 <프로듀스 101>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제91호, 2018.10, 76-117.
- 백보현(2020).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계약 갈등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문화정책논총》, 34권 1호, 65-98.
-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팝업(Pop-up)(2020). 《아동·청소년 대중문화 예술인 노동인권 개선 토론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 여성가족부(2010). 청소년 연예인 성보호·근로권·학습권 실태분석
- 윤태립(2013). 『문화와 역사연구를 위한 질적 연구 방법론』. 아르케.
- 원용진·김지만(2012). 사회적 장치로서의 아이돌 현상, 《대중서사연구》, 18권 2호, 319-361.
- 이영주(2009). 우리나라 방송사의 아동(청소년) 방송출연 가이드라인 규정 방안, 《아동 청소년의 방송출연과 미디어 윤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세미나 자료집》.
- 이재목(2011) 연예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소고, 《스포츠와 법》 제14권 제4호 (통권 제29호, 2011.11)
- 이종임(2018a). 『아이돌 연습생의 땀과 눈물-아이돌 성공신화와 연습생의 딜레마』, 서울연구원.
- _____ (2018b). 『문화산업의 노동구조와 아이돌』, 북코리아.

- 입법조사처(2013). 「이슈와 논점」 국내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현황과 개선 방안
- _____ (2013). 「이슈와 논점」 어린이 및 청소년 방송출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_____ (2013). 「이슈와 논점」 연예인 지망생의 인권실태와 보호방안
- 최보연·안채린(2017). 창의노동 관점에서 바라본 '예술인 복지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예술경영 연구》, 42권 42호, 65-102.
- 한국노동연구원 역(2013). 『독일노동법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0).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Ⅳ: 생존권·보호권 인권실태조사》.
- _____ (2010).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Ⅴ: 발달권·참여권 인권실태조사》.
- _____ (2010).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Ⅳ: 생존권·보호권 정량지표》.
- _____ (2010).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Ⅴ: 발달권·참여권 정량지표》.
- 한국콘텐츠진흥원(2015). 《2015년 대중문화예술산업실태 보고서》.
- _____ (2017). 《2017년 대중문화예술산업실태 보고서》.
- _____ (2019). 《2019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 보고서》.
- _____ (2019).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및 연습생 표준계약서 개발을 위한 연구》.
- 헉터 맥도널드 지음, 이지연 역(2018). 『만들어진 진실: 우리는 어떻게 팩트를 편집하고 소비하는가』. 흐름출판.
- 홍지아·정윤정(2018). 리얼리티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이 재현하는 아이돌 되기의 자격, 《현상과 인식》, 42권 2호, 121- 150.
- 한국전파진흥원(2016).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한 프리랜서 방송인력 실태조사 연구》.
- 한국콘텐츠진흥원(2014).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기초연구》
- _____ (2016). 《2016 대중문화예술산업 심층연구 보고서》
- _____ (2018). 《대중문화예술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_____ (2019).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및 연습생 표준계약서 개발을 위한 연구》
- _____ (2019). 《2019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 탠서 E. 호스킨스 저, 김지선 역(2016). 『런웨이 위의 자본주의』, 문학동네.
- BBC(2017.10.). *Child Protection and Safeguarding Policy*.
- Fortmueller, Kate (2016). “The SAG-AFTRA Merger: Union Convergence in a Changing Media Landscape.” *Television & New Media*, 17(3) 212-227.

Honthaner, E. L., (2010). *The Complete Film Production Handbook*. (4th ed.). Focal Press.

ITV'S CHILD PROTECTION GUIDELINES FOR PRODUCERS, 2018년 10월 기준.
<https://www.itv.com/commissioning/articles/compliance-guidelines>

Messenger, M., Mosdell, N.(2001). *Consenting Children?: The Use of Children in Non-Fiction Television Programmers*, Broadcasting Standards Commission.

Nasim Mansuri(2017.11.16.). *With all the abuse in Hollywood, how are we protecting child actors?*
<https://www.hypable.com/protecting-child-actors/#article-content>

Oates, J (2019.5.17.). Jeremy Kyle Show: a psychologist explains the risks in reality TV and how aftercare should be done. *The Conversation*.

Pynoos RS, Frederick C, Nader K, Arroyo W, Steinberg A, Eth S,et al.(1987). Life threat and post traumatic stress in school-age children. *Arch Gen Psychiatry*. 44:1057-1063.

Sarah Hughes, Protect child actors from abuse, pleads star of new BBC drama Dark Money, *The Guardian*, 6, July, 2019.
<https://www.theguardian.com/media/2019/jul/06/protect-child-actors-from-abuse-pleads-babou-ceesay-s-tar-of-dark-money>

Screen Actors Guild (SGA). Young performers handbook. 2010. Available from
http://youngperformers.sagaftra.org/files/youngperformers/YPH_FNL3.pdf.

STUDIOBINDER(2019.4.29.). *The Hollywood Trenches: 10 Rules for Working With Child Actors*.
<https://www.studiobinder.com/blog/child-actor-labor-laws/>

Wasko, J.(2004). *How Hollywood Works*, London: Thousand Oaks and New Delhi. 박조원 · 정현일
 옮김(2007). 『할리우드 영화 산업론』. 커뮤니케이션북스.

Working & Filming with Under 18's Guidelines, Attention Channel 4 Programme Makers & Editorial Staff, *Producers Handbook*.
<https://filmlondon.org.uk/resource/working-with-children>
<https://www.channel4.com/producers-handbook/c4-guidelines/working-and-filming-with-under-18s-guidelines>
<http://britishfilmcommission.org.uk/guidance/regulations/>
<https://filmlondon.org.uk/resource/working-with-children>
<https://fia-actors.com/resources/publications/fia-publications/fia-publications-details/article/fia-child-performer-toolkit/>

부 록

<부록1>(연기자용)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설문지

<부록2>(연습생용)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설문지

<부록3> 프랑스 노동법

<부록1>(연기자용)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문화사회연구소에서는 대중문화산업 현장에서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 결과는 연구수행에만 사용될 것이며, 응답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누출, 변조, 훼손 등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언제라도 이 조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 결정이 귀하께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신 설문지는 자료처리 후 폐기 처리됩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의 설문 결과는 인권침해 사례 연구 및 노동인권 개선 사업에 활용됩니다.

※ 본 설문은 보호자와 함께 설문 참여가 가능합니다. 보호자와 함께 설문을 작성한 경우 아래 박스에 체크(✓)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자와 함께 설문 응답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기자용]

I. 기본사항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성 ② 여성 ③ 직접 기재 _____

2. 귀하의 연령은 몇 세입니까? 만 _____ 세

3. 귀하는 현재 학교에 재학 중입니까?

- ① 네 (☞3-1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3-2번 문항으로) ③ 미취학아동

3-1. 귀하의 학년은 어떻게 되십니까?(※ 밑줄 친 부분에 학년을 적어 주세요.)

- ① 초등학교 _____학년 ② 중학교 _____학년 ③ 고등학교 _____학년

3-2. 귀하가 현재 속한 교육과정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홈스쿨링 ② 검정고시 준비 ③ 검정고시 합격 ④ 기타()

4. 귀하의 연기 활동 경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이상~1년 미만 ③ 1년 이상~3년 미만
④ 3년 이상~5년 미만 ⑤ 5년 이상

5. 귀하는 현재 아래의 보기 가운데 어떠한 역할까지 해 봤습니까?

(※ 2개 이상 역할을 해봤을 때, 상위 역할 1개만 선택 → 예) 단역과 조연 모두 해봤을 경우 ‘③ 조연’ 선택)

- ① 보조출연 ② 단역 ③ 조연 ④ 주연

6. 귀하는 현재 소속사가 있습니까?

- ① 있다 (☞ 6-1번 문항으로) ② 없다 (☞ II. 1번 문항으로)

다					
8. 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1. 귀하는 평소(촬영기간이 아닌 때) 하루 평균 수면시간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 시간

8-2. 귀하는 촬영기간일 때 하루 평균 수면시간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 시간

8-3. 귀하는 촬영기간 동안 평균 수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8-4. 귀하는 연기를 위해 지금의 수면시간을 줄여도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9. 귀하는 연기자를 시작한 이후 앓았던 적이 없는 질병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9-1번 문항으로) ② 없다 (☞ 10번 문항으로)

9-1. 질병이 발생했다면 어떤 질병이었습니까?

(※질병의 예: 신체적 부상, 공황장애, 우울증, 과호흡증, 정신적 스트레스 등)

10. 귀하는 촬영기간 동안 신체적으로 아프거나 다쳤던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10-1번 문항으로) ② 없다 (☞ 11번 문항으로)

10-1. 아프거나 다쳤을 때 제작진/소속사에서는 어떠한 대처를 해 주었습니까?

- ① 촬영을 중단하고 함께 병원에 동행했다 ② 개별적으로 병원에 다녀올 시간을 주었다
 ③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촬영을 강행했다 ④ 기타()

10-2. 치료비용은 어떻게 해결하였습니까?

- ① 본인 부담 ② 제작진 부담 ③ 소속사 부담

13. 귀하는 집안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연기자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14. 귀하는 연기자 생활을 하는데 부모님의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도움을 받고 있다 (☞ 15번 문항으로) (도움을 받고 있지 않다 (☞ 14-1번 문항으로)

14-1. 부모님의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있지 않다면, 연기자 생활을 하는데 드는 비용을 마련하는 방법(아르바이트 등)을 간략히 써 주십시오.

15. 귀하는 현재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다 (☞ 15-1번 문항으로)	별로 행복하지 않다 (☞ 15-1번 문항으로)	보통이다	대체로 행복하다	매우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⑤

15-1. 행복하지 않다면, 그 이유에 대해 간략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16. 귀하는 현재 연기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① 만족스럽다 (☞ Ⅲ. 17번 문항으로) ② 불만족스럽다 (☞ 16-1번 문항으로)

16-1. 불만족스럽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중복 선택 가능)

① 연기활동의 횟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 ② 연기활동의 횟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 ③ 연기활동이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압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 ④ 연기활동 이외의 활동을 강요하기 때문에(강요한 활동:)
- ⑤ 소속사로부터 개인적인 생활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 ⑥ 대중의 지나친 관심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를 받기 때문에
- ⑦ 기타()

III. 보호권

17-1. 귀하는 제작진이나 소속사 관계자로부터 신체적 체벌이나 지나친 꾸짖음(욕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 ‘신체적 체벌’이란 도구(혹은 신체 일부)를 사용하여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행동이며, ‘꾸짖음이나 욕설’은 모멸감이나 괴로움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동을 의미함)

내용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일주일 에 1~2회 정도	주 3회 이상
제작진으로부터	1) 신체적 체벌	①	②	③	④	⑤
	2) 지나친 꾸짖음이나 욕설	①	②	③	④	⑤
소속사 관계자로 부터	3) 신체적 체벌	①	②	③	④	⑤
	4) 지나친 꾸짖음이나 욕설	①	②	③	④	⑤

17-2. 귀하는 선배 연기자나 동료 연기자로부터 신체적 체벌이나 지나친 꾸짖음(욕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내용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일주일 에 1~2회 정도	주 3회 이상
선배 연기자로부터	1) 신체적 체벌	①	②	③	④	⑤
	2) 지나친 꾸짖음이나 욕설	①	②	③	④	⑤
동료 연기자로부터	3) 신체적 체벌	①	②	③	④	⑤
	4) 지나친 꾸짖음이나 욕설	①	②	③	④	⑤

17-3. 귀하는 신체적 체벌 혹은 지나친 꾸짖음이나 욕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제작진은 연기자에게 신체적 체벌을 가해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⑤
2) 소속사 관계자는 연기자에게 신체적 체벌을 가해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⑤
3) 선배 연기자는 후배 연기자에게 신체적 체벌을 가해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⑤
4) 동료 연기자는 동료 연기자에게 신체적 체벌을 가해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⑤
5) 제작진은 연기자에게 지나친 꾸짖음이나 욕설을 해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⑤
6) 소속사 관계자는 연기자에게 지나친 꾸짖음이나 욕설을 해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⑤
7) 선배 연기자는 후배 연기자에게 지나친 꾸짖음이나 욕설을 해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⑤
8) 동료 연기자는 동료 연기자에게 지나친 꾸짖음이나 욕설을 해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⑤

18. 귀하는 제작진이나 소속사 관계자로부터 성적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성적인 피해'란 성적인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유발할 수 있는 놀림(성희롱),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성추행), 성폭력을 포함한 모든 성 관련 피해를 의미함)

문항	있다	없다
1.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성적 농담을 하는 행위	①	②
2. 연애 경험이나 성 경험 등 사생활을 묻는 행위	①	②
3. 사적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①	②
4. 성적인 이미지나 영상을 보여주는 행위	①	②
5. 포옹, 손잡기, 신체 밀착, 안마, 입맞춤 등의 신체접촉을 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①	②
6. 회식이나 뒷풀이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	①	②
7.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①	②

☞ 위의 1~7번 문항 가운데 '있다' 를 1개라도 선택했을 경우, 18-1번 문항으로

☞ 위의 1~7번 문항 모두 '없다' 라고 선택했을 경우, 19번 문항으로

18-1. 위의 표 1~7번 문항과 같은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했습니까?(중복 선택 가능)

- ① 문제를 일으키기 싫어서 참고 넘어갔다
- ② 캐스팅에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참고 넘어갔다
- ③ 제작현장에서 자주 겪는 일이라 신경 쓰지 않는다

- ④ 부모님과 상의했다
- ⑤ 친한 제작진 또는 소속사 관계자와 상의했다
- ⑥ 친한 연기자와 상의했다
- ⑦ 제작진에게 공식적으로 항의하고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 ⑧ 관계 기관 등에 신고했다 (어떤 기관에 신고하셨습니까? _____)
- ⑨ 기타(_____)

19. 아래의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체크(✓)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있다	없다
1.	나는 촬영현장에서 남자 또는 여자 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	①	②
2.	나는 촬영현장에서 나이 때문에 부당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	①	②
3.	나는 촬영현장에서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부당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	①	②
4.	나는 배역 캐스팅 과정에서 나이 때문에 부당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	①	②
5.	나는 배역 캐스팅 과정에서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부당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	①	②

20. 귀하는 연기자로 활동하면서 제작진이나 소속사 관계자로부터 다이어트 권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21. 귀하는 연기자로 활동하면서 제작진이나 소속사 관계자로부터 성형수술(시술 포함) 권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22. 귀하는 촬영할 때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 ① 나쁜 날씨(한여름의 무더위/폭우, 한겨울의 강추위/폭설 등)
- ② 장시간 또는 야간 촬영
- ③ 실내 공기
- ④ 냉난방 시설 부재 또는 부족
- ⑤ 촬영 대기 장소 부재 또는 부족
- ⑥ 불편한 점 없음

는 칸에 체크(√)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1. 욕설/모욕적인 말	2. 개인 사생활	3. 허위사실/비방글	4. 협박
1) 댓글이나 대화를 통해 직접 대응한다 예) 사과나 중단요구/상대방과 똑같이 대함				
2) SNS 계정을 비공개하거나 탈퇴한다				
3) 친구와 상의한다				
4) 부모님과 상의한다				
5) 선생님과 상의한다				
6) 제작진 또는 소속사 관계자와 상의한다				
7) 선배 또는 동료 연기자와 상의한다				
8) 사이버신고센터(사이버경찰)에 신고한다				
9) 기타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별로 도움되지 않는다	보통이다	대체로 도움된다	매우 도움된다
①	②	③	④	⑤

29. 귀하는 촬영기간 동안 일주일에 평균 며칠 정도 결석합니까?

없음	반나절	1일	2일	3일	4일	5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0. 드라마 촬영기간(또는 홍보기간) 중 학교 수업을 빠지게 될 경우 제작진/소속사는 귀하에게 미리 사전고지를 했거나, 사전협의를 하였습니까?

- ① 작품 제작 초반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고 한 번만 동의를 구한다
- ② 그때그때 수시로 동의를 구한다
- ③ 특별히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
- ④ 기타 ()

31. 귀하는 현재 연기자의 학습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별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2. 귀하는 학교 수업 참여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3. 귀하는 학교수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체크(✓) 표시해 주십시오.(중복 선택 가능)

- ① 연기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② 연기활동을 그만 둔 이후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③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을 기르기 위해 필요하다
- ④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필요한 것 같다
- ⑤ 학교수업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다
- ⑥ 학교수업에는 흥미가 없지만 다른 공부를 하고 싶다(다른 공부: _____)

⑦ 기타 ()

34. 귀하는 평소 부모님, 제작진, 소속사 관계자와 얼마나 대화를 하십니까?

내용	전혀 하지 않는다	별로 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대체로 자주한다	매우 자주한다
1. 부모님	①	②	③	④	⑤
2. 제작진	①	②	③	④	⑤
3. 소속사 관계자	①	②	③	④	⑤

35. 귀하는 평소 여가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충분하지 않다	별로 충분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충분하다	매우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36. 귀하는 아래 보기와 같은 일로 고민했던 적이 있다면, 그 중요도에 따라 3가지를 보기에서 선택해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순서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보 기		
① 학업 성적	② 가족 관계 문제	③ 제작진과의 관계 문제
④ 소속사와의 관계 문제	⑤ 친구 관계 문제	⑥ 가정의 경제적 형편
⑦ 부족한 자유시간	⑧ 연기력에 대한 불만족	⑨ 외모나 신체에 대한 불만족
⑩ 기타()		

36-1. 귀하는 고민이 있을 때, 주로 누구와 상담하십니까?(중복 선택 가능)

- | | | |
|-------------|------------------|----------------|
| ① 부모님 | ② 선생님 | ③ 친구 |
| ④ 형제·자매 | ⑤ 제작진 또는 소속사 관계자 | ⑥ 선배 또는 동료 연기자 |
| ⑦ 의사 또는 상담사 | ⑧ 온라인 친구 | ⑨ 상담대상 없음 |
| ⑩ 기타() | | |

37. 귀하는 마음을 터놓고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40-1. 귀하는 제작진이나 소속사 관계자와 의견이 다르거나 마찰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 ① 나는 양측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 ② 나는 내 생각을 가급적 제작진이나 소속사 관계자에게 맞춘다
- ③ 나는 마찰이 생기는 것이 불편하거나 두려워 제작진이나 소속사 관계자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 ④ 나는 나의 주장을 밀고 나간다

40-2. 귀하는 동료/선후배 연기자와 의견이 다르거나 마찰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 ① 나는 양측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 ② 나는 내 생각을 가급적 동료/선후배 연기자에게 맞춘다
- ③ 나는 마찰이 생기는 것이 불편하거나 두려워 동료/선후배 연기자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 ④ 나는 나의 주장을 밀고 나간다

41. 아래의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체크(✓) 표시해 주십시오.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의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알아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나의 진로문제에 대하여 부모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2. 귀하는 학교에서 연기자와 관련된 진로교육 또는 진로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42-1번 문항으로)
- ② 없다 (☞ 43번 문항으로)

42-1. 있다면,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또는 진로상담의 내용이 진로결정이나 직업선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43. 아래의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체크(✓) 표시해 주십시오.

내용	전혀 그렇 지 않다	별로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내가 선택한 연예계에서 성공할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연기자 일을 선택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4. 귀하는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계속해서 연기자의 진로로 나아갈 생각이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V. 참여권

45. 귀하가 연기자라는 진로를 결정할 때, 부모님은 그 결정을 좋아하고 존중해주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46. 아래의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체크(✓) 표시해 주십시오.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작품을 선택할 때 나의 결정이 적극 반영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소속사를 선택할 때 나의 결정이 적극 반영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3. 소속사와의 계약 조항을 결정할 때 나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47. 아래의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체크(✓)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있다 (47-1번 문항으로)	없다 (48번 문항으로)
1. 제작진이나 소속사 관계자로부터 개인적 물품이나 소지품 에 대한 검사를 받은 경험	①	②
2. 촬영기간 동안 제작진이나 소속사 관계자로부터 휴대폰 제출 을 요구받은 경험	①	②
3. 촬영기간 동안 제작진이나 소속사 관계자로부터 휴대폰 사용 을 제지받은 경험	①	②
4. 제작진이나 소속사 관계자로부터 머리나 옷 스타일 과 관련해 통제받은 경험	①	②

47-1. 있다면,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 ①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 ②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 ③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가만히 있었다

48. 아래의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체크(✓) 표시해 주십시오.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어리다는 이유로 제작진이나 소속사 관계자는 내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어리다는 이유로 촬영현장에서 내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제작진이나 소속사 관계자는 내가 미성숙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9. 아래의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체크(✓)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있다	없다
1. 제작진이나 소속사 관계자로부터 계약조건 및 관련조항 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	①	②
2. 제작진이나 소속사 관계자로부터 촬영장 안전수칙 에 관한 설명을 제공받은 경험	①	②
3.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 보장을 위한 관련 정책 정보와 자료 를 제공받은 경험	①	②
4.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상담 및 구제받을 기관에 대한 정보 를 제공받은 경험	①	②
5.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 이해 및 인권보호 방법에 대한 인권교육 을 받은 경험	①	②

50. 귀하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 신장 및 옹호를 위한 전담수행기관(인권교육기관/인권상담기관/인권정보제공전용사이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용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인권교육기관	①	②	③	④	⑤
2. 인권상담기관	①	②	③	④	⑤
3. 인권정보제공 전용 사이트	①	②	③	④	⑤

51. 귀하는 한국사회가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의견을 듣고 이들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VI.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아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일부 조항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히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의 기본적 인권 보장에 대한 조치가 계약에 포함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아래의 내용을 읽고 52번 문항부터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조(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 ①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②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과도한 노출행위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15세 미만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 ①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 시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시간은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②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으로부터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을 수 없다. 다만,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일의 다음날이 학교의 휴일인 경우에는 대중문화예술인과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일 자정까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다.
- ③ 국외활동을 위한 이동, 장거리 이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 휴식권, 수면권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3조(15세 이상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 ①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 시 15세 이상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시간은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 ②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15세 이상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으로부터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을 수 없다. 다만, 15세 이상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및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다.

<부록2>(연습생용)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문화사회연구소에서는 대중문화산업 현장에서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 결과는 연구수행에만 사용될 것이며, 응답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누출, 변조, 훼손 등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언제라도 이 조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 결정이 귀하께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신 설문지는 자료처리 후 폐기 처리됩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의 설문 결과는 인권침해 사례 연구 및 노동인권 개선 사업에 활용됩니다.

※ 본 설문은 보호자와 함께 설문 참여가 가능합니다. 보호자와 함께 설문을 작성한 경우 아래 박스에 체크(V)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자와 함께 설문 응답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습생용]

1. 기본사항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성 ② 여성 ③ 직접 기재 _____

2. 귀하의 연령은 몇 세입니까? 만 _____ 세

3. 귀하는 현재 학교에 재학 중입니까?

- ① 네 (☞3-1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3-2 번 문항으로) ③ 미취학아동

3-1. 귀하의 학년은 어떻게 되십니까?(※ 밑줄 친 부분에 학년을 적어 주세요.)

- ① 초등학교 _____학년 ② 중학교 _____학년 ③ 고등학교 _____학년

3-2. 귀하가 현재 속한 교육과정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홈스쿨링 ② 검정고시 준비 ③ 검정고시 합격 ④ 기타()

4. 귀하가 연습생 생활을 시작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_____년 _____개월

5. 귀하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활동분야는 무엇입니까?

- ① 가수 ② 연기자 ③ 가수 겸 연기자 ④ 기타()

6. 귀하는 현재 소속사가 있습니까?

- ① 있다 (☞ 6-1번 문항으로) ② 없다 (☞ II. 1번 문항으로)

6-1. 소속되어 있다면 소속사와 어떤 형태의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 ① 표준계약서로 체결했다
- ② 소속사 자체 계약서로 체결했다
- ③ 서면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말로서) 계약을 체결했다
- ④ 기타()

II. 생존권

1. 연습기간 동안 소속사에서는 식사 제공이 됩니까?

① 제공된다 (☑ 1-1번 문항으로)

② 제공되지 않는다 (☑ 2번 문항으로)

1-1. 제공되는 식사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대체로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만족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간략히 써 주십시오.

2. 아래는 귀하의 건강과 신체충실도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밑줄 친 부분에 귀하의 키와 몸무게를 써 주십시오.

2-1. 키: _____(cm)

2-2. 몸무게: _____(kg)

3. 귀하는 자신의 체형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마른 편이다 ② 약간 마른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살이 찐 편이다
⑤ 매우 살이 찐 편이다

4. 소속사는 귀하의 체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 ① 매우 마른 편이라고 평가한다 ② 약간 마른 편이라고 평가한다 ③ 보통이라고 평가한다
④ 약간 살이 찐 편이라고 평가한다 ⑤ 매우 살이 찐 편이라고 평가한다

5. 귀하는 현재 규칙적인 운동(단, 학교 체육시간에 하는 운동은 제외)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 ① 전혀 하고 있지 않다 ② 일주일에 1~2회 정도 ③ 일주일에 3~4회 정도
④ 일주일에 5회 이상 ⑤ 한 달에 1~2회 정도

6-1. 귀하는 스스로 **신체적**으로 얼마나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건강하지 않다 ②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건강한 편이다
⑤ 매우 건강하다

6-2. 귀하는 스스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건강하지 않다 ②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건강한 편이다
⑤ 매우 건강하다

6-3. 소속사는 귀하의 건강에 어느 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	보통이다	대체로 관심을 갖는다	매우 관심을 갖는다
①	②	③	④	⑤

6-4. 귀하의 건강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나 자신 ② 부모님 ③ 친구 ④ 소속사 관계자 ⑤기타() ⑥없음

7. 아래의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란에 체크(✓)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가족관계 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친구관계 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학업문제 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외모/신체적 조건 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소속사 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연습생 교육(노래, 춤, 연기 연습 등) 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동료연습생 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경제적 어려움 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1. 귀하는 하루 평균 수면시간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 시간

방법(아르바이트 등)을 간략히 써 주십시오.

15. 귀하는 현재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다 (☞ 15-1번 문항으로)	별로 행복하지 않다 (☞ 15-1번 문항으로)	보통이다	대체로 행복하다	매우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⑤

15-1. 행복하지 않다면, 그 이유에 대해 간략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16. 귀하는 현재 연습생 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 ① 만족스럽다 (☞ III. 17번 문항으로) ② 불만족스럽다 (☞ 16-1번 문항으로)

16-1. 불만족스럽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중복 선택 가능)

- ① 연습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부실하기 때문에
② 연습생 교육 이외의 활동을 강요하기 때문에(강요한 활동:)
③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④ 소속사로부터 개인적인 생활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⑤ 치열한 경쟁과 노력을 끊임없이 요구받기 때문에
⑥ 기타()

III. 보호권

17-1. 귀하는 소속사 관계자 또는 선배/동료 연습생으로부터 신체적 체벌이나 지나친 꾸짖음(욕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 ‘신체적 체벌’이란 도구(혹은 신체 일부)를 사용하여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행동이며, ‘꾸짖음이나 욕설’은 모멸감이나 괴로움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동을 의미함)

내용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일주일에 1~2회 정도	주 3회 이상
소속사 관계자로부터	1) 신체적 체벌	①	②	③	④	⑤
	2) 지나친 꾸짖음이나 욕설	①	②	③	④	⑤
선배 연습생으로부터	3) 신체적 체벌	①	②	③	④	⑤
	4) 지나친 꾸짖음이나 욕설	①	②	③	④	⑤
동료 연습생으로부터	5) 신체적 체벌	①	②	③	④	⑤
	6) 지나친 꾸짖음이나 욕설	①	②	③	④	⑤

17-2. 귀하는 신체적 체벌 혹은 지나친 꾸짖음이나 욕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소속사 관계자는 연습생에게 신체적 체벌을 가해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⑤
2) 선배 연습생은 후배 연습생에게 신체적 체벌을 가해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⑤
3) 동료 연습생은 동료 연습생에게 신체적 체벌을 가해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⑤
4) 소속사 관계자는 연습생에게 지나친 꾸짖음이나 욕설을 해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⑤
5) 선배 연습생은 후배 연습생에게 지나친 꾸짖음이나 욕설을 해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⑤
6) 동료 연습생은 동료 연습생에게 지나친 꾸짖음이나 욕설을 해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⑤

18. 귀하는 소속사 관계자로부터 성적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성적인 피해’란 성적인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유발할 수 있는 놀림(성희롱),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성추행), 성폭력을 포함한 모든 성 관련 피해를 의미함)

문항	있다	없다
1.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성적 농담을 하는 행위	①	②
2. 연애 경험이나 성 경험 등 사생활을 묻는 행위	①	②
3. 사적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①	②
4. 성적인 이미지나 영상을 보여주는 행위	①	②
5. 포옹, 손잡기, 신체 밀착, 안마, 입맞춤 등의 신체접촉을 하거나 신체접촉을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①	②
6. 회식이나 뒷풀이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	①	②
7.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①	②

☞ 위의 1~7번 문항 가운데 ‘있다’ 를 1개라도 선택했을 경우, 18-1번 문항으로

☞ 위의 1~7번 문항 모두 ‘없다’ 라고 선택했을 경우, 19번 문항으로

18-1. 위의 표 1~7번 문항과 같은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했습니까?(중복 선택 가능)

- ① 문제를 일으키기 싫어서 참고 넘어갔다
- ② 데뷔하는데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참고 넘어갔다
- ③ 자주 겪는 일이라 신경 쓰지 않는다
- ④ 부모님과 상의했다
- ⑤ 친한 소속사 관계자와 상의했다
- ⑥ 친한 연습생과 상의했다
- ⑦ 소속사에게 공식적으로 항의하고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 ⑧ 관계 기관 등에 신고했다 (어떤 기관에 신고하셨습니까? _____)
- ⑨ 기타(_____)

19. 아래의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체크(✓)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4. 아래의 문항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피해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는 온라인 공간에서 아래와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문항		있다	없다
1.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댓글/DM으로 받음	①	②
2.	밝히고 싶지 않은 개인 사생활이 알려짐	①	②
3.	나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비방글이 퍼짐	①	②
4.	협박을 당함	①	②

☞ 위의 1~4번 문항 가운데 ‘있다’ 를 1개라도 선택했을 경우, 24-1번 문항으로

☞ 위의 1~4번 문항 모두 ‘없다’ 라고 선택했을 경우, IV. 25번 문항으로

24-1. 위의 표 1~4번 문항과 같은 일을 당했을 때, 주로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각 문항별로 해당하는 칸에 체크 (V)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1. 욕설/모욕적인 말	2. 개인 사생활	3. 허위사실/비방글	4. 협박
1)	댓글이나 대화를 통해 직접 대응한다 예) 사과나 중단요구/상대방과 똑같이 대함				
2)	SNS 계정을 비공개하거나 탈퇴한다				
3)	친구와 상의한다				
4)	부모님과 상의한다				
5)	선생님과 상의한다				
6)	제작진 또는 소속사 관계자와 상의한다				
7)	선배 또는 동료 연기자들과 상의한다				
8)	사이버신고센터(사이버경찰)에 신고한다				
9)	기타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별로 도움되지 않는다	보통이다	대체로 도움된다	매우 도움된다
①	②	③	④	⑤

28. 귀하는 연습생 생활을 시작한 이후 일주일에 평균 며칠 정도 결석합니까?

없음	반나절	1일	2일	3일	4일	5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9. 귀하는 현재 연습생의 학습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별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0. 귀하는 학교 수업 참여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1. 귀하는 학교수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체크(✓) 표시해 주십시오.(중복 선택 가능)

- ① 연예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② 연예활동을 그만 둔 이후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③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을 기르기 위해 필요하다
- ④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필요한 것 같다
- ⑤ 학교수업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다
- ⑥ 학교수업에는 흥미가 없지만 다른 공부를 하고 싶다(다른 공부: _____)
- ⑦ 기타 (_____)

32. 귀하는 평소 부모님, 소속사 관계자와 얼마나 대화를 하십니까?

내용	전혀 하지 않는다	별로 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대체로 자주한다	매우 자주한다
1. 부모님	①	②	③	④	⑤
2. 소속사 관계자	①	②	③	④	⑤

33. 귀하는 평소 여가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충분하지 않다	별로 충분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충분하다	매우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34. 귀하는 아래 보기와 같은 일로 고민했던 적이 있다면, 그 중요도에 따라 3가지를 보기에서 선택해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순서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보 기		
① 학업 성적	② 가족 관계 문제	③ 소속사의 관계 문제
④ 친구 관계 문제	⑤ 가정의 경제적 형편	⑥ 부족한 자유시간
⑦ 노래/춤/연기력에 대한 불만족	⑧ 외모나 신체에 대한 불만족	⑨ 데뷔에 대한 불안감
⑩ 기타()		

34-1. 귀하는 고민이 있을 때, 주로 누구와 상담하십니까?(중복 선택 가능)

- | | | |
|-------------|-----------|----------------|
| ① 부모님 | ② 선생님 | ③ 친구 |
| ④ 형제·자매 | ⑤ 소속사 관계자 | ⑥ 선배 또는 동료 연습생 |
| ⑦ 의사 또는 상담사 | ⑧ 온라인 친구 | ⑨ 상담대상 없음 |
| ⑩ 기타() | | |

35. 귀하는 마음을 터놓고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내용	없음	1~2명	3~4명	5~9명	10명 이상
1. 일반인 친구	①	②	③	④	⑤
2. 동료 연습생	①	②	③	④	⑤

36. 귀하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온/오프라인 커뮤니티가 있습니까?

① 있다 (☞ 36-1번 문항으로)

② 없다 (☞ 37번 문항으로)

36-1. 있다면, 어떤 커뮤니티인지 간략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37. 아래의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체크(✓) 표시해 주십시오.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학업성적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인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연기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인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연기자로 활동하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나에게 친한 친구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내가 필요한 존재라고 느껴지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내가 이해받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나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어떤 일이든 노력하면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기분 나쁜 일이 있더라도 빨리 잊으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해도 이를 조절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8-1. 귀하는 소속사 관계자와 의견이 다르거나 마찰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 ① 나는 양측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 ② 나는 내 생각을 가급적 소속사 관계자에게 맞춘다
- ③ 나는 마찰이 생기는 것이 불편하거나 두려워 소속사 관계자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 ④ 나는 나의 주장을 밀고 나간다

38-2. 귀하는 동료/선후배 연습생과 의견이 다르거나 마찰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 ① 나는 양측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 ② 나는 내 생각을 가급적 동료/선후배 연습생에게 맞춘다
- ③ 나는 마찰이 생기는 것이 불편하거나 두려워 동료/선후배 연습생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 ④ 나는 나의 주장을 밀고 나간다

39. 아래의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체크(✓) 표시해 주십시오.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의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알아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나의 진로문제에 대하여 부모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0. 귀하는 학교에서 가수/연기자 등과 관련된 진로교육 또는 진로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40-1번 문항으로)
- ② 없다 (☞ 41번 문항으로)

40-1. 있다면,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또는 진로상담의 내용이 진로결정이나 직업선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41. 아래의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체크(✓) 표시해 주십시오.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선택한 연예계에서 성공할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연기자 일을 선택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2. 귀하는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계속해서 가수/연기자 등의 진로로 나아갈 생각이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V. 참여권

43. 귀하가 가수/연기자 등의 진로를 결정할 때, 부모님은 그 결정을 좋아하고 존중해주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44. 아래의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체크(✓) 표시해 주십시오.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연습생을 시작할 때 나의 결정이 적극 반영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소속사를 선택할 때 나의 결정이 적극 반영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3. 소속사와의 계약 조항을 결정할 때 나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45. 아래의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체크(✓)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있다 (45-1번 문항으로)	없다 (46번 문항으로)
1. 소속사 관계자로부터 개인적 물품이나 소지품에 대한 검사를 받은 경험	①	②
2. 연습을 하는 동안 소속사 관계자로부터 휴대폰 제출을 요구받은 경험	①	②
3. 연습을 하는 동안 소속사 관계자로부터 휴대폰 사용을 제지받은 경험	①	②
4. 소속사 관계자로부터 머리나 옷 스타일과 관련해 통제받은 경험	①	②

45-1. 있다면,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 ①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 ②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 ③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가만히 있었다

46. 아래의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체크(✓) 표시해 주십시오.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어리다는 이유로 소속사 관계자는 내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어리다는 이유로 연습현장에서 내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소속사 관계자는 내가 미성숙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7. 아래의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체크(✓)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있다	없다
1. 소속사 관계자로부터 계약조건 및 관련조항 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	①	②
2. 소속사 관계자로부터 연습장 안전수칙 에 관한 설명을 제공받은 경험	①	②
3.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 보장을 위한 관련 정책 정보와 자료 를 제공받은 경험	①	②
4.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상담 및 구제받을 기관에 대한 정보 를 제공받은 경험	①	②
5.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 이해 및 인권보호 방법에 대한 인권교육 을 받은 경험	①	②

48. 귀하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 신장 및 옹호를 위한 전담수행기관(인권교육기관/인권상담기관/인권정보제공전용사이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용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인권교육기관	①	②	③	④	⑤
2. 인권상담기관	①	②	③	④	⑤
3. 인권정보제공 전용 사이트	①	②	③	④	⑤

49. 귀하는 한국사회가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의견을 듣고 이들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VI.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아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일부 조항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히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의 기본적 인권 보장에 대한 조치가 계약에 포함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아래의 내용을 읽고 50번 문항부터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조(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 ①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②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과도한 노출행위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15세 미만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 ①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 시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시간은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②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으로부터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을 수 없다. 다만,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일의 다음날이 학교의 휴일인 경우에는 대중문화예술인과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일 자정까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다.
- ③ 국외활동을 위한 이동, 장거리 이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 휴식권, 수면권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3조(15세 이상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①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 시 15세 이상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시간은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 ②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15세 이상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으로부터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을 수 없다. 다만, 15세 이상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및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

〈부록3〉 프랑스 노동법

제4장: 공연, 순회 업종⁴⁹⁾, 광고 및 패션 분야의 아동⁵⁰⁾

Chapitre IV : Enfants dans le spectacle, les professions ambulantes, la publicité et la mode

제1절: 개별 허가

제7124-1조

16세 미만의 아동은, 행정 기관의 사전 개별 허가 없이는, 어떤 명목으로든 (다음의 경우에) 고용 또는 제작될 수 없다.

- ① 순회 또는 비순회 공연 기업에
- ②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또는 녹음 기업에
- ③ 제7123-2조에 따른 모델 활동이 목적일 때
- ④ 치안법 제321-8조에 따른 비디오 게임 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또는 협회에

제7124-2조

제7124-1조에 정의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고용은 당사자의 긍정적 서면 의견에 따른다.

제7124-3조

제7124-1조에서 정한 아동 고용에 선행되는 개별 허가는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제2절: 인가받은 모델 에이전시에 의한 아동 고용에 관한 특별

제7124-4조

제7123-11조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아동 고용에 대한 인가를 받은 모델 에이전시에 아동이 고용된 경우 개별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제7124-5조

시장, 축제 등 공공장소에서 정착하지 않고 활동을 하는 상인이나 장인 Le commerçant ou l'artisan ambulant exerce son activité de manière non sédentaire, sur la voie publique, notamment sur les halles, marchés, et foires.

50) enfant이라는 단어는 프랑스 법률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16세 미만 아동을 고용하려는 모델 에이전시의 인가는 행정 기관이 승인하며, (인가) 기간은 한정적이며 갱신 가능하다.

인가는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긴급 상황에서, 인가는 제한된 기간 동안 보류될 수 있다.

제3절: 아동의 근로 조건

제1관: 근로시간 및 휴게

제7124-6조

모델 활동을 하는 취학 또는 미취학 아동의 고용 및 선발은 국의원⁵¹⁾이 정한 최대 일일 및 주간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124-7조

모델 활동을 하는 미취학 아동의 고용 및 선발은 일요일을 제외한 일주일에 이틀만 허가될 수 있다.

제7124-8조

학기 중, 모델 활동을 하는 취학 아동의 고용과 이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 선발은 일요일을 제외한 주간 휴게일에만 허가될 수 있다.

제2관: 보수

제7124-9조

아동이 수령한 보수의 일부는 법정 대리인의 재량에 이양될 수 있다. (보수 중 법정 대리인에 이양된 액수를 제외한) 초과금은 위탁금을 구성하는데, 예금공탁공고⁵²⁾에 납부되고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예금공탁공고에서 관리된다. 출금은 긴급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허가될 수 있다. 친권(후견) 해제의 경우, (위탁금은) 다시 결정된다.

제7124-10조

제7124-4조의 적용에 있어, 아동의 고용이 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아동이 수령하는 보수를 법정

51) Conseil d'Etat-프랑스 최고행정법원

Caisse des Dépôts et Consignations, '예금 및 위탁 기금'이라고도 함

대리인과 위탁금으로 나눌 때 분배 규칙은 아동을 고용하는 모델 에이전시의 인가 결정에 의해 정해진다.

위탁금의 출금은 제7124-9조의 제2문단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허가될 수 있다.

제7124-11조

제7123-6⁵³⁾조를 적용하여 아동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 아동이 받는 보수는 이 관⁵⁴⁾의 규정에 따른다.

제7124-12조

제7124-1조에서 정한 활동 이외의 예술적 또는 문학적 활동을 하기 위해 16세 이하의 아동이 받는 보수의 종류는 보수는 이 관⁵⁵⁾의 규정에 따른다.

제4절: 금지 사항

제7124-13조

제7124-1조 및 제7124-4조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고용 또는 제작한 미성년자에 대해 예술 창작 이외의 것에 관한 방법, 의견, 정보 또는 자료를 게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7124-14조

영리성을 중시하는 예술직에 미성년자를 유인하는 부당 광고는 금지한다.

제7124-15조

16세 미만의 아동에게 모델 활동을 제안하는 지면 광고는 16세 미만의 아동 고용에 대한 권한을 인가받은 가진 모델 에이전시에서만 할 수 있다.

제7124-16조

다음은 금지한다.

Article L.7123-6 / La rémunération due au mannequin à l'occasion de la vente ou de l'exploitation de l'enregistrement de sa présentation par l'employeur ou tout autre utilisateur n'est pas considérée comme salaire dès que la présence physique du mannequin n'est plus requise pour exploiter cet enregistrement et que cette rémunération n'est pas fonction du salaire reçu pour la production de sa présentation, mais est fonction du produit de la vente ou de l'exploitation de l'enregistrement.

제7123-6조 / 고용주 또는 이용자에 의한 녹화(녹음)된 모델 공연의 활용이나 판매에 있어 모델에게 지불해야하는 보수는 이 녹화(녹음)를 사용하는데 있어 모델의 물리적 존재가 필요하지 않으면 임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보수는 공연 제작을 위해 받은 임금이 다른 것이 아닌, 녹화(녹음)의 활용 및 판매 상품을 기준으로 한다.

제2관

55) 제2관

- ① 16세 미만의 아동이 위험한 신체 활동⁵⁶⁾ 또는 탈구 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아동의 생명, 건강 또는 도덕에 유해한 업무를 위임하는 자
- ② 부모를 제외한, 곡예사, 동물 조련사, 서커스 또는 이동유원지 감독의 직업에 종사하는 자가 16세 미만의 아동을 해당 공연에 고용하는 것
- ③ ① 및 ②에서 정한 활동과 직업에 종사하는 부모가 해당 공연에 12세 미만의 자녀를 고용하는 것
- ④ 방학 기간 중 총 방학 기간의 절반 이상의 일 수 동안 아동을 모델로 고용하는 자

제7124-17조

부, 모, 보호자 또는 고용주 및 일반적으로 아동에 대한 권한이 있거나 양육권을 가진 이가 제7124-16조에서 정한 직업의 종사자에게 16세 미만의 자녀, 제자 또는 수습생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위임하는 것을 금지한다.

중개인이거나 대리인이 이러한 아동을 위탁하거나 위탁하게 하는 것 또한 금지한다.

16세 미만의 아동이 제7124-16조에서 정한 활동 및 직업 종사자를 동반하기 위해 부모나 보호자의 집을 떠나도록 독려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7124-18조

제7124-16 조에서 정한 활동 및 직업 종사자가 (아동의) 출생증명서 초본을 소지하지 않고 여권 발급을 통해 아동의 출신 및 신원을 증명하지 않을 경우 아동을 고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7124-19조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시장은 제7124-16조에서 정한 직업의 종사자에게 공연을 금지한다. 또한, 제7124-18조에 따라, 이 조항에서 정한 이의 감독하에 있는 아동의 출신 및 신원에 대한 증빙 자료를 요구한다. 이러한 증빙 자료가 없는 경우, 시장은 즉시 검사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124-20조

제7124-13조부터 제7124-15조까지의 규정은 제7124-12조에서 정한 것 외의 예술적 또는 문학적 활동을 하는 미성년자에게도 적용된다.

제5절: 적용 규정

제7124-21조

56) Tour de force -차력 등

제7124-1조부터 제7124-11조까지의 시행규칙은 국사원령으로 결정한다.

제6절: 처벌 규정

제7124-22조

제7124-1조에서 정한 기업에서, 이 조항의 규정을 알지 못하여, 사전 개별 허가를 받지 않고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하는 16세 이하의 아동을 고용하거나 제작하면 5년의 징역과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7124-23조

제7124-2조의 규정을 알지 못하여, 제7124-1조에 정의된 활동을 하려는 목적으로 사전 서면 동의 없이⁵⁷⁾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5년의 징역과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7124-24조

근로시간 및 휴게에 관한 제7124-6조부터 7124-8조까지의 규정을 알지 못하는 경우 5년의 징역과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7124-25조

제7124-1조 및 제7124-2조에서 정한 아동 또는 법정 대리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7124-2조의 제1문단이 적용된 액수를 초과하는 금품을 공여하는 경우 3,75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재범은 4개월의 징역과 7,5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7124-26조

제7124-12조에서 정한 아동 또는 법정 대리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을 공여하는 경우 3,75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 ① 제7124-3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아동을 고용하기 전에 개별 허가를 신청하거나 획득하지 않은 경우
 - ② 또는 제7124-9조의 제1문단을 적용하여 정한 액수 이상일 경우
- 재범은 4개월의 징역과 7,5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7124-27조

제7124-13조의 규정을 알지 못하여, 제7124-1조 및 제7124-4조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고용 또는

지역-사전에 서면으로 긍정적 의견을 받지 않고

제작한 미성년자에 대해 예술 창작 이외의 것에 관한 방법, 의견, 정보 또는 자료를 게시하는 경우 6,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재범은 2년의 징역에 처한다.

제7124-28조

제7124-14조의 규정을 알지 못하여 영리성을 중시하는 예술직에 미성년자를 유인하는 부당 광고를 제작하는 경우 6,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재범은 2년의 징역에 처한다.

제7124-29조

제7124-15조의 규정을 알지 못하여, 16세 미만의 아동에게 모델 활동을 제안하는 의도가 있는 지면 광고를 하는 경우 6,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재범은 2년의 징역에 처한다.

제7124-30조

제7124-16조의 규정을 알지 못하여,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5년의 징역과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 ① 16세 미만의 아동이 위험한 신체 활동⁵⁸⁾ 또는 탈구 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아동의 생명, 건강 또는 도덕에 유해한 업무를 위임하는 자
- ② 부모를 제외한, 곡예사, 동물 조련사, 서커스 또는 이동유원지 감독의 직업에 종사하는 자가 16세 미만의 아동을 해당 공연에 고용하는 것
- ③ ① 및 ②에서 정한 활동과 직업에 종사하는 부모가 해당 공연에 12세 미만의 자녀를 고용하는 것
- ④ 방학 기간 중 총 방학 기간의 절반 이상의 일 수 동안 아동을 모델로 고용하는 자

제7124-31조

제7124-17조의 규정을 알지 못하여,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5년의 징역과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 ① 부, 모, 보호자, 고용주 및 일반적으로 아동에 대한 권한이 있거나 양육권을 가진 이가 제7124-16조에서 정한 직업의 종사자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16세 미만의 자녀, 제자 또는 수습생을 위임하는 것 또는 부랑자, 생계 수단이 없는 자 및 결인의 통제 하에 두는 것을 금지한다.
- ② 중개인이나 대리인이 1에서 정한 아동을 위탁하거나 위탁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이 제7124-16조에서 정한 활동 및 직업 종사자를 동반하기 위해 부모나 보호자의 집을 떠나도록 독려하는 것을 금지한다.
후견인의 경우, 유죄 판결을 받으면 후견은 당연 취소된다. 부와 모는 친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제7124-32조

제7124-18조의 규정을 알지 못하여, 제7124-16조에서 정한 활동 및 직업 종사자가 책임하의 아동의 출생증명서 초본을 소지하지 않고 여권 발급을 통해 아동의 출신 및 신원을 증명하지 않을 경우 6개월의 징역과 3,75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7124-33조

제7124-20조를 알지 못하면, 6,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재범은 2년의 징역에 처한다.

제7124-34조

이 장에서 정한 아동 노동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그리고 재범일 경우에 한해, 법원은 판결 내용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법원은 또한, 같은 경우에, 위반자의 비용으로 도(道) 59)의 하나 이상의 신문에 판결문을 게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7124-35조

아동 근로법 관련 위반이, 출생증명서 발급, 허위 진술이 포함되거나 타인을 위해 발행된 증서 및 기록부에서 오는 오류의 결과인 경우, 처벌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5단: 보증 불충분 시 이용자의 모델 에이전시 대체

제R⁶⁰7123-38조

보증이 불충분한 경우, 이용자를 위해 모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모델 에이전시가 지불해야 하는 제7123-20조에서 정한 액수의 미지급금에 대하여 이용자가 모델 에이전시를 대리한다.

제3253-6조부터 제3253-2조까지에 규정된 미지급 위험 방지를 위한 보험 관련 규정에서 모델 에이전시에 대해 발생하는 반대약정 및 의무가 있더라도 이 규칙이 적용된다.

이 경우, 임금노동자, 사회 보장 보험 기관, 사회 기관 또는 사전구제, 회생 또는 파산절차의 경우 법정수입인 및 파산관재인이 미지급 액수의 지불 요청서를 보내어 보증 불충분을 이용자에게 알린다.

59) Département

60) 조항에 R이 있는 경우는 개정 또는 신설된 법률

이 요청은 등기 우편 또는 수령증을 받고 전달되는 서신으로 한다.
이용자는 요청을 받은 후 10 일 이내에 미지급금을 지불해야 한다.

제R7123-39조

임금노동자 및 사회 보장 보험 기관은 임금노동자 파견에 대해 모델 에이전시에 지급해야할 액수를 상기와 같이 대리하게 된 이용자에 대해 직접청구권을 행사한다.

제R7123-40조

제R7123-20조에 정의된 액수의 미지급액을 지불한 이용자는, 임금노동자의 모든 권한에서, 모델 에이전시에 대한 사회 보장 보험 기관의 가액의 범위에서 대위자⁶¹⁾가 된다.

제R7123-41조

사회 보장 보험 기관이 보증 불충분으로 모델 에이전시를 대리하여 이용자에 대해 납입금 미납에 대한 사회 지원금 환급 소송을 제기한 경우, 청구 액수는 에이전시에서 이용자에게 임시로 제공한 직원에 대한 미납된 납입금의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61) 프랑스민법은 대위를 채권자의 관점에서 기술하기 때문에 채권자를 대위를 시키는 자 (subrogeant), 변제자를 피대위자(subrogé)라고 부른다. 그러나 우리 민법의 경우에는 대위를 변제를 한 자의 관점에서 기술하기 때문에 변제자를 대위자라고 부른다(제480조, 제481조, 제482조).

제5장: 공연, 순회 업종, 광고 및 패션 분야의 아동

제1절: 개별 허가

제R7124-1조

영화사, 라디오 제작사, TV 제작사, 음반제작사 및 치안법 제321-8조에 따른 비디오 게임 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또는 협회에 16세 미만의 아동을 고용하거나 제작하기를 원하는 이는 기업 본사가 있는 지역의 프레페⁶²⁾에 허가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한다.

기업 본사가 해외에 있거나, 기업의 고정 소재지가 없는 경우, 신청서는 파리 프레페에 제출한다.

인가받은 모델 에이전시 외에 제7123-2조에서 정한 모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16세 미만의 아동을 선발, 계약, 고용 또는 제작하기를 원하는 자는 허가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제R7124-2조

개별 허가 신청에는 다음이 수반된다.

- ① 아동의 주민등록⁶³⁾을 입증하는 문서
- ② 이전 또는 현재 아동이 종사한 고용 목록이 첨부된 법정 대리인의 서면 허가
- ③ 아동이 맡은 역할, 모델로서 아동이 제공하는 용역, 또는 *디지털 공화국에 관한 2016년 10 월 7 일 제 ° 2016-1321호 법률102* 조에 따른 경쟁 비디오 게임 플레이어로서의 활동의 어려움과 도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문서
- ④ 아동의 고용 조건, 보수 및 수업 출석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

제R7124-3조

개별 허가는 제3절에서 그 구성 및 운영 방식이 결정된 위원회의 동의 하에 승인된다.

제R7124-4조

개별 허가 신청은 지방기업노동국⁶⁴⁾ 국장과 사회 통합 담당 부처 간 도(道)국장이 각자 해당 영역에서 심사한다.

지사 또는 군수/ 프랑스의 지방 일반 행정기관에 해당한다. 단일국가의 개념징표로서 국가단일성의 유지와 국가이익(지방(역)의 이익에 대한 공공이익)의 보호를 위한 국가행정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행위에 대해 일종의 통제적 기능을 수행한다. 프레페는 헌법 제13조에 따라 국무회의(Conseil des ministres)에서 총리와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임명한다. 프레페의 임무는 다양한데, 데파르트망(우리나라의 도에 해당)의 프레페의 경우 총리와 각 부를 대표하는 국가대표자로서 국가행정사무를 관장하고 (국가)경찰권을 행사하고 국가이익을 수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위에 대한 법적 통제(헌법상의 행정적 통제-Controle administratif-라 불리는 행정상 후견으로서의 적법성 통제)인 프레페제소 제도이다. 데파르트망의 프레페와는 달리 레지용의 프레페는 레지용 청사소재지에 속한 데파르트망의 프레페가 된다.

또는 호적

64) DIRECCTE- 프랑스 지역 기업/경쟁/소비/노동청

제R7124-5조

심사를 통해 위원회는 다음을 평가한다.

- ① 아동이 맡은 역할, 모델로서 아동이 제공하는 용역, 또는 *디지털 공화국에 관한 2016년 10월 7일 제 ° 2016-132호 법률102조*에 따른 경쟁 비디오 게임 플레이어로서의 활동이, 그 어려움과 도덕성에 미루어, 아동에게 위임될 수 있는지
- ② 아동이 디지털 공화국에 관한 *디지털 공화국에 관한 2016년 10월 7일 제 ° 2016-132호 법률102조*에 따른 공연 활동에, 모델 또는 경쟁 비디오 게임 플레이어로 이미 고용된 적이 있는지 또는 현재 고용되어 있는지, 그 조건은 어떠한지
- ③ 아동의 연령, 교육의 의무 및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아동이 제안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이를 위해 고용주가 부담하는 건강 검진은 소아과의 또는 일반의가 실시한다.
- ④ 아동의 고용 조건이 다음을 충족하는지
 1. 근무 일정
 2. 특히 같은 주 내에 저녁 공연이나 여러 차례의 공연 또는 대회에 참여하는지 등 공연 또는 대회의 빈도
 3. 아동의 보수;
 4. 휴가 및 휴게시간;
 5. 위생, 안전;
 6. 아동의 건강과 도덕성의 보호;
- ⑤ 정상적인 학교 출석을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
- ⑥ 아동의 가족 또는 아동의 책임자가 특히 휴게시간과 이동 중에 효과적인 감독을 할 수 있는지

제R7124-6조

일 드 프랑스⁶⁵⁾지역에서 이루어진 개별 허가 신청 관련, 제R7124-5조 ③에 규정된 건강 검진은 공연 예술가 및 공연 기술자의 직업 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전직종 의료서비스의 산업의(産業醫)가 실시한다.

제R7124-7조

제R7124-5 조 ③에 규정된 건강 검진을 통해 아동의 연령, 건강 상태, 제안된 활동의 기간, 빈도 및 일정에 따라 이 활동이 아동의 건강에 해롭지 않은지 확인하고 잠재적 급기 사항을 진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를 보건부 장관령으로 정한다.

65) Ile-de-France 프랑스 중북부 파리분지 중앙부를 이루는 지역(Région).

제2절: 인가받은 모델 에이전시에 의한 아동 고용에 관한 특례

제1단: 에이전시 인가

제R7124-8조

아동을 고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델 에이전시가 인가 신청 또는 인가 갱신 신청을 할 때는 다음 문서를 첨부한다.

- 1 에이전시의 임원, 동업자 및 관리자의 출생증명서 초본
- 2 신청서 제출 시, 운영 중인 에이전시의 사회 보장 보험 기관 보험료 납입 증명서
- 3 에이전시의 비용으로 아동의 건강 진단을 한다는 약정하는 증명서
- 4 제R7124-15조에 규정된 통지서 사본
- 5 다음을 평가할 수 있는 모든 요소
 - (1) 아동 모델 고용 관련, 모델 에이전시의 임원, 동업자 및 관리자의 도덕성, 능력 및 경력
 - (2) 신청서 제출 시 운영 중인 경우 에이전시의 재정 상황
 - (3) 특히 보유 장비, 장비가 설치된 장소, 고용된 직원 수와 능력 등 에이전시 운영 상황
 - (4) 에이전시가 아동과의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여건

제R7124-9조

제R7124-5 조의 ③에 규정된 아동의 고용 전 건강 검진은 제R7124-7조에 규정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소아과의 또는 일반의가 실시한다.

아동의 연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아동의 건강이나 발달 상태에 해를 끼치지 않고 모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검진한다.

이 검진은 3 세 미만의 아동은 3개월마다, 3-6세는 6개월마다, 6세 이상은 매년 갱신된다.

의사의 소견이 부정적인 경우 해당 아동은 고용될 수 없다.

제R7124-10조

프레페는 그 구성 및 운영 방식이 제3절에서 결정된 위원회의 동의 하에 인가를 승인하며, 기간은 1년으로 갱신 가능하다.

긴급 상황에서, 인가는 보류될 수 있다.

제R7124-11조

인가 또는 인가 갱신은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안전에 대한 보장이 충족될 때만 가능하다.

신청 심사의 일환으로, 프레페는 범죄 기록 제2호 공보⁶⁶⁾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에이전시의

임원, 동업자 및 관리자가 해당 공보에 명시된 유죄 판결의 대상이 된 것으로 드러난 경우 인가를 승인하거나 갱신할 수 없다.

제R7124-12조

인가 보류 결정은 신속히 증명되어야 하며, 에이전시 또는 직원 중 일부가 고용 아동의 건강이나 도덕에 대해 즉각적이고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행위에만 기반할 수 있다. 인가 보류 결정은 근거가 있어야 한다.

제R7124-13조

인가 보류 기간은 1개월을 초과 할 수 없다. 이 기간 내에 프레페가 소집한 위원회는 해당 에이전시의 소견 발표 후 프레페에게 다음 중 하나를 제안한다.

- ① 인가 철회;
- ② 기관이 취한 조치가 아동에게 발생하는 위험을 제거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성질의 경우-보류 해제.

보류는 프레페가 1개월 내에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1개월의 기간 만료 시 종료된다.

제R7124-14조

인가의 승인, 갱신, 비갱신 또는 철회를 기재하는 결정 목록은 프랑스 정부의 관 보에 의견의 형식으로 게재된다.

제2단: 운영 조건

제R7124-15조

아동을 고용하는 인가된 모델 에이전시는 아동과 아동의 법정 대리인에게 다음을 명시하는 설명서를 전달하고 수령증을 받는다.

- 1 에이전시의 운영
- 2 아동의 건강 검진
- 3 (에이전시) 이용자의 선발 절차

66) Le bulletin n°2 comporte la plupart des condamnations et décisions de justice sauf les suivantes : Décisions à l'encontre des mineurs. Condamnations prononcées pour contraventions. Condamnations assorties d'une dispense de peine ou d'un ajournement du prononcé de la peine. 제2호 공보는 다음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과 및 사법 결정을 포함한다: 미성년 사법 결정. 경범죄 기록. 형의 면제 또는 형의 유예를 수반하는 판결.

- 4 이동의 이동 시간 및 대기 시간을 포함한 이용자 제공 조건
- 5 최대 고용 시간
- 6 보수 조건

제R7124-16조

인가된 모델 에이전시는 특별 등록부에 다음을 기록한다.

- 1 선발 또는 고용된 아동 및 법정 대리인의 신원 및 주소
- 2 각 아동에 대한 선발식(오디션) 날짜, 장소와 시간 및 이용자와 발주자의 신원
- 3 각 아동의 일일 근무 시간, 이동 시간 및 대기 시간을 이용자에게 제공

제R7124-17조

선발 또는 고용 시 특별 등록부는 근로감독관과 아동의 법정 대리인에게 제공한다.

아동의 법정 대리인은 최소한 분기별로 (특별 등록부에) 양자서명한다.

아동 모델의 선발 또는 고용에 대한 감독을 할 경우, 근로감독관 또는 아동 및 아동의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아동 및 아동의 법정 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R7124-18조

제7123-17 조에서 정한 근로자파견 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는 아동에게 용역의 성격과 조건을 알린다.

제3절: 공통 규정

제1단: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R7124-19조

위원회는 아동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개별 허가 신청 및 모델 에이전시 인가 신청에 관한 검토에 참여한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① 아동 판사의 기능을 담당하고 항소 법원의 주심이 임명한 사법관을 위원장으로 한다;
- ② 아카데미 교육감 또는 그 대리인을 위임하는 국가 교육 서비스의 아카데미 국장⁶⁷⁾
- ③ 지방기업노동국 국장 혹은 그 대리인
- ④ 사회 통합 담당 부처 간 도(道)국장 또는 그 대리인

67) 아카데미국의 최고 책임자

- ⑤ 건강 검열의
- ⑥ 지역 문화 담당 국장 또는 그 대리인

제R7124-20조

파리에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① 소년법원장 또는 그 대리인을 위원장으로 한다;
- ② 파리시(市) 교육 담당관 또는 그 대리인;
- ③ 지방기업노동국 국장 또는 그 대리인
- ④ 파리시(市)의 사회 통합 부서장 또는 그 대리인;
- ⑤ 파리 프레펙튀르⁶⁸⁾, 일 드 프랑스 지역의 프레펙튀르의 건강 검열의
- ⑥ 법령으로 임명된 문화 담당 장관의 대리인;
- ⑦ 법령으로 임명된 정보 담당 장관의 대리인.

제R7124-21조

위원회는 필요할 때마다 프레페의 소집으로 개최된다.

제출된 각 개별 허가 또는 인가 신청에 대한 상세 의견을 낸다.

위원장직을 맡을 책임이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포함하여 최소 세 명 회원이 모여야만 심의가 유효하다.

참석한 위원의 과반수 득표로 의견을 제시한다. 동점일 경우 위원장의 투표가 결정적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동과 법정 대리인의 요청 또는 위원회 중 한 위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또는 함께, 아동과 법적대리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R7124-22조

위원회의 사무국은 특히 각 아동의 파일을 보존할 책임이 있다.

제2단: 자문위원회에 대한 절차

제R7124-16조

제출된 서류가 완벽히 갖춰졌다는 조건 하에, 개별 허가, 인가 또는 인가 갱신 신청을 제출한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프레페는 이해 당사자에게 다음 사항을 알린다.

- ① 허가 또는 인가 거부;
- ②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 경우 1개월의 기간이 1개월 추가 연장된다는 사실;

68) 일반지방행정관청/1977년부터 일 드 프랑스 지역과 파리의 프레펙튀르는 하나로 운영된다.

③ 특정 조건 또는 절차에 따라 허가 또는 인가한다는 것

④ 허가 또는 인가가 승인되었다는 것

이 통지서의 사본은 ③ 및 ④에서 정한 바와 같이, 예금공탁공고로 보낸다.

제R7124-24조

프레페가 제R7124-23 조의 제1문단에 명시된 1개월 이내에 자신의 결정을 알리지 않은 경우

① 개별 허가 신청 또는 인가 신청이 거부된 것으로 간주된다.

② 인가 갱신 신청이 수락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R7124-25조

개별 허가 및 인가의 거부와 철회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특히 아동 보호 분야에서의 활동이나 해당 미성년자에 대한 관심을 근거로 하여 자격을 갖춘 사람의 요청에 의해 거부와 철회가 선고될 수 있다.

위원회 회의 소환장은 등기 우편으로 발송된다.

신청자는 원할 경우 위원회에서 의견을 낼 수 있다. 신청자가 선임한 자를 동반하거나 대리인으로 세울 수 있다.

제R7124-26조

제7124-3조 및 제7124-5조에 명시된 개별 허가 및 인가의 철회는 직권으로 또는 자격 있는 자의 요청에 의해 위원회의 동의에 하에 프레페가 선고한다. .

제4절: 아동 근로 조건

제1관: 근로시간 및 휴게

제R7124-27조

모델 활동을 하는 만 6 세 미만 아동의 고용 및 이 활동을 목적으로 한 사전 선발은 다음 기간 동안만 허가될 수 있다.

1 일일 최대 시간

1. 만 3세까지 1 시간, 연속 30 분 이하
2. 3세에서 6세까지 2 시간, 연속 1 시간 이하

2 주당 최대 시간

1. 6개월까지 1 시간

2. 6개월에서 3세까지 2 시간
3. 3세에서 6세까지 3 시간

제R7124-8 조

R7124-28에서 정한 취학 아동의 고용 및 선발은 일요일을 제외한 1일 및 반일의 휴게일에만 허가될 수 있다.

제R7124-29조

학기 중, 모델 활동을 하는 6세에서 16세까지 아동의 고용 및 이 활동을 하기 위한 사전 선발은 일요일을 제외한 일일 또는 반일의 주간 휴게일에만 허가될 수 있다. 활동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일일 최대 시간

1. 6세에서 11세까지 3시간, 연속 1시간 반 이하
2. 12세에서 16세까지 4시간, 연속 2시간 이하.

아동의 고용 및 선발 시, 이러한 일일 시간은 반일의 경우 절반으로 줄어 든다.

2 주당 최대 시간

1. 6세에서 11세까지 4시간 30분
2. 12세에서 16세까지 6시간

제R7124-30조

방학 기간 동안, 모델 활동을 하는 6세에서 16세 사이의 아동의 고용과 이 활동을 하기 위한 사전 선발은 방학 일수의 절반 및 다음의 시간 동안만 허가된다.

1. 일일 최대 시간

1. 6세부터 11세까지 6시간, 연속 2시간 이하
2. 12세부터 16세까지 7시간, 연속 3시간 이하

2. 주당 최대 시간

1. 6세부터 11세까지 12시간
2. 12세부터 14세까지 15시간
3. 14세부터 16세까지 18시간

제R7124-30-1조

공연 분야에서 16세 미만 아동의 야간 근무는 24시까지만 허가된다.

제R7124-30-2조

교육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순회공연 제작 활동을 하는 합창단에 소속된 아동이 참가하는 유료 공연의 기간은 제3121-1조에 따른 실근로시간이 된다.

제2관: 보수

제R7124-31조

아동이 받는 보수의 일부는 법정 대리인의 재량에 이양되며, 이는 제R7124-19조에서 정한 위원회에 의해 책정된다.

제R7124-32조

위원회는 행정 처분 전 제시된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결정한다.

제R7124-33조

제R7124-32조의 ③ 및 ④에 규정된 경우, 통지는 위탁금 구성에 할당된 보수의 비율을 명시한다. 이 통지는 고용주에게 제R7124-35 조에 따른 의무를 상기시킨다. 이 비율은 제7123-6조, 제7123-12조에서 제7123-16조까지에서 정한 아동이 받는 급여 및 보수에 따른다.

제R7124-34조

제7124-9조를 적용하여, 아동의 위탁금에 대해 아동의 법정 대리인에게, 긴급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주어진 출금 허가는 출금된 액수가 의도한 용도에 온전히 할당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위탁금 출금은 위원회 위원장이 허가한다.

이러한 인출은 아동의 배타적인 이익을 위해서만 허가될 수 있다.

제R7124-35조

제7124-9조의 제2문단에 규정된 예금공탁공고 납입에는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 및 법정 대리인의 이름을 명시한 고용주의 신고장이 수반된다.

제R7124-36조

예금공탁공고는 해당 미성년자의 이름으로 고용주가 납입하는 예금 계좌를 개설한다.

예금 계좌에 의해 생성된 이율 및 계산법은 통화 및 재정법 제518-23조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 이 이율은 현재 회계 연도의 법정 이자율보다 낮을 수 없다.

제R7124-37조

매년 3월 31일 이전에 예금공탁공고는 계좌 소유자 또는 그의 법정 대리인에게 전년도의 미결제 예금과 생성된 이자를 알리는 문서를 최근 주소지로 전달한다.

아동이 성년에 이르면, 예금공탁공고는 계정 잔액을 등기 우편으로 전달하고, 해당 아동의 재량에 있는 위탁금의 자금에 대해 최근 주소로 통지한다.

아동이 성년에 이르면, 또는 제3문단에서 정한 통지에 따라, 예금공탁공고는 당사자의 재량에 있는 자금을 일반 예금 계좌로 이체한다.

제5절: 감독

제R7124-38조

제4153-7조⁶⁹⁾, 제7124-1조 ~ 제7124-11조, 제7124-13조 ~ 제7124-18조 및 제7124-21조 및 제R7124-3조, 제R7124-10, 제R7124-26, 제R7124-31 및 제R7124-34조의 규정의 위반이 프랑스 국민과 관련하여 해외에서 일어났을 경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프랑스 영사는 프랑스 정부 당국이나, 만약 해당 국가의 법률이 처벌을 보장한다면 해당 정부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외에도, 영사는 프랑스 국적 아동을 프랑스에 귀환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해야 한다.

69) 부, 모, 보호자, 고용주 및 일반적으로 아동에 대한 권한이 있거나 양육권을 가진 이가 부랑자, 생계 수단이 없는 자 및 걸인의 통제 하에 두는 것을 금지한다.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 인쇄일 | 2020년 12월

| 발행일 | 2020년 12월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 주 소 |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http://www.humanrights.go.kr>

| 문의전화 | 아동청소년인권과 02)2125-9643

| FAX | 02)2125-0929

ISBN : 978-89-6114-797-2 93330 비매품